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유해미·박진아·엄지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저 자

유해미, 박진아, 엄지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 6948-965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96-8 93330



머리말

정부는 그간 모든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고, 부모들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2020년에는 종일제보육을 수요에 맞게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 해소는 물론이고,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기 힘든 경우 등에 요구되는 긴급보육은 주요 과제로 남겨져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등 재난 시 아동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가구에서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영유아 돌봄의 공백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즉, 유치원 이용가구 502명과 어린이집 이용가구 1,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무상보육 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아동 및 가구를 파악하고,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소관부처가 각기 다른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모든 영유아에게 공백이나 누락 없이 안전한 돌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현장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내용 및 범위	15
3. 연구방법 및 추진 절차	17
II. 연구의 배경	31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33
2.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와 이용 양상	38
3.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아동 및 가구의 특성	47
4. 유사 분야의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 검토	60
5. 소결	78
III.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및 제도 현황	81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돌봄 공백 대응 관련 규정	83
2.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연계 관련 규정	96
3. 긴급보육·돌봄지원의 서비스 연계 추진 현황	116
4.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기반 조성	119
5. 소결	123
IV.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125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127
2.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애로사항	176
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지원요구	205
4. 소결	248

V. 공급자 측면: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251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253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270
3. 긴급보육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284
4. 소결	289
VI.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293
1.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295
2. 세부 방안	304
참고문헌	323
Abstract	329
부록	331
부록 1. 현장전문가 조사표(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용 (어린이집 원장/유치원 원장)	331
부록 2. 현장전문가 조사표(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실무자)	344
부록 3. 설문조사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부모용	354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영유아부모용	372
부록 5. 부표	377



표 목차

〈표 I-3-1〉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 아동 및 가구 특성	19
〈표 I-3-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20
〈표 I-3-3〉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3: 서비스 이용 특성	21
〈표 I-3-4〉 설문조사 문항	21
〈표 I-3-5〉 심층면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3
〈표 I-3-6〉 심층면담 조사 문항	24
〈표 I-3-7〉 현장전문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	26
〈표 I-3-8〉 현장전문가 조사 문항 1: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26
〈표 I-3-9〉 현장전문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28
〈표 I-3-10〉 현장전문가 조사 문항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	28
〈표 II-2-1〉 OECD 국가의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유형(2016)	39
〈표 II-3-1〉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일반적 특성(2018)	48
〈표 II-3-2〉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근로 특성(2018)	49
〈표 II-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동기(2018) ..	50
〈표 II-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이용 여부(2018) ..	51
〈표 II-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당 이용 횟수 (2018)	52
〈표 II-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이용시간(2018) ..	53
〈표 II-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1회 이용시간(2018) ..	53
〈표 II-3-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주중: 시작 시각(2018)	56
〈표 II-3-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주중: 종료 시각(2018)	57
〈표 II-3-1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시간대 (중복응답)(2018)	58

〈표 II-3-1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 부담 수준(2018)	59
〈표 II-4-1〉 온종일돌봄의 중앙 및 지방단위 협력체계 구성(안)	62
〈표 II-4-2〉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2021)	69
〈표 II-4-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규정: 「발달장애인법」 제35조	72
〈표 II-4-4〉 방과후돌봄의 돌봄협의체 운영체계(황준성 외, 2018)	75
〈표 III-1-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내용(2021)	88
〈표 III-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21)	97
〈표 III-2-2〉 아이돌봄서비스 업무처리 단계(2021)	99
〈표 III-2-3〉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추이(2012-2020)	108
〈표 III-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소득기준 유형별(2019-2020) ..	109
〈표 III-2-5〉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가구 추이(2014-2020)	110
〈표 III-2-6〉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추이(2014-2020)	112
〈표 III-2-7〉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아동 수(2021)	113
〈표 III-2-8〉 인근지역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 관리 주체(2021)	116
〈표 IV-1-1〉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28
〈표 IV-1-2〉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2) 이용기관 특성	130
〈표 IV-1-3〉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1) 아동 및 가구 특성 ..	131
〈표 IV-1-4〉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2) 이용기관 특성 ..	132
〈표 IV-1-5〉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134
〈표 IV-1-6〉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135
〈표 IV-1-7〉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36
〈표 IV-1-8〉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2) 이용기관 특성	137
〈표 IV-1-9〉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1) 아동 및 가구 특성 ..	138
〈표 IV-1-10〉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2) 이용기관 특성 ..	139
〈표 IV-1-11〉 수요 보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전체)	140
〈표 IV-1-12〉 수요 보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1순위 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141
〈표 IV-1-13〉 수요 보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1순위 응답): 2) 이용기관 특성	142
〈표 IV-1-14〉 주중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	147
〈표 IV-1-15〉 주중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148

〈표 IV-1-16〉 주말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50
〈표 IV-1-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51
〈표 IV-1-18〉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153
〈표 IV-1-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53
〈표 IV-1-20〉 어린이집 연장보육 불만족내용(중복응답)	155
〈표 IV-1-21〉 어린이집 연장보육 미이용 사유	156
〈표 IV-1-22〉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58
〈표 IV-1-23〉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159
〈표 IV-1-24〉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59
〈표 IV-1-25〉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불만족내용(중복응답)	161
〈표 IV-1-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61
〈표 IV-1-2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162
〈표 IV-1-28〉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63
〈표 IV-1-29〉 유치원 방과후과정 불만족내용	163
〈표 IV-1-30〉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1) 아동 및 가구 특성	164
〈표 IV-1-31〉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2) 이용기관 특성	165
〈표 IV-1-32〉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65
〈표 IV-1-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167
〈표 IV-1-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169
〈표 IV-1-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70
〈표 IV-1-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70
〈표 IV-1-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 2) 이용기관 특성	171

〈표 IV-1-3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72
〈표 IV-1-3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173
〈표 IV-1-4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175
〈표 IV-2-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부모 제외) 유무:	
1) 아동 및 가구 특성	176
〈표 IV-2-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부모 제외) 유무:	
2) 이용기관 특성	177
〈표 IV-2-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부모 제외) 유무: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179
〈표 IV-2-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180
〈표 IV-2-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181
〈표 IV-2-6〉 병행서비스 유형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이용시간	182
〈표 IV-2-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이용시간:	
1) 아동 및 가구 특성	183
〈표 IV-2-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이용시간:	
2) 이용기관 특성	184
〈표 IV-2-9〉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185
〈표 IV-2-10〉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187
〈표 IV-2-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188
〈표 IV-2-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189
〈표 IV-2-13〉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과거 유경험자):	
1) 아동 및 가구 특성	190
〈표 IV-2-14〉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과거 유경험자):	
2) 이용기관 특성	192
〈표 IV-2-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1) 아동 및 가구 특성	194
〈표 IV-2-1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2) 이용기관 특성	195
〈표 IV-2-17〉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시작 시각:	
1) 아동 및 가구 특성	197

〈표 IV-2-18〉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시작 시각:	
2) 이용기관 특성	198
〈표 IV-2-19〉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종료 시각:	
1) 아동 및 가구 특성	199
〈표 IV-2-20〉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종료 시각:	
2) 이용기관 특성	200
〈표 IV-2-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201
〈표 IV-2-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203
〈표 IV-2-23〉 아이돌봄서비스 불만족내용	204
〈표 IV-3-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1) 전체	206
〈표 IV-3-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2) 이용기관 특성	206
〈표 IV-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207
〈표 IV-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4) 부모의 출근시각	208
〈표 IV-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5) 부모의 퇴근시각	209
〈표 IV-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1) 아동 및 가구 특성	210
〈표 IV-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2) 이용기관 특성	212
〈표 IV-3-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213
〈표 IV-3-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214
〈표 IV-3-1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여부: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215
〈표 IV-3-11〉 이용기관을 보육 수요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려는 이유(중복응답)	215
〈표 IV-3-1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	217

〈표 IV-3-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전체)	219
〈표 IV-3-1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1순위 응답)	220
〈표 IV-3-1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기관 (환아전문 보육시설 등)을 선호 하는 이유	222
〈표 IV-3-1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코로나19에 따른 주양육자	223
〈표 IV-3-1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225
〈표 IV-3-18〉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1) 아동 및 가구 특성	226
〈표 IV-3-19〉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2) 주양육자	226
〈표 IV-3-2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228
〈표 IV-3-21〉 긴급돌봄(야간/주말)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229
〈표 IV-3-22〉 긴급돌봄(야간/주말)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2)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230
〈표 IV-3-23〉 긴급돌봄(야간/주말)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의향 사유(중복응답)	231
〈표 IV-3-2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1) 전체	235
〈표 IV-3-2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2) 자녀수	235
〈표 IV-3-2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3) 자녀연령	236
〈표 IV-3-2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4) 이용기관 특성	237
〈표 IV-3-2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5)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238
〈표 IV-3-2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동의 정도: 1) 전체	242

〈표 IV-3-3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동의 정도: 2) 자녀연령1	243
〈표 IV-3-3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동의 정도: 3) 자녀연령2	244
〈표 IV-3-3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동의 정도: 4) 맞벌이 가구 여부	245
〈표 IV-3-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보수집 방식	246
〈표 V-1-1〉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 변동 및 해당 사유	254
〈표 V-1-2〉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및 해당 사유	254
〈표 V-1-3〉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미등원/이른 하원을 권유한 경우	256
〈표 V-1-4〉 어린이집/유치원의 미등원/이른 하원에 따른 대응 조치	258
〈표 V-1-5〉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 공백 대응 조치	259
〈표 V-1-6〉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시기 및 경로	260
〈표 V-1-7〉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사항	261
〈표 V-1-8〉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262
〈표 V-1-9〉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 공백 우려 상황	264
〈표 V-1-10〉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인식	265
〈표 V-1-11〉 어린이집/유치원의 기관연계 서비스 필요도	266
〈표 V-1-12〉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우려점	268
〈표 V-1-13〉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269
〈표 V-1-14〉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270
〈표 V-2-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경험	271
〈표 V-2-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미연계 사유	272
〈표 V-2-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고려사항	273
〈표 V-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애로사항 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274
〈표 V-2-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애로사항 2: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275
〈표 V-2-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필요도 인식	276
〈표 V-2-7〉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연계 서비스 필요도 인식	277
〈표 V-2-9〉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우려사항	278
〈표 V-2-10〉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필요사항	279

〈표 V-2-1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개선요구	280
〈표 V-2-1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시연계 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개선과제	282
〈표 V-3-1〉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시 애로사항	284
〈표 V-3-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관련 정책환경 변화 인식	286
〈표 V-3-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시 애로사항	287
〈표 V-3-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개선요구	288
〈표 VI-2-1〉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기준 및 내용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302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9
[그림 I-3-1] 연구절차 및 분석내용	30
[그림 II-2-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비공식돌봄 이용률(2019)	40
[그림 II-4-1] 온종일 돌봄체계의 돌봄 유형 및 관계부처	61
[그림 II-4-2] 범정부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61
[그림 II-4-3] 온종일돌봄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모델	63
[그림 II-4-4] 온종일돌봄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추진체계	64
[그림 II-4-5]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의 단계별 구현내용	65
[그림 II-4-6]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66
[그림 II-4-7]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돌봄시설 조회 예시 (충북 청주시)	66
[그림 II-4-8]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2021)	68
[그림 II-4-9]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2021)	70
[그림 II-4-1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흐름도(2021)	72
[그림 II-4-11]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체계도(2021)	73
[그림 II-4-12]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추진체계 개선안(이희현 외, 2019)	77
[그림 III-1-1]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보육 개념(2021)	84
[그림 III-1-2] 서울 지역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2020)	93
[그림 III-1-3] 충청북도 지역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2020)	94
[그림 III-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2021)	98
[그림 III-2-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2021)	100
[그림 III-2-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업무 흐름도(2021)	101
[그림 III-2-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자 회원 구분(2021)	105
[그림 III-2-5]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 추이(2014-2018)	106
[그림 III-2-6]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 절차(2021)	107
[그림 III-2-7] 아이돌보미 관련 사고 보고체계(2021)	115
[그림 III-2-8] 인근 지역 아이돌보미 연계 신청 및 처리 절차(2021)	116
[그림 III-3-1]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	118
[그림 III-4-1] 0~1세 비용지원제도 개편방안	119

[그림 III-4-2] 임신육아종합포털	121
[그림 III-4-3]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121
[그림 III-4-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포털	122
[그림 IV-1-1] 주중 오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46
[그림 IV-1-2] 주중 오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46
[그림 IV-1-3] 주말 오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49
[그림 IV-1-4] 주말 오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49
[그림 IV-3-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5점 척도) ...	205
[그림 IV-3-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	213
[그림 IV-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이유	222
[그림 IV-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	233
[그림 IV-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부모의 출근시각	239
[그림 IV-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부모의 퇴근시각	239
[그림 IV-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동의 정도(5점 척도)	241
[그림 VI-1-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와 추진 전략	300
[그림 VI-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	307
[그림 VI-2-2] 틈새보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315
[그림 VI-2-3] 재난시 긴급보육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320
[그림 VI-2-4] 자녀돌봄의 공백 유형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효율화 방안	321



부록 표 목차

〈부표 V-1〉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등에 따른 돌봄 공백 관련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결방안	377
〈부표 V-2〉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상황 및 세부내용	378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보편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부모의 근로시간 다양화로 인한 돌봄 공백은 물론, 질병감염 아동이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모색할만함.
- 아동돌봄의 공백 유형을 분석하여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 방안을 도출함.

나. 연구내용

-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검토함.
-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추진 체계, 타 서비스와의 연계 관련 규정을 검토함.
-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의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수요자(영유아 부모)와 공급자(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통해 각각 파악함.
-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및 추진 절차

- 문헌연구: 아동돌봄 공백에의 대응과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 등 검토
- 2차 자료 분석: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재분석

□ 설문조사

- 조사 목적: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중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과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대상 및 규모: 유치원 이용가구 502 사례(30.9%)와 어린이집 이용가구 1,121 사례(69.1%)를 조사함.

□ 심층면담

- 조사 목적: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특성과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연계의 경험 및 애로사항, 지원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대상 및 규모: 영유아 부모 총 19인을 조사함.

□ 현장전문가 조사

- 조사 목적: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의 상황별로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대상 및 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각 8인씩 총 16인과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총 8인을 조사함.

2. 연구의 배경

-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보육 수요 및 요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OECD 국가의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 현황과 일본의 환아보육사업 현황을 살펴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동기 및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특성을 파악함.
- 아동 및 돌봄 분야의 서비스 연계 관련 유사 규정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함.

3.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및 제도 현황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돌봄 공백 대응 관련 규정
-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연계 관련 규정
- 긴급보육·돌봄지원의 서비스 연계 추진 현황
-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기반 조성

4.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 주중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의 평균 하원시각은 17시 22분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 16시 26분에 비해 56분이 긴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주중(월~금요일)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임.
-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 주말의 이용가구 비율은 10.4%이고, 해당 비율은 영아자녀 특히 0세와 1세아의 경우 각각 17.6%와 13.8%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말(토요일)의 평균 등원시각은 9시 13분, 평균 하원시각은 14시 23분으로 주중과는 달리 아동 및 가구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주말(토요일)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주중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
 -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기관의 운영시각이 퇴근시각과 맞지 않아서’ 30.4%(1+2순위 54.7%), ‘기관의 운영시각이 출근시각과 맞지 않아서’ 26.9%(1+2순위 33.6%),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거 같아서’ 19.0%,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 봐 우려되어서’ 17.6% 순으로 조사됨.

□ 추가보육 수요

- 주중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시간대는 7시 30분 이후부터 8시 까지와 8시 이후 부터 8시 30분 까지가 공히 23.7%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16시 30분부터 19시 까지는 30%선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주말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시간대는 7시 30분 이전이 18.8%이고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22.1%로 높게 나타나며, 16시 이전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은 20.3%로 조사됨.

□ 어린이집 연장보육/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어린이집 연장보육 미이용 사유로는 해당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시간보육’과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각각 21.1%와 20.9%로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가구의 불만족한 내용은 ‘서비스 질이 낮다’는 점, ‘이른 하원 종용’, ‘급·간식에 대한 불만’, ‘서비스 신청이 용이 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됨.
-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로는 해당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시간 기관 이용’과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각각 18.0%와 16.5%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어린이집과 유사한 경향임.

□ 자녀돌봄의 공백 실태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의 해당 빈도는 한 달에 1회 정도 28.6%, 한 달에 2~3회 이상 24.9%, 두 달에 1회 이하 22.5%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은 ‘자녀가 아플 때’ 46.9%,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한 경우’ 41.7%, ‘직장에서 연장근로 해야 하는 경우’ 39.2%,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36.0% 순으로 조사됨.

나.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애로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서비스 병행이용 실태

- 주중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외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가구는 41.2% 이고,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45.6%로 어린이집 이용가구(39.2%) 보다 높고, 매주 주말근로 하는 가구에서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 유형은 ‘조부모/친인척’ 72.9%, ‘민간 베이비시터’ 21.3%, ‘아이돌보미’ 16.5%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시간대는 시작 시각이 평균 13시 20분 이고, 종료 시각이 평균 17시 54분 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는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직접 홍보를 통해서’ 30.9%, ‘지인을 통해서’ 28.6%, ‘동네 홍보자료(현수막 등)을 통해서’ 25.8% 순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은 ‘20년 3월 이후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가 57.2%, ‘20년 2월 까지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9.2%인 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가구는 26.5%이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7.1%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미이용 가구에서 해당 사유는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가 21.5%, ‘아이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 19.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7.4% 순으로 나타남.
-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시각은 8시 31분~9시 19.6%, 7시 30분~8시 11.1% 순이며, 종료 시각은 17시 31분~18시 20.7%, 18시 31분~7시 19.4% 순 이고, 16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74.1%로 높게 나타남.

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지원요구

□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

-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이용 중인 기

관이 시설보수 등으로 자체적으로 휴원할 때'가 평균 4.2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 4.19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4.11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병원 진료' 3.98점,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근 등)해야 할 때' 3.93점, '기관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 3.84점 순임.

□ 자녀돌봄 공백의 유형별 서비스 연계 수요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일반형/종합형)의 병행이용 사유로는 '오후 늦게 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자녀가 안스러워서' 32.0%, '기관 하원 이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27.7%, '장시간 자녀를 맡기는 것이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19.4% 순으로 조사됨.
- 필요한 만큼 기관이용이 가능하다면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9%로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육 수요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에 눈치가 보이거나, 등·하원서비스,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여전히 제기됨.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휴원 시에 희망하는 자녀돌봄의 방식으로 아이돌보미가 30.1%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돌봄이 24.7%로 부모의 직접 돌봄(22.2%)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야간 또는 주말에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강제휴원 시 평균 3.93점, 부모가 아픈 경우 3.87점,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점, 일상적으로 늦은 퇴근(19:30 이후) 3.80점,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동의 정도와 선호 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하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와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연장보육 위주로 지원한다’에 동의하는 비율(동의함+매우 동의함)이 각각 69.2%(평균 3.86점, 5점 만점)와 70.1%(3.84점)로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이용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 대상 공지’가 39.4%(1+2순위 응답률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공급자 측면: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과 돌봄 공백에의 대응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결석을 권유하거나,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는 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는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이외에도 원아가 아픈 경우와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기간, 보육교직원 대상 집체교육 기간 등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1) 아이돌보미 즉시연계의 어려움, 2)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 인식 부족, 3) 아이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4) 서비스 연계체계의 미흡, 5) 서비스 이용 편의성 낮음, 6) 서비스 내용을 잘 모름 등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 및 아동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 및 아동은 1) 자녀가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원이 힘든 경우, 3) 부모가 아픈 경우, 4) 한부모가족 등 나홀로 육아 중인 가구, 5) 임시휴원, 6) 기관의 방학 기간, 7) 가정 내 긴급보육 상황, 8) 맞벌이 가구(자영업자 포함)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9) 부모참여 수업이나 활동시 등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사항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안내 책자’, ‘온라인 교육자료’, ‘서비스 이용방법 등 부모의 질문의 대응을 위한 매뉴얼 등 소개 자료와 담당부서의 공식 업무 연락’,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의 가구 설치’ 등이 제기됨.

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당일엔 긴급하게 요청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 대기 중인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공급이 어려운 점, 해당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한 제약, 당일 다른 가정의 추가돌봄이 금지되어 급여를 보장받기 힘든 점 등이 지적됨.

□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 1) 적극적인 사업 홍보(TV 등 대국민 홍보 강화 포함) 2)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방식 구체화(지침에 가정통신문 안내 명시)와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평가인증 등 평가 시 지역사회 연계 항목 포함 등), 3)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4) 공통 적용기준의 정교화(아동의 투약, 활동 중 사고 발생 등 유의사항, 아동인계 절차 등), 5) 기관 간의 업무협약 등이 제기됨.

6.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가.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는 ‘기관보육이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의 대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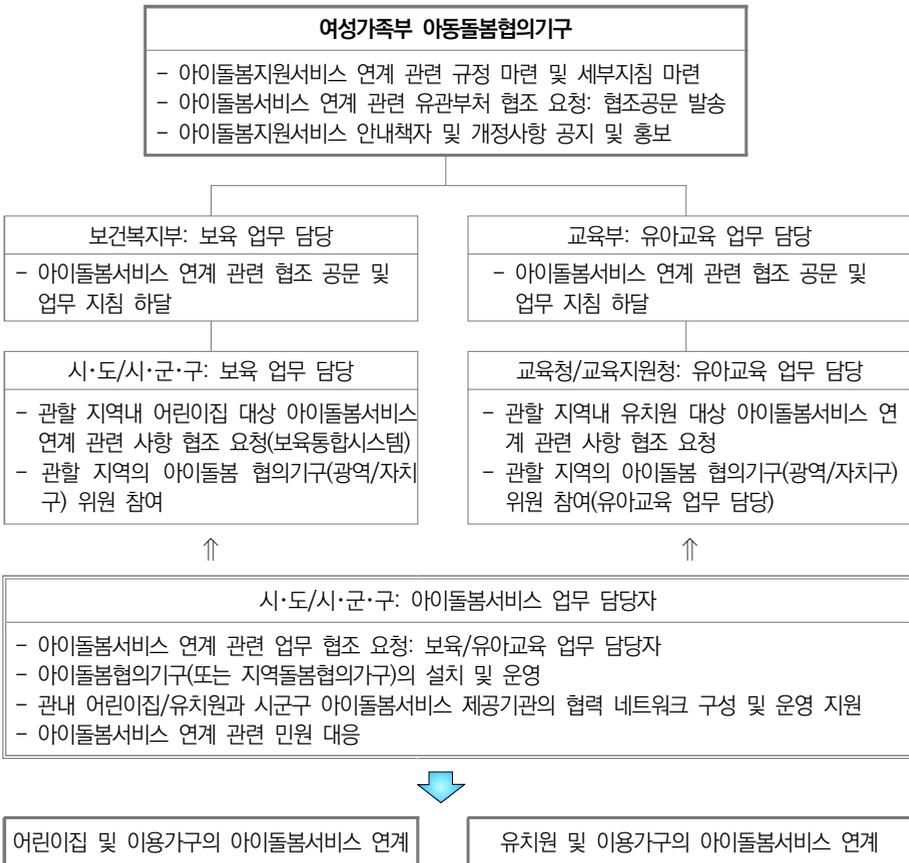
□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정교화가 요구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 돌봄 공백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선결과제

-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 신뢰도 제고

[요약 그림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나. 세부 방안

□ 서비스 연계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완화

□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의 구축

- 서비스 연계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아이돌봄 협의기구'의 설치·운영,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원스톱 돌봄서비스 신청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아동의 이용정보 연계 및 통합적 출결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영유아 부모의 정보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해도 증진 및 서비스 연계 관련 인식 제고
-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의 보완과 일괄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전·후 아동인계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일원화

□ 돌봄 공백의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 틈새보육의 연계체계 구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일반적 긴급보육의 연계체계 구축: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방식의 개선, '질병 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연계, '기관연계 서비스' 연계
- 재난 시 긴급보육의 연계체계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I

서론

- 0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내용 및 범위
- 03 연구방법 및 추진 절차

I. 서론

제1장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배경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을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리고 연구절차를 제시하였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3년부터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료가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은 그 특성으로 보아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틈새’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틈새보육은 대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 이를테면 이른 오전이나 늦은 야간 등에 요구된다. 다음으로 긴급보육은 자녀가 아픈 경우 등이나 재난 시에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특히 전염성 질병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할 수 없으므로 맞벌이 가구의 대표적인 긴급보육 상황으로 보고된다(유해미·이민희, 2017: 59-60).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으로 긴급보육 수요가 장기화될 우려도 새롭게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달리 그 목표로서 틈새보육을 표명해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여성가족부, 2021c: 8), 1:1 개별보육 방식으로 제공된다. 동 사업의 예산은 2019년에 224,582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51,493백만원이 배정되어 202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51).¹⁾ 아이돌보미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에게 시간제 돌

1) 2019년 예산은 결산 기준이며, 2020년 예산은 243,993백만원임(여성가족부, 2021b: 51).

봄을 제공하는 데, 이들 서비스는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아 종일제 돌봄과는 달리, 주로 기관보육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유해미·이윤진·김영옥 외, 2019b: 89-91). 즉,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틈새 보육을 위한 등하원서비스,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2021. 3. 2. 인출).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보육·교육시설 이용아동의 전염성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가정양육이 불가피한 경우에 제공되며, 2019년 8월 기준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14,20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이처럼 틈새보육 또는 긴급보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는 그 목표가 상이하므로 돌봄 공백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서비스의 연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하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돌봄의 틈새가 야기되거나, 긴급보육이 필요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여 그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관할 부처가 다르며, 이들 사업간의 연계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업무 계획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담겨져 있으나(여성가족부, 2021a: 16), 아동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유관 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서는 향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존에는 아동 주소지(시·군·구) 내에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도록 제한되었으나, 시·도 내 아이돌보미 탄력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주말 등 긴급·일시연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여성가족부, 2021a: 16).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원 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의 조치로서(보건복지부, 2021a: 78), 대체보육에 대한 안내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즉, 감염성을 지닌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휴원 등의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부모가 개별적으로 돌봄 공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팬데믹으로 집단보육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보다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부모의 근로시간 다양화로 인한 돌봄 공백은 물론, 장애아동 등 아동의 특수한 요구로 인한 추가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질병감염 아동이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때 이들 간의 연계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연계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는 보편적 지원 하에서 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는 그 방향성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돌봄 공백’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연계가 아동의 입장에서 다수의 주양육자를 경험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아동권을 고려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서비스 연계 시 아동안전 등 세부 규정도 포괄하여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내용

첫째,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시간대 및 보육 수요 충족 여부, 맞벌이 가구의 긴급보육 상황과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의 동기, 주된 이용시간대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보육 수요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및 아동의 특성을 규명한다.

둘째,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와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관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이를테면 질병감염 등으로 등원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여부, 서비스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등과, 2)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체

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사항 및 관련 규정을 파악한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긴급돌봄보육 지원 현황을 다룬다.

셋째,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실태와 개선요구를 수요자와 공급자를 통해 파악한다. 우선 공급자에게는 1)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또는 긴급보육 시 가정과의 연계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애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2)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의 실태 및 어려움,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수요자(영유아 부모)에게는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아동발달 차원의 돌봄서비스 선호도, 서비스 연계의 경험 및 애로사항, 서비스 연계 관련 요구(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선호하는 지원체계 등) 등을 조사한다.

넷째,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토대로 그 기본 방향과 주요 원칙을 정립하고, 서비스 연계의 추진체계 및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세부 방안은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제시하며, 이때 부처 간 협력체계, 서비스 제공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돌봄 인력의 통합적 공급 및 관리, 통합적 정보제공 및 비용관리 등을 포괄한다.

나.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

1)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와 병행하여 이용되는 시간제돌봄을 위주로 다루되, 긴급보육에 한하여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포괄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으로 보아 병행이용과는 무관하므로 틈새보육의 경우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주로 다룬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중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긴급보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포함하여 다룬다. 그 밖에도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돌봄의 공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

동돌봄의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 일시연계 방식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2)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틈새보육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자녀돌봄의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를 의미한다. 또한 긴급보육은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기되는 돌봄 수요로 정의한다.

3. 연구방법 및 추진 절차

이 연구의 주요 방법과 추진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돌봄 공백과 기관 이용가구의 가정내보육서비스(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이용 실태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유관 사업의 정부 지침(2021년 보육사업안내,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등)의 돌봄 공백의 대응과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 등을 다루었다.

OECD 회원국의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무상보육 하에서 가정내보육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외국사례로서 일본의 환아보육사업을 다루고 지원방식 측면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재분석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 중인 가구(유치원: 총 1,250명/어린이집: 2,987명)를 추출하여 해당 아동 및 가구의 특성과 서비스 이용 특성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이용 자녀, 정기적 이용 여부, 이용기관 유형 등 가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의 근로특성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비용 등을 분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의 수요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단, 이때 해당 자료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도입되기 이전의 서비스 이용 양상이므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도입으로 틈새보육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 중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과 서비스 연계 시의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및 규모

설문조사는 전국지역에서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로서 총 1,623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기관별로는 2020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가승인통계의 이용아동수²⁾를 반영하여 유치원 이용가구 총 502 사례(30.9%),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1,121 사례(69.1%)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을 아동 및 가구 특성, 부모의 근로 특성, 그리고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별로 각각 살펴보면, 이하 <표 I-3-1>~<표 I-3-3>와 같다. 우선 응답자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절반 정도이며, 연령은 35세 이상이 83.7%를 차지한다(표 I-3-1 참조). 월가구소득은 평균 300만원 이하가 7.1%, 600만원 이상이 37.3% 이고, 맞벌이 가구는 65.2%로 나타난다. 총 자녀수는 평균 1.71명으로 2명이 51.7% 이고, 응답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37.8%, 둘째 45.5%로 나타난다.

2) 2020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는 1,856,934명이고, 이들 중 유치원은 612,538명으로 33.0%, 어린이집은 1,244,396명으로 67.0%임(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2021. 6. 15 인출; 보육정보공개 API OPEN API 연령별 아동 현황,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InfoSl.jsp>, 2021. 6. 15. 인출).

자녀연령은 평균 약 3.4세이며, 2세 이하가 38.5%를 차지한다.

〈표 I-3-1〉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빈곤가구 유형	
남성	51.4 (835)	기초생활수급가구	0.1 (2)
여성	48.6 (788)	차상위계층	0.6 (9)
연령(만)		비해당	89.9 (1,459)
18~29세	2.2 (35)	모름	9.4 (153)
30~34세	14.2 (231)	맞벌이 가구 여부	
35~39세	39.6 (642)	맞벌이 가구(양부모)	65.2 (1,058)
40세 이상	44.1 (715)	홀벌이 가구(양부모)	31.1 (505)
평균(세)	38.61세	맞벌이 가구(한부모)	2.1 (34)
거주지역		근로 안함	1.6 (26)
대도시(광역시)	55.0 (892)	총자녀수	
중소도시	42.9 (697)	1명	39.2 (636)
농산어촌(군 지역)	2.1 (34)	2명	51.7 (839)
학력		3명 이상	9.1 (148)
고졸 이하	4.9 (79)	평균(명)	1.71명
전문대졸	16.4 (266)	기관 이용 자녀 수	
4년제대졸	64.9 (1,053)	1명	76.6 (1,244)
대학원 이상	13.9 (225)	2명	22.6 (366)
가구특성		3명 이상	0.8 (13)
부부+자녀	93.5 (1,518)	평균(명)	1.24명
한부모+자녀	2.3 (37)	출생순위	
3세대 이상 가족	4.2 (68)	첫째	47.8 (775)
월가구소득		둘째	45.5 (739)
100만원 미만	0.2 (3)	셋째	6.0 (98)
100~200만원	0.9 (14)	넷째 이상	0.7 (11)
200~300만원	6.0 (97)	자녀연령(만)	
300~400만원	16.5 (267)	0세	1.0 (17)
400~500만원	21.9 (355)	1세	9.4 (152)
500~600만원	17.3 (281)	2세	28.1 (456)
600~700만원	13.6 (221)	3세	14.4 (233)
700~800만원	8.7 (142)	4세	15.7 (255)
800만원 이상	15.0 (243)	5세	14.8 (240)
		6세 이상	16.6 (270)
		평균(세)	3.45
계(수)		100.0(1,623)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을 부(父)와 모(母)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는 여성이 19.0%로 남성 1.5%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면, 주말에 근로하는 비율(비정기적 주말근로 + 정기적 주말근로 + 매주 주말근로)은 남성이 64.7%로 여성(43.4%)에 비해 높다. 또한 주중 평균 출근시각은 남성이 8시 18분으로 여성에 비해 40분 빠른 반면, 퇴근시각은 여성이 17시 28분으로 남성보다 41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 I-3-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근로형태		
전일제	98.5 (1,538)	81.0 (886)
시간제	1.5 (23)	19.0 (208)
주말 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35.2 (550)	57.6 (630)
비정기적 주말근로	39.7 (620)	22.4 (245)
정기적 주말근로	14.9 (233)	12.7 (139)
매주 주말근로	10.1 (158)	7.3 (80)
주중 출·퇴근시각		
출근시각	8시 18분	8시 58분
퇴근시각	18시 9분	17시 28분
계(수)	100.0 (1,561)	100.0 (1,094)

주: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전체 응답자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69.1%를 차지하며, 이들 중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이용가구가 각각 33.3%와 40.0%로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유치원 이용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30.9%를 차지하며, 사립유치원 이용가구가 64.1%를 차지한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는 31.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는 18.6%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48.1%이다.

〈표 I-3-3〉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3: 서비스 이용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어린이집 이용	100.0 (1,12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국공립어린이집	33.6 (377)	어린이집 이용	69.1 (1,12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2 (58)	유치원 이용	30.9 (50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4.1 (46)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민간어린이집	40.0 (448)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함	31.7 (514)
가정어린이집	12.5 (140)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안함	37.4 (607)
직장어린이집	4.4 (49)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함	18.6 (302)
협동어린이집	0.3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안함	12.3 (200)
유치원 이용	100.0 (50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국공립유치원	35.9 (180)	현재 이용 중	48.1 (780)
사립유치원	64.1 (322)	'20년 3월 이후 이용(현재미이용)	9.1 (147)
		'20년 3월 이전 이용(현재 미이용)	9.2 (149)
		이용한 적 없음	33.7 (547)
계(수)		100.0(1,623)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기관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및 요구, 긴급보육 시 대응방안 및 요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과 요구 등이다. 세부 항목은 이하 〈표 I-3-4〉와 같다.

〈표 I-3-4〉 설문조사 문항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틈새보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이용시간(주중/주말의 등·하원시간) • 주중/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 및 미충족 시 해당 사유와 해당 시간대 •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이용 및 미이용 사유, 서비스 만족도, 불만족내용 •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17:30~) 이용 여부, 서비스 만족도, 불만족내용 •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서비스 만족도, 불만족내용 • 어린이집/유치원과 병행이용 중인 개인양육서비스 여부/해당 인력(또는 기관) 및 서비스 이용시간(시작 시각/종료 시각) • 자녀돌봄의 공백 경험 여부 및 해당 빈도 •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및 우려 수준 •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돌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시 돌봄인력 및 희망 여부 •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불만족내용 • 긴급보육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미의향 사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경험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해당 서비스 유형, 미이용 사유 •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시작 시각/종료 시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을 보육 수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속병행 이용 의향 여부 및 해당 사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과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필요도 •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 및 해당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지원의 동의 정도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선호하는 신청 방법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 총자녀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자녀수, 응답자녀의 출생순위와 연령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이용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설립유형 •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부/모): 전일제/시간제, 주중 출퇴근시각, 주말근로 여부

□ 조사 기간 및 방법

설문조사는 웹 설문조사표 구축 기간(21.8.24~8.26)을 거쳐, 2021년 8월 27일 부터 9월 10일 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서 구축한 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및 가구 특성과 서비스 연계의 유형별로 그 경험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는 전국지역의 영유아를 둔 가구 중에서 기관이용 여부 및 기관유형, 맞벌이 가구 여부, 자녀연령 및 자녀수, 보육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주양육자)를 고르

게 할당하여 총 19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0~40대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부터 50시간 까지 다양하고, 자녀수는 1~4명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하 부터 700만원 이상 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표 I-3-5〉 심층면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면담 차수	일자	면담 대상	연령 (만)	근로 특성	주당 근로시간	가구 특성	자녀특성 (기관이용)	월평균 가구소득
1차	7.1	1	-	임시 근로자	5시간	-	8세(초등), /6세(어린이집)	400 ~499만원
		2	38세	전업주부	-	-	6세(초등), /4세(유치원)	500 ~599만원
		3	-	기타 (프리랜서)	-	맞벌이	8살(초등), 5살(유치원)	-
2차	7.3	4	-	시간제 (야간근무 주말근무)	35시간	맞벌이	6세, 7세(초등) /2세, 3세(어린이집),	-
		5	36세	시간제 (서비스 및 판매직)	17시간	-	9세, 7세(초등), /4세(어린이집)	400 ~499만원
		6	-	전일제 (미용실)	50시간	-	2세(어린이집)	-
3차	8.18	7	40세	상용근로자 (사무직)	40시간	맞벌이	6세(초등), 4세, /2세(어린이집)	400 ~499만원
4차	8.19	8	42세	상용근로자 (전문직)	40시간	맞벌이	10세, 8세(초등), /3세(어린이집)	400 ~499만원
5차	9.3	9	41세	상용근로자 (전문직)	40시간	맞벌이	10세(초등), 5세	500 ~599만원
6차	9.4	10	35세	상용근로자 (사무직)	52시간	맞벌이	3세, 1세(어린이집)	500 ~599만원
7차	9.6	11	38세	상용근로자 (전문직)	40시간	맞벌이	4세(어린이집), 0세(가정내)	700만원 이상
8차	9.7	12	36세	상용근로자 (사무직)	40시간	-	1세(어린이집)	350 ~399만원
9차	9.9	13	31세	무급가족 종사자	60시간	맞벌이	4세, 0세(어린이집)	250 ~299만원
		14	38세	고용주 (전문직)	40시간	맞벌이	7세(초등) /4세(어린이집)	600만원 이상

면담 차수	일자	면담 대상	연령 (만)	근로 특성	주당 근로시간	가구 특성	자녀특성 (기관이용)	월평균 가구소득
10차	9.10	15	33세	기타 (프리랜서, 시간제)	22시간	-	3세, 2세(어린이집)	300 ~349만원
		16	42세	전업주부	-	장애아	12세, 10세(초등)	350 ~399만원
11차	9.10	17	35세	상용근로자 (전문직)	40시간	맞벌이	7세, 4세	600만원 이상
12차	9.13	18	40세	기타	20시간	맞벌이	7세(초등), 3세(어린이집)	700만원 이상
13차	9.17	19	만33세	교대제 근무	-	홀벌이	4세, 2세(어린이집)	-

□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아동돌봄의 공백 및 틈새보육 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동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지원요구 등이다. 세부항목은 이하 <표 I-3-6>과 같다.

<표 I-3-6> 심층면담 조사 문항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아동 및 가구특성/ 양육실태 전반	1) 자녀 및 가구 특성 • 자녀 특성: 총 자녀수, 자녀연령, 장애아 여부, 기관이용 현황 등 • 가구 특성: 다양한 가족 여부(한부모 등), 취업 및 근로특성 등 2) 영유아 자녀의 양육 실태 • 주양육자,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사유, 긴급보육 시 지원인력 여부 3) 자녀양육 시 어려움 • 자녀특성, 가구특성, 부모의 근로특성별 어려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와 자녀돌봄의 공백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동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로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기관병행 이용 여부와 해당 사유,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움 정도 및 개선요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신청 방법 등) 2) 자녀돌봄 공백 상황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미이용 가구의 돌봄 공백 및 해당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대응 현황, 지원요구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및 해당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요구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동의 정도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지원 및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관련 정보제공 선호 방식 4) 이외 자녀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사항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 취업 여부, 취업 상태, 주당 평균 근로시간 • 가구특성: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족 등 • 자녀특성: 자녀수, 자녀연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등 •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

주: 상세문항 부록 참조

5) 현장전문가 조사

현장전문가 조사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가) 조사 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원장)

□ 조사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의 서비스 연계 현황 등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절차 등 관련 적용사항 등 그 실태 및 애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였다.

□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전국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며, 설립유형과 기관규모, 그리고 소재지의 지역규모를 배분하여 각각 8개원씩 총 16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때 특히 이용가구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반 또는 시간연장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반수를 파악하였다. 해당 기관의 특성은 이하 <표 I-3-7>과 같다.

〈표 I-3-7〉 현장전문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번호	기관유형	기관규모 (현원/학급수)	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 /방과후과정반 개수	지역규모	소재지
어린이집 1	가정	20명/5개	1개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 2	민간	71명/5개	2개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 3	민간	28명/5개	1개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 4	민간	143명/11개	2개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 5	민간	70명/14개	2개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 6	국공립	74명/7개	4개(1개)	농촌	경기
어린이집 7	민간	69명/9개	1개	대도시	부산
어린이집 8	민간	34명/5개	2개(1개)	중소도시	전남
유치원 1	사립사인	154명/8개	5개	대도시	서울
유치원 2	사립사인	75명/3개	3개	대도시	서울
유치원 3	사립사인	120명/6개	4개	대도시	서울
유치원 4	사립사인	250명/10개	10개	대도시	서울
유치원 5	공립단설	101명/8개	3개	대도시	서울
유치원 6	사립사인	130명/6개	6개	중소도시	경기
유치원 7	사립사인	90명/4개	3개	중소도시	경기
유치원 8	공립단설	122명/7개	6개	대도시	대전

□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 공백 상황 및 대응조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 등이다. 세부 항목은 이하 〈표 I-3-8〉과 같다.

〈표 I-3-8〉 현장전문가 조사 문항 1: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조사 영역	세부 항목
기관 운영시간과 원아의 돌봄 공백 관련 특성	1)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과 돌봄 공백 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하원아동의 평균 시각 • 기관 운영시간 연중변화 유무 • 기관 운영시간 변동시기 및 사유 2) 아동돌봄 공백 시 고려사항 및 대응 관련 지역 특성/기관 운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역(예: 농산어촌지역 등)에 따른 고려사항 유무 및 대응조치 • 운영 여건(예: 인력, 원아수)에 따른 고려사항 유무 및 대응조치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원아의 돌봄 공백 상황 및 대응 조치	1) 휴원 등 돌봄 공백 상황과 관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2019~2021년) 휴원명령 혹은 임시휴원 여부 • 휴원명령/임시휴원의 시기 및 해당 사유 • 원아가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시 구체적 사유 • 원아의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 원아가 미등원 혹은 이른 하원 시 돌봄 공백에 따른 기관조치 2) 휴원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원 시 원아 부모와의 갈등 여부 • 원아 부모와의 갈등 사유 및 해결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제공시 어려움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의 대응 조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와 서비스 연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시기 및 인지 경로 •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안내 여부, 안내사항 및 구체적 상황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경험(서비스 연계 원아 및 상황, 서비스 연계 방식)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연계 시 애로사항 •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	1)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 기관을 이용 중인 원아의 돌봄 공백 상황 • 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원아를 보조함) 필요성 인식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아동/가구의 특성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일과 또는 교육·보육활동 상황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우려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시 원아의 돌봄 및 기관 운영의 기대효과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설립유형 • 기관규모: 원아수(현원 기준), 학급 수 • 어린이집 연장보육/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여부 및 해당 학급수 • 소재지 및 규모: 도시 및 농산어촌 여부

주: 상세문항 부록 참조

나) 조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 조사 목적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과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사항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였다.

□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이며, 소재지 및 지역 규모를 배분하여 총 8개소를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의 특성은 이하 <표 I-3-9>와 같다.

<표 I-3-9> 현장전문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번호	연령(만)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경력	지역특성	소재지	지역
1	27세	2년 8개월	도시	인천	-
2	42세	8년 1개월	도농지역	충북	청주시
3	52세	9년	도농지역	충북	제천시
4	32세	5년 8개월	도시	대구	-
5	30세	4년	도시	울산	-
6	52세	10년 6개월	도시	광주	-
7	35세	10년 6개월	도시	전북	전주시
8	45세	7년 4개월	도시	전남	광양시

□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 긴급돌봄의 세부내용 및 개선요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 등이다. 세부항목은 이하 <표 I-3-10>과 같다.

<표 I-3-10> 현장전문가 조사 문항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과 애로사항	1) 어린이집/유치원과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기관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연계 경험 •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연계하는 구체적 사유 • 소재지역/기관 여건 특성 • 어린이집/유치원 연계경험 없는 사유 2) 어린이집/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의 방식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시 고려할 소재지역/기관 여건 특성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소재지역/기관 여건 특성 • 어린이집/유치원(원장 및 교사)과 직접소통 연계경험 • 기관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 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조사 영역	세부 항목
긴급돌봄 지원 방식과 개선요구	1) 긴급돌봄 지원의 현황과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긴급돌봄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상황 변화 2) 긴급돌봄 지원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상 변화 •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시 힘든 점/개선사항 • 코로나19 긴급돌봄 지원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연계요청 경험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 일시연계 서비스(야간, 주말 등) 이용시 개선사항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개선요구	1) 어린이집/유치원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필요상황 •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특성 •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일과 운영이나 보육활동 상황 2) 어린이집/유치원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연계 시 우려사항 및 개선요구 • 아이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를 위한 각 항목별 개선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신청 및 접수방법 - 서비스 이용비용 정산 및 지급 방식 - 아동인계 관련 사항 - 안전사고 관리 - 기타 •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 시 기대효과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연령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경력 • 소재지 • 지역(소재지)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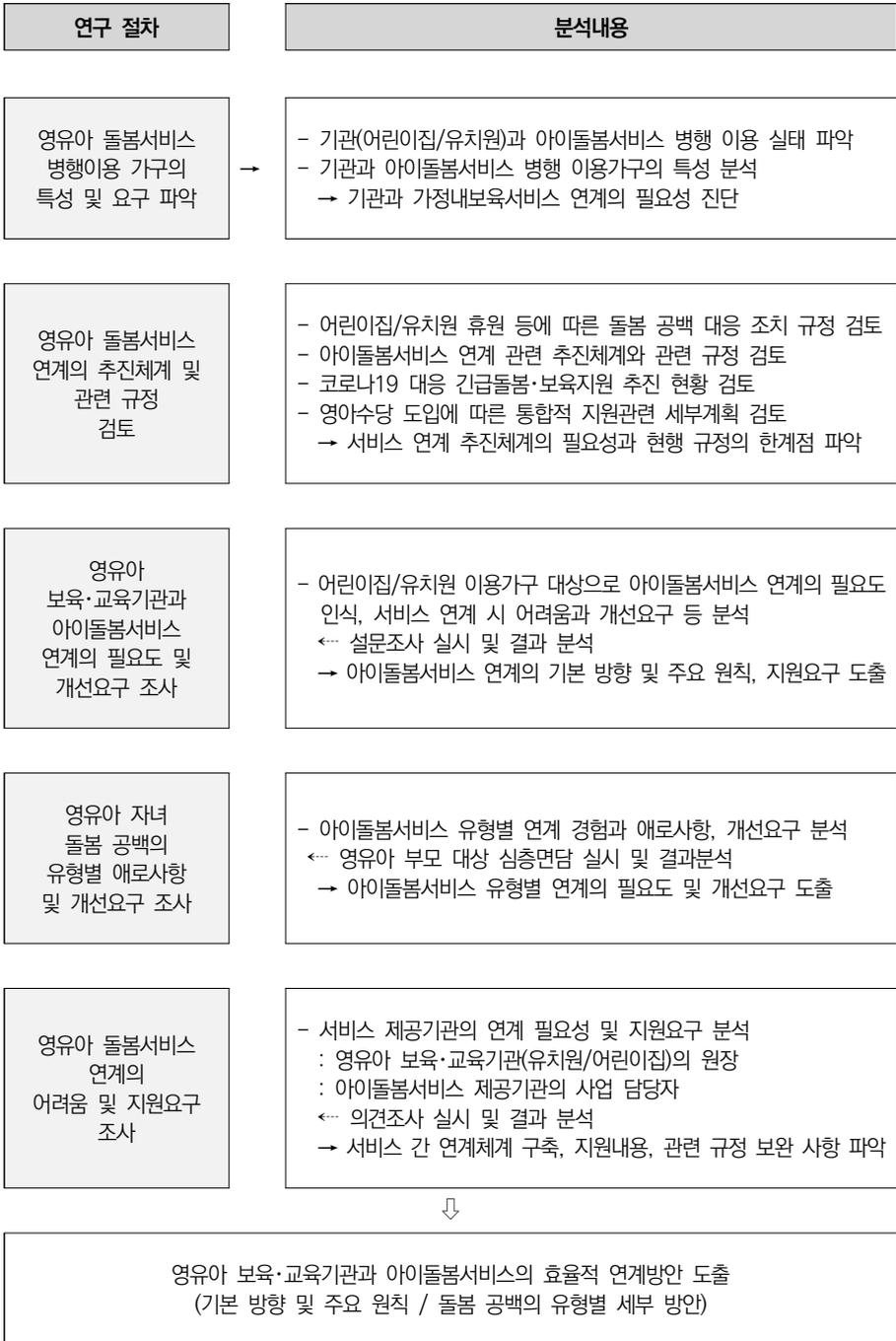
6) 간담회 및 자문회의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어린이집 원장 등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돌봄 공백의 유형별 세부 방안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나. 연구절차 및 분석내용

이상의 연구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이하 [그림 I-3-1]과 같다.

[그림 I-3-1] 연구절차 및 분석내용



II

연구의 배경

- 0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 02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와 이용 양상
- 03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아동 및 가구의 특성
- 04 유사 분야의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 검토
- 05 소결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보육 수요 충족 여부, 맞벌이 가구의 긴급보육 대응 및 요구,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의 동기 및 주요 양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자녀돌봄의 공백 실태와 긴급보육에의 요구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가. 돌봄 공백의 시간대와 보육 수요 충족 여부

영유아 가구의 돌봄 공백과 보육 수요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연구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 3년마다 0~5세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기 이외에는 어린이집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와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시간과 희망이용 시간 등을 조사하여 영유아 가구의 돌봄 공백 시간대와 보육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기관을 포함한 영유아의 평균 기관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조사되었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b: 21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또는 7시간 42분, 미취업모는 6시간 48분으로 약 1시간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12분 정도로 나타난 것에 비해 영유아 가구에서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 이용시간 간의 1시간 이상의 차이가 있어 등원하기 전과 하원

이후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서비스 시작 시각에 만족하는 비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료 시각에 만족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84.7%, 유치원 80.5%로 시작 시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b: 296, 431).

기관 이용시간과 희망 이용시간 간의 차이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외의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수요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6%는 개인양육 지원과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b: 519). 기관과 개인양육지원을 병행하는 가구의 이용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혈연일 경우 출근 후~등원 전 1.5%, 하원 후~퇴근전 27.2%, 출근 후~등원 전과 하원 후~퇴근 전 23.5%(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b: 529)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의 출근 이후와 퇴근 이전의 시간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이용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돌봄 공백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을 30분 단위로 제시하여 시간대별로 선호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7시 30분 까지, 7시 31분~8시를 선호하는 이유로 85% 이상이 부모의 출퇴근시각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김은설·박창현·황선영·윤지연, 2019: 87). 하원시각의 경우에는 18시 01분~19시와 19시 01분~19시 30분 시간대에서 85% 이상 부모 출·퇴근시각을 해당 사유로서 응답하였다(김은설·박창현·황선영 외, 2019: 88).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선호하는 등·하원 시간대로 부모의 출퇴근시각을 고려하여 부모들은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까지 이용하기를 원하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시간은 이보다 짧게 나타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영유아 가구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과 부모의 근로 시간, 희망하는 기관 이용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돌봄 공백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류연규·김송이·김민정(2019)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과 부모 출·퇴근시각의 차이를 측정하고,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류연규 외, 2019: 58). 해당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발생하는 가구의 비중은 등원 47.5%, 하원 60.7%로 높은 편이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평균 돌봄 공백 시간은 등원 1시간 6분, 하원 2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류연규 외, 2019: 85).

나. 긴급보육 수요 및 대응

1) 맞벌이 가구의 긴급보육 수요 및 요구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지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등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초등 이하 자녀의 육아지원에 명시하고 있다(조숙인·김나영·장미나·박은영, 2020: 13).

유해미·배윤진·김문정(2014)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일·가정 양립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주된 원인은 미취학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양육지원정책이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함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를 함께 조사하여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이후 정책의 내실화와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용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중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점(5점 만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유해미 외, 2014: 99) 맞벌이 가구에서 체감하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긴급보육 대응이 미흡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대상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양육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고 긴급보육에 집중하여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유해미·이민희(2017)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가 질병, 사고 등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는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대상 맞벌이 가구의 78.9%가 긴급보육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긴급보육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녀가 아픈 경우(64.8%), 야간 업무가 생기는 경우(49.6%) 순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7).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휴가를 얻어 직접 돌봄을 원하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42.7%가 혈연인력에게 긴급보육을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긴급보육 수요 및 대응 과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확대하고 유연근로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개별 가정에서의 돌봄공백을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 2020: 16).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2020년 시점의 가정 내 돌봄과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긴급돌봄을 진단하고 이후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윤경 외(2020)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3월부터 7월까지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돌봄과 보육·교육기관에서의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예측가능한 단계별 대응방안에 보완점과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염병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침 시행 및 국외사례 등을 고찰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정내 돌봄과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최윤경 외, 2020: 17), 연구를 바탕으로 집단감염 상황에서의 육아 분야의 대응체계 보완을 위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육아 분야 'Blended Care System'의 도입과 지역사회의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을 제안하였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육아 분야 'Blended Care System'은 감염위험

이 장기화 및 일상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에서 ‘일상적인 육아지원체계’와 ‘재난 상황의 긴급 육아지원체계’로 재구조화하여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보다 다변화하는 긴급돌봄 체계를 제안하였다(최윤경 외, 2020: 95). 지역사회의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은 감염 또는 재난 상황에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육아지원 인프라와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간 연계와 협업을 강조하는 체계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가정내 양육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최윤경 외, 2020)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등저학년 이하를 양육하는 가구의 긴급보육의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을 조사한 결과, 1+2+3순위 응답 기준으로 47.1%가 조부모 등 친인척 개별 돌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8.6%로 조사되었다(최효미 외, 2020: 194). 맞벌이 가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였던 자녀돌봄 방식으로는 26.4%가 긴급돌봄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기관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 사용 19.4%, 재택근로 사용 15.6%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연월차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전체 응답의 50% 이상이 부모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효미 외: 2020: 245).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긴급돌봄 부문에서 김영란(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내 돌봄과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정책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내 돌봄과 관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영유아 46.9%, 초등학생 15%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이유로는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불안해서’가 영유아 56%, 초등학생 41.8%로 조사되었다(김영란, 2020: 1).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나(75.1%) 성인 없이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는 미취학 아동 6.2%, 초등학생 자녀 38.3%로 높게 나타나므로 성평

등한 돌봄문화 조성, 안전한 긴급돌봄체계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김영란, 2020).

2.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와 이용 양상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등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와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가. OECD 국가의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의 지원대상 및 수준을 검토하고, 일본의 환아에 대한 보육 지원현황을 살펴본 바로는 이하와 같다.

1)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의 특성 및 지원대상

미취학 아동의 보육과 조기교육서비스는 크게 세 범주, 즉 센터 기반의 보육시설, 교육기관, 그리고 가정내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OECD, 2021a: 1). 각 서비스별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우선 센터 기반의 보육시설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정부가 인가한 시설이 포함한다. 전일제나 시간제로 운영되며 보통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탁아소, 놀이학교, 부모 운영 그룹 등으로 불리며, 주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만 4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가정내보육(FDC: Family Day Care)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보육 제공자의 집이나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집에서 영아를 최대 3~4명 까지 돌본다.

가정내보육은 대개 유치원 입학 이전 시기인 만 3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I-2-1 참조). 이들 서비스는 탁아소 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자녀가 어려서 부모가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다(OECD, 2021a: 1).

유아교육 기관은 대부분 국가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초등학교 (의무 교육) 입학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전반적으로는 전일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표 II-2-1〉 OECD 국가의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유형(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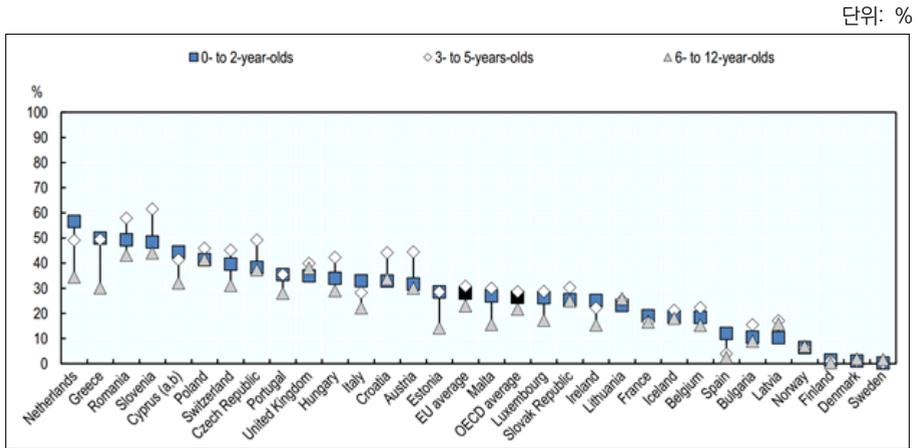
구분	센터 기반 및 또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의무 초등교육	
	0	1	2	3	4	5	6	7
공공								
민간								
아동 연령	0	1	2	3	4	5	6	7
덴마크	Dagpleje(가정내보육), Vuggestuer(탁아소) 전일제(32시간 이상)			Bornehaver(유치원), 전일제 (32시간 이상)			Borne-haver (유치원, 32시간 이상)	의무 교육
	Adlersintegreret(연령통합된 시설) 전일제(32시간 이상)							
핀란드	Perhepaivahoito(가정내보육), Paivakoti(지역구 조기발달센터) 전일제(50시간 미만)				Esiopetus 유치원		의무 교육	
프랑스	Crèche(센터기반 탁아소), Assistant maternelles (가정내보육), FT(아동의 가정에서 보육 제공, 민간)			Ecole maternelle(유치원)			의무교육	
일본	유아원 (민간: 대략 3/5) 전일제				유치원(민간: 2/3, 공공 1/3), 반일제(20시간), 방과후 케어 제공		의무교육	
	유아원 (공공: 대략 2/5) 전일제							
	가정내보육							
스웨덴	Forskola (유치원) 전일제, 30시간, 특히 농어촌 지역: Familiedaghem(가정내보육)				Forskoleklass (유치원, PT)		의무 교육	
영국	유아원, 아동보육교사, 놀이그룹		놀이그룹, 유아원, PT	초등학교 내 유치반 (Reception class)		의무교육		
미국	어린이집, 가정내보육			유아원, 민간 유치원, Head Start (주립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적 프로그램			의무교육	

자료: OECD(2021a).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PF4-1-Typology-childcare-early-education-services.pdf>, pp. 2-4.(인출일자: 2021. 6. 2)

이처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시간제와 전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들 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가정내보육서비스 연계의 필요성도 달라질 것으로 짐작된다. 구체적으로 영아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전일제 노동시간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원 이후의 추가적인 돌봄서비스가 요구되며, 미취학 아동의 취학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유아의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운영되는가의 문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연계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연계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의 돌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비공식돌봄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들이 무급으로 제공한 돌봄’으로 정의된다(OECD, 2021b: 1).

[그림 II-2-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비공식돌봄 이용률(2019)



자료: OECD(2021b).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PF3-3-Infomal-childcare-harrangements.pdf>, p. 2.(인출일자: 2021. 6. 2)

[그림 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공식돌봄 이용아동의 비율은 OECD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만 0~2세아의 비공식돌봄 이용률은 가장 높게는 57%(네덜란드)에서 가장 낮게는 2% 이하(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수준이며, 만 3~5세아는 슬로베니아 62%, 스웨덴 0.3%로 나타낸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북유럽국가에서

는 영유아 전반에서 해당 이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유아교육·보육(ECEC)'의 통합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부모가 원한다면 어린 자녀인 경우에도 공식 부문의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또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공식돌봄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OECD, 2021b: 2).

이 같은 비공식돌봄 이용률은 사회경제적 지위, 모의 취업률과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식 부문의 보육서비스 접근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돌봄서비스 연계의 기본 원칙을 수립할 시에 가구특성별 욕구 수준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일본의 자택방문형 보육사업과 환아보육지원

가)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의 운영기준

일본에서는 부모 선택권 보장의 일환으로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3세 미만의 영아로서, 이하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며 시청춘장이 인정하는 가구에 지원 된다(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202000-Roudoukijunkyoku-Kantokuka/0000075920.pdf>, 2021. 12. 10. 인출). 즉, ① 장애, 질병 등의 정도를 감안하여 집단보육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소 폐쇄 등으로 보육소 등에 의한 보육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③ 입소 권장 등을 해도 보육의 이용이 곤란하고 시청춘에 의한 입소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④ 한부모가정의 보호자가 야간·심야 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보육의 필요 정도 및 가정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⑤ 낙도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자택방문형 보육사업 이외의 지역형 보육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들 지원대상에 의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집단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안전한 돌봄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일본 도쿄도 주오구, <https://www.city.chuo.lg.jp/kosodate/hoiku/tiikigata/kyotakuhoumonhoiku.files/H30kyotakuhomon.pdf>, 2021. 12. 10. 인출).

해당 서비스는 보육사 1인이 1명의 아동을 보육하며, 가정내 보육사의 자격요건은 '필요한 연수를 수료하고, 보육사 또는 보육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지식 및 경험을 지닌 시정촌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규정된다.

나) 환아에 대한 보육지원

일본에서는 보육소에 다니는 자녀가 아픈 경우 맞벌이 가구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기 힘든 경우의 보육지원은 크게 '시설형'과 '방문형'으로 구분된다(위키피아 _'病児保育', <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4%BF%9D%E8%82%B2>, 2021. 11. 25. 인출). 보다 구체적으로 환아에 대한 보육지원은 그 유형으로 보아 크게 '환아 대응형·병후 아동 대응형 시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 대응형', '비시설형(방문형)'으로 구분된다(일본 내각부, https://www.cao.go.jp/bunken-suishin/kaigi/doc/teianbukai107shiryou2_2.pdf, 2021. 12. 10. 인출). '환아 대응형·병후 아동 대응형'은 지역의 환아 또는 병후 아동에 대해 병원·보육소 등에 부설된 전용 공간에서 간호사 등이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 대응형'은 보육 중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비시설형(방문형)'은 환아 또는 병후 아동을 간호사 등³⁾이 보호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방문형 사업에서는 환아 또는 병후 아동을 간호사 등이 보호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일본 복지의료종합정보사이트, [https://www.wam.go.jp/wamappl/bb16GS70.nsf/0/cfada6e8f92cc2824925783700322bed/\\$FILE/20110214_2_5shiryou2.pdf](https://www.wam.go.jp/wamappl/bb16GS70.nsf/0/cfada6e8f92cc2824925783700322bed/$FILE/20110214_2_5shiryou2.pdf), 2021. 12. 10. 인출). 이때 간호사 또는 일정 연수를 받은 보육사가 아동 1명을 보육하며, 보육일지 작성과 기타 의료와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서비스 이용절차와 이용요금 등은 각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며, 지원 수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를테면 니시노미야시의 경우는 베이비시터 파견

3) 간호사 또는 일정 연수를 받은 보육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일정 연수를 받은 보육사 1명에 대해 아동 1명 정도(일본 내각부, <https://www.cao.go.jp/bunken-suishin/kaigi/doc/teianbukai107shiryou22.pdf> (인출일자: 2021. 12. 10))

에 의한 환아, 병후 아동 보육 서비스 이용요금(근무처 등의 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받음 금액을 제외함)의 반액을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에 관련 1회 발병에 7일까지 아동 1인당 연간 4만 엔까지 지원된다(일본 니시노미야 시,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 보육지원 제도', <https://www.nishi.or.jp/kosodate/kosodate/azuketaitoki/byoji-josei.html>, 2021. 12. 9. 인출).

나. 가정내보육서비스 병행이용 동기

기관 이용가구의 가정내보육서비스 병행이용 동기는 기관에서 장시간 돌봄이 가능하더라도 자녀의 장시간 기관이용에 대한 우려,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돌봄 공백, 1:1 맞춤형 돌봄에 대한 만족, 가정내보육의 유용성 등으로 지목된다. 즉, 가구별로 욕구는 다양하나 기관보육의 보완하는 가정내보육서비스의 장점을 취하고, 부모의 근로 특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정내보육서비스 병행이용 동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반일제 이상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비율은 73.4%이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4).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병행 이용 비율이 높았던 가구의 특성은 자녀가 유아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간이 긴 경우, 민간도우미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이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64). 서비스 병행이용 기관은 어린이집이 6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유치원 28.8%, 기타 반일제 학원 1.9%로 나타났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65).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유치원 병행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막내가 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간이 긴 경우, 소득기준유형 '라'인 경우,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65).

동 조사에서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이유는 '기관 하원 이후 퇴근할 때까지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48.4%, '출근 이후 기관 등원 시간까지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31.5%로 부모의 취업으로 출·퇴근 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4).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구에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 ‘기관 또는 돌봄지원 인력’을 병행이용하는 비율은 영아가구의 27.7%, 유아가구의 19.6%이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기관 및 인력을 병행 이용하는 영아가구는 어린이집 53.5% 였으며, 나머지는 조부모/친인척(42.4%), 민간 육아도우미(2.3%), 기타 반일제기관(2.3%) 등을 이용하고 있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 기관을 병행이용하는 유아가구는 어린이집 50.5%, 유치원 19.7% 였으며, 나머지는 조부모/친인척(22.3%), 기타(3.2%), 기타 반일제 기관(2.1%), 민간 육아도우미(2.1%)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영아가구가 기관⁴⁾을 병행이용 동기는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 82.6%로 가장 높았고, ‘등원서비스’ 39.1%, ‘늦게 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안쓰럽거나 눈치 보임’ 19.6%, ‘아동발달이 우려됨’ 7.6%, ‘아이가 장시간 기관이용 원치 않음’ 5.4% 순으로 나타났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아가구가 기관⁵⁾을 병행이용 하는 이유는 ‘하원 후 돌봐줄 사람 필요’ 74.2%, ‘등원서비스’ 42.4%,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안쓰럽거나 눈치 보임’ 11.4%, ‘아이가 장시간 기관이용 원치 않음’ 7.6%, ‘아동발달 우려됨’ 5.3% 순으로 나타났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4).

같은 연구에서 병행이용 가구에겐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원하는 시간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영아가구는 7.28%가, 유아가구는 78.6%가 계속해서 병행이용할 의향이라고 응답하였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5). 서비스 병행이용을 지속하려는 이유⁶⁾는 ‘기관에 오랫동안 아이가 남아있길 원치 않음(늦은 하원은 아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음)’, ‘출·퇴근시간 때문’이 과반 가량이며, 그 다음으로 ‘기관 보다 1:1 맞춤형으로 돌보아서 좋음’, ‘가정보육을 원함(안정적으로 편안하게

4)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6) 해당 결과는 영유아로 구분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전체에 대한 응답임.

집에서 보낼 수 있음’ 순이었다(유해미·권미경·김근진 외, 2019a: 196).

이와 더불어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병행이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가사서비스 수요가 추가로 있는 경우, 입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자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이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미취학 가구 중에서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면서 아이돌봄비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모두 이용하는 병행이용 가구는 전체의 1.9%를 차지하였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109). 이들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외 민간 육아도우미도 병행하여 이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로는 이용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31.3%, ‘집안 청소 등 가사 일을 편하게 부탁할 수 있어서’ 23.2%, ‘입주 서비스가 필요해서’ 13.4%, ‘돌봐야 할 자녀가 여러 명 여서’ 9.8% 순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109).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이용하는 이유는 주로 기관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이 부합하지 않거나 가구특성상 장시간 보육을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2018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로 기관 하원 시 혹은 등원 시 돌봄 공백 발생을 꼽은 경우는 각각 7.9%, 5.3%로 나타났다(김아름 외, 2018: 135). 해당 조사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3.0%였으며, 기관 병행이용 가구는 37.6%(어린이집 31.7%, 유치원 5.9%)로 나타났다. 영아가구 중에서 어린이집 병행이용 가구는 39.2%였으며, 유아가구 중에서 기관 병행이용 가구는 45.0%(어린이집 30.2%, 유치원 14.8%)로 나타났다(김아름 외, 2018: 167). 특히, 맞벌이 가구의 기관 병행이용 비율이 39.0%(어린이집 32.6%, 유치원 6.4%)로 홑벌이 가구의 26.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이는 기관 운영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김아름 외, 2018: 167).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관 운영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서가 49.8%, 기관에 아이를 오래두고 싶지 않아서 34.1%, 아이가 일찍 하원 하고 싶어해서 12.2%, 사교육이 필요해서 3.9% 순이었다(김아름 외, 2018: 169). 또한 기관에서 보육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나 자녀가 어리거나 장시간 보육을 기피하는 경우는 기관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

용할 수 있다고 해도 서비스 병행이용을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김아름 외, 2018: 170).

다. 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의 주요 양상: 서비스 이용시간과 비용

기관 병행이용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대체로 기관 하원 이후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혹은 부모의 출근 후 기관 등원 전까지의 돌봄 공백 시간에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8시간이며, 3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장시간 이용은 적은 편이고(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87), 월평균 이용비용은 79.1만원이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114). 병행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은 비용 부담과 서비스 연계 장기대기 등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병행이용의 이용시간 및 비용 등 주요 양상의 세부내용은 이하와 같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97).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취학 반일제이상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 가구의 평일(주중) 서비스 이용 시작 시각은 16시~18시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오전 8시 이전 29.4%, 12시~16시 이전 9.8%, 8시~12시 이전 9.1% 순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81). 평일(주중)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각은 18시~20시 이전이 30.3%로 가장 높으며, 10시 이전 25.5%, 20시~22시 이전 25.3% 순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82). 즉, 병행이용 가구는 돌봄 공백 시간인 기관 하원 이후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혹은 부모의 출근 후 기관 등원 전까지 아이돌보미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조사에서 미취학 반일제이상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8시간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3시간 미만이 36.8%로 가장 많으며,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23.6%,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23.1% 순으로 나타났고, 6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은 10.7%, 10시간 이상은 7.5%로 장시간 이용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87).

또한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비용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연계까지 오래 걸림’ 19.4%, ‘도우미를 사전에 선택할 수 없음’ 9.1%, ‘제도를 잘 몰라서’ 7.4%,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7.4%,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되어서’ 7.0%,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6.7%,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어려워서’ 6.5% 순이었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97).

이러한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월비용은 평균 79.1만원이며,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18.8%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5.2%,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15.2%, 200만원 이상 11.6% 순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a: 114).

3.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아동 및 가구의 특성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병행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4,229가구의 조사결과를 재분석하였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특성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병행이용 하는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병행이용 하는 가구 특성은 다음 <표 II-3-1>과 같다. 전체 4,229 가구의 70.6%는 어린이집, 29.4%는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90.7%는 맞벌이 가구로 91.5%의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26.9%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은 400~600만원 미만이 25.6%, 800만원 이상이 25.3% 였고, 소득기준 유형별로는 이용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라’형이 4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3-1〉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일반적 특성(2018)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가족유형		아이돌봄 이용기간	
조부모 비동거	94.0 (3,974)	1년 미만	36.0 (1,522)
조부모 동거	5.4 (230)	1년 이상 3년 미만	31.4 (1,328)
기타	0.6 (25)	3년 이상	20.4 (861)
만12세이하 자녀 수		모름/무응답	12.3 (518)
1명	37.6 (1,591)	민간도우미 경험여부	
2명	50.2 (2,122)	이용경험 있음(현재/과거)	26.9 (1,138)
3명 이상	12.2 (516)	이용경험 없음	73.1 (3,091)
맞벌이 여부		소득기준유형	
외벌이	5.1 (217)	가형	25.6 (1,083)
맞벌이	90.7 (3,836)	나형	13.6 (576)
부부 일하지 않음	4.2 (176)	다형	13.8 (584)
이용자녀(막내 기준)		라형	43.4 (1,836)
영아	41.9 (1,770)	모르겠음	3.6 (150)
유아	58.2 (2,459)	가구소득	
아이돌봄 정기적이용여부		200만원 미만	8.8 (372)
정기적으로 이용	91.5 (3,869)	200~400만원 미만	19.8 (839)
비정기적으로 이용	8.5 (360)	400~600만원 미만	25.6 (1,084)
병행이용 서비스		600~800만원 미만	19.8 (837)
어린이집	70.6 (2,987)	800만원 이상	25.3 (1,071)
유치원	29.4 (1,242)	모름/무응답	0.6 (26)
계(수)		100.0(4,229)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병행이용 가구의 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II-3-2 참조).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은 모(母) 81.2%, 부(父) 75.1%,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는 비율은 각각 16.4%와 24.0%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상용근로자 비율이 각각 77.6%, 72.8%로 높았다.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머니 27시간, 아버지 31.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근로 특성(2018)

단위: %(명), 시간

어머니	비율(수)	아버지	비율(수)
취업여부		취업여부	
취업 중	88.6 (3,747)	취업 중	88.1 (3,724)
학업 중	2.3 (98)	학업 중	1.4 (57)
미취업	9.1 (384)	미취업	10.6 (448)
취업형태		취업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81.2 (3,121)	규칙적으로 출퇴근	75.1 (2,838)
불규칙하게 출퇴근	16.4 (631)	불규칙하게 출퇴근	24.0 (906)
재택근무	1.3 (50)	재택근무	0.3 (12)
휴직중	1.1 (43)	휴직중	0.7 (25)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7.6 (2,907)	상용근로자	72.8 (2,712)
임시근로자	5.0 (186)	임시근로자	2.3 (85)
일용근로자	2.5 (92)	일용근로자	3.1 (11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7.4 (278)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11.6 (430)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5.3 (200)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7.8 (289)
모름	2.2 (84)	모름	2.5 (94)
근로시간		근로시간	
평균	27.0	평균	31.5
표준편차	18.7	표준편차	22.2
계(수)		100.0(4,229)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서비스 병행이용 실태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하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관을 병행이용 가구의 48.6%가 ‘출근 이후 기관의 등원시각 까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31.5%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하원 이후부터 퇴근시각 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가 기관의 등·하원시각과 출·퇴근시각의 간극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병행이용 기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병행이용 기관유형별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출·퇴근시간과 등·하원시간의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출근 부터 등원 시각 사이에 33.3%, 하원시간부터 퇴근 시각 사이에 51.1%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응답한 30.8%, 47.6% 보다 약 3%p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유치원 운영시간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표 II-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동기(2018)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수)
전체	31.5	48.6	3.8	2.0	14.0	100.0 (4,229)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30.8	47.6	4.3	2.1	15.1	100.0 (2,987)
유치원	33.3	51.1	2.6	1.7	11.4	100.0 (1,242)
χ^2 (df)			20.0(4)***			
맞벌이 여부						
외벌이	22.1	35.9	3.2	7.8	30.9	100.0 (217)
맞벌이	32.1	50.0	3.8	1.4	12.8	100.0 (3,836)
부부 일하지 않음	30.1	35.8	4.0	9.1	21.0	100.0 (176)
χ^2 (df)			164.3(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5	49.2	1.1	3.8	24.5	100.0 (372)
200~400만원 미만	21.0	51.9	3.0	4.4	19.8	100.0 (839)
400~600만원 미만	33.3	48.5	4.1	1.9	12.3	100.0 (1,084)
600~800만원 미만	38.8	47.2	4.1	0.5	9.4	100.0 (837)
800만원 이상	35.6	47.2	5.0	0.9	11.4	100.0 (1,071)
모름/무응답	38.5	50.0	0.0	0.0	11.5	100.0 (26)
χ^2 (df)			194.5(20)***			

주: ①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하원 이후 퇴근할 때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 ② 출근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등원 시간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 ③ 자녀가 종일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④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을 이용해도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서 ⑤ 기타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91.5%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이용 여부(2018)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1.5	8.5	100.0 (4,229)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90.9	9.1	100.0 (2,987)
유치원	93.0	7.0	100.0 (1,242)
χ² (df)	5.1(1)*		
맞벌이 여부			
외벌이	89.4	10.6	100.0 (217)
맞벌이	91.8	8.2	100.0 (3,836)
부부 일하지 않음	87.5	12.5	100.0 (176)
χ² (df)	5.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2.5	17.5	100.0 (372)
200~400만원 미만	87.6	12.4	100.0 (839)
400~600만원 미만	92.5	7.5	100.0 (1,084)
600~800만원 미만	94.9	5.1	100.0 (837)
800만원 이상	93.8	6.2	100.0 (1,071)
모름/무응답	96.2	3.9	100.0 (26)
χ² (df)	76.7(5)***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01$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4.5회이며 5회 이상 7회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68.7%, 3회 이상 5회 미만 14.3%로 조사되었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 비해 유치원 이용가구,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당 이용 횟수(2018)

단위: %(명), 회

구분	3회 미만	3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7회 미만	7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2	14.3	68.7	3.7	100.0 (3,798)	4.5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14.6	13.8	68.1	3.5	100.0 (2,667)	4.5
유치원	10.0	15.4	70.4	4.2	100.0 (1,131)	4.6
t						8.62**
맞벌이 여부						
외벌이	20.5	12.1	61.6	5.8	100.0 (190)	4.4
맞벌이	12.4	14.3	69.8	3.6	100.0 (3,458)	4.6
부부 일하지 않음	24.0	17.3	54.7	4.0	100.0 (150)	4.2
F						4.6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7	15.1	59.5	3.6	100.0 (304)	4.2
200~400만원 미만	22.8	16.0	57.1	4.0	100.0 (723)	4.2
400~600만원 미만	12.2	14.8	70.7	2.3	100.0 (982)	4.5
600~800만원 미만	8.1	14.1	73.7	4.1	100.0 (779)	4.7
800만원 이상	8.7	12.4	74.4	4.6	100.0 (987)	4.8
모름/무응답	13.0	17.4	65.2	4.4	100.0 (23)	4.3
F						15.5***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14시간 42분으로 조사되었다(표 II-3-6 참조). 전체 응답자의 29.3%가 10시간~1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20~30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 주당 총 평균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 이용가구가 14시간 48분으로 유치원 이용가구 14시간 30분 보다 약간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이용시간(2018)

단위: %(명),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10시간 미만	10시간~ 15시간 미만	15시간~ 20시간 미만	20시간~ 30시간 미만	30 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7	13.0	29.3	16.8	17.7	9.6	100.0 (3,798)	14.72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13.3	13.1	28.5	17.9	17.9	9.2	100.0 (2,667)	14.80
유치원	14.6	12.6	31.1	14.2	17.1	10.4	100.0 (1,131)	14.52
t								0.49
맞벌이 여부								
외벌이	18.4	13.2	21.6	12.6	18.4	15.8	100.0 (190)	16.56
맞벌이	13.1	12.7	30.0	17.1	17.7	9.4	100.0 (3,458)	14.71
부부 일하지 않음	22.0	18.7	22.7	14.7	16.0	6.0	100.0 (150)	12.49
F								5.6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5.1	13.2	29.9	13.8	15.8	12.2	100.0 (304)	15.10
200~400만원 미만	11.9	16.3	25.6	17.7	17.3	11.2	100.0 (723)	15.48
400~600만원 미만	14.4	12.9	32.1	17.0	15.9	7.7	100.0 (982)	13.84
600~800만원 미만	14.4	10.7	32.9	16.6	17.8	7.7	100.0 (779)	14.12
800만원 이상	13.2	12.0	26.4	17.3	20.1	11.0	100.0 (987)	15.45
모름/무응답	21.7	26.1	21.7	4.4	21.7	4.4	100.0 (23)	11.78
F								3.63**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표 II-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1회 이용시간(2018)

단위: %(명), 시간

구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7.2	24.1	23.1	10.8	4.8	100.0 (4,181)	3.8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35.1	25.0	22.9	11.8	5.3	100.0 (2,954)	3.8
유치원	42.2	21.8	23.7	8.6	3.8	100.0 (1,227)	3.5
t							17.8***

구분	이용시간					계(수)	평균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맞벌이 여부							
외벌이	22.7	24.5	25.0	17.6	10.2	100.0 (216)	4.6
맞벌이	38.3	24.1	23.1	10.2	4.4	100.0 (3,791)	3.7
부부 일하지 않음	32.2	21.8	21.8	16.7	7.5	100.0 (174)	4.2
F							20.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0	23.0	27.9	15.5	10.6	100.0 (369)	4.7
200~400만원 미만	27.0	23.6	26.0	15.6	7.8	100.0 (831)	4.3
400~600만원 미만	43.8	24.4	18.8	8.8	4.3	100.0 (1,072)	3.5
600~800만원 미만	45.8	24.9	20.7	5.9	2.8	100.0 (828)	3.2
800만원 이상	36.9	24.1	25.2	11.3	2.6	100.0 (1,055)	3.6
모름/무응답	38.5	15.4	30.8	11.5	3.9	100.0 (26)	3.8
F							36.6***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의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시간 48분으로 조사되었다(표 II-3-7 참조). 전체 응답자의 37.2%가 3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4.1%,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3.1% 순으로 조사되어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60% 이상이 4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1회 평균 이용시간이 3시간 48분으로 유치원 이용가구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돌봄서비스 1회 평균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중 이용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 주중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분석하였다(표 II-3-8, 표 II-3-9 참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시작시간은 오전 7~8시 이전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7시~18시 이전에 시작한다는 응답이 24.5%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서비스 시작 시각 분포에 의하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하원시각을 전·후로 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행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오전 7~8시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응답이 29.7%로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25.0%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하원 이후 17~18시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응답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약 2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유치원 운영의 시작시각은 어린이집에 늦은 경향이 있고, 이른 오전 시간대의 운영기준이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종료하는 주중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오전 9시~10시 이전에 종료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9~20시 이전 24.6%, 20~21시 이전 18.4%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을 병행이용 하는 주된 이유는 등·하원과 출·퇴근시각의 간극에 따른 것을 파악되며(표 II-3-3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등원 이전에 비해 하원 이후 부모의 퇴근 시각까지의 돌봄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기관 병행이용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시간대를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 17~18시가 52.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18~19시 52.4%, 19~20시 36.1%, 오전 8~9시 34.9% 순이었다(표 II-3-10 참조). 이 조사가 어린이집 연장보육 도입 이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17~18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전 9시 이전과 19시 30분 이후의 돌봄 공백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 II-3-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주중: 시작 시각(2018)

단위: %(명), 시

구분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오전 12~4시	오전 4~5시	오전 5~6시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시~	평균	
전체	3.8	26.5	6.7	1.6	0.8	0.2	9.7	16.9	24.5	6.2	2.4	0.4	0.1	0.3	100.0(3,395)	12.9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3.7	25.0	7.3	1.7	1.1	0.2	8.9	17.8	24.8	6.2	2.4	0.4	0.0	0.4	100.0(2,337)	12.9
유치원	3.9	29.7	5.3	1.5	0.2	0.3	11.4	14.9	24.0	6.1	2.2	0.4	0.1	0.1	100.0(1,058)	12.7
t																2.6
맞벌이 여부																
외벌이	6.5	17.7	4.6	5.9	5.9	1.3	12.4	19.6	19.6	3.9	2.6	0.0	0.0	0.0	100.0(153)	12.7
맞벌이	3.6	26.9	6.8	1.4	0.5	0.2	9.6	16.8	24.9	6.2	2.2	0.4	0.1	0.3	100.0(3,128)	12.9
부부 일하지 않음	4.4	25.4	4.4	2.6	1.8	0.0	8.8	17.5	21.1	7.0	5.3	0.9	0.0	0.9	100.0(114)	13.0
F																0.1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	20.3	5.5	0.9	0.9	0.0	10.2	13.1	31.4	6.8	5.5	2.1	0.0	0.0	100.0(236)	13.8
200~400만원 미만	3.6	16.4	3.6	3.4	1.9	0.5	9.2	13.5	34.9	7.9	3.6	1.2	0.2	0.2	100.0(585)	14.0
400~600만원 미만	4.3	26.4	6.2	1.2	1.0	0.2	8.4	16.8	26.1	6.8	2.5	0.0	0.0	0.1	100.0(898)	12.9
600~800만원 미만	3.4	29.9	10.1	1.1	0.1	0.0	9.7	18.8	20.0	4.6	1.5	0.0	0.0	1.0	100.0(736)	12.3
800만원 이상	3.8	31.5	6.5	1.5	0.5	0.2	11.1	18.9	18.5	5.7	1.3	0.2	0.1	0.1	100.0(920)	12.3
모름/무응답	0.0	35.0	10.0	0.0	0.0	0.0	20.0	5.0	20.0	0.0	5.0	0.0	0.0	5.0	100.0(20)	12.5
F																13.9***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01$

〈표 II-3-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주중: 종로 시각(2018)

단위: %(명), 시

구분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오전 12~4시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9시	오후 9~10시	오후 10시~11시	오후 11~12시	오후 12시~	평균
전체	1.5	24.7	7.0	0.4	2.0	2.8	6.4	24.6	18.4	7.8	2.9	0.9	0.6	100.0(3,395) 16.0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1.4	23.0	7.4	0.5	2.2	2.7	6.6	24.3	19.3	8.1	3.0	0.9	0.7	100.0(2,337) 16.1
유치원	1.7	28.5	6.1	0.3	1.6	2.9	6.0	25.2	16.4	7.1	2.9	0.9	0.4	100.0(1,058) 15.6
t														7.43**
맞벌이 여부														
외벌이	2.0	18.3	5.2	2.0	9.8	5.2	7.2	19.0	20.3	4.6	4.6	2.0	0.0	100.0(153) 16.2
맞벌이	1.5	24.9	7.2	0.4	1.5	2.7	6.5	25.0	18.4	7.9	2.8	0.8	0.6	100.0(3,128) 16.0
부부 일하지 않음	0.9	27.2	5.3	0.0	4.4	2.6	3.5	21.9	17.5	8.8	6.1	0.9	0.9	100.0(114) 16.1
F														0.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4	20.8	3.0	0.0	3.8	1.7	5.1	23.3	19.1	11.4	7.2	3.0	1.3	100.0(236) 17.2
200~400만원 미만	0.9	16.9	2.1	0.7	4.3	2.4	6.3	24.1	21.7	11.8	6.5	2.1	0.3	100.0(585) 17.4
400~600만원 미만	2.6	24.2	6.9	0.1	1.3	3.2	8.0	26.4	16.9	7.4	2.2	0.5	0.3	100.0(898) 15.9
600~800만원 미만	1.6	28.4	10.2	0.5	1.2	2.9	6.4	25.0	15.6	5.3	1.2	0.7	1.0	100.0(736) 15.2
800만원 이상	1.0	28.2	8.7	0.5	1.3	2.8	5.2	23.3	20.0	6.6	1.7	0.1	0.5	100.0(920) 15.5
모름/무응답	0.0	30.0	10.0	0.0	0.0	5.0	10.0	20.0	10.0	10.0	0.0	0.0	5.0	100.0(20) 15.5
F														17.4***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3-1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시간대(중복응답)(2018)

단위: %(명)

구분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오전 12-1시	오후 1-2시	오후 2-3시	오후 3-4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9시	오후 9-10시	(수)
전체	6.7	30.5	34.9	10.3	3.4	3.0	3.3	3.8	6.3	13.3	31.0	52.6	52.4	36.1	15.4	9.1	(4,229)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2.3	9.3	11.0	3.8	1.2	1.0	1.2	1.3	1.9	4.1	10.0	16.6	16.6	11.7	5.1	3.0	(2,987)
유치원	1.8	10.9	11.6	2.2	0.8	0.7	0.8	1.0	2.2	4.8	9.9	17.4	17.4	11.2	4.6	2.8	(1,242)
맞벌이 여부																	
외벌이	2.6	5.6	7.8	4.5	2.6	2.3	2.5	2.6	3.1	6.0	10.2	15.7	14.3	11.8	5.4	3.1	(217)
맞벌이	2.0	10.1	11.5	3.2	1.0	0.8	0.9	1.1	1.9	4.2	10.0	17.0	17.1	11.6	4.9	2.8	(3,836)
부부 일하지 않음	4.0	7.6	8.5	3.2	2.6	2.6	2.1	1.7	3.0	4.0	8.3	15.7	13.8	11.0	6.4	5.5	(17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6.7	8.1	2.2	1.5	1.3	1.5	1.3	1.8	3.6	8.0	15.1	16.7	14.4	9.2	6.8	(372)
200~400만원 미만	1.9	6.4	7.4	2.9	2.1	1.9	1.8	2.2	2.6	4.2	9.2	16.7	16.0	13.5	6.5	4.7	(839)
400~600만원 미만	2.5	10.8	11.7	3.1	0.9	0.9	0.9	1.2	1.7	4.0	9.9	17.3	17.4	10.9	4.6	2.3	(1,084)
600~800만원 미만	2.3	12.4	13.7	3.9	0.5	0.4	0.5	0.5	1.5	3.8	10.4	17.5	17.2	10.6	3.3	1.6	(837)
800만원 이상	1.9	10.5	12.7	3.8	0.9	0.6	0.9	1.0	2.2	5.0	10.7	16.6	16.6	10.7	4.0	2.1	(1,071)
모름/무응답	2.7	9.3	10.7	1.3	1.3	1.3	4.0	1.3	4.0	8.0	13.3	18.7	14.7	8.0	1.3	0.0	(26)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월평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자부담)은 421,0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맞벌이 가구는 평균 431,000원으로 외벌이 가구 319,000원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지출비용에 따라 비용 부담도 높게 나타나므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3-1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부담 수준(2018)

단위: 만원, %(명), 점

구분	월평균 비용	매우 낮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계(수)
전체	42.1	0.4	1.2	49.8	37.9	10.8	3.6	100.0 (4,229)
병행이용 기관								
어린이집	41.6	0.5	1.2	51.1	36.1	11.2	3.6	100.0 (2,987)
유치원	43.4	0.1	1.1	46.9	42.2	9.7	3.6	100.0 (1,242)
t	2.61						2.75	
맞벌이 여부								
외벌이	31.9	0.0	1.4	60.4	29.0	9.2	3.5	100.0 (217)
맞벌이	43.1	0.4	1.1	49.3	38.4	10.8	3.6	100.0 (3,836)
부부 일하지 않음	32.8	0.0	1.7	48.3	38.6	11.4	3.6	100.0 (176)
F	18.0***						3.0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4	0.8	1.9	59.4	28.2	9.7	3.4	100.0 (372)
200~400만원 미만	27.1	0.5	1.9	57.2	32.7	7.8	3.5	100.0 (839)
400~600만원 미만	38.8	0.5	0.9	45.2	42.7	10.7	3.6	100.0 (1,084)
600~800만원 미만	50.7	0.2	1.0	45.0	40.3	13.5	3.7	100.0 (837)
800만원 이상	54.8	0.1	0.8	48.9	38.8	11.4	3.6	100.0 (1,071)
모름/무응답	55.9	0.0	0.0	57.7	26.9	15.4	3.6	100.0 (26)
F	98.8***						11.46***	

주: 5점 평균은 '매우 낮음' 1점 ~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중 서비스 병행이용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01$

4. 유사 분야의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 검토

다부처에서 추진되는 돌봄서비스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 추진 기반 및 세부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부처간 협력이 강조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유관 서비스의 연계가 강조되는 빈곤가구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가. 다부처간 협력체계의 구축: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방과후 돌봄 분야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간의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매뉴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였다.

1)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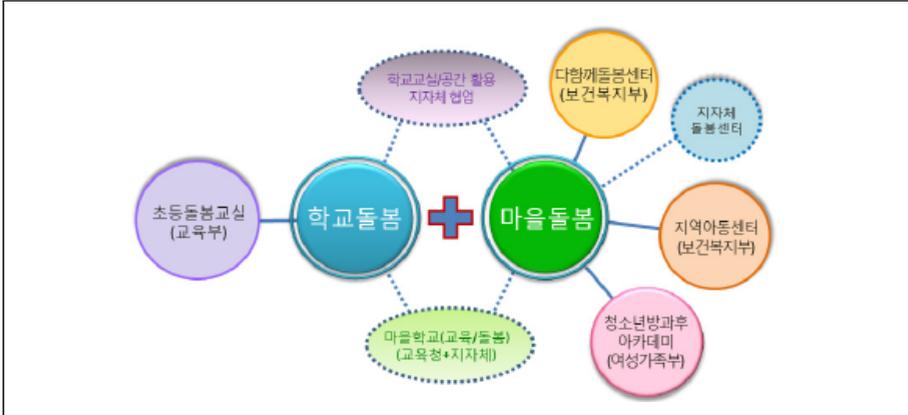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중앙-지방 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19).

[그림 II-4-1]과 같이 초등방과후 돌봄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원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부처 간 협력과 연계는 각 주체별로 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공동추진협의회, 시·도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광역돌봄협의회, 시·군·구 단위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기초돌봄협의회를, 읍·면·동 단위에서는 학교, 돌봄기관, 지역공공시설이 마을돌봄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된다(그림 II-4-2 참조).

중앙정부는 돌봄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부처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과 부처 간 돌봄정책의 조정과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및 복지부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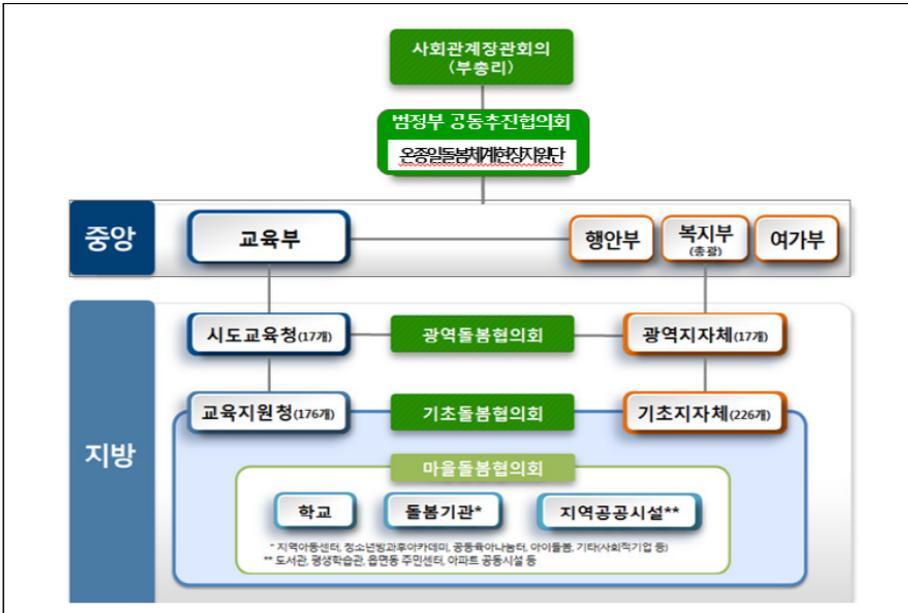
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며, 중장기 개선 방안을 모색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본정책을 협력하고 조정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23-24).

[그림 II-4-1] 온종일 돌봄체계의 돌봄 유형 및 관계부처



자료: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 19.

[그림 II-4-2] 범정부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 2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총괄하고 연계하며, 돌봄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24). 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자원 활용이 요구되는데, 광역돌봄협의회는 시·도 차원에서 중앙과 기초지자체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고, 기초돌봄협의회는 시·군·구 차원에서 돌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지역 돌봄 공급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24). 그 이하로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돌봄협의회가 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기초돌봄협의회의 운영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24).

각 운영 주체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표 II-4-1>과 같이 제시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24).

<표 II-4-1> 온종일돌봄의 중앙 및 지방단위 협력체계 구성(안)

구분	협력체계 구성(안)	
중앙 단위	법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교육부 및 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 및 여가부 실장,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세종시, 경기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 도봉구청장) 등 총 9명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단장), 관계부처(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및 교육청·지자체 파견근무자 등 총 9명
지방 단위	광역돌봄협의회	시·도 차원의 협의체로서 시·도 내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중앙-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 등 적극 지원
	기초돌봄협의회	시·군·구 차원 협의체로서 돌봄 수요조사 및 지역돌봄 공급 계획 조정 등 지역 돌봄 핵심 역할 수행, 시·군·구청장, 교육장(이상 위원장), 지방의회 의원, ○○초등학교 학교장, 학부모 대표, 지역아동센터 시·군·구협의회장, ○○연구소 연구원, ○○시·군·구 국장, ○○교육지원청 국장(이상 위원), ○○시·군·구청 전담조직 팀장, ○○교육지원청 돌봄담당 팀장(이상 간사)

주: 1) 광역돌봄협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청과 협업하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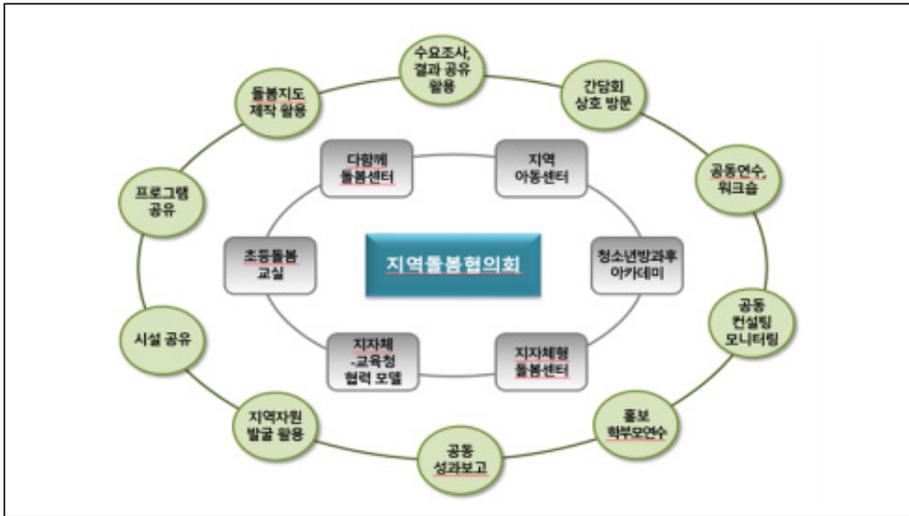
2) 기초돌봄협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구성

자료: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 24, 59, 61.

특히 기초돌봄협의회는 지역내 서비스 연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돌봄 수요 조정·배정 및 정보를 공유하는 읍·면·동 또는 권역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구성된 ‘마을돌봄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II-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종일돌봄

돌봄 네트워크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관계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연수 워크숍 개최, 시설 간 프로그램, 강사, 시설, 학생정보를 공유하며, 지역내 돌봄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지역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구성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64-67).

[그림 II-4-3] 온종일돌봄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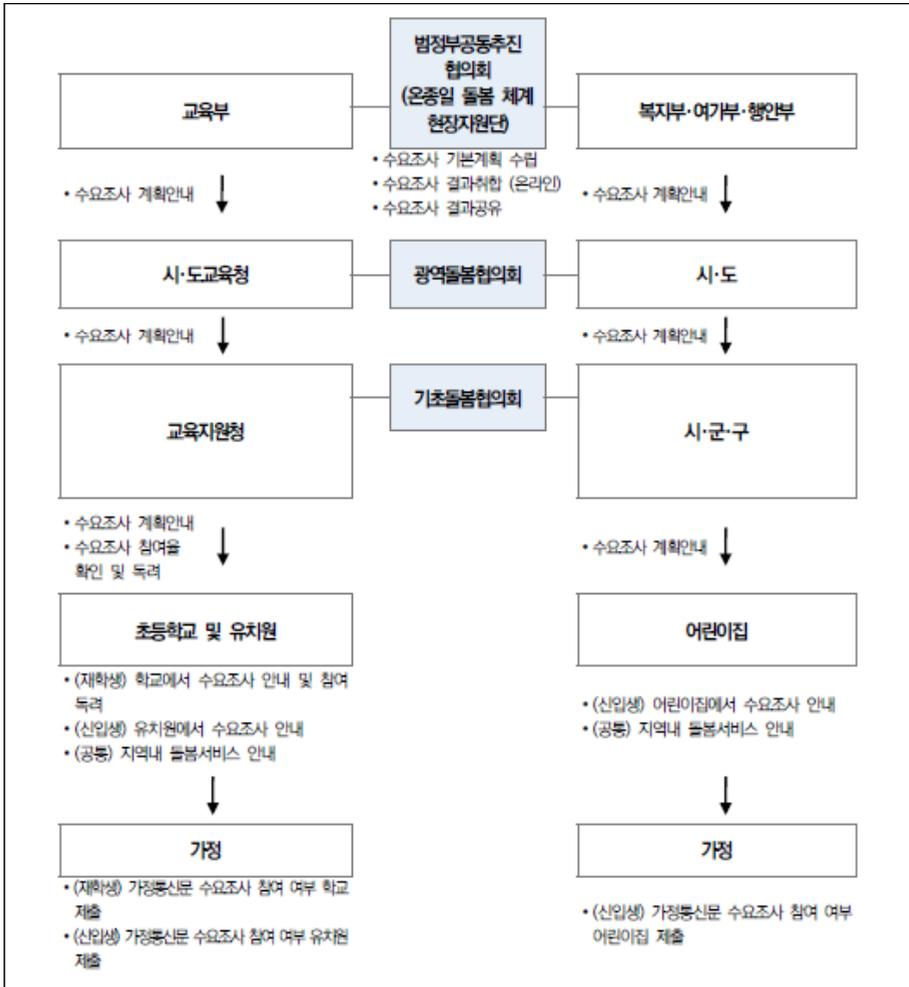
자료: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 67.

2) 공동 수요조사 추진체계

온종일돌봄 정책 추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정책 통계 산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33).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에서는 수요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수요조사 계획 안내를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에 하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그림 II-4-4 참조).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는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주체가 되어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예비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바일 기반 웹 설문조사로 돌봄 필요 여부, 돌봄 필요시간, 희망 돌봄서비스 유형(학교돌봄, 마을돌봄), 가구유형 등을 설문하여 취합한다(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2020: 33).

[그림 II-4-4] 온종일돌봄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추진체계



자료: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 34.

3) 원스톱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019년 말 관계부처합동 보도 자료에서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11. 11: 1).

[그림 II-4-5]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의 단계별 구현내용

◇ 통합 정보 안내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실시간 결과 확인

① 정부24 메인화면 접속



② 통합 정보 제공



③ 실시간 모집상황 안내

사업명	지역	위치	모집 현황	신청하기	지도보기
수원다함께돌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구정 도서관	30명 20명 4명 0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서울아이케어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주민센터	20명 12명 8명 0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안산다함께돌봄	경기도 안산시	안산 주민센터	20명 18명 2명 0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예산다함께돌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마을센터	30명 22명 8명 2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울산다함께돌봄	울산광역시 남구	남구 남부지사 복지센터	40명 32명 8명 0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의정부아이케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주민센터	35명 32명 3명 0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춘천다함께돌봄	강원도 춘천시	춘천 시청도서관	25명 21명 4명 0명	신청하기	지도보기

④ 모바일 지도보기



⑤ 온라인 신청



⑥ 자격확인 자동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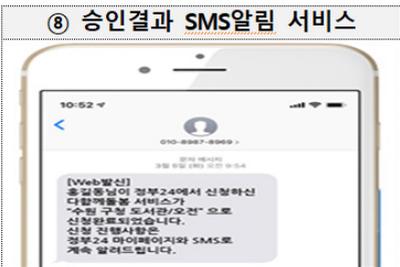


⑦ 실시간 처리상황 확인 (온라인)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내역	구분	통과여부	처리일	비고
220110	2019.01.15	수원다함께돌봄	온종일돌봄	100%	12.10	완료
220520	2019.01.12	수원동문학교	온종일돌봄	100%	12.10	완료
220654	2019.01.09	수원동문학교	온종일돌봄	100%	12.10	완료
230717	2019.01.07	경기도교육연구원	온종일돌봄	100%	12.10	완료

⑧ 승인결과 SMS알림 서비스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11. 11), 보도자료: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p. 5.

65

[그림 II-4-6]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자료: 정부24,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인출일자: 2021. 6. 7)

[그림 II-4-7]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돌봄시설 조회 예시(충북 청주시)



자료: 정부24,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인출일자: 2021. 6. 7)

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사업들을 학부모가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계획으로, 집 근처 신청가능한 돌봄시설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실시간 모집상황 파악, 모바일 지도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확인 자동처리, 승인결과 SMS 통보 등을 원스톱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그림 II-4-5 참조).

2021년 6월 기준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이 온종일돌봄 서비스 신청으로 제공되며, 정부 24 검색결과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잔여 정원이 있어도 신청 기간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다른 돌봄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II-4-6, 그림 II-4-7 참조).

이처럼 초등방과후 돌봄은 4개 이상의 관계부처 사업으로 흩어져있는 방과후돌봄 서비스 사업들의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로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의 부처간 협의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중앙 단위 협의체와 실무전담 조직을 구성하였고, 광역과 기초, 마을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내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수요자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온종일돌봄 체계의 법률적 기반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지역내 온종일돌봄 조례(통합 조례)의 제정이 권장되고 있다.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⁷⁾」이 2020년 6월 10일에 제안되었으나,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I0F0H6T1F0N1O7K1D4O5G9F1S5G7, 2021. 6. 7. 인출). 해당 특별법(안)에는 온종일돌봄 광역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구성 등에 해당하는 사항, 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비용 부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6조),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교육위원회, 2020: 7-8).

7) 동 제정안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유기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교육위원회, 2020: 6-7).

나. 드림스타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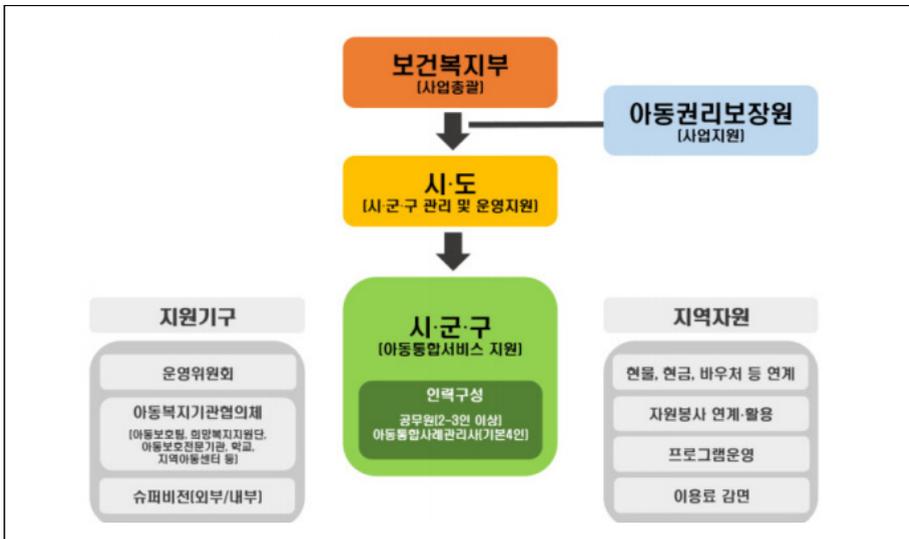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아동통합사례관리가 기본이 되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 사업간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1) 사업 추진체계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기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등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1b: 2).

이를 위해 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며,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1b: 3).

[그림 II-4-8]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2021)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3.

이에 드림스타트 추진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정책을 총괄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총괄 지원·관리하며, 시·군·구는 드림스타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b: 3).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조정하는 지원기구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b: 10).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보건복지부, 2021b: 10)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표 II-4-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4-2>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2021)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아동 및 가족의 변화를 위한 여러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공동개입 방향 모색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아동부서 담당 국·과장 위원: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간사: 드림스타트 팀장) ※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의 각 실무자(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등으로 실무 워킹그룹 구성·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의·조정과 각 기관 간 대상자 및 서비스 등의 정보 공유 통합사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연계 방향 설정 및 연계 내용, 상황, 대상자의 변화 등 점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임기: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활용: 아동복지기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당해 년도, 차년 사업계획서, 지역자원 개발·연계 계획서 등 사업운영 과정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 반영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10.

2)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아동통합사례관리는 대상아동과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방법론, 전달체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보건복지부, 2021b: 38). 따라서 개별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8) 서비스의 통합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지원의 통합을 뜻하며, 방법론의 통합은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의 통합을 의미하고, 전달체계의 통합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 통합하는 것을 뜻함(보건복지부, 2021b: 38).

아니라 공공·민간기관 간의 밀접한 연계와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 2021b: 39).

아동통합사례관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의 사전정보 파악, 대상자 선정 및 유형 분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반적인 상담내용 관리, 연계 서비스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 2021b: 42).

[그림 II-4-9]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2021)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40.

접수 단계에서는 초기상담 시 서비스 연계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연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1b: 40). 사정 단계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개입의 근거를 확보하며, 아동발달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사례관리 대상 또는 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선정하며, 욕구조사 및 아동발달에 관한 사정은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21b: 44).

지역 내 서비스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행복e음 내 서비스 이력을 참고하여 중복서비스 수혜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 53-54).

또한 사례관리 종결 직전에 서비스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진단한다(보건복지부, 2021b: 55). 종결 단계에도 타 기관⁹⁾ 의뢰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연령도래 종결

의 경우에는 지속적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계할 기관¹⁰⁾을 명시하고, 이사로 인한 종결도 새로운 거주지역 드림스타트와 연결되도록 아동의 전출입 현황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이관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 59). 종결 단계에서 대상자를 타 기관에 의뢰할 시에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 실시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의료급여 사업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b: 59).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근거법률에 따라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시·군·구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신청하고 수립되면 해당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연계의 책무를 지닌다. 동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인적 정보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내용 전반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며, 서비스 연계 업무 처리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근거 법률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였다.

1) 관계기관 협조의 근거규정 및 추진체계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1c: 5).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동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II-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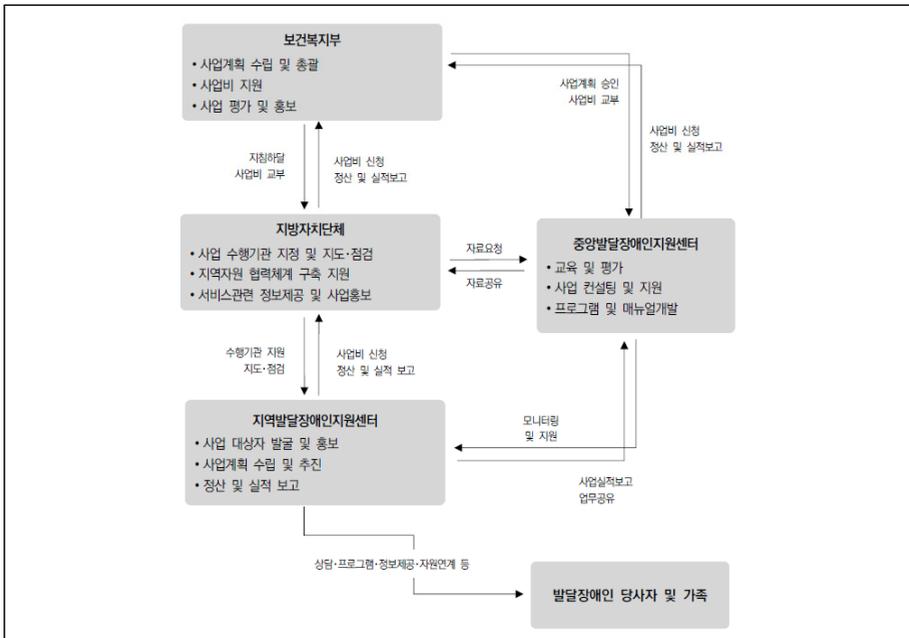
9)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0)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청소년안전망팀(구 CYS-Net),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표 II-4-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규정: 「발달장애인법」 제35조

관계기관의 협조(「발달장애인법」 제35조)
<p>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p>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자료: 보건복지부(2021c).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p. 30.

[그림 II-4-1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흐름도(2021)



자료: 보건복지부(2021c).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p. 9.

라. 초등방과후 돌봄 분야의 서비스 연계 활성화 관련 연구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은 다부처에서 수행되어 해당 부처간의 협력과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가 줄곧 강조되어 왔으므로 해당 개선과제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1) 부처간 협력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관련 정책과제

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이희현·장명림·황준성 외, 2019a)

이희현·장명림·황준성 외(2019a: 11)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사례 분석모형 개발을 위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돌봄 협력 전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중앙정부는 돌봄 사업 담당 부처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예산확보와 제도개선 등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이희현·장명림·황준성 외, 2019a: 14-15). 특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연계를 담당하는 조직이며,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팀으로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지원하는 체계이다(이희현·장명림·황준성 외, 2019a: 15).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돌봄협의체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총괄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부족한 돌모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과거 교육청이 주관했던 돌봄협의회를 2013년 부터 지자체 주관으로 변경하여 돌봄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가는 추세이다(이희현·장명림·황준성 외, 2019a: 15). 이에 따라 광역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마을돌봄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이희현·장명림·황준성 외, 2019a: 15). 이러한 협력체계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부처에 흩어진 사업들을 중앙차원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황준성·이희현·유경훈 외, 2018)

황준성 외(2018)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중의 하나로 온종일 돌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온종일 돌봄 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해 사회가 요구한 빈틈없는 돌봄을 범정

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부협력형 거버넌스라고 평가하였다(황준성 외, 2018: 255).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컨트롤타워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전담조직을 구축하며,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규율의 안정화까지 추진함에 따라 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황준성 외, 2018: 255).

2004년부터 각 부처는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돌봄서비스를 각각의 독립적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2012년부터 개별 돌봄사업 간 연계 및 협력으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시·군·구 단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하고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돌봄정책의 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김홍원, 2017: 11~12; 황준성 외, 2018: 251에서 재인용).

〈표 II-4-4〉 방과후돌봄의 돌봄협의체 운영체계(황준성 외, 2018)

행정단위	주관	관련부처 및 기관	주요 기능 및 업무
중앙 돌봄정책협의회	부처공동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조정 및 협력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유관단체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협력·조정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등	종합적 돌봄 수요조사, 돌봄 대상 파악·선정·조정·배정, 지역단위 돌봄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돌봄서비스 기관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자료: 황준성·이희현·유경훈·양희준·김성기·유기웅·오상아(2018).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252.

방과후돌봄서비스 정책의 협력 및 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돌봄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았다(황준성 외, 2018: 251). 중앙 단위 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돌봄서비스 기본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기구이다(황준성 외, 2018: 251). 지

역돌봄협의체는 시·도 돌봄지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광역 단위의 돌봄서비스 운영지원과 협력·조정 업무를 맡으며,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기초 단위의 종합적 돌봄 수요조사, 돌봄 대상의 파악 및 선정, 조정을 통해서 지역 단위의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황준성 외, 2018: 251-252).

이처럼 중앙 단위 협의체는 부처간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협의기구로 판단된다. 특히 돌봄서비스는 지역에서의 가용자원이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과 수혜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협의체도 중요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도 광역 단위, 시·군·구 기초 단위의 협의체의 유기적 협력이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초 단위에서 돌봄대상의 파악, 선정, 조정,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돌봄서비스 수요조사와 서비스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관련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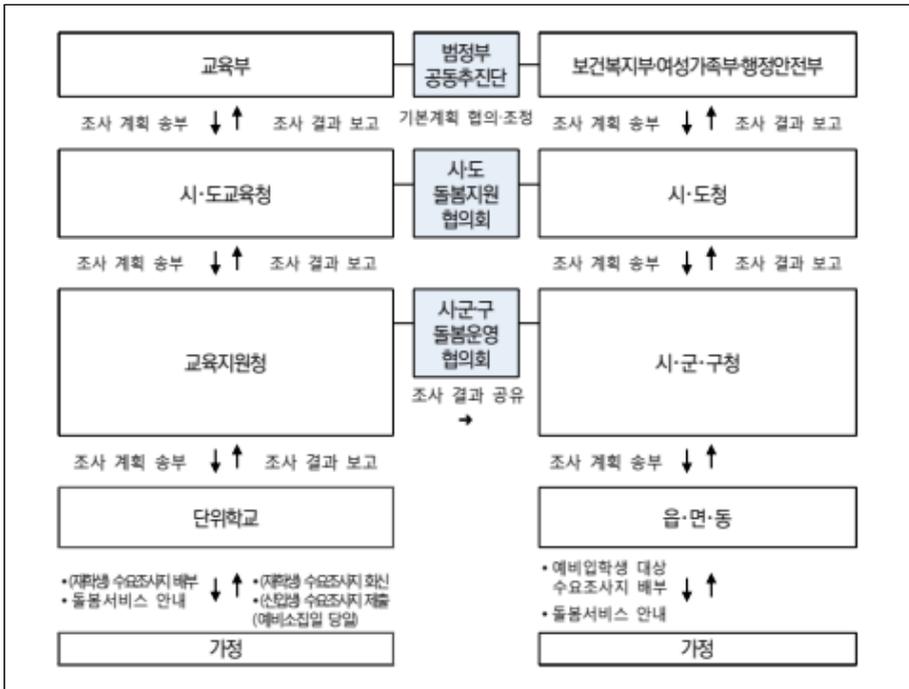
돌봄서비스 수요조사와 서비스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희현·황준성·임봉조 외(2019b)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조사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중앙 단위의 협의회로 중앙행정기관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에서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부처 공동 주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별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시·도 협의회를 거쳐 시·군·구 협의회와 교육지원청에 안내되었다(이희현·황준성·임봉조 외, 2019b: 36). 시·군·구 단위 수요조사 실행계획은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를 통해 수립되었고, 지자체가 주관, 교육청이 협조하여 지역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및 안내지도 등의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희망 학부모 대상 홍보를 실시하였다(이희현·황준성·임봉조 외, 2019b: 36).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 통해 수요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배부하였으며, 신입생 수요조사지 배부는 취학통지서 배부 시 함께 배부하였다. 수합한 조사결과는 각각 정리되어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지역돌봄기관은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시·도 돌봄지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보고된다(이희현·황준

성·임봉조 외, 2019b: 36-37).

또한 이희현·황준성·임봉조 외(2019b)는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의 추진체계 개선안으로 다음 [그림 II-4-12]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요조사의 결과는 지역 내 서비스 공급과 확충 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므로 지역돌봄협의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 간에 상호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중심의 조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사결과를 시·군·구청과 반드시 공유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이희현·황준성·임봉조 외, 2019b: 75). 또한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희현·황준성·임봉조 외, 2019b: 75).

[그림 II-4-12]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추진체계 개선안(이희현 외, 2019)



자료: 이희현·황준성·임봉조·김보미(2019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p. 75.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유사 분야의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돌봄 공백의 유형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시사점은 이하와 같다.

첫째, 기관을 이용 중인 자녀의 돌봄 공백은 크게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은 그 원인이 상이하여 지원요구도 다를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틈새보육의 경우는 고유한 수요를 지닌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규명하고, 긴급보육의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기본 방향으로 지원대상은 현행 기관 중심의 돌봄서비스 만으로 충족되기 힘든 가구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서비스 병행 이유의 주된 이유로 지목되는 ‘이른 하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법정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후 등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긴급보육 수요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제기되므로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보육은 그 성격상으로 보아 개별가구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팬데믹 등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집단보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에서 비롯되는 수요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는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그 지원방식이 방문형 이외에도 시설형이 가능하므로 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그 방향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휴원 기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세부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사 분야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항 관련 시사점은 이하와 같다.

첫째, 다부처에서 관할하는 서비스를 연계할 시에는 그 기반으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각 운영 주체별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사업의 전달체계를 포괄하여 각 단계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중앙부처, 시·도(광역시), 시·군·구(기초) 단위에서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이들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내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그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계획의 수립과 돌봄서비스 기관의 안내, 참여 여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은 각 서비스의 관할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물론,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영유아 부모에게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이용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보육 시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 신청 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일시연계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절차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및 제도 현황

- 0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돌봄 공백 대응 관련 규정
- 02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연계 관련 규정
- 03 긴급보육·돌봄지원의 서비스 연계 추진 현황
- 04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기반 조성
- 05 소결

Ⅲ.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및 제도 현황

제3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 공백의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업무절차와 유형별 서비스 연계 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20년에 코로나19에 따른 범부처 긴급돌봄 대응에서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업무 전반이 달리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조정 및 협력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료화 하였다.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돌봄 공백 대응 관련 규정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휴원 시의 조치사항과 원아의 감염병 등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았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과는 달리 지역 실정에 따라 달리 규정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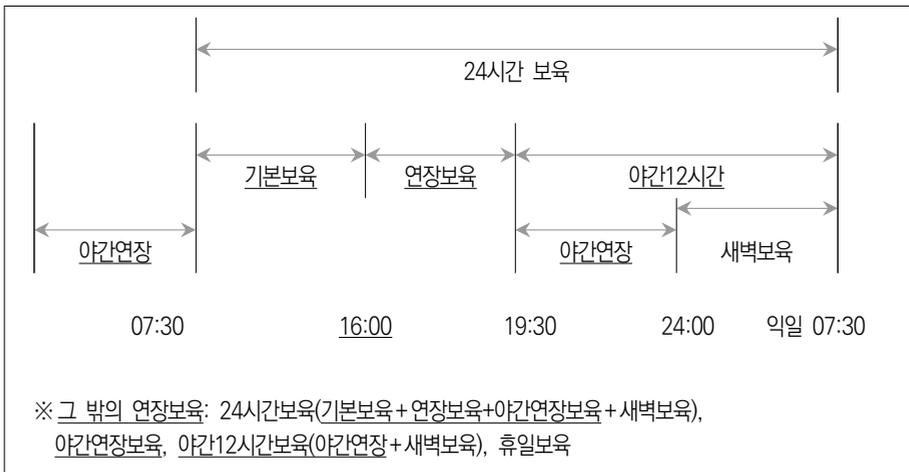
가.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및 대응 관련 규정

어린이집에서는 휴원 조치로 인한 돌봄 공백이 야기될 시에도 긴급보육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성 질환으로 등원하기 힘든 아동의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시에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동의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 아동인계(출결관리 포함)에 관한 규정도 살펴보았다. 서비스 연계로 인한 중복지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육료 신청의 특례에 관한 규정도 다루었다.

1) 어린이집 연장형보육의 운영기준 및 지원수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2021년 3월 부터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16시 부터 19시 30분 까지 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림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장보육 이후 익일 오전 7시 30분 까지 야간 12시간 보육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a: 404). 즉,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404). 야간연장보육은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로 신규로 지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연장보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하고, 기수탁한 자에 대한 재위탁심사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405).

[그림 III-1-1]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보육 개념(2021)



자료: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 404.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2021년 기준으로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은 월 지급액의 80%, 정부미지원 시설은 1인당 1,472,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a: 405). 시작시각에 (17:30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 등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a: 405).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1명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a: 405). 이들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시 30분~21시 30분, 토요일은 15시 30분~17시 30분을 반드시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시각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406). 해당 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 장애아는 보육교직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에는 1:7까지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406).

별도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주간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야간연장반별로 월 461,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a: 406). 이들의 근무시간은 19시 30분~21시 30분, 토요일은 15시 30분~17시 30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407).

그 밖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07:30~익일 07:30)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위의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a: 409-410).

2)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 돌봄 공백 대응 관련 규정

가) 어린이집의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시 돌봄 공백에의 대응

휴원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명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81).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81).

임시휴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81). 이때 원장은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81).

이처럼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휴원 시에도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들에게 사전공지하고 휴원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대체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 수요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나)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아동의 돌봄 공백 대응조치

어린이집은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10).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장은 해당 영유아가 재등원하는 경우 증상 또는 감염력이 소멸됨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110).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1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이 의심되는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11). 가정내 격리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감염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111).

이처럼 감염의 우려로 등원이 어려운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아동안전 관련 규정

가) 등·하원 시 안전관리

특새보육의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등·하원서비스가 지목되므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29).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등원 시 보호자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인계한 후(보건복지부, 2021a: 129), 하원 시 담당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을 확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30). 등·하원 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전화, 문자, SNS 등 활용 후 회신까지 확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30). 이처럼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은 부모에게 아동을 인계하는 것에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가 보육교직원으로 부터 아동을 인계할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재원아동 출결정보 관리(전자출석부 사용)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87).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 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87). 아동 출결정보의 등록 및 수정은 해당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87). 앞서 다룬 등·하원 시 아동의 안전한 인계와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출결에 대한 상황은 기록되어야 하므로, 보육교직원으로부터 아동을 인계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서비스 연계에 따른 중복지원 및 비용지원 관련 규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라’ 형 가구는 제외), 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에 산입하는 특례 상황을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신청 절차도 살펴보았다.

가) 보육료 지원 및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읍·면·동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a: 329).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보육료),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이다(보건복지부, 2021a: 329).

〈표 III-1-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내용(2021)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접수 가능 ※ 주민번호 발급이전으로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정식 신청일은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한 날임(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구분	내용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30일 이내 연장 가능)

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표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보육사업안내. p. 329.

나) 출석으로 간주되는 보육료 지원의 특례적용 사항

보육료 지원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보건복지부, 2021a: 345),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데(보건복지부, 2021a: 346), 여기서는 가정내보육을 선호하여 돌봄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위주로 다루었다.

(1)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 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 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 까지만 해당)을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a: 346).

(2) 부모의 출산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가능)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346). 이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346).

(3) 감염병 유행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 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346).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오전 등원시간 내(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346). 해당 지역의 인근측정소 기준으로 PM10 $81\mu\text{g}/\text{m}^3$ 또는 PM2.5 $36\mu\text{g}/\text{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며,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한다(보건복지부, 2021a: 347).

(5) 자연재해, 재난 발생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a: 347).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347). 또한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347).

다)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비용 지급을 위해서는 보육료와의 중복지원 여부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대상과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파악하였다.

(1) 중복지원 불가 대상

보육료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1a: 348).

또한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1a: 348).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를 위해 시·군·구는 매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348).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가 확인될 경우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지원 제외대상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기관(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한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1a: 348).



나.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및 대응 관련 규정

1) 방과후과정 운영 및 지원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2, 1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2021. 6. 14. 인출).

우선, 방과후과정은 2018년에 발표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유아 중심으로 개편된 바 있다. 이 계획에서 방과후과정은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를 위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8: 20). 특히 놀이 돌봄 중심의 방과후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과 지역의 공동육아, 마을육아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제시되었다. 또한 일하는 가정 등 학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17년 1,075개원 → '22년 2,000개원), 지역내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18: 21).

가)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2021. 6. 1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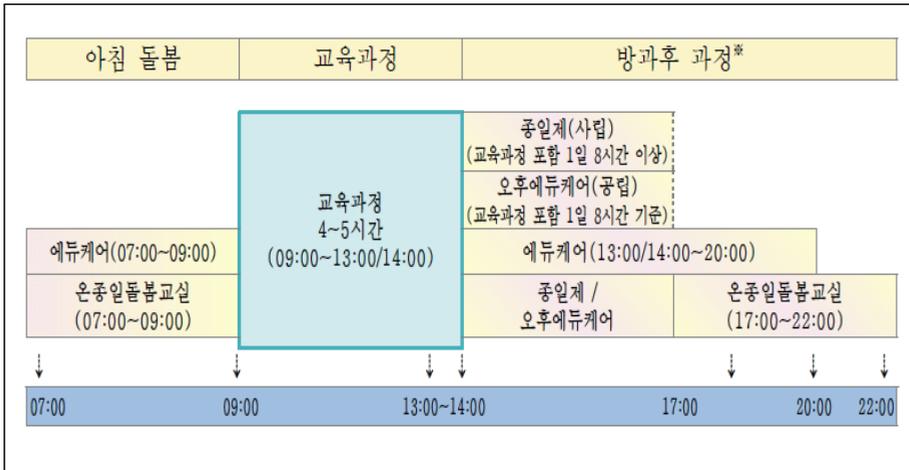
유치원 방과후과정 연간 운영 계획에는 운영시간(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 특성화프로그램(수익자 부담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은 반드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 안전관리 대책(안전대책의 적절성), 학부모 부담금(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필요경비 책정)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1c: 86).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는서울시와 충청북도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는 종일제(사립), 에듀케어(공립_오후에듀케어/공·사립_에듀케어), 온종일돌봄교실로 구분되며, 향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오후 에듀케어를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9). 구체적으로 종일제(사립유치원)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토요일 및 방학 중 운영은 학부모 요구와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8). 에듀케어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방학기간 없이 1일 13시간 연중 운영(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유치원 정원 내에서 맞벌이 가정의 유아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3-21).

온종일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연중 오전부터 저녁(07:00~22:00)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토요일 운영 여부는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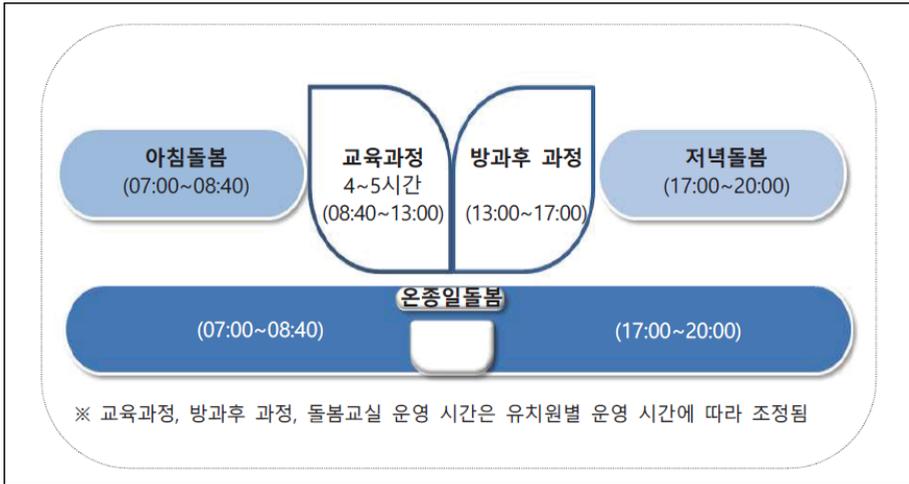
[그림 III-1-2] 서울 지역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2020)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p. 9.

다음으로 충청북도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외 특성화프로그램과 돌봄교실(아침돌봄, 저녁돌봄, 온종일돌봄)로 크게 구분된다(충청북도교육청, 2020: 3).

[그림 III-1-3] 충청북도 지역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2020)



자료: 충청북도교육청(2020).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p. 3.

1일 8시간 이상 운영(개별 보호자의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이다. 구체적인 운영시간과 방학 중 운영 여부는 유치원 실정과 부모의 퇴근시각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충청북도교육청, 2020: 8). 또한 학부모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방학 없이 연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충청북도교육청, 2020: 31).

나) 방과후과정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방과후과정비는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이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교육부, 2021a: 8).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각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방학·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준 시간의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방과후과정비는 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 70,000원이 지원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9).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과후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2) 등·하원 시 안전관리 규정

유치원의 출결관리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즉,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1b: 117).

각 지역별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시 등에서는 등·하원 시 학부모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미동반 귀가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사전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1; 경기도교육청, 2021: 20; 충청북도교육청, 2020: 9; 전라북도교육청, 2021: 30; 경상남도교육청, 2021: 17;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 3). 또한 등·하원 시 학부모 혹은 대리 동행인이 직접 등·하원 일지나 기록부에 해당 시간과 유아와의 관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1; 경기도교육청, 2021: 20). 경기도 지역 등에서는 매일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학부모 소통체계 활성화로 결석 또는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전화, 문자(SMS), 앱(APP)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21: 6; 충청북도교육청, 2020: 9).

통학버스 이용 시의 보호자 인계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시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111). 또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운행 완료 후 ‘지정된 하차 장소에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있는가?’ 라는 점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20: 3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112).

3) 유아학비 지급방식

유아학비는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3·6·9·12월). 이때 전자카드는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웁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가 포함된다(교육부, 2021a: 7). 유아학비는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e-유치원시스템에서 정산한다.

4)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에의 대응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안전망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노력이 범부처간에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교육부, 2021b: 117). 그러나 여기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찾기는 어렵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 24(정부종합민원포털)’와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b: 117).

2.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연계 관련 규정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전반과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연계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의 연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수를 파악하였다.

1) 지원내용 및 이용절차

가) 서비스 지원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60~200시간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12).

시간제서비스는 연 840시간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증증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례를 적용하여 960시간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21c: 12).

〈표 III-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21)

구 분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만0세 이상 ~ 만2세 이하 만3세 이상 ~ 만12세 이하
서비스 내용	- 기본형: 일반적인 돌봄 (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돌봄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가사활동 제외)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돌봄 보조
이용요금	- 기본형: 10,040원(1H) - 종합형: 13,050원(1H)	12,050원(1H)	16,870원(1H)
지원수준	연 840시간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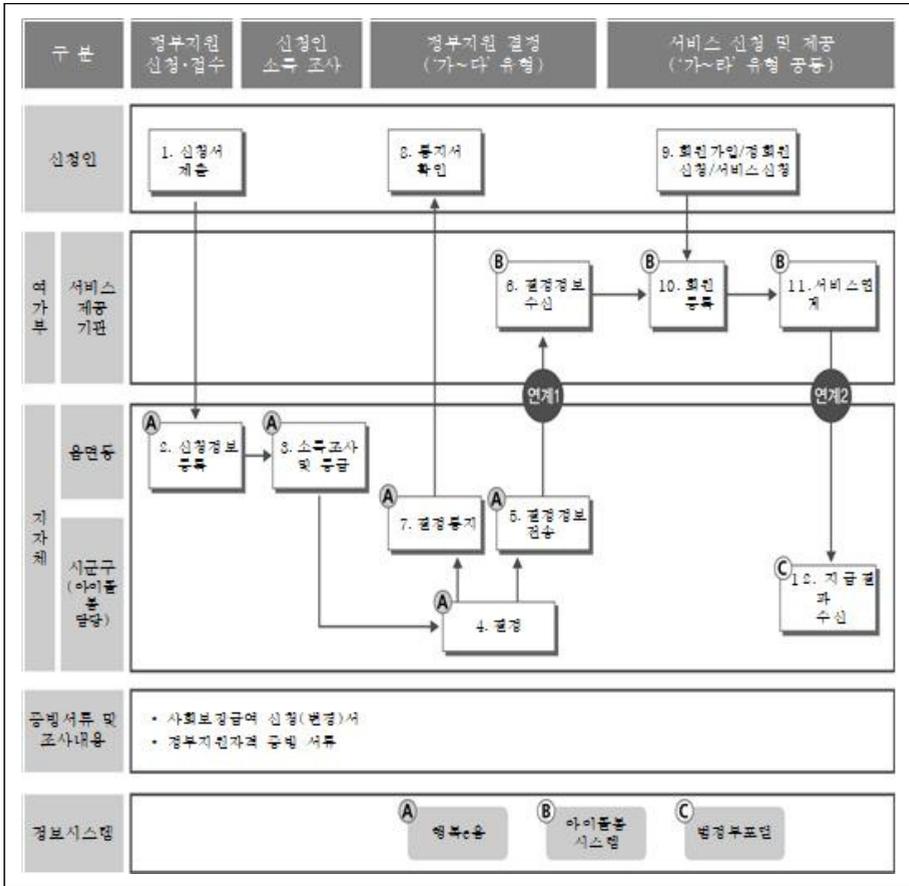
나) 서비스 이용절차

‘가~다’형(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은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 읍·면·동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 e-읍’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관하여 처리한다(여성가족부, 2021c: 13). 단, ‘라’형은 앞선 ‘가~다’형과는 달리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13).



[그림 III-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2021)



주: '가~다' 형 가구는 1번부터, '라' 형 가구는 9번부터 진행함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4.

2)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

가) 정부지원 업무처리 단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수준이 상이하므로, 업무처리 단계별로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서비스 연계의 추진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업무는 정부지원을 결정하기 이전 단계와 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21c: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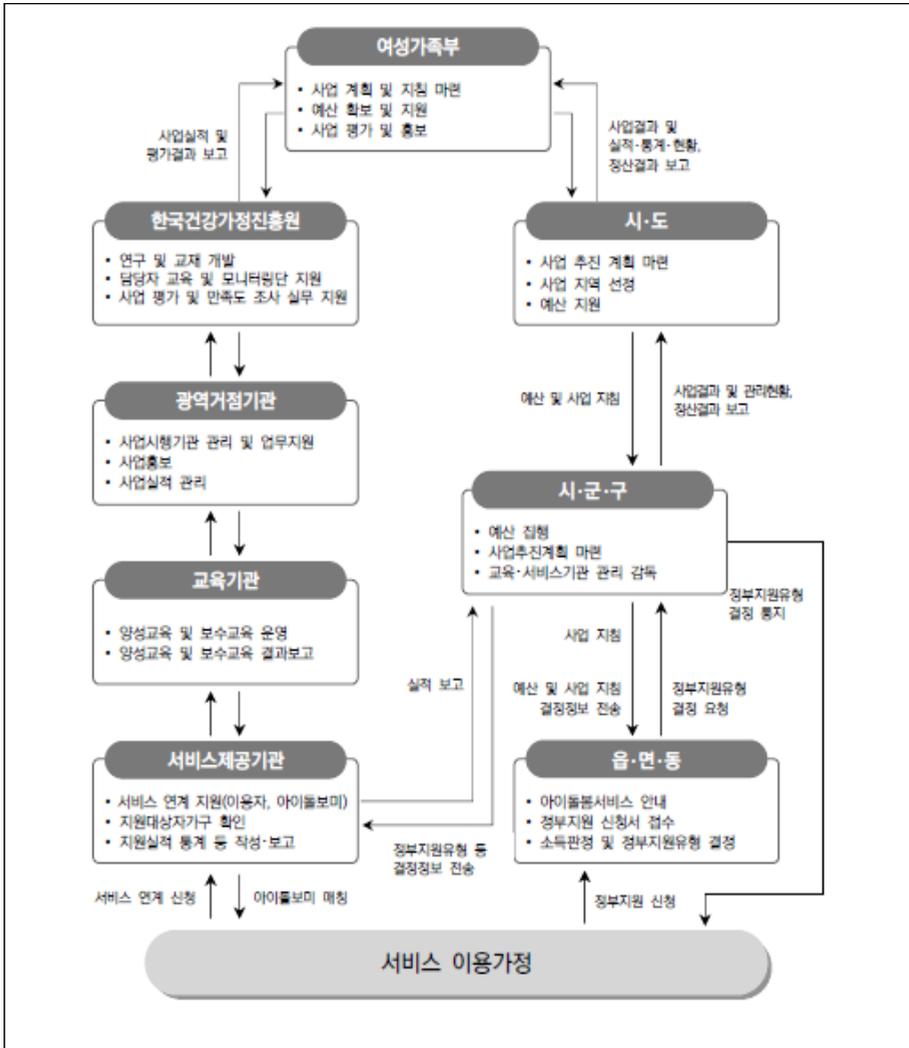
〈표 III-2-2〉 아이돌봄서비스 업무처리 단계(2021)

단 계	주요내용	비 고	담당기관
신 청	1. 신청서 접수	읍·면·동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 접수	읍·면·동
	2. 신청정보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서 등록	
조 사	3. 소득조사 및 등급 (건강보험료)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건보료 확인 및 지원 유형 자동 결정	시·군·구
결 정	4. 지원유형 최종 결정 5. 결정정보 전송	시·군·구 담당자는 지원유형 최종 결정하고 결정정보를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6. 결정통지 7. 통지서 확인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 확인
지 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8. 회원가입/서비스 신청	신청인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홈페이지 상정회원 신청)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	이용자
	9. 회원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등록 처리	서비스 제공기관
	10. 본인부담금 납부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	이용자
	11.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사후관리	12.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3. 서비스 모니터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광역 거점기관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8.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자치구 단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므로(그림 III-2-2, 그림 III-2-3 참조), 이들 기관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I-2-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2021)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5.

[그림 III-2-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업무 흐름도(2021)

절 차	내 용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 원비용은 요금표 참조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정부지원(가~다) * 지원비용은 요금표 참조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정부지원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84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교)동행 등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시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주: (공통)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가~다'형 가구는 ①번부터, '라'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함.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9.

나)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절차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20).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가구(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20).

신청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20).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여성가족부, 2021c: 20), 단,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할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곧장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21).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결정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이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여성가족부, 2021c: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시에는 서비스 이용 방법, 부정수급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안내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다.

(2) 처리 절차

정부지원 여부는 14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 정보는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완료 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한다(여성가족부, 2021c: 22).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 시간제 ↔ 영아종일제 간의 변경), 변경 시점이 월말에 가까우면 시·군·구청에 조속한 결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맞벌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신청자의 명단을 시·군·구로 제출(확인 필요사항 및 사유 등 적시)한다.

정부지원 결정은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며, 소득산정 및 유형결정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읍·면·동으로 반송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22). 또한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송되며,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명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기적(통보 주기는 시·군·구 재량으로 결정하되, 월 1회 이상 통보가 원칙)으로 통보한다(여성가족부, 2021c: 22).

정부지원 결정 정보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송된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23).

다) 정부지원 결정

(1)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에 대하여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중복지원 여부 및 양육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c: 34). 만약 부정확한 방법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받게 된다.

(2) 가구소득 기준 산정 원칙

정부지원 시 가구소득 기준은 행복e음으로 연계된 건강보험료 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한다(여성가족부, 2021c: 3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년 2월)에 따라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일정구간의 경우, 건강보험료로는 경제력을 추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액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3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에는 먼저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21c: 40). 국민행복카드를 구비한 후에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가~다’형의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신청자가 바로 홈페이지에서 희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0).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회원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0).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1) 아이돌보미 면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원할 경우 아이돌보미 면접을 연계하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2회 아이돌보미를 면접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1). 단,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에게 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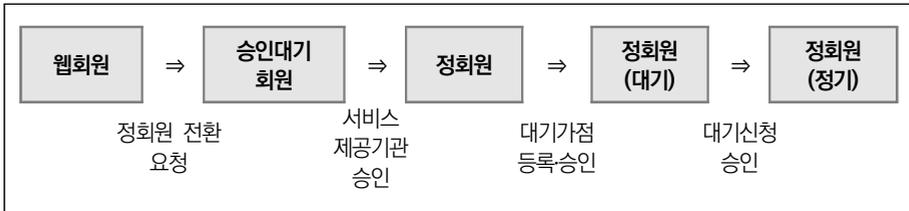
(2) 서비스의 장소 및 범위

아이돌봄서비스 장소는 원칙적으로 이용가정 또는 기관이나, 아이돌보미와 합의 한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1). 서비스 범위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로 가사활동은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21c: 41). 예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아동관련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 웹회원 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후에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등급으로 승인하면 정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1).

[그림 III-2-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자 회원 구분(2021)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1.

(4) 서비스 전·후의 아동인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만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아이돌보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료 시 만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인계에 따른 아동안전의 책임은 보호자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2).



(5) 기존 아이돌봄미 연계 원칙 및 예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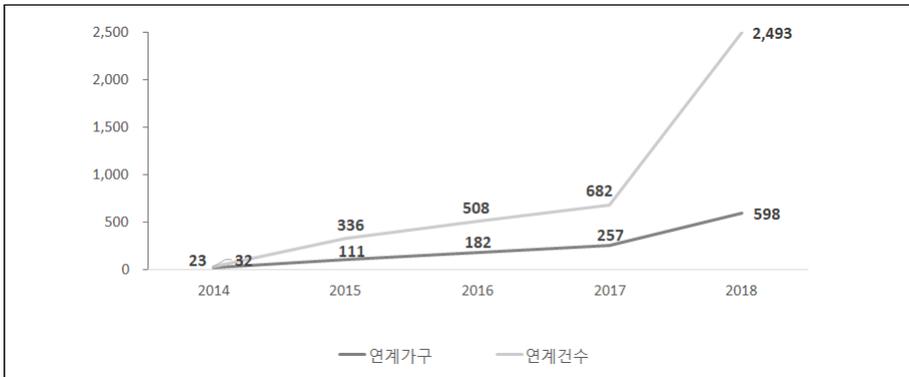
아이돌봄미 연계 원칙에 따라 아동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아동과 아이돌봄미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2). 단, 예외적으로 근로 원칙(「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및 휴게시간 보장)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기존 아이돌봄미가 아닌 다른 아이돌봄미가 연계되거나 아이돌봄미가 추가로 연계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신청가정이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아이돌봄미 연계를 원할 경우, 신청시간에 기존 아이돌봄미가 다른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주 40시간 초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아이돌봄미를 연계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2).

다) 일시연계 서비스

일시연계 서비스는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이용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봄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5). 서비스 이용요금, 교통비, 취소 수수료 등은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다.

[그림 III-2-5]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 추이(2014-2018)

단위: 가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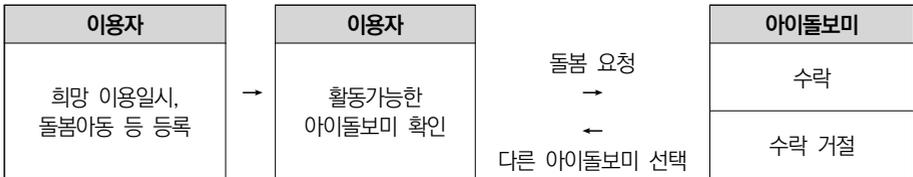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21f). 내부자료: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시간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자는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 모바일 앱을 통해 일시연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c: 45),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6). 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의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치금을 확인 또는 충전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카드 결제(다음날 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당일 충전)을 통해 충전할 수 있고, 이용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여성가족부, 2021c: 46).

[그림 III-2-6]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 절차(2021)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7.

(2) 서비스 제공 방법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서 이용자의 일시연계 서비스 요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돌봄 요청을 수락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1c: 47). 일시연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아이돌보미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일시연계 서비스 요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앱 설치 및 이용 방법 등을 숙지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7).

(3) 서비스 제공기관

일시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참여 의사, 모바일 앱 설치 및 활용 방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참여 여부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47).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신규 또는 활동시간이 적은 아이돌보미에게는 일시연계 서비스 활동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7).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특정한 사유(이용자와 친인척 관계 등 지인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아이돌봄 모니터링단에서 판단한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는 소속 아이돌보미의 일시연계 서비스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47).

4)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기준

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1) 서비스 내용

시간제서비스는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중복하여 신청하지 못하며,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기본형과 종합형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53).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다(여성가족부, 2021c: 54).

〈표 III-2-3〉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추이(2012-2020)

단위: 가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용가구 전체	43,947	51,393	57,144	60,780	68,119	69,308	72,233	70,485	59,663
시간제	41,599	47,700	50,397	52,678	56,385	59,063	60,710	58,995	54,292
- 일반	41,599	47,700	49,989	52,354	55,958	58,489	60,053	57,798	53,046
- 종합	-	-	408	324	427	574	657	1,197	1,246

자료: 여성가족부(각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통계.

〈표 III-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소득기준 유형별(2019-2020)

단위: 가구, (%)

구분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계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계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이용가구 전체	67,761	30,572	13,559	3,368	20,262	59,663	30,493	12,812	2,848	13,510
시간제 일반형	55,940 (82.6)	25,608 (45.8)	11,138 (19.9)	2,823 (5.0)	16,371 (29.3)	53,046 (88.9)	27,036 (51.0)	11,298 (21.3)	2,564 (4.8)	12,148 (22.9)
시간제 종합형	932 (1.4)	452 (48.5)	148 (15.9)	43 (4.6)	289 (31.0)	1,246 (2.1)	644 (51.7)	233 (18.7)	55 (4.4)	314 (25.2)

주: 자료는 각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여성가족부(2021f). 내부자료: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득기준 유형별로 시간제돌봄 일반형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가’형의 비중이 절반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라’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0,04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13,050원이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54).

시간제 서비스의 돌봄 활동은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형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이다(여성가족부, 2021c: 54).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한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다(여성가족부, 2021c: 54).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한 가사업무가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하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결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의 경우에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이다(여성가족부, 2021c: 54).



(2) 정부지원

정부에서 시간제서비스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연 84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은 960시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c: 55).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56).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050원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및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가구는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7,788가구로 나타난다.

〈표 III-2-5〉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가구 추이(2014-2020)

단위: 가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가구수	2,374	2,769	6,471	5,188	6,985	7,788

자료: 여성가족부(2021f). 내부자료: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질병감염아동지원에서는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1c: 56). 또한 돌봄 대상의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활동범위에 속한다. 단, 질병감염 아동을 돌봄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며,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내 돌봄서비스 제공은 불가하다(여성가족부, 2021c: 56).

(2) 서비스 신청 방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일반 신청’과 ‘긴급 신청’으로 구분된다. 일반신청은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56). 단, 공통 정부지원을 50% 적용 시 ‘다~라’형 신청절차를 따른다. ‘다~라’형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①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57).

긴급 신청은 긴급히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고,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57).

환급은 모든 요건이 보완(‘가~나’ 유형: 정부지원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다~라’ 유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1c: 57).

(3) 정부지원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정부지원은 유형별로 지원수준과 방법이 다르다. A형(‘가’, ‘나’), B형(‘가’)의 경우 이용가정이 두 가지의 정부지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지원 시간을 차감(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하는 방법 또는 정부지원 시간 차감을 미적용하는 방법(A형·B형 공통 정부지원을 5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57). A형(‘다’, ‘라’), B형(‘나’, ‘다’, ‘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한다.



다) 기관연계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21c: 59). 돌봄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부터 12세 아동이다(여성가족부, 2021c: 59).

〈표 III-2-6〉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추이(2014-2020)

단위: 개소,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계기관수(개소)	1,858	2,431	2,325	2,534	2,165	2,095	1,193
연계건수(건)	5,919	8,038	8,043	9,813	9,566	21,491	19,608

자료: 여성가족부(2021f). 내부자료: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해당 서비스의 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이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신청서 및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서약서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21c: 59).

이용요금은 시간당 16,870원이 기본이며, 요금은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산계좌로 이체로 지급된다(여성가족부, 2021c: 59).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의 50%가 가산된다. 또한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가 가산된다.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여성가족부, 2021c: 59).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 당 16,870원이 부과되며, 서비스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수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간 제한된다(여성가족부, 2021c: 59).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이용이 기본이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2) 연계 돌보미

연계 돌보미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을 보조한다(여성가족부, 2021c: 60).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고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만 한정적으로 수행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의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60).

〈표 III-2-7〉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아동 수(2021)

아동연령	만 0세 ~ 2세 이하	만 3세 이상 ~ 12세	주의사항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 동시 돌봄 불가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60.

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연계 및 관리 사항

시·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사항과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때 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 서비스 요청 시 미리 정해진 연계 우선순위(① 이용가정의 요청사항, ② 아이돌보미의 복무 내용 반영, ③ 주 15시간(월 60시간) 연계가 없는 경우, ④ 아이돌보미의 여건, ⑤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연계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90).

가) 서비스 연계의 일반사항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1주일 이내에 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용 등을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90). 아이돌보미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요청(시간, 장소 등)사항을 안내하고, 아이돌보미의 확인을 받아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매주 단위 아이돌보미 활동시간을 확인하여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자에게 비



정기, 긴급·일시연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90). 투명한 연계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와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한 데, 집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이용 실적, 연계 상황(일시연계 및 대기 현황)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 2021c: 91).

나) 서비스 연계 시 고려사항

아이돌보미 연계 시 신청자의 가점, 서비스 시간대, 아동연령, 이용자의 상태 및 주거지의 위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계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91). 아동의 연령, 과 이용기간 등 아동과 아이돌보미 간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91). 영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전속성을 고려하여 연계한다. 최초로 연계되는 아이돌보미는 활동 개시 전에 이용가정에 응급처치동의서 등 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정 이용자에게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법령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수급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친인척(4촌 이내)의 경우에는 연계가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1c: 91).

다) 안전사고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은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부모(보호자)-아이돌보미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c: 93).

사고 보고체계는 일반사고의 경우 절차에 따라 사고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연초 부터 해당 분기까지 누적하여 보고한다(여성가족부, 2021c: 105). 중대사고의 경우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을 해당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한편, 안전사고 등에 의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기관)간 법적 분쟁 시에 서비스 제공기관은 양방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여성가족부, 2021c: 105).

[그림 III-2-7] 아이돌보미 관련 사고 보고체계(2021)

일반사고	중대사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즉시 유선통보 후 서면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연계 건의 아이돌보미 즉시 교체
↓	↓	↓
시·군·구 및 광역거점기관	시·군·구 및 광역거점기관(즉시)	시·군·구 및 여성가족부(즉시)
↓	↓	↓
시·도 (분기별, 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	시·도 (즉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즉시)	사실 확인에 따른 조치 및 결과 보고(즉시)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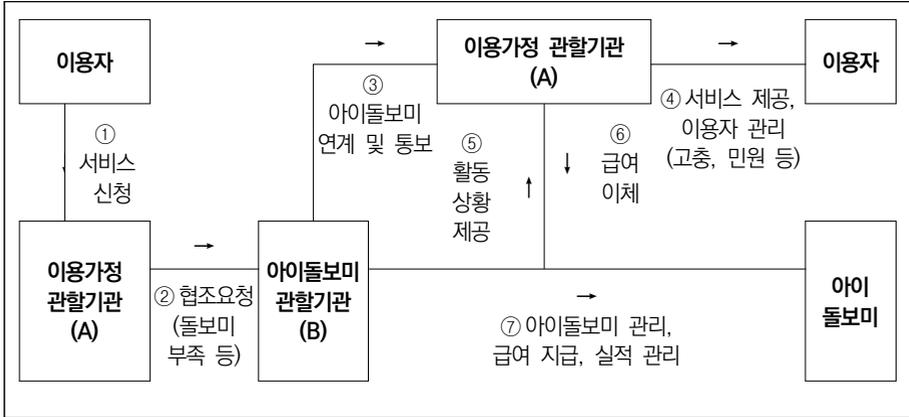
라)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를 관리하며, 시스템 공지나 문자 알림 등을 활성화하여 공지사항을 전파한다(여성가족부, 2021c: 93). 또한 이용자 가정 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해 이용자 모임을 활성화한다(여성가족부, 2021c: 105).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c: 93).

마) 인근지역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보미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연계가 불가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수급 불균형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연계를 거부할 수 없다(여성가족부, 2021c: 104).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월말에 송부 받은 아이돌보미의 활동 상황에 따른 활동수당을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체한다(여성가족부, 2021c: 104).

[그림 III-2-8] 인근 지역 아이돌봄미 연계 신청 및 처리 절차(2021)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04.

[표 III-2-8] 인근지역 아이돌봄미 연계 서비스 관리 주체(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민원 관리 : 이용가정 관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미 복무 관련 사항 등은 아이돌봄미 소속 기관에 전달 ☞ 서비스 모니터링 : 광역거점기관(모니터링단) 주관 ☞ 이용자 - 아이돌봄미 간 갈등, 사고 등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 확인 : 이용가정 관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시 이용가정 관할 기관이 주관하되, 아이돌봄미 제재 등 조치 필요시에는 아이돌봄미 소속 기관과 공동 개최 - 아이돌봄미 자격제재, 산재보험, 손해배상보험(대인, 대물) 처리 등 : 아이돌봄미 소속 기관 - 이용가정 이용제한 : 이용가정 관할 기관 - 아이돌봄미 집담회, 인·적성검사 등 : 아이돌봄미 소속 기관
--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04.

3. 긴급보육·돌봄지원의 서비스 연계 추진 현황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치로는 4개 부처가 돌봄 공백에 대한 조치를 일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에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들 긴급보육체계에서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에 2월에는 4개 부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 기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내용

이 발표되었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외, 2020). 여기서는 각 부처별로 긴급돌봄의 대응 조치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찾아 보기 힘들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돌봄의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범부처가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시된 바가 없다. 단지 여성가족부는 아동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외, 2020: 6). 또한 타 부처의 긴급돌봄을 소개하는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시설·돌봄보육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해당 계획에 담았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외, 202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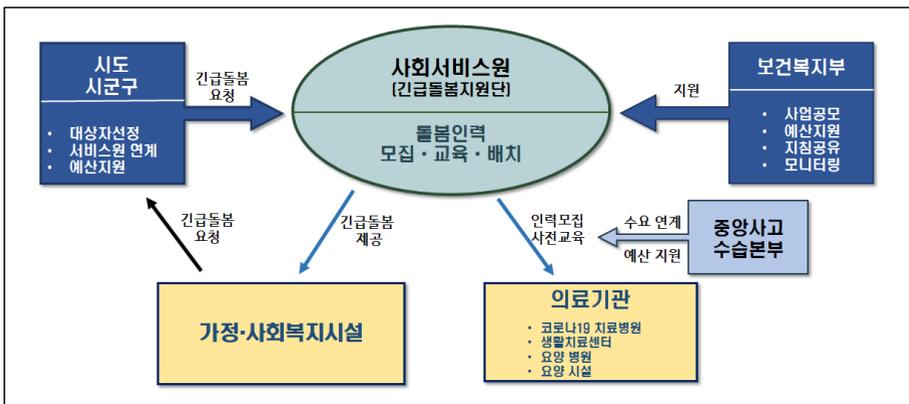
2020년 11월에는 이 같은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a). 여기에는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시에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적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감염·격리에 따른 상황별 대응 체계 구축 내용에는 돌봄시설의 폐쇄 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a: 7).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하여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돌봄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가정 내 온라인수업 지원하는 내용에는 아이돌보미 등 다부처 사업의 돌봄인력이 포함되어있다.¹²⁾ 그러나 이들 서비스 연계 사항은 해당 계획에서 자세하게 담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치를 현장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격리에 따른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계획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3).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사업은 그 지원대상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12) 해당 인력으로는 한부모·조손가족(배움지도사 592명),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1,735명), 맞벌이가정 등(아이돌보미 9,200명)이 제시됨(보건복지부, 2021d: 9).

아동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종사자 확진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시설 등에 대체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d: 20). 이를 위한 추진체계는 지자체가 긴급돌봄(가정과 시설) 수요가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연계하고,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돌봄인력을 모집·교육·배치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1d: 6).

[그림 Ⅲ-3-1]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



자료: 보건복지부(2021d). 보도자료: 공백없는 돌봄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p. 6.

한편 2020년 코로나 19 대비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할 시에는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긴급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도 휴업 시에는 유아의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되,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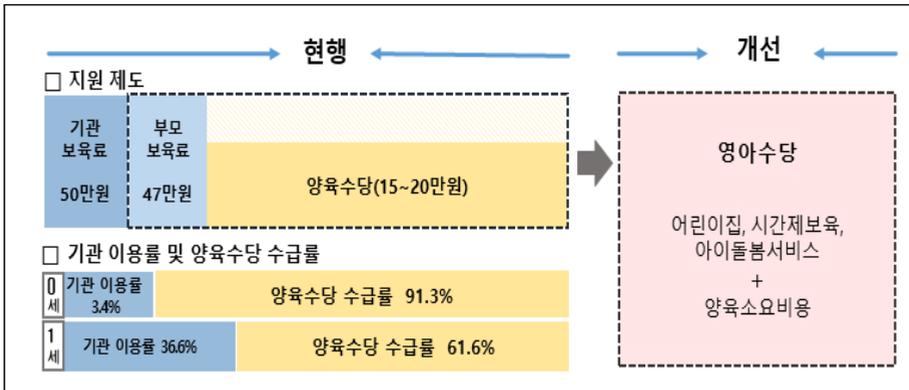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재가돌봄서비스로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해당 세부조치 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가구에 적용될 사항으로 관련 안내에 휴교 또는 휴원 시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표명한 점과 이들 가구가 이용할 시에는 요금 부담을 완화한 내용을 들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나아가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모바일 앱을 통해 '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여성가족부, 2021d: 4). 아이돌봄서비스

를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소득판정을 받은 후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이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신청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21e: 2).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각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필요시 아이돌보미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기반 조성

영아수당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20b: 79).

[그림 III-4-1] 0~1세 비영양지원제도 개편방안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79.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2025년 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0~1세아(0~23개월)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0~1세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를 지급받고, 가정내양육 시는 양



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영아기 특성과 부모의 양육 선호 등을 반영하여 영아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20b: 79). 즉, 전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기의 특성과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의 욕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위주에서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은 물론, 자녀의 직접양육 소요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의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0~1세 집중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아동의 안정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지원 확대를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b: 80).

그런데 이때 영아수당으로 0~1세아를 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해당 비용을 보육료 중복지원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 신청 및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보건복지부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그림 III-4-2 참조)을 구축하여 어린이집 이용자가 어린이집 입소대기부터 보육료 결제, 시간제보육 예약까지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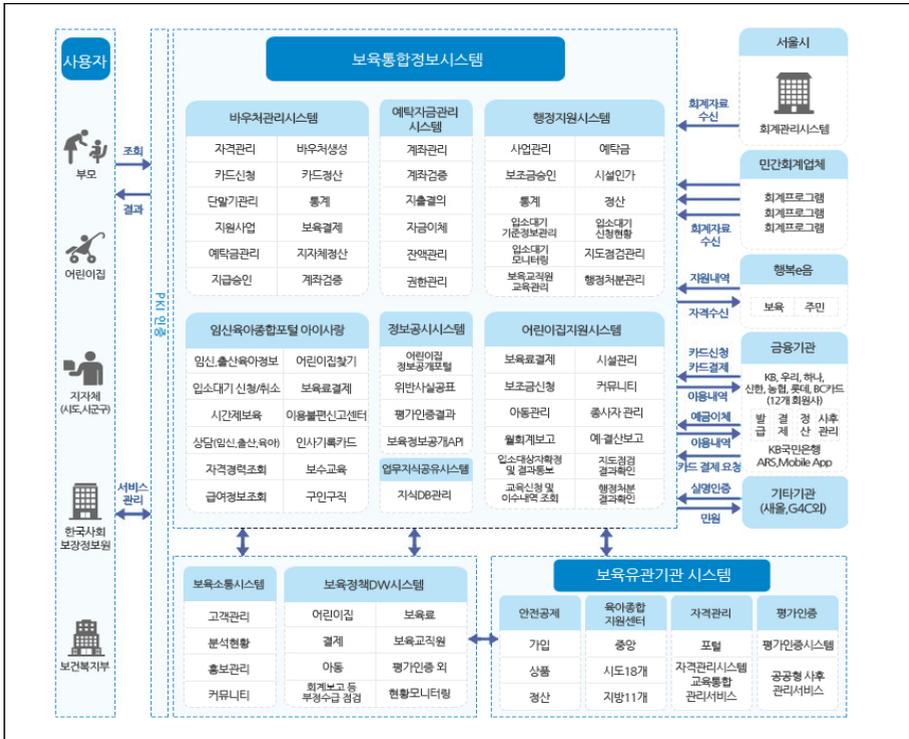
또한 보육료의 지불, 정산 자금관리와 어린이집·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부모와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그림 III-4-2] 임신육아종합포털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cpin/main1.jsp>, 2021. 10. 18. 인출)

[그림 III-4-3]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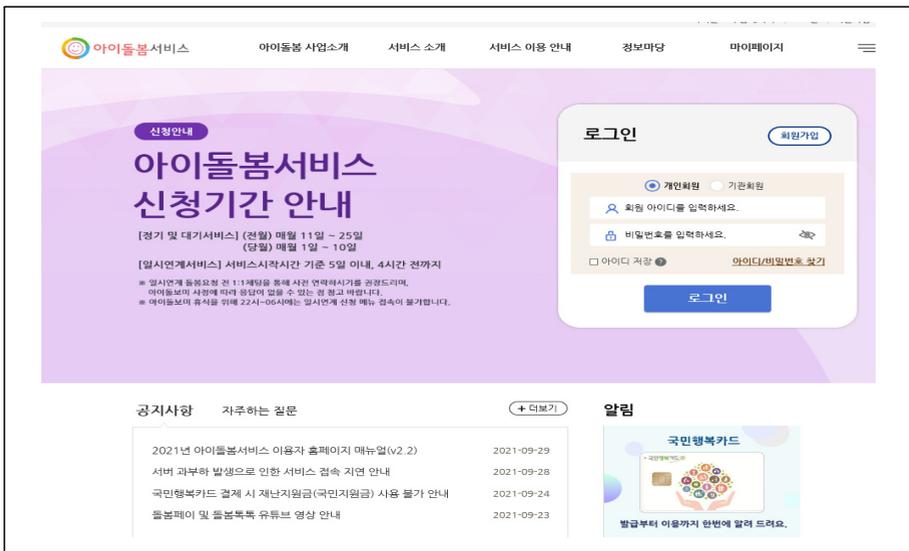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소개(<http://www.ssis.or.kr/lay1/S1T753C773/contents.do>, 2021. 10. 18. 인출)

임신육아종합포털은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자녀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입소대기와 보육료 결제 및 시간제보육 등 어린이집 이용 신청 전반에 걸쳐 이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지원하는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은 보육바우처 운영과 행정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와 대국민 대상의 임신육아종합포털과 지자체 및 보육 유관기관의 업무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적 정보시스템이다(그림 III-4-3 참조).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한 웹사이트(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2021. 10. 18. 인출)(그림 III-4-4 참조)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I-4-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포털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2021. 10. 18. 인출)

이처럼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지원 통합시스템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2021년 4월 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였다(보건복지부, 2021e).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 공백 대응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지원과 서비스 연계 규정, 그리고 재난 시 긴급보육 지원정책 현황을 토대로 서비스 연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돌봄 공백 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등원하기 힘든 경우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치원에서는 타 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하원서비스를 아이돌보미가 담당하는 경우는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아이돌보미는 물론, 이용기관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은 수요자와 아이돌보미 연계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서비스 중복지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현행 중복지원 금지사항은 물론, 각 서비스의 특례적용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서비스 연계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여 비용지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수요가 다를 것이므로 이들 관계를 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틈새보육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에도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야기되는 가구의 특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22년부터 도입되는 0~23개월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현행 양육수당과는 달리 어린이집 이용가구에도 지급되며, 어린이집 보육료는 물론,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자녀를 둔 가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서비스 병행이용에 따른 비용지원과 이용아동의 정보 등을 관리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포털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와 바우처 사용 실적이 데이터로 누적되는 것을 활용하여 단·중기적으로는 이용자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IV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 0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 02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애로사항
- 0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지원요구
- 04 소결

IV.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제4장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돌봄의 틈새 및 사각지대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 및 해당 시간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를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 자녀의 돌봄 공백을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보육 수요 충족 여부

1)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보육 수요 충족 여부

가) 주중의 서비스 이용시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기준으로 주중의 등원과 하원시간¹³⁾을 조사하였다. 등원시간은 평균 오전 8시 53분, 하원시간은 평균 16시 24분이며, 아동 및 가구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연령별로 등원시간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원시간은 영아자녀가 16시 29분으로 유아자녀에 비해 늦고, 자녀수가 많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늦은 경향을 보였다. 영아자녀의 하원 시각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가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점과 관련이 있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양육부담 수준과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13) 등원시간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도착한 시각, 하원시간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떠나는 시각임.

또한 맞벌이 가구의 평균 등원시각은 오전 8시 44분으로 홀벌이 가구보다 이르고, 평균 하원시각은 16시 44분으로 홀벌이 가구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수)
전체	8시 53분	16시 24분	(1,623)
자녀연령1			
0세	8시 41분	15시 52분	(17)
1세	8시 49분	16시 45분	(152)
2세	8시 55분	16시 25분	(456)
3세	8시 57분	16시 34분	(233)
4세	8시 51분	16시 19분	(255)
5세 이상	8시 52분	16시 14분	(510)
F	1.576	4.735***	
자녀연령2			
영아	8시 54분	16시 29분	(625)
유아	8시 53분	16시 20분	(998)
t	0.398	2.133*	
자녀수			
1명	8시 56분	16시 20분	(636)
2명	8시 52분	16시 24분	(839)
3명 이상	8시 46분	16시 35분	(148)
F	3.919*	2.13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44분	16시 44분	(1,092)
홀벌이 가구	9시 13분	15시 41분	(505)
모두 근로 안함	9시 12분	15시 55분	(26)
F	114.708***	108.256***	
출생순위			
첫째	8시 56분	16시 19분	(775)
둘째	8시 51분	16시 26분	(739)
셋째 이상	8시 46분	16시 39분	(109)
F	4.980**	3.37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시 9분	16시 25분	(17)
200~299만원	9시 1분	16시 18분	(97)
300~399만원	9시 1분	16시 13분	(267)
400~499만원	8시 56분	16시 12분	(355)
500~599만원	8시 52분	16시 33분	(281)
600~699만원	8시 45분	16시 32분	(221)
700~799만원	8시 52분	16시 35분	(142)
800만원 이상	8시 45분	16시 28분	(243)
F	6.152***	3.015**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어린 경우 이른 등원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파악된다(부모 7). 또한 이른 등원의 어려움은 자녀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오전 7시 50분에 가장 먼저 등원한 경험을 지닌 부모 10에 의하면, 만 1세와 3세 자녀의 이른 등원 준비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서 결국 조부모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부모 8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인 경우는 자녀별로 이용기관의 등·하원시각이 달라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에 아동연령과 자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이) 7시 30분부터 여는 것 같기는 한데 아이가 어려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내기가 좀 그래서... (중략) 어린이집에 7시 30분에 가는 아이가 없거든요 (부모 7)

처음에는 제가 7시 50분에 나가야 해서 1등으로 (원에) 제가 데려다주다가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등원을 맡겨서 8시 반에 하고 있어요 (부모 10)

저희가 출근하면서 7시 40분까지 막내를 데려다주고 5시에 하원하고, 10살, 8살 아이는 8시 15분에 나가서 30분에 통합차량을 타고 아이들이 알아서 등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시 10분에 하교하고, 아이들은 집에 잠시 있다가 학원에 가요 (부모 8)

기관유형별로 평균 등원시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오전 8시 53분과 8시 52분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평균 하원 시각에서는 어린이집이 16시 31분으로 유치원에 비해 25분이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 어린이집의 평균 하원 시각이 16시 39분으로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해당 기관에서 맞벌이 가구 위주의 영아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의 평균 하원 시각은 17시 22분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 16시 26분에 비해 56분이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도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표 IV-1-2〉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수)
전체	8시 53분	16시 24분	(1,623)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8시 53분	16시 31분	(1,121)
유치원	8시 52분	16시 6분	(502)
t	0.512	5.556***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8시 52분	16시 34분	(533)
민간어린이집	8시 56분	16시 26분	(448)
가정어린이집	8시 51분	16시 39분	(140)
국공립유치원	8시 49분	16시 2분	(180)
사립유치원	8시 54분	16시 9분	(322)
F	1.211	8.855***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8시 41분	17시 22분	(514)
연장보육 미이용	9시 4분	15시 49분	(607)
방과후과정 이용	8시 48분	16시 26분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8시 58분	15시 37분	(200)
F	39.905***	181.065***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p <.001

나) 주중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주중(월~금요일)의 보육 수요를 충족 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30.6	66.3	3.1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47.1	47.1	5.9	100.0 (17)
1세	29.6	67.8	2.6	100.0 (152)
2세	31.8	65.8	2.4	100.0 (456)
3세	28.8	66.1	5.2	100.0 (233)
4세	36.5	60.4	3.1	100.0 (255)
5세 이상	27.3	70.0	2.7	100.0 (510)
χ^2 (df)	14.795(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5.5	60.7	3.8	100.0 (1,092)
홀벌이 가구	20.4	77.8	1.8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23.1	76.9	0.0	100.0 (26)
χ^2 (df)	47.1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5	70.6	5.9	100.0 (17)
200~299만원	22.7	73.2	4.1	100.0 (97)
300~399만원	23.2	73.8	3.0	100.0 (267)
400~499만원	28.2	68.7	3.1	100.0 (355)
500~599만원	34.5	64.1	1.4	100.0 (281)
600~699만원	30.3	65.2	4.5	100.0 (221)
700~799만원	33.1	64.1	2.8	100.0 (142)
800만원 이상	40.3	56.4	3.3	100.0 (243)
χ^2 (df)	29.048(14)*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30.6%로 조사되었는데, 해당 비율은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여,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평균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는 어려우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0세아를 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보육 수요 보다 부족하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에 달하는 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이용기관별로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이 보육 수요 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조사되었고, 해당 비율은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공히 31.1%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정어린이집에서 72.1%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앞서 <표 IV-1-2>에서 이들 기관의 평균 하원 시각이 상대적으로 늦은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의 결과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이 어린이집 이용가구 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보육 수요를 온전히 해소하는 데 미흡함을 암시한다.

<표 IV-1-4>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30.6	66.3	3.1	100.0 (1,623)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29.9	66.5	3.6	100.0 (1,121)
유치원	32.3	65.7	2.0	100.0 (502)
χ^2 (df)		3.476(2)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31.0	64.7	4.3	100.0 (533)
민간어린이집	29.9	67.0	3.1	100.0 (448)
가정어린이집	25.7	72.1	2.1	100.0 (140)
국공립유치원	35.0	63.3	1.7	100.0 (180)
사립유치원	30.7	67.1	2.2	100.0 (322)
χ^2 (df)		8.608(8)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31.1	63.4	5.4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28.8	69.2	2.0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31.1	67.5	1.3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34.0	63.0	3.0	100.0 (200)
χ^2 (df)		18.031(6)**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한편 연장보육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연장보육은 원칙적으로 19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하나, 부모 18이 언급한 바와 같이 19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동이 거의 없어서 연장보육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기관에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장보육이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장반이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부모 18과 같이 연장보육의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등을 이유로 이른 시각에 하원하여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가구도 존재하므로 틈새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연계 대상은 보다 면밀하게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제가 없는 날은 (태권도 학원의) 사범님이 (오후) 4시 반에... 제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의 경험 때문에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연장보육반이 없었고 눈치를 보던 세월이 있어서 그랬는지 빨리 픽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딱 1번 7시 정도에 찾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전혀 눈치를 안 주시고 마음이 되게 편하게 하원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이가 너무 심심하고 힘들지 않다면 연장보육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략) 그런데 (7시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는 강남구라서 그런지 이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심심해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있어서 지루하다, 그리고 한정적이잖아요. 워낙 사교육이나 학원에서 아이들이 자극 받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시터나 이모님들이 연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 18)

2)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보육 수요 충족 여부

가) 주말의 이용 여부

주말(토요일)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에 앞서 주말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주말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10.4%로 조사되었으며, 자녀 특성 및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해당 비율은 우선 영아자녀 특히 0세와 1세아 에서 각각 17.6%와 13.8%로 평균 보다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주말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12.8%로 홑벌이 가구(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5〉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전체	10.4	89.6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17.6	82.4	100.0 (17)
1세	13.8	86.2	100.0 (152)
2세	11.4	88.6	100.0 (456)
3세	13.3	86.7	100.0 (233)
4세	11.8	88.2	100.0 (255)
5세 이상	6.1	93.9	100.0 (510)
χ^2 (df)	16.258(5)**		
자녀수			
1명	8.2	91.8	100.0 (636)
2명	10.8	89.2	100.0 (839)
3명 이상	16.9	83.1	100.0 (148)
χ^2 (df)	10.28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2.8	87.2	100.0 (1,092)
홀벌이 가구	5.5	94.5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0.0	100.0	100.0 (26)
χ^2 (df)	22.750(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100.0	100.0 (17)
200~299만원	9.3	90.7	100.0 (97)
300~399만원	9.7	90.3	100.0 (267)
400~499만원	9.6	90.4	100.0 (355)
500~599만원	15.3	84.7	100.0 (281)
600~699만원	11.3	88.7	100.0 (221)
700~799만원	12.0	88.0	100.0 (142)
800만원 이상	5.8	94.2	100.0 (243)
χ^2 (df)	15.982(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6〉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주말 서비스 이용 여부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전체	10.4	89.6	100.0 (1,623)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11.6	88.4	100.0 (1,121)
유치원	7.6	92.4	100.0 (502)
χ^2 (df)	6.059(1)*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14.1	85.9	100.0 (533)
민간어린이집	11.2	88.8	100.0 (448)
가정어린이집	3.6	96.4	100.0 (140)
국공립유치원	12.2	87.8	100.0 (180)
사립유치원	5.0	95.0	100.0 (322)
χ^2 (df)	25.931(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8.1	81.9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6.1	93.9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9.9	90.1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4.0	96.0	100.0 (200)
χ^2 (df)	53.798(3)***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11.6%로 유치원에 비해 높고, 국공립 인프라 즉,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이용가구에서 각각 14.1%와 12.2%로 이외 설립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해당 비율은 각각 18.1%와 9.9%로 주말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주말보육의 수요가 주중의 연장보육 수요와 유사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 주말의 서비스 이용시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기준 주말(토요일) 평균 등원과 하원시각¹⁴⁾을 조사하였다. 등원시각은 평균 오전 9시 13분, 하원시각은 평균 14시 23분으로 주중과는 달리 아동 및 가구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하원시각이 평균 14시 36분으로 유치원에 비해 약 1시간 가량 늦고,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의 경우 14시 48분으로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7〉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수)
전체	9시 13분	14시 23분	(168)
자녀연령1			
0세	8시 20분	16시 20분	(3)
1세	9시 21분	14시 50분	(21)
2세	9시 3분	14시 32분	(52)
3세	9시 17분	14시 18분	(31)
4세	9시 11분	13시 51분	(30)
5세 이상	9시 28분	14시 14분	(31)
F	1.531	1.487	
자녀연령2			
영아	9시 7분	14시 41분	(76)
유아	9시 19분	14시 8분	(92)
t	-1.413	1.908	
자녀수			
1명	9시 23분	14시 15분	(52)
2명	9시 9분	14시 26분	(91)
3명 이상	9시 7분	14시 27분	(25)
F	1.163	0.1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9시 14분	14시 22분	(140)
홀벌이 가구	9시 9분	14시 29분	(28)
모두 근로 안함	-	-	-
F	0.244	0.095	

14) 등원시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도착한 시각, 하원시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떠나는 시각임.

IV.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구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수)
출생순위			
첫째	9시 21분	14시 21분	(83)
둘째	9시 6분	14시 24분	(72)
셋째 이상	9시 3분	14시 30분	(13)
F	1.749	0.04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	-
200~299만원	9시 3분	15시 43분	(9)
300~399만원	9시 25분	14시 32분	(26)
400~499만원	9시 8분	14시 33분	(34)
500~599만원	9시 15분	14시 15분	(43)
600~699만원	9시 3분	13시 49분	(25)
700~799만원	9시 14분	14시 21분	(17)
800만원 이상	9시 24분	14시 16분	(14)
F	0.539	1.238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1-8〉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수)
전체	9시 13분	14시 23분	(168)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9시 14분	14시 36분	(130)
유치원	9시 12분	13시 37분	(38)
t	0.142	3.457**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9시 13분	14시 38분	(75)
민간어린이집	9시 13분	14시 36분	(50)
가정어린이집	9시 36분	14시 12분	(5)
국공립유치원	9시 9분	13시 24분	(22)
사립유치원	9시 17분	13시 56분	(16)
F	0.275	2.288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9시 18분	14시 48분	(93)
연장보육 미이용	9시 2분	14시 6분	(37)
방과후과정 이용	9시 6분	13시 33분	(30)
방과후과정 미이용	9시 35분	13시 53분	(8)
F	1.332	4.109**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다) 주말의 보육 수요 충족 여부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주말(토요일)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조사되었다.

〈표 IV-1-9〉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41.1	54.8	4.2	100.0 (168)
자녀연령				
영아	50.0	47.4	2.6	100.0 (76)
유아	33.7	60.9	5.4	100.0 (92)
$\chi^2(df)$		4.864(2)		
자녀수				
1명	28.8	67.3	3.8	100.0 (52)
2명	44.0	51.6	4.4	100.0 (91)
3명 이상	56.0	40.0	4.0	100.0 (25)
$\chi^2(df)$		6.11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2.1	54.3	3.6	100.0 (140)
홀벌이 가구	35.7	57.1	7.1	100.0 (28)
모두 근로 안함	-	-	-	- -
$\chi^2(df)$		0.984(2)		
출생순위				
첫째	38.6	57.8	3.6	100.0 (83)
둘째	41.7	52.8	5.6	100.0 (72)
셋째 이상	53.8	46.2	0.0	100.0 (13)
$\chi^2(df)$		1.957(4)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해당 비율은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영아자녀를 둔 가구와 자녀수가 많고 출생순위가 늦은 가구일수록 보육 수요에 못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주말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보육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조사되었고, 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이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 수요 보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각각 43.0%와 40.0%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표 IV-1-10〉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41.1	54.8	4.2	100.0 (168)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41.5	55.4	3.1	100.0 (130)
유치원	39.5	52.6	7.9	100.0 (38)
χ^2 (df)		1.709(2)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40.0	57.3	2.7	100.0 (75)
민간어린이집	46.0	50.0	4.0	100.0 (50)
가정어린이집	20.0	80.0	0.0	100.0 (5)
국공립유치원	36.4	59.1	4.5	100.0 (22)
사립유치원	43.8	43.8	12.5	100.0 (16)
χ^2 (df)		5.604(8)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43.0	53.8	3.2	100.0 (93)
연장보육 미이용	37.8	59.5	2.7	100.0 (37)
방과후과정 이용	40.0	60.0	0.0	100.0 (30)
방과후과정 미이용	37.5	25.0	37.5	100.0 (8)
χ^2 (df)		24.794(6)***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보육 수요 미충족 사유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점이 주요하였으며, ‘장시간 보육의 기피’와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1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관의 운영 시각이 퇴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30.4%(1+2순위 54.7%), ‘기관의 운영시각이 출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26.9%(1+2순위 33.6%),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9.0%,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되어서’ 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관에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율을 기준으로 ‘기관의 운영시간이 퇴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54.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표 IV-1-11〉 수요 보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전체)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기관 운영시간이 출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26.9	33.6
기관 운영시간이 퇴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30.4	54.7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9.0	37.5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되어서	17.6	50.4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신뢰되지 않아서	1.0	10.7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신뢰되지 않아서	1.4	3.4
기관이 주말(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아서	3.0	8.1
기타	0.8	1.6
계(수)	100.0(506)	(506)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출근과 퇴근시각이 기관 운영시간과 맞지 않는 점이 각각 30.3%와 31.3%로 주된 이유로서 지목되었다(표 IV-1-12 참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자녀가 기관에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특히 0세아와 1세아 에서 각각 25.0%와 21.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시간 기관이용의 기피’는 자녀연령에 따라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용기관별로는 출·퇴근시각과의 불일치에 대한 우려는 유사한 응답율을 보이며, 해당 우려는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3 참조). 그 밖에도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연장보육에 비해 유치원 이용가구의 방과후과정에 대한 불신이 4.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12〉 수요 보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1순위 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구분	단위: %(명)									
	기관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관 운영시간이 퇴근시간과 맞지 않아서	기관 장시간 이용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신뢰가 안가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 신뢰가 안가서	기관이 주말(토)에 미운영	기타	계(수)	
전체	26.9	30.4	19.0	17.6	1.0	1.4	3.0	0.8	100.0	(506)
자녀연령										
0세	25.0	37.5	12.5	25.0	0.0	0.0	0.0	0.0	100.0	(8)
1세	25.5	31.9	21.3	21.3	0.0	0.0	0.0	0.0	100.0	(47)
2세	27.5	27.5	20.1	19.5	0.7	0.0	4.0	0.7	100.0	(149)
3세	25.0	36.8	16.2	17.6	2.9	1.5	0.0	0.0	100.0	(68)
4세	29.8	33.0	19.1	11.7	1.1	2.1	3.2	0.0	100.0	(94)
5세 이상	25.7	27.9	18.6	17.9	0.7	2.9	4.3	2.1	100.0	(140)
χ^2 (df)	24.847(35)									
자녀연령2										
영아	27.0	28.9	20.1	20.1	0.5	0.0	2.9	0.5	100.0	(204)
유아	26.8	31.5	18.2	15.9	1.3	2.3	3.0	1.0	100.0	(302)
χ^2 (df)	7.68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0.3	31.3	18.8	16.3	1.0	0.5	1.5	0.3	100.0	(393)
홀벌이 가구	15.9	27.1	18.7	22.4	0.9	4.7	8.4	1.9	100.0	(107)
모두 근로 안함	0.0	33.3	33.3	16.7	0.0	0.0	0.0	16.7	100.0	(6)
χ^2 (df)	57.537(14)***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표 IV-1-13〉 수요 보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1순위 응답): 2) 이용기관 특성

구분	단위: %(명)									
	기관 운영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아서	기관 운영시간이 퇴근시간과 맞지 않아서	기관 장시간 이용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신뢰가 안가서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신뢰가 안가서	기관이 주말(토)에 미운영	기타	계(수)	
전체	26.9	30.4	19.0	17.6	1.0	1.4	3.0	0.8	100.0	(506)
이용기관 유형										
어린이집	26.5	30.6	19.0	19.2	1.5	0.0	2.6	0.6	100.0	(343)
유치원	27.6	30.1	19.0	14.1	0.0	4.3	3.7	1.2	100.0	(163)
χ^2 (df)	19.815(7)**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30.5	33.5	18.3	14.6	1.8	0.0	1.2	0.0	100.0	(164)
연장보육 미이용	22.9	27.9	19.6	23.5	1.1	0.0	3.9	1.1	100.0	(179)
방과후과정 이용	33.7	34.7	13.7	11.6	0.0	2.1	4.2	0.0	100.0	(95)
방과후과정 미이용	19.1	23.5	26.5	17.6	0.0	7.4	2.9	2.9	100.0	(68)
χ^2 (df)	51.727(21)***									

주1: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다. 추가보육 수요

1) 주중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

보육 수요 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부족하게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추가보육이 필요한 시간대를 주중과 주말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질문하였다.

우선 주중 기준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와 오전 8시 이후 부터 8시 30분까지가 공히 23.7%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법정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도 25.2%로 조사되었다. 또한 16시 30분 부터 19시 까지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30%선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IV-1-14 참조). 또한 연장보육이 종료되는 19시 30분 이후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도 30.7%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법정 운영시간(7:30~19:30) 이후의 보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7시 30분 이전은 28.1%와 19시 30분 이후는 30.9%로 이를 합하면 59.6%에 달하였다(표 IV-1-1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돌봄 공백이 해소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유치원 방과 후과정의 운영시간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은 광범위한 수준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아자녀에서 두드러져 기관 이용만으로 보육 수요가 충족되는 못하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영아자녀에서 추가보육이 필요한 비율은 오전 7시 반 이전은 30.8%, 19시 30분 이후는 36.4%에 달하여, 어린이집에서 법정 운영시간을 준수한다고 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용기관별로는 오전 시간대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오후 시간대는 연장보육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간대가 16시 30분 이후로 약간 더 이른 경향이 있다(표 IV-1-15 참조). 그러나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에서 오후 18시 이후부터 18시 30분과 18시 이후부터 19시, 19시 이후 부터 19시 30분 까지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율은 각각 36.3%, 36.9%, 26.3%로 조사되어, 연장보육 운영시간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된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시간대에 걸친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기관의 법정 운영시간의 준수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부모 11와 같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으로 오전 7시 30분에 문을 여는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고충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부모 8과 같이 오전 등원과 오후 하원 시간대에 모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도 있는데, 이들 가구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등원과 하원 시에 모두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을 했고 내년 3월 복직 예정이에요. 내년에 복직하고 나면 둘 다 제가 어린이집에 보낸 다음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고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 아침에 7시 반부터 열어주는 어린이집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출근은 8시 반까진데 보통 8시에 출근을 해요 (부모 11)

(오전에) 절실히 필요한데 오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감도 있고 오전과 오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한 상황이라서 (중략) 제가 7시 40분에 아이를 맡기는 이유가 오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부모 8)

그 밖에도 부모 1의 경우와 같이 직업(연주가) 특성상 오후 늦은 시간대의 보육 수요가 존재하나, 해당 시간대에 대부분의 기관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연주를 하거나 입시생 레슨을 하게 되면 저녁 시간으로 빠져서 7시에 시작해서 9시, 10시 이렇게 끝날 때가 많은데 그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부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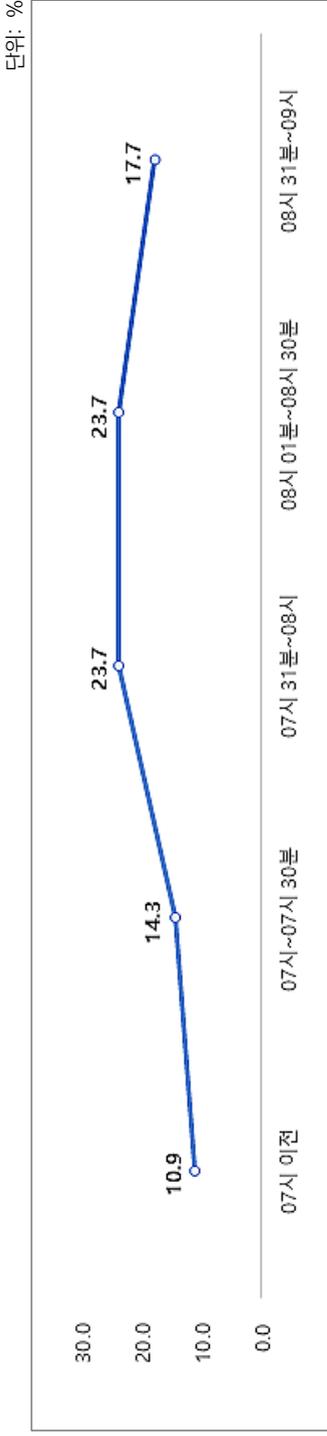
2) 주말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

주말 기준으로 추가보육 수요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법정 운영시간과 연동하여 돌봄 공백이 야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말의 법정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된 주중(월~금요일)보다 4시간이 짧은 8시간(7:00~15:30)이다(보건복지부, 2021a: 77). 이에 따라 주말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해당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 이전에 18.8%이고,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22.1%

로 높게 나타나며, 오후 4시 이전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은 20.3%로 나타나서 주말에 운영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표 IV-1-16 참조). 게다가 17시 이후 부터 18시 30분 까지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약 20~25%선으로 높게 나타나서 어린이집에서 법정 운영시간을 준수한다고 해도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은 온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자녀연령별로는 유아에 비해 영아 자녀에서 각 시간대별로 전반적으로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인 높은 경향을 보여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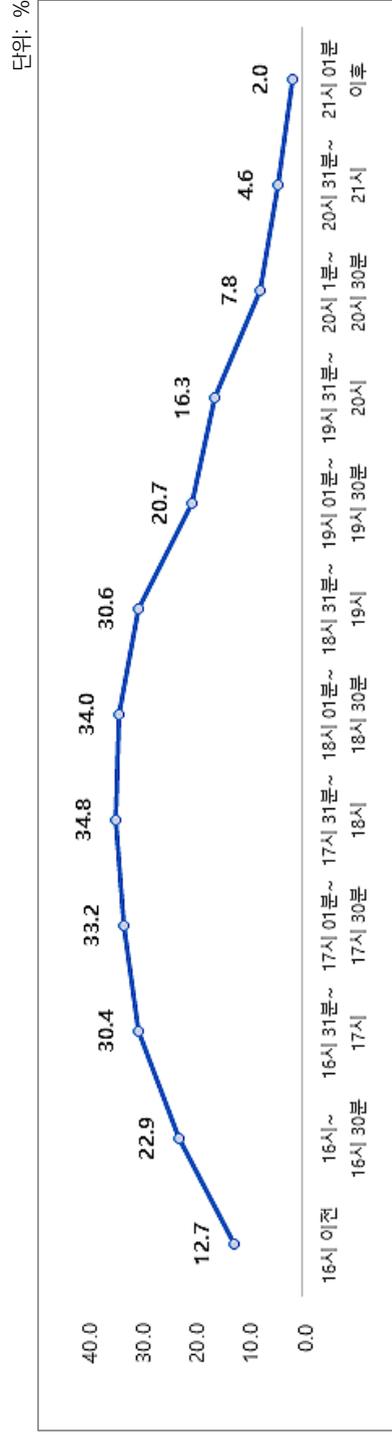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추가보육 수요가 각 시간대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유치원의 주말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전 7시 30분 부터 오전 9시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6시 이전부터 18시 30분 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주말보육 운영을 준수함은 물론, 법정 운영시간 이외 시간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1] 주중 오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그림 IV-1-2] 주중 오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1-14〉 주중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수	
	7시 이전	7시 ~ 7시 30분	7시 31분 ~ 8시	8시 1분~ 8시 30분	8시 31분 ~ 9시	16시 이전	16시 ~ 16시 30분	16시 31분 ~ 17시	17시 1분~ 17시 30분	17시 31분 ~ 18시	18시 1분~ 18시 30분	18시 31분 ~ 19시	19시 1분~ 19시 30분	19시 31분 ~ 20시	20시 1분~ 20시 30분	20시 31분 ~ 21시		21시 1분 이후
전체	10.9	14.3	23.7	23.7	17.7	12.7	22.9	30.4	33.2	34.8	34.0	30.6	20.7	16.3	7.8	4.6	2.0	(497)
자녀연령2																		
영아	13.1	17.7	25.8	27.8	18.7	10.1	20.7	27.3	29.8	31.3	33.8	34.3	18.7	16.7	9.1	7.6	3.0	(198)
유아	9.4	12.0	22.4	21.1	17.1	14.4	24.4	32.4	35.5	37.1	34.1	28.1	22.1	16.1	7.0	2.7	1.3	(29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2.6	15.5	25.0	24.5	17.5	11.3	20.1	27.8	31.4	35.3	36.1	32.0	21.1	17.3	7.7	4.1	1.8	(388)
홀벌이 가구	4.9	10.7	19.4	19.4	17.5	16.5	31.1	38.8	39.8	35.0	28.2	27.2	19.4	13.6	7.8	6.8	2.9	(103)
모두 근로 안함	0.0	0.0	16.7	50.0	33.3	33.3	66.7	50.0	33.3	0.0	0.0	0.0	16.7	0.0	16.7	0.0	0.0	(6)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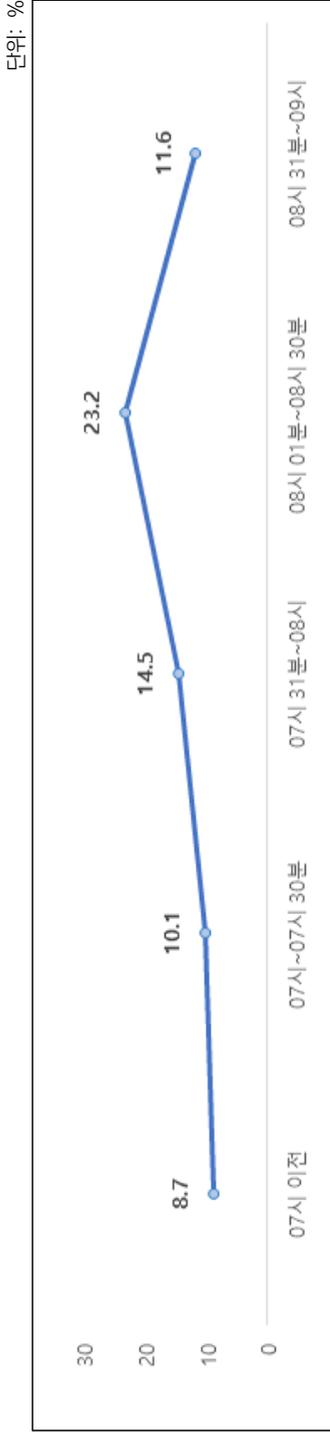
〈표 IV-1-15〉 주중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수		
	7시 이전	7시~7시 30분	8시~8시 30분	8시 31분~9시	8시 31분~9시	16시 이전	16시~16시 30분	16시 31분~17시	17시~17시 30분	17시 31분~18시	18시~18시 30분	18시 31분~19시	19시~19시 30분	19시 31분~20시	20시~20시 30분		20시 31분~21시	21시 이후
	진체	10.9	14.3	23.7	23.7	17.7	12.7	22.9	30.4	33.2	34.8	34.0	30.6	20.7	16.3		7.8	4.6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11.3	16.4	25.4	25.7	16.4	9.3	21.5	28.1	31.3	34.9	35.2	34.0	20.6	16.4	8.1	5.4	2.1	(335)
유치원	9.9	9.9	20.4	19.8	20.4	19.8	25.9	35.2	37.0	34.6	31.5	23.5	21.0	16.0	7.4	3.1	1.9	(162)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14.5	16.4	29.1	24.8	16.4	9.7	22.4	26.7	29.7	34.5	33.3	33.3	20.6	15.8	9.1	5.5	2.4	(165)
민간어린이집	8.2	15.7	20.9	23.1	15.7	10.4	19.4	29.1	32.1	33.6	35.1	35.1	17.2	14.9	6.0	3.0	0.7	(134)
가정어린이집	8.3	19.4	25.0	38.9	19.4	2.8	25.0	30.6	36.1	41.7	44.4	33.3	33.3	25.0	11.1	13.9	5.6	(36)
국공립유치원	9.5	11.1	20.6	20.6	20.6	20.6	15.9	27.0	25.4	27.0	33.3	27.0	25.4	20.6	9.5	3.2	1.6	(63)
사립유치원	10.1	9.1	20.2	19.2	20.2	19.2	32.3	40.4	44.4	39.4	30.3	21.2	18.2	13.1	6.1	3.0	2.0	(99)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6.9	16.9	36.3	25.6	16.9	6.9	10.6	13.1	20.6	28.8	36.3	36.9	26.3	21.9	10.0	7.5	2.5	(160)
연장보육 미이용	6.3	16.0	15.4	25.7	16.0	11.4	31.4	41.7	41.1	40.6	34.3	31.4	15.4	11.4	6.3	3.4	1.7	(175)
방과후과정 이용	10.6	14.9	26.6	26.6	24.5	14.9	20.2	30.9	35.1	29.8	29.8	23.4	25.5	17.0	9.6	3.2	2.1	(94)
방과후과정 미이용	8.8	2.9	11.8	10.3	14.7	26.5	33.8	41.2	39.7	41.2	33.8	23.5	14.7	14.7	4.4	2.9	1.5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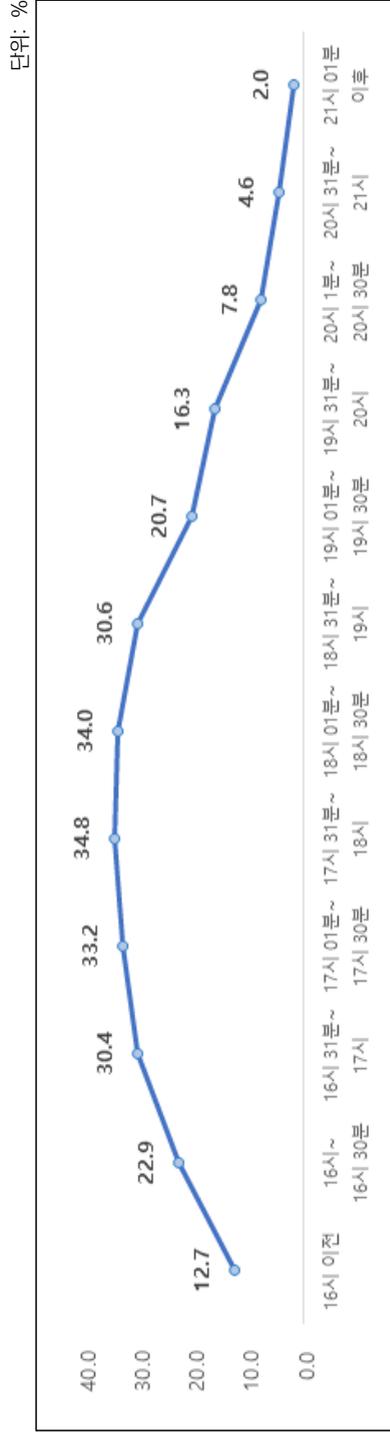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그림 IV-1-3] 주말 오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그림 IV-1-4] 주말 오후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1-16〉 주말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수						
	7시 이전	7시 7시 30분 ~8시	8시 1분~ 8시 30분	8시 31분 ~9시	16시 이전	16시~ 16시 30분	17시 1분~ 17시 30분	17시 31분 ~18시	18시 1분~ 18시 30분	18시 31분 ~19시	19시 1분~ 19시 30분	19시 31분 ~20시	20시 1분~ 20시 30분		20시 31분 ~21시	21시 1분 이후				
전체	8.7	10.1	14.5	23.2	11.6	20.3	24.6	18.8	20.3	24.6	24.6	24.6	15.9	14.5	14.5	13.0	5.8	2.9	(69)	
자녀연령																				
영아	5.3	13.2	18.4	23.7	21.1	15.8	31.6	21.1	26.3	34.2	34.2	34.2	21.1	23.7	15.8	13.2	7.9	2.6	(38)	
유아	12.9	6.5	9.7	22.6	0.0	25.8	16.1	16.1	12.9	12.9	12.9	12.9	9.7	3.2	12.9	12.9	3.2	3.2	(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0.2	11.9	13.6	22.0	11.9	20.3	22.0	16.9	18.6	22.0	20.3	20.3	11.9	10.2	10.2	11.9	6.8	3.4	(59)	
홀벌이 가구	0.0	0.0	20.0	30.0	10.0	20.0	40.0	30.0	30.0	40.0	50.0	40.0	40.0	40.0	40.0	20.0	0.0	0.0	(10)	
모두 근로 안함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 유형																				
어린이집	9.3	13.0	14.8	22.2	14.8	18.5	31.5	18.5	24.1	27.8	29.6	14.8	14.8	16.7	13.0	13.0	5.6	1.9	(54)	
유치원	6.7	0.0	13.3	26.7	0.0	26.7	0.0	20.0	6.7	13.3	6.7	20.0	20.0	6.7	20.0	13.3	6.7	6.7	(15)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라.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

가)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연장보육 이용 비율은 45.9%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는 맞벌이 가구 여부와 자녀수,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장보육 이용률은 맞벌이 가구에서 58.7%로 홑벌이 가구 17.6%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져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51.3%로 높고,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50% 선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0세와 1세 자녀를 둔 가구의 연장보육 이용률이 각각 52.9%와 53.3%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연장보육 실수요자임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에서 서비스를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57.6%(평균 3.66점, 5점 만점)로 절반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맞벌이 가구 여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수요층인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평균 3.64점으로 평균보다 낮아 이들 가구의 불만족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1-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5.9	(1,121)	1.0	5.6	35.8	41.8	15.8	100.0 (514)	3.66
자녀연령									
0세	52.9	(17)	0.0	11.1	33.3	44.4	11.1	100.0 (9)	3.56
1세	53.3	(152)	1.2	6.2	35.8	38.3	18.5	100.0 (81)	3.67
2세	42.1	(456)	1.0	7.3	40.6	34.9	16.1	100.0 (192)	3.58
3세	52.9	(172)	0.0	5.5	28.6	44.0	22.0	100.0 (91)	3.82
4세	44.5	(146)	1.5	1.5	38.5	47.7	10.8	100.0 (65)	3.65
5세 이상	42.7	(178)	1.3	3.9	30.3	55.3	9.2	100.0 (76)	3.67
$\chi^2(df)/F$	10.575(5)		20.730(20)						1.084

구분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녀수									
1명	41.3	(455)	0.5	6.9	37.2	43.1	12.2	100.0 (188)	3.60
2명	48.5	(551)	0.4	4.5	35.6	43.1	16.5	100.0 (267)	3.71
3명 이상	51.3	(115)	5.1	6.8	32.2	32.2	23.7	100.0 (59)	3.63
$\chi^2(df)/F$	6.650*(2)		18.661(8)*						1.0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8.7	(770)	0.9	5.3	37.6	41.6	14.6	100.0 (452)	3.64
홀벌이 가구	17.6	(336)	1.7	8.5	23.7	45.8	20.3	100.0 (59)	3.75
모두 근로 안함	20.0	(15)	0.0	0.0	0.0	0.0	100.0	100.0 (3)	5.00
$\chi^2(df)/F$	163.570****(2)		21.526(8)**						4.3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0	(12)	0.0	0.0	33.3	66.7	0.0	100.0 (3)	3.67
200~299만원	37.1	(70)	0.0	7.7	30.8	30.8	30.8	100.0 (26)	3.85
300~399만원	38.5	(200)	0.0	5.2	36.4	40.3	18.2	100.0 (77)	3.71
400~499만원	41.6	(250)	1.0	4.8	38.5	44.2	11.5	100.0 (104)	3.61
500~599만원	55.4	(186)	0.0	6.8	35.9	41.7	15.5	100.0 (103)	3.66
600~699만원	50.0	(158)	1.3	11.4	34.2	41.8	11.4	100.0 (79)	3.51
700~799만원	52.7	(93)	2.0	2.0	28.6	51.0	16.3	100.0 (49)	3.78
800만원 이상	48.0	(152)	2.7	1.4	39.7	37.0	19.2	100.0 (73)	3.68
$\chi^2(df)/F$	20.345**(7)		25.344(28)						0.798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률과 서비스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연장보육 이용 만족도가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1-18 참조).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별 연장보육 이용률은 전일제근로가구에서 4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근로 빈도가 높은 가구에서 평균 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여 이들 가구의 연장보육 수요도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표 IV-1-19 참조). 또한 연장보육의 서비스 만족도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18〉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5.9	(1,121)	1.0	5.6	35.8	41.8	15.8	100.0 (514)	3.66
이용기관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45.1	(377)	1.8	7.1	34.7	44.1	12.4	100.0 (170)	3.58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0.0	(58)	0.0	0.0	34.5	48.3	17.2	100.0 (29)	3.8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52.2	(46)	0.0	16.7	45.8	20.8	16.7	100.0 (24)	3.38
민간어린이집	44.9	(448)	0.5	5.0	37.8	42.3	14.4	100.0 (201)	3.65
가정어린이집	44.3	(140)	1.6	4.8	37.1	32.3	24.2	100.0 (62)	3.73
직장어린이집	57.1	(49)	0.0	0.0	17.9	57.1	25.0	100.0 (28)	4.07
협동어린이집	0.0	(3)	-	-	-	-	-	- -	-
$\chi^2(df)/F$	0.644(2)		6.639(8)						0.233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1-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5.9	(1,121)	1.0	5.6	35.8	41.8	15.8	100.0 (514)	3.66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46.8	(955)	0.9	6.0	36.0	42.7	14.3	100.0 (447)	3.64
전일제+시간제	45.2	(135)	1.6	3.3	36.1	37.7	21.3	100.0 (61)	3.74
시간제+시간제	18.8	(16)	0.0	0.0	33.3	33.3	33.3	100.0 (3)	4.00
$\chi^2(df)/F$	5.048(2)		3.974(8)						0.659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41.3	(334)	0.7	8.0	31.9	39.9	19.6	100.0 (138)	3.70
비정기적 주말근로	44.5	(418)	1.6	4.8	38.7	40.9	14.0	100.0 (186)	3.61
정기적 주말근로	55.1	(247)	0.7	3.7	39.7	44.9	11.0	100.0 (136)	3.62
매주 주말근로	47.7	(107)	0.0	7.8	27.5	45.1	19.6	100.0 (51)	3.76
$\chi^2(df)/F$	11.585(3)**		11.599(12)						0.676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주2: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p < .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연장보육 운영시간의 준수는 만족도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 15에 의하면 2세와 3세 자녀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는 19시에 하원 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없고, 실제로 19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부모 15는 이용기관과 같이 연장보육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흔치 않고, 부모 16과 같이 연장보육을 보육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서 7시까지 있기도 해요. 그런데 7시에 가도 다른 친구들도 있고 전혀 눈치를 안줘요. 진짜 늦을 때는 7시 반에도 가요. 한 번도 먼저 연락해서 언제 오냐고 한 적도 없어요. 다른 어린이집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같은 어린이집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부모 15)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가구에게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계속 그 쪽에서 지원해주면 아이도 익숙한 곳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눈치 보이게 하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장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니까... 눈치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 16)

다른 한편으로 연장보육 수요는 부모의 양육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17과 부모 18은 맞벌이 가구로서 연장보육의 실수요자이나, 부모 17의 경우는 장시간보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연장보육을 이용할 의향이 없으므로 기본보육 이후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희망하나, 반면에 부모 18의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보다는 연장보육을 보다 선호하였다. 해당 사유로는 기관에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도 언급되는데,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비용지원 소득기준의 적정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가구에게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이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부모한테는 편한데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하루 종일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는 좀 많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략) (영아는 기본보육만 하고 이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은) 좋은 것 같아요 (부모 17)

(아이돌봄서비스와 연장보육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연장보육이요. 무상으로 연장보육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안심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어린이집에 연장해서 있으면 낮에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데, 아이는 또 너무 시간이 길어서 지루할 수 있죠. 다른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나서 다른 활동을 하면 환기되는 측면도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장보육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눈치가 보여서 어린이집에 길게 맡기지 못하겠어요. 민간이나 사립은 일찍 하원하는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이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첫째 때는 사립에 맡겼거든요. 아이 입학식이나 등원할 때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등원해서 5~6시간씩 있으니까... 다른 집들은 다 30분 있다가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기관 외에 다른 선생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 18)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 중에서 해당 서비스가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된 사유로는 연장보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점(15사례)과 이른 하원을 종용하는 등 연장보육의 실제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12사례)가 지목되었다. 이외에도 간식 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점과 아이가 원치 않아서 등이 언급되었다.

〈표 IV-1-20〉 어린이집 연장보육 불만족내용(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수)
서비스의 질이 낮음/제대로 된 케어 부재/프로그램 내용 미흡	(15)
짧은 이용시간/일찍 하원할 것을 종용/보육교사에게 눈치가 보임	(12)
아이가 싫어함	(2)
간식/식사를 챙겨주지 않음	(2)
통합보육을 함	(1)
보육교사의 친절성 부재	(1)
전체	(29)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앞서 언급되었던 기관에 눈치가 보이거나 홀로 남겨진 자녀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부모 14는 연장반교사에 대한 실망감, 간식이 제공되지 않는 점 등 연장보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연장보육을 더 이상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단호하게 피력하였다.

저는 큰 아이 때 연장보육을 했었는데 연장보육에 있어서 너무 제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와서 썼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정보를 잘 몰랐어요. 제가 버는 돈을 다 쓰더라도... 그래서 연장보육은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중략) (연장반) 전담 선생님도 약간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 (중략) 제가 그 때 5시경에 데리러 갔었어요. 청소기로 저희 아이를 “저리 가 있으라니까!” 하시더라고요. 4시 반 정도에 원장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시간에 무슨 간식이냐고 했어요.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아예 종일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제 지인한테 보내면 보냈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 14)

나) 연장보육 미이용 사유

어린이집 연장보육 미이용가구의 해당 사유로는 연장보육이 불필요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시간보육에 대한 우려와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각각 21.1%와 20.9%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률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각각 25.2%와 26.7%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이들 이유는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21〉 어린이집 연장보육 미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 불필요	필요 하나 이용 자격 안됨	이용자격 있으나 서비스 신뢰 못함	이용자격 있으나 장시간 보육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봐	이용자격 있으나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연장반 미운영	신청했으나 들어 가지 못해서	연장보육 운영 되나 근로 시간과 맞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35.7	7.2	6.3	21.1	20.9	4.9	1.3	1.3	1.2		100.0 (607)	
자녀연령												
영아	33.5	6.7	7.9	21.6	21.3	4.7	1.5	1.5	1.5		100.0 (343)	
유아	38.6	8.0	4.2	20.5	20.5	5.3	1.1	1.1	0.8		100.0 (264)	
$\chi^2(df)$				5.81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3.0	5.3	7.2	25.2	26.7	7.9	0.9	2.2	1.6		100.0 (318)	
홀벌이 가구	49.5	9.7	5.1	16.6	14.4	1.8	1.8	0.4	0.7		100.0 (277)	
모두 근로 안함	58.3	0.0	8.3	16.7	16.7	0.0	0.0	0.0	0.0		100.0 (12)	
$\chi^2(df)$				70.545(16)***								

구분	연장 보육 불필요	필요 하나 이용 자격 안됨	이용자격 있으나 서비스 신뢰 못함	이용자격 있으나 장시간 보육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봐	이용자격 있으나 아이가 홀로 남겨질 까봐	연장반 미운영	신청 했으나 들어 가지 못해서	연장 보육 운영 되나 근로 시간과 맞지 않아서	기타	계(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6.7	11.1	0.0	0.0	11.1	0.0	0.0	11.1	0.0	100.0(9)
200~299만원	54.5	6.8	2.3	25.0	6.8	2.3	2.3	0.0	0.0	100.0(44)
300~399만원	37.4	7.3	7.3	21.1	20.3	1.6	2.4	0.8	1.6	100.0(123)
400~499만원	39.7	10.3	6.2	18.5	21.2	2.1	0.0	1.4	0.7	100.0(146)
500~599만원	27.7	7.2	7.2	21.7	21.7	8.4	2.4	0.0	3.6	100.0(83)
600~699만원	34.2	5.1	8.9	21.5	21.5	5.1	1.3	1.3	1.3	100.0(79)
700~799만원	27.3	2.3	2.3	27.3	36.4	2.3	0.0	2.3	0.0	100.0(44)
800만원 이상	26.6	6.3	6.3	21.5	20.3	15.2	1.3	2.5	0.0	100.0(79)
$\chi^2(df)$										80.318(56)*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2)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에서 연장보육 이후 즉, 19시 30분 부터 24시 까지 운영 되는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21.6%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2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0세아와 1세아를 둔 가구에서 각각 29.4%와 2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표 IV-1-22〉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야간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1.6	(1,121)	-	7.4	42.1	39.7	10.7	100,0 (242)	3.54
자녀연령1									
0세	29.4	(17)	-	0.0	80.0	20.0	0.0	100,0 (5)	3.20
1세	25.0	(152)	-	5.3	39.5	36.8	18.4	100,0 (38)	3.68
2세	20.6	(456)	-	9.6	51.1	33.0	6.4	100,0 (94)	3.36
3세	19.2	(172)	-	3.0	36.4	48.5	12.1	100,0 (33)	3.70
4세	26.0	(146)	-	5.3	39.5	36.8	18.4	100,0 (38)	3.68
5세 이상	19.1	(178)	-	11.8	23.5	58.8	5.9	100,0 (34)	3.59
χ^2 (df)/F	4.852(5)		22.478(15)						2.005
자녀연령2									
영아	21.9	(625)	-	8.0	48.9	33.6	9.5	100,0 (137)	3.45
유아	21.2	(496)	-	6.7	33.3	47.6	12.4	100,0 (105)	3.66
χ^2 (df)/t	0.092(1)		6.986(3)						-2.098*
자녀수									
1명	16.9	(455)	-	7.8	40.3	44.2	7.8	100,0 (77)	3.52
2명	24.1	(551)	-	6.8	45.1	37.6	10.5	100,0 (133)	3.52
3명 이상	27.8	(115)	-	9.4	34.4	37.5	18.8	100,0 (32)	3.66
χ^2 (df)/F	10.610(2)**		4.169(6)						0.4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6.6	(770)	-	7.3	43.4	38.5	10.7	100,0 (205)	3.53
홀벌이 가구	11.0	(336)	-	8.1	35.1	45.9	10.8	100,0 (37)	3.59
모두 근로 안함	0.0	(15)	-	-	-	-	-	- -	-
χ^2 (df)/F	37.866(2)***		0.970(3)						0.233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야간연장보육에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50.4% (평균 3.54점)로 연장보육과 유사한 수준이나,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질 제고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V-1-23〉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연장 야간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1.6	(1,121)	-	7.4	42.1	39.7	10.7	100,0(242)	3.54
이용기관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23.6	(377)	-	12.4	36.0	38.2	13.5	100,0(89)	3.5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1.0	(58)	-	0.0	72.2	16.7	11.1	100,0(18)	3.39
법인단체등어린이집	28.3	(46)	-	7.7	69.2	7.7	15.4	100,0(13)	3.31
민간어린이집	21.0	(448)	-	6.4	37.2	45.7	10.6	100,0(94)	3.61
가정어린이집	10.0	(140)	-	0.0	50.0	50.0	0.0	100,0(14)	3.50
직장어린이집	28.6	(49)	-	0.0	42.9	57.1	0.0	100,0(14)	3.57
협동어린이집	0.0	(3)	-	-	-	-	-	-	-
$\chi^2(df)/F$	15.177(2)**				6.458(6)				0.597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p <.01

설립유형별로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야간연장보육 이용률이 10.0%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들 가구의 하위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표 IV-1-23 참조).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로는 전일제근로 가구와 주말근로 가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에서 연장보육 이후 시간대의 보육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IV-1-24 참조).

〈표 IV-1-24〉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경험 및 만족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야간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1.6	(1,121)	-	7.4	42.1	39.7	10.7	100,0(242)	3.54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1.5	(955)	-	6.8	42.9	40.5	9.8	100,0(205)	3.53
전일제+시간제	25.9	(135)	-	11.4	37.1	37.1	14.3	100,0(35)	3.54
시간제+시간제	12.5	(16)	-	0.0	50.0	0.0	50.0	100,0(2)	4.00
$\chi^2(df)/F$	2.212(2)				5.615(6)				0.352

구분	어린이집 야간 연장보육 이용 여부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12.9	(334)	-	9.3	39.5	34.9	16.3	100,0(43)	3.58
비정기적 주말근로	23.4	(418)	-	9.2	41.8	36.7	12.2	100,0(98)	3.52
정기적 주말근로	29.1	(247)	-	4.2	47.2	44.4	4.2	100,0(72)	3.49
매주 주말근로	27.1	(107)	-	6.9	34.5	44.8	13.8	100,0(29)	3.66
$\chi^2(df)/F$	25.791(3)***		8.217(9)						0.378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 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 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 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주2: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부모 19와 같이 부모가 모두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는 24시간 보육이 요구되나,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도 제약이 있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은 어린이집 이용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아이 출산하고 교대니까 24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맡기고 새벽에도 찾으러 가고 새벽 5-6시에도 맡기고 밤 12시에 데리러 가고 할 수 있는 24시간이 (거주지 인근)에 있어요. (중략)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가서 맡기고, 밤 12시에 꿈나라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차 태우고 와서 또 재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야간이니까 저희는 아침에 자야 되는데 아이랑 또 놀아줄 수 없으니까...그렇게 버티다가 둘째를 가져서 바로 이어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쓰자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모집을 했어요. 저는 회사가 교대근무니까 회사 내에서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교대를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어린이집과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걸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 밖에 없는 거죠. (중략) (교대) 1주일 썩 바뀌어요. 3교대인데 일반 사람들은 월~금 일 하고 토~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월~일요일 까지 일하고 월~화요일을 쉬는 거예요 (부모 19)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가구 중에서 서비스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서비스 질이 낮다'는 점과 '이른 하원을 종용'하는 점이 주요하였다. 그 밖에는 '급·간식에 대한 불만'과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표 IV-1-25〉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불만족내용(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수)
아이에 대한 관심/정성이 적음/서비스의 질이 낮음/제대로 된 케어 부재/프로그램 미흡	(8)
짧은 이용시간/일찍 하원할 것을 중용/보육교사에게 눈치가 보임	(6)
간식/식사를 챙겨주지 않음	(2)
보육교사 부족	(1)
혼자 남아 있을 시 아이가 불안해 함	(1)
긴급 이용 시 신청이 어려움	(1)
학원 이용 시 귀원 안됨	(1)
원장이 종일반을 선호하지 않음	(1)
전체	(1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

가)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유치원 이용가구의 방과후과정 이용 비율은 60.2%로 어린이집(45.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해당 비율이 6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연령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 중에서 해당 서비스를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53.6%(평균 3.57점, 5점 만점)로 어린이집(57.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1-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구분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60.2	(502)	-	6.0	40.4	44.7	8.9	100.0 (302)	3.57
자녀연령									
3세	55.7	(61)	-	5.9	41.2	44.1	8.8	100.0 (34)	3.56
4세	59.6	(109)	-	4.6	41.5	49.2	4.6	100.0 (65)	3.54
5세 이상	61.1	(332)	-	6.4	39.9	43.3	10.3	100.0 (203)	3.58
$\chi^2(df)/F$	0.645(2)		2.495(6)						0.066

단위: %(명), 점

구분	유치원 방과 후과정 이용 여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8.9	(322)	-	6.3	40.1	46.4	7.2	100.0 (222)	3.55
홀벌이 가구	43.8	(169)	-	5.4	43.2	39.2	12.2	100.0 (74)	3.58
모두 근로 안함	54.5	(11)	-	0.0	16.7	50.0	33.3	100.0 (6)	4.17
$\chi^2(df)/F$	29.413(2)***		7.712(6)						2.10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0.0	(5)	-	0.0	0.0	66.7	33.3	100.0 (3)	4.33
200~299만원	44.4	(27)	-	0.0	50.0	41.7	8.3	100.0 (12)	3.58
300~399만원	53.7	(67)	-	2.8	50.0	30.6	16.7	100.0 (36)	3.61
400~499만원	60.0	(105)	-	12.7	38.1	42.9	6.3	100.0 (63)	3.43
500~599만원	64.2	(95)	-	1.6	36.1	50.8	11.5	100.0 (61)	3.72
600~699만원	52.4	(63)	-	9.1	36.4	48.5	6.1	100.0 (33)	3.52
700~799만원	65.3	(49)	-	9.4	56.3	31.3	3.1	100.0 (32)	3.28
800만원 이상	68.1	(91)	-	3.2	35.5	53.2	8.1	100.0 (62)	3.66
$\chi^2(df)/F$	9.134(7)		27.144(21)						2.080*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유치원 설립유형별로는 방과후과정의 이용 비율과 만족도 모두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별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어린이집이 보육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인식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1-2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유치원 방과 후과정 이용 여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60.2	(502)	-	6.0	40.4	44.7	8.9	100.0 (302)	3.57
이용기관 유형									
국공립유치원	62.8	(180)	-	3.5	34.5	53.1	8.8	100.0 (113)	3.67
사립유치원	58.7	(322)	-	7.4	43.9	39.7	9.0	100.0 (189)	3.50
$\chi^2(df)/t$	0.803(1)		6.171(3)						1.944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1-28〉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및 만족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이용함 비율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60.2	(502)	-	6.0	40.4	44.7	8.9	100.0 (302)	3.57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9.0	(415)	-	6.1	40.0	44.5	9.4	100.0 (245)	3.57
전일제+시간제	67.6	(71)	-	6.3	45.8	43.8	4.2	100.0 (48)	3.46
시간제+시간제	60.0	(5)	-	0.0	33.3	66.7	0.0	100.0 (3)	3.67
$\chi^2(df)/F$	1.860(2)		2.449(6)						0.510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55.6	(151)	-	1.2	39.3	48.8	10.7	100.0 (84)	3.69
비정기적 주말근로	60.0	(205)	-	6.5	44.7	43.1	5.7	100.0 (123)	3.48
정기적 주말근로	67.7	(99)	-	10.4	32.8	46.3	10.4	100.0 (67)	3.57
매주 주말근로	61.1	(36)	-	9.1	50.0	31.8	9.1	100.0 (22)	3.41
$\chi^2(df)/F$	3.644(3)		10.962(9)						1.691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주2: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다른 한편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 중에서 서비스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 미흡 등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11사례)이 주요하였으며, 그 밖에도 높은 비용과 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1-29〉 유치원 방과후과정 불만족내용

단위: (명)

구분	(수)
교육 프로그램 미흡/서비스의 질이 낮음/제대로 된 케어 부재/맞춤형 학습 부재/아이에 대한 관심/정성이 적음	(11)
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	(4)
비싼 비용	(3)
아이가 싫어함	(1)
특교자 등원 시 방과후과정 이용이 어려움	(1)
전체	(1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나)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과후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시간 기관 이용'과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각각 18.0%와 16.5%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어린이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어린이집 해당 응답률: 21.1%, 20.9%). 근로시간에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그쳤으며,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도 3.0%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당초 근로시간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IV-1-30〉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이용사격이용사격 이용									계(수)
	불필요 해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서비스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장시간 이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용 되나, 되나, 자격은 되나, 홀로 남겨질 까봐 우려	방과후 과정이 운영 되지 않아서	신청 했으나 방과후 돌봄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나, 근로시간 과 맞지 않아서	기타	
전체	27.5	15.0	9.0	18.0	16.5	7.5	3.0	1.5	2.0	100.0(200)
자녀연령										
3세	29.6	11.1	0.0	18.5	22.2	11.1	0.0	3.7	3.7	100.0(27)
4세	22.7	18.2	4.5	15.9	22.7	6.8	6.8	2.3	0.0	100.0(44)
5세 이상	28.7	14.7	12.4	18.6	13.2	7.0	2.3	0.8	2.3	100.0(129)
$\chi^2(df)$	15.209(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6.0	11.0	10.0	18.0	21.0	6.0	4.0	3.0	1.0	100.0(100)
홀벌이 가구	29.5	20.0	8.4	15.8	11.6	9.5	2.1	0.0	3.2	100.0(95)
모두 근로 안함	20.0	0.0	0.0	60.0	20.0	0.0	0.0	0.0	0.0	100.0(5)
$\chi^2(df)$	18.274(1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2)
200~299만원	13.3	33.3	20.0	13.3	0.0	13.3	6.7	0.0	0.0	100.0(15)
300~399만원	32.3	22.6	9.7	9.7	9.7	9.7	6.5	0.0	0.0	100.0(31)
400~499만원	38.1	19.0	2.4	14.3	16.7	4.8	0.0	2.4	2.4	100.0(42)
500~599만원	20.6	8.8	8.8	11.8	23.5	8.8	2.9	5.9	8.8	100.0(34)
600~699만원	23.3	13.3	6.7	30.0	16.7	10.0	0.0	0.0	0.0	100.0(30)
700~799만원	29.4	11.8	0.0	23.5	23.5	5.9	5.9	0.0	0.0	100.0(17)
800만원 이상	27.6	3.4	20.7	20.7	20.7	3.4	3.4	0.0	0.0	100.0(29)
$\chi^2(df)$	65.880(56)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이하 <표 IV-1-31>과 <표 IV-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는 설립유형이나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31>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불필요 해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 자격은 되나, 서비스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 자격은 되나, 장시간 이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용자 격은 되나, 출로 남겨질 까봐 우려	방과 후과 정이 운영 되지 않아 서	신청 했으나 방과후 돌봄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나, 근로시간 과 맞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27.5	15.0	9.0	18.0	16.5	7.5	3.0	1.5	2.0	100.0(200)
이용기관 유형										
국공립유치원	23.9	19.4	7.5	22.4	16.4	3.0	1.5	1.5	4.5	100.0(67)
사립유치원	29.3	12.8	9.8	15.8	16.5	9.8	3.8	1.5	0.8	100.0(133)
χ^2 (df)	9.719(8)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1-32>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 사유: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불필요 해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 자격은 되나, 서비스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 자격은 되나, 장시간 이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용 자격은 되나, 출로 남겨질 까봐 우려	방과후 과정이 운영 되지 않아서	신청 했으나 방과후 돌봄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나, 근로시간 과 맞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27.5	15.0	9.0	18.0	16.5	7.5	3.0	1.5	2.0	100.0 (200)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7.6	15.3	9.4	17.1	16.5	7.6	2.9	1.2	2.4	100.0 (170)
전일제+시간제	30.4	13.0	8.7	13.0	17.4	8.7	4.3	4.3	0.0	100.0 (23)
시간제+시간제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2)
χ^2 (df)	6.617(16)									

구분	불필요 해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 자격은 되나, 서비스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 자격은 되나, 장시간 이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용 자격은 되나, 홀로 남겨질 까봐 우려	방과후 과정이 운영 되지 않아서	신청 했으나 방과후 돌봄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나, 근로시간 과 맞지 않아서	기타	계(수)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인함	41.8	10.4	7.5	16.4	13.4	7.5	1.5	1.5	0.0	100.0 (67)
비정기적 주말근로	22.0	19.5	8.5	17.1	15.9	8.5	4.9	1.2	2.4	100.0 (82)
정기적 주말근로	15.6	15.6	15.6	15.6	18.8	9.4	0.0	3.1	6.3	100.0 (32)
매주 주말근로	21.4	14.3	7.1	21.4	28.6	0.0	7.1	0.0	0.0	100.0 (14)
χ^2 (df)										23.047(24)

주: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마. 자녀돌봄의 공백 실태

1) 자녀돌봄의 공백 여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돌봄의 공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연령별로는 영아자녀 특히 0세아와 1세아이를 둔 가구에서 각각 64.7%와 64.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서 해당 응답률은 65.7%로 홀벌이 가구에 비해 약 20%p가 높았으며, 자녀가 2명일 때 그리고 둘째 자녀의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밖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전체	59.2	40.8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64.7	35.3	100.0 (17)
1세	64.5	35.5	100.0 (152)
2세	61.6	38.4	100.0 (456)
3세	63.1	36.9	100.0 (233)
4세	61.2	38.8	100.0 (255)
5세 이상	52.5	47.5	100.0 (510)
$\chi^2(df)$	14.285(5)*		
자녀연령2			
영아	62.4	37.6	100.0 (625)
유아	57.2	42.8	100.0 (998)
$\chi^2(df)$	4.279(1)*		
자녀수			
1명	55.8	44.2	100.0 (636)
2명	63.3	36.7	100.0 (839)
3명 이상	50.7	49.3	100.0 (148)
$\chi^2(df)$	13.27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5.7	34.3	100.0 (1,092)
홀벌이 가구	45.9	54.1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46.2	53.8	100.0 (26)
$\chi^2(df)$	57.459(2)***		
출생순위			
첫째	57.5	42.5	100.0 (775)
둘째	62.4	37.6	100.0 (739)
셋째 이상	49.5	50.5	100.0 (109)
$\chi^2(df)$	8.183(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2.9	47.1	100.0 (17)
200~299만원	54.6	45.4	100.0 (97)
300~399만원	53.6	46.4	100.0 (267)
400~499만원	55.8	44.2	100.0 (355)
500~599만원	61.6	38.4	100.0 (281)
600~699만원	65.2	34.8	100.0 (221)
700~799만원	63.4	36.6	100.0 (142)
800만원 이상	62.1	37.9	100.0 (243)
$\chi^2(df)$	12.152(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이용기관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장보육 및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들 가구의 보육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우려된다(표 IV-1-34 참조).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전일제+시간제 근로가구에서 69.9%로 높고,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1-35 참조). 이는 비전형적인 근로 시간에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가구와 주말근로 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에 직면할 우려가 높음을 암시한다. 부모 10은 주말에 기관이 운영하지 않아서 조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상황이므로 해당 돌봄 공백 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긴급보육 상황으로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돌봄 공백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교대제 근무자여서 야간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부모 11), 집중 업무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부모 12),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 15), 아이가 아파서 기관에 보내기 힘든 경우(부모 16)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직업적 특성상(간호사) 교대제 근무가 요구되는 부모 11은 야간근로 시 자녀돌봄 공백에의 우려로 인해 불리한 고용상 지위를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때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병행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주말에 출근을 하는데 보통은 둘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보려고 해서, 따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할 생각이 없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다리에 김스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활용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 저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고 결국 저희 조부모님이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제도를 활용 할 의사가 있어요 (부모 10)

(간호사 이나) 야간근무는 안 해요. 저는 외래 담당여서 야간이 없는 거고 3교대 하는 병동은 있어요. 병동은 정규직만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하면 3교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예 아이를 봐줄 수가 없어요 (중략) 3교대 간호사는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돌보미가 적어도 8시간, 9시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제 월급은 다 아이돌보미에게 들어가야 해서 비용이 부담돼요. 관에 지원해주는 30~40만

원만큼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쓸 수 있도록 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 11)

(긴급돌봄 상황)이 있어요, 저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언제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비밀비재할 것 같아요. 남편의 업무에서 그런 문제가 한 번 생겨버리면 속수무책이죠 (부모 12)

제가 아플 때... 신랑이 주말에 일 나가고 제가 주말에 일을 안 해도 제가 아픈 데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좀 어렵고... 아니면 저도 일을 가서 2박 3일 출장을 가야 하는 데 신랑도 정시 퇴근이 아니라 늦은 퇴근일 때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이라고 해도 6시 반, 길어야 7시인데 신랑이 늦게 퇴근했을 때, 1~2시간 공백이 생겨 힘들어요 (부모 15)

아이가 아플 때 갑자기 아프게 되면 한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다른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케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예 둘다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 16)

〈표 IV-1-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전체	59.2	40.8	100.0 (1,623)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59.8	40.2	100.0 (1,121)
유치원	58.0	42.0	100.0 (502)
$\chi^2(df)$	0.465(1)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60.6	39.4	100.0 (533)
민간어린이집	59.2	40.8	100.0 (448)
가정어린이집	58.6	41.4	100.0 (140)
국공립유치원	62.8	37.2	100.0 (180)
사립유치원	55.3	44.7	100.0 (322)
$\chi^2(df)$	3.459(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71.2	28.8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50.1	49.9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64.6	35.4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48.0	52.0	100.0 (200)
$\chi^2(df)$	65.565(3)***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표 IV-1-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전체	59.2	40.8	100.0 (1,623)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8.1	41.9	100.0 (1,370)
전일제+시간제	69.9	30.1	100.0 (206)
시간제+시간제	42.9	57.1	100.0 (21)
χ^2 (df)	12.765(2)**		
주말근로 여부			
주말근로 안함	49.1	50.9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61.8	38.2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67.1	32.9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65.7	34.3	100.0 (143)
χ^2 (df)	33.722(3)***		

주: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2) 긴급보육 발생 빈도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에서 해당 빈도는 한 달에 1회 정도 28.6%, 한 달에 2~3회 이상 24.9%, 두 달에 1회 이하 22.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연 3회 이하	두 달에 1회 이하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3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계(수)
전체	16.8	22.5	28.6	24.9	7.3	100.0 (9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4.4	21.9	29.6	26.5	7.7	100.0 (717)
홀벌이 가구	24.1	24.6	26.3	19.4	5.6	100.0 (232)
모두 근로 안함	16.7	16.7	16.7	33.3	16.7	100.0 (12)
χ^2 (df)	18.397(8)*					

구분	연	두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주일에	계(수)
	3회 이하	1회 이하	1회 정도	2~3회 이상	1회 이상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2	11.1	0.0	33.3	33.3	100.0 (9)
200~299만원	20.8	30.2	15.1	26.4	7.5	100.0 (53)
300~399만원	22.4	30.8	25.2	15.4	6.3	100.0 (143)
400~499만원	16.2	23.7	29.3	24.7	6.1	100.0 (198)
500~599만원	11.0	19.1	31.2	33.5	5.2	100.0 (173)
600~699만원	17.4	21.5	29.9	25.7	5.6	100.0 (144)
700~799만원	21.1	15.6	31.1	25.6	6.7	100.0 (90)
800만원 이상	13.9	19.9	31.8	21.9	12.6	100.0 (151)
$\chi^2(df)$	53.967(28)**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긴급보육 수요는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한 달에 2~3회 이상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6.5%와 7.7%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가구와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와 12.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긴급보육의 발생 빈도는 이용기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앞서 자녀 돌봄 공백의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

〈표 IV-1-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연	두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주일에	계(수)
	3회 이하	1회 이하	1회 정도	2~3회 이상	1회 이상	
전체	16.8	22.5	28.6	24.9	7.3	100.0 (961)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17.9	24.0	27.6	23.0	7.5	100.0 (670)
유치원	14.1	18.9	30.9	29.2	6.9	100.0 (291)
$\chi^2(df)$	8.180(4)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16.1	24.5	27.2	22.3	9.9	100.0 (323)
민간어린이집	19.2	22.6	29.1	23.8	5.3	100.0 (265)
가정어린이집	20.7	26.8	24.4	23.2	4.9	100.0 (82)
국공립유치원	16.8	20.4	31.0	27.4	4.4	100.0 (113)
사립유치원	12.4	18.0	30.9	30.3	8.4	100.0 (178)
$\chi^2(df)$	18.537(16)					

구분	연	두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주일에	계(수)
	3회 이하	1회 이하	1회 정도	2~3회 이상	1회 이상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5.3	27.3	27.9	21.9	7.7	100.0 (366)
연장보육 미이용	21.1	20.1	27.3	24.3	7.2	100.0 (304)
방과후과정 이용	11.3	20.0	32.8	28.7	7.2	100.0 (195)
방과후과정 미이용	19.8	16.7	27.1	30.2	6.3	100.0 (96)
χ^2 (df)	19.792(12)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 중에서 주말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말근로는 하는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긴급보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 달에 2~3회 이상 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는 26.7%, 1주일에 1회 이상 매주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는 9.6%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3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연	두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주일에	계(수)
	3회 이하	1회 이하	1회 정도	2~3회 이상	1회 이상	
전체	16.8	22.5	28.6	24.9	7.3	100.0 (961)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17.5	22.7	28.6	24.0	7.2	100.0 (796)
전일제+시간제	13.9	21.5	29.9	27.8	6.9	100.0 (144)
시간제+시간제	0.0	22.2	22.2	44.4	11.1	100.0 (9)
χ^2 (df)	5.061(8)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22.3	18.9	28.6	25.2	5.0	100.0 (238)
비정기적 주말근로	17.4	23.6	29.9	23.6	5.5	100.0 (385)
정기적 주말근로	9.9	24.6	27.6	26.7	11.2	100.0 (232)
매주 주말근로	17.0	22.3	27.7	23.4	9.6	100.0 (94)
χ^2 (df)	23.008(12)*					

주: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3) 자녀돌봄의 공백 상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자녀가 아플 때’ 46.9%,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한 경우’ 41.7%, ‘직장에서 연장근로 해야 할 때’ 39.2%,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 36.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기관이 문을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24.2%)와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24.0%) 등이 지목되었다.

〈표 IV-1-3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이 문을 열기 이전에 출근해야 할 때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이용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전체	46.9	39.2	24.2	24.0	41.7	36.0	5.1	0.8	(1,623)
자녀연령1									
0세	29.4	23.5	35.3	41.2	11.8	5.9	5.9	0.0	(17)
1세	56.6	46.7	30.3	23.7	42.8	27.6	7.2	0.0	(152)
2세	50.9	38.8	24.1	23.9	41.0	38.4	4.2	1.1	(456)
3세	48.9	41.6	23.2	22.7	47.6	33.0	4.7	0.9	(233)
4세	39.2	37.6	26.7	27.8	40.4	36.1	5.9	0.8	(255)
5세 이상	43.9	37.6	21.4	22.4	41.0	38.8	4.9	0.8	(510)
$\chi^2(df)$				68.607(40)**					
자녀연령2									
영아	51.7	40.3	25.9	24.3	40.6	34.9	5.0	0.8	(625)
유아	43.9	38.6	23.1	23.8	42.4	36.8	5.1	0.8	(998)
$\chi^2(df)$				12.615(8)					
자녀수									
1명	43.1	41.4	25.0	25.9	36.9	34.4	4.6	0.6	(636)
2명	47.9	38.1	23.0	23.4	45.2	37.2	5.8	0.7	(839)
3명 이상	57.4	36.5	27.7	19.6	42.6	36.5	2.7	2.0	(148)
$\chi^2(df)$				35.229(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0.5	47.8	28.6	26.3	43.2	27.7	5.5	0.7	(1,092)
홀벌이 가구	40.2	22.4	15.6	19.8	40.0	52.9	4.4	0.8	(505)

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 에서 연장 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이 문 열기 이전에 출근 해야 할 때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 해야 할 때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 기관이 휴원 할 때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 거나 병원 진료가 있을 때	이용 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모두 근로 안함	26.9	7.7	7.7	11.5	11.5	61.5	0.0	3.8	(26)
χ^2 (df)				288.565(16)***					
출생순위									
첫째	43.2	40.5	25.3	26.6	37.2	34.8	4.3	0.8	(775)
둘째	48.6	38.0	23.1	22.5	46.1	37.2	6.1	0.8	(739)
셋째 이상	61.5	38.5	23.9	16.5	44.0	36.7	3.7	0.9	(109)
χ^2 (df)				40.324(1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8.8	23.5	17.6	29.4	29.4	35.3	0.0	0.0	(17)
200~299만원	44.3	34.0	20.6	21.6	29.9	44.3	5.2	1.0	(97)
300~399만원	37.5	31.8	23.6	24.3	37.1	34.5	2.6	1.9	(267)
400~499만원	42.8	35.5	20.3	23.4	41.4	39.4	4.2	0.8	(355)
500~599만원	47.3	38.8	29.9	25.3	48.4	40.2	5.0	0.4	(281)
600~699만원	49.8	47.1	27.1	26.2	43.0	32.1	5.9	0.5	(221)
700~799만원	61.3	40.8	23.2	25.4	40.1	27.5	4.9	0.0	(142)
800만원 이상	51.9	48.6	23.9	21.0	44.9	33.3	8.6	0.8	(243)
χ^2 (df)				114.054(56)***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부모 15의 경우와 같이 주말근로를 하는 경우와 업무상 출장 시(부모 18)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일은 거의 어린이집에서 잘 돌봐주셔서 보내는 데 토요일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돌이고 어리고, 저도 백신 맞고 나서 토요일에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아이 둘을 케어했거든요. 그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신청해서 이용을 하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부모 15)

(1박 2일 출장을 할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가가 다 멀리 계셔서 말길 수 있는 상황은 늘 안 돼서 남편과 스케줄 조정을 해서 제가 가는 날은 남편이 퇴근을 일찍해서 하원을 시켜서 밥을 먹고 재우고 다음 날 등원까지 시키고, 제가 일이 끝나서 오면 제가 하원을 시키고, 그런데 제가 늦게 오는 날은 친구한테 전화한 적도 있었어요. 친구가 가서 대신 픽업해준 적도 있어요 (부모 18)

자녀돌봄의 공백의 양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단지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주된 양상으로 지목된 ‘자녀가 아플 경우’라고 응답한 비율이 56.4%로 평균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위주로 보육되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출·퇴근시간이 기관의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서 자녀돌봄의 공백이 야기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이들 서비스만으로는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1-4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이 문 열기 이전에 출근해야 할 때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 기관 휴원시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 진료시	이용 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전체	46.9	39.2	24.2	24.0	41.7	36.0	5.1	0.8	(1,623)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47.6	39.6	24.9	24.4	41.4	35.4	5.0	0.9	(1,121)
유치원	45.2	38.4	22.7	23.3	42.4	37.5	5.2	0.6	(502)
$\chi^2(df)$	3.295(8)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45.4	39.4	26.6	24.6	38.1	30.0	4.3	0.4	(533)
민간어린이집	47.5	40.8	23.2	22.3	42.9	40.4	4.0	1.3	(448)
가정어린이집	56.4	36.4	23.6	30.0	49.3	40.0	10.7	1.4	(140)
국공립유치원	44.4	41.1	26.1	22.8	49.4	45.0	5.0	0.0	(180)
사립유치원	45.7	37.0	20.8	23.6	38.5	33.2	5.3	0.9	(322)
$\chi^2(df)$	64.997(32)***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51.0	48.4	32.7	28.6	46.9	29.6	6.8	0.8	(514)
연장보육 미이용	44.8	32.1	18.3	20.8	36.7	40.4	3.5	1.0	(607)
방과후과정 이용	47.4	44.0	26.8	25.5	43.7	35.1	5.6	0.3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42.0	30.0	16.5	20.0	40.5	41.0	4.5	1.0	(200)
$\chi^2(df)$	135.580(24)***								

주1: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2.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애로사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서비스 병행이용 실태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서비스 병행이용 실태

1) 서비스 병행이용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가) 서비스 병행이용 여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주중에 부모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는지 조사하였다. 주중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가구는 41.2%로 조사되었으며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가 43.6%로 영아 37.3%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각 세별 연령에서는 0세 52.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0세의 표본이 17가구에 불과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긴 하나 0세의 경우 기관 이용시간이 짧고 이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비율은 52.7%로 홑벌이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2-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부모 제외) 유무: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주중 부모를 제외한 정기적 양육자 유무		계(수)
	있음	없음	
전체	41.2	58.8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52.9	47.1	100.0 (17)
1세	43.4	56.6	100.0 (152)
2세	34.6	65.4	100.0 (456)
3세	41.2	58.8	100.0 (233)
4세	47.8	52.2	100.0 (255)
5세 이상	42.5	57.5	100.0 (510)
χ^2 (df)	14.386(5)*		

구분	주중 부모를 제외한 정기적 양육자 유무		계(수)
	있음	없음	
자녀연령2			
영아	37.3	62.7	100.0 (625)
유아	43.6	56.4	100.0 (998)
χ^2 (df)	6.313(1)*		
자녀수			
1명	39.0	61.0	100.0 (636)
2명	43.6	56.4	100.0 (839)
3명 이상	36.5	63.5	100.0 (148)
χ^2 (df)	4.66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2.7	47.3	100.0 (1,092)
홀벌이 가구	17.4	82.6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15.4	84.6	100.0 (26)
χ^2 (df)	185.135(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5	76.5	100.0 (17)
200~299만원	25.8	74.2	100.0 (97)
300~399만원	29.2	70.8	100.0 (267)
400~499만원	37.7	62.3	100.0 (355)
500~599만원	39.9	60.1	100.0 (281)
600~699만원	52.9	47.1	100.0 (221)
700~799만원	56.3	43.7	100.0 (142)
800만원 이상	48.6	51.4	100.0 (243)
χ^2 (df)	60.971(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IV-2-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부모 제외) 유무: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주중 부모를 제외한 정기적 양육자 유무		계(수)
	있음	없음	
전체	41.2	58.8	100.0 (1,623)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39.2	60.8	100.0 (1,121)
유치원	45.6	54.4	100.0 (502)
χ^2 (df)	5.967(1)*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43.0	57.0	100.0 (533)
민간어린이집	37.3	62.7	100.0 (448)
가정어린이집	30.7	69.3	100.0 (140)

구분	주중 부모를 제외한 정기적 양육자 유무		계(수)
	있음	없음	
국공립유치원	48.3	51.7	100.0 (180)
사립유치원	44.1	55.9	100.0 (322)
χ^2 (df)	14.787(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45.3	54.7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33.9	66.1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54.6	45.4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32.0	68.0	100.0 (200)
χ^2 (df)	46.341(3)***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45.6%,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39.2%가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43.0%), 국공립유치원(48.3%)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비해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과 방과후과정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가구의 54.6%,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45.3% 순으로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길게 이용할 수 있고 실제 이용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기관 이용만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유무를 조사한 결과,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말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주 주말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49.0%, 정기적으로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의 46.0%가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말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부모 제외) 유무: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주중 부모를 제외한 정기적 양육자 유무		계(수)
	있음	없음	
전체	41.2	58.8	100.0 (1,623)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41.3	58.7	100.0 (1,370)
전일제+시간제	44.2	55.8	100.0 (206)
시간제+시간제	33.3	66.7	100.0 (21)
χ^2 (df)	1.199(2)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36.5	63.5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41.4	58.6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46.0	54.0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49.0	51.0	100.0 (143)
χ^2 (df)	11.094(3)*		

주: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나) 병행이용 서비스의 유형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 ‘조부모/친인척’이 72.9%, ‘민간 베이비시터’ 21.3%, ‘아이돌보미’ 16.5% 순으로 나타났다. 병행이용 돌봄서비스 유형으로 ‘조부모/친인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녀연령(영아, 유아), 맞벌이 여부, 출생순위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변인에서 ‘조부모/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자녀는 유아에 비해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25.3%, 23.2%로 유아의 19.1%, 12.9%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보다 둘째, 셋째아의 경우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는 ‘조부모/친인척’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민간 베이비시터’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미	이웃	기타	(수)
전체	72.9	21.3	16.5	3.0	1.0	(668)
자녀연령1						
0세	55.6	22.2	22.2	0.0	0.0	(9)
1세	72.7	28.8	19.7	1.5	1.5	(66)
2세	67.7	24.1	24.7	2.5	0.0	(158)
3세	75.0	22.9	16.7	3.1	0.0	(96)
4세	74.6	22.1	15.6	4.1	0.8	(122)
5세 이상	75.6	15.7	9.7	3.2	2.3	(217)
χ^2 (df)			35.490(25)			
자녀연령2						
영아	68.7	25.3	23.2	2.1	0.4	(233)
유아	75.2	19.1	12.9	3.4	1.4	(435)
χ^2 (df)			20.694(5)*			
자녀수						
1명	83.1	12.9	10.5	2.0	0.8	(248)
2명	67.8	26.8	18.6	3.8	1.1	(366)
3명 이상	61.1	22.2	29.6	1.9	1.9	(54)
χ^2 (df)			55.55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1	22.0	16.0	2.8	0.7	(576)
홀벌이 가구	65.9	17.0	20.5	4.5	1.1	(88)
모두 근로 안함	50.0	0.0	0.0	0.0	50.0	(4)
χ^2 (df)			101.903(10)***			
출생순위						
첫째	79.3	17.5	13.9	2.3	1.0	(309)
둘째	68.1	25.0	17.5	3.8	0.9	(320)
셋째 이상	61.5	20.5	28.2	2.6	2.6	(39)
χ^2 (df)			25.712(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0.0	25.0	0.0	25.0	25.0	(4)
200~299만원	60.0	16.0	16.0	4.0	4.0	(25)
300~399만원	64.1	21.8	21.8	2.6	0.0	(78)
400~499만원	68.7	22.4	20.9	2.2	0.7	(134)
500~599만원	68.8	23.2	19.6	1.8	1.8	(112)
600~699만원	76.1	19.7	21.4	3.4	0.0	(117)
700~799만원	91.3	13.8	6.3	1.3	2.5	(80)
800만원 이상	75.4	25.4	7.6	5.1	0.0	(118)
χ^2 (df)			88.097(35)***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이용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이들 기관의 설립유형은 돌봄서비스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이용 여부와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용기관 특성에 따라서도 모든 범주에서 ‘조부모/친인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는 ‘민간 베이비시터’ 31.8%, ‘아이돌보미’ 25.8%로 조사되었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의 20.6%, 13.9%가 각각 ‘민간베이비시터’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미	이웃	기타	(수)
전체	72.9	21.3	16.5	3.0	1.0	(668)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73.1	22.3	18.5	3.0	0.5	(439)
유치원	72.5	19.2	12.7	3.1	2.2	(229)
χ^2 (df)			8.902(5)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73.4	24.5	19.2	3.1	0.4	(229)
민간어린이집	71.3	21.6	18.6	3.0	0.6	(167)
가정어린이집	79.1	14.0	14.0	2.3	0.0	(43)
국공립유치원	72.4	17.2	17.2	4.6	0.0	(87)
사립유치원	72.5	20.4	9.9	2.1	3.5	(142)
χ^2 (df)			23.431(20)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64.8	31.8	25.8	3.9	0.4	(233)
연장보육 미이용	82.5	11.7	10.2	1.9	0.5	(206)
방과후과정 이용	69.7	20.6	13.9	4.2	2.4	(165)
방과후과정 미이용	79.7	15.6	9.4	0.0	1.6	(64)
χ^2 (df)			80.218(15)***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다) 서비스 병행이용 시간대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 하는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는 시작 시각은 13시 20분, 종료 시각은 17시 54분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친인척’과 ‘아이돌보미’에 의한 서비스 병행이용 시작시각은 13시 24~5분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민간 베이비시터’는 다른 서비스 유형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조사되었다. 종료 시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웃’ 18시 12분으로 가장 늦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18시 10분, ‘민간 베이비시터’ 17시 14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6〉 병행서비스 유형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전체	13시 20분	17시 54분	(668)
조부모/친인척	13시 25분	18시 10분	(487)
민간베이비시터	12시 29분	17시 14분	(142)
아이돌보미	13시 24분	17시 4분	(110)
이웃	15시 33분	18시 12분	(20)
기타	14시 4분	16시 3분	(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시간을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출생순위와 가구소득에 따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의 종료 시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외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2-7 참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아가구의 병행이용 서비스 종료 시각이 영아가구에 비해 한 시간 가량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종료 시각이 17시 57분으로 홀벌이 가구에 비해 늦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2-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이용시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전체	13시 20분	17시 54분	(668)
자녀연령1			
0세	10시 13분	17시 0분	(9)
1세	13시 21분	18시 3분	(70)
2세	13시 5분	17시 40분	(169)
3세	13시 52분	18시 8분	(81)
4세	13시 18분	18시 3분	(122)
5세 이상	13시 25분	17시 51분	(217)
F	1.561	0.536	
자녀연령2			
영아	13시 3분	17시 45분	(233)
유아	13시 29분	18시 58분	(435)
t	-1.279	-0.826	
자녀수			
1명	12시 59분	17시 46분	(248)
2명	13시 35분	18시 3분	(366)
3명 이상	13시 14분	17시 24분	(54)
F	1.716	1.29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3시 15분	17시 57분	(576)
홀벌이 가구	13시 47분	17시 34분	(88)
모두 근로 안함	14시 25분	16시 45분	(4)
F	0.803	0.821	
출생순위			
첫째	12시 57분	17시 38분	(309)
둘째	13시 39분	18시 12분	(320)
셋째 이상	13시 45분	17시 25분	(39)
F	2.634	3.05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시 0분	12시 26분	(4)
200~299만원	12시 34분	17시 39분	(25)
300~399만원	12시 55분	17시 18분	(78)
400~499만원	13시 9분	17시 48분	(134)
500~599만원	13시 41분	17시 36분	(112)
600~699만원	13시 46분	17시 54분	(117)
700~799만원	13시 53분	19시 2분	(80)
800만원 이상	12시 58분	18시 7분	(118)
F	1.624	4.082***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IV-2-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이용시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전체	13시 20분	17시 54분	(668)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13시 14분	17시 54분	(439)
유치원	13시 31분	17시 52분	(229)
t	-0.873	0.119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13시 19분	17시 50분	(229)
민간어린이집	12시 59분	18시 8분	(167)
가정어린이집	13시 50분	17시 19분	(43)
국공립유치원	13시 20분	17시 48분	(87)
사립유치원	13시 38분	17시 55분	(142)
F	0.669	0.657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3시 29분	18시 3분	(233)
연장보육 미이용	12시 57분	17시 44분	(206)
방과후과정 이용	13시 17분	17시 35분	(165)
방과후과정 미이용	14시 6분	18시 37분	(64)
F	1.521	2.044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및 설립유형, 그리고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2-8 참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시가 등을 통해서’ 인지하였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홍보’를 통해 30.9%, ‘지인을 통해서’ 28.6%, ‘동네 홍보자료(현수막 등)을 통해서’ 2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는 자녀 연령과 자녀수,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응답 비율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분석 변인에서 전체 응답과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표 IV-2-9〉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중복응답):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유치원 외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동네홍보 자료를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직접 홍보함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수)
전체	12.8	1.9	3.4	16.2	25.8	30.9	28.6	31.2	(1,077)
자녀연령1									
0세	8.3	0.0	0.0	33.3	25.0	50.0	8.3	25.0	(12)
1세	9.5	1.9	3.8	14.3	31.4	35.2	23.8	27.6	(105)
2세	9.1	2.7	4.4	17.6	27.4	27.4	27.4	34.5	(296)
3세	13.6	1.2	4.9	14.8	22.2	37.0	26.5	36.4	(162)
4세	15.1	1.2	2.3	21.5	26.2	30.8	26.2	25.0	(172)
5세 이상	15.8	1.8	2.4	12.7	24.2	29.1	34.2	30.3	(330)
χ^2 (df)				53.651(40)					
자녀연령2									
영아	9.2	2.4	4.1	17.2	28.3	30.0	25.9	32.4	(413)
유아	15.1	1.5	3.0	15.5	24.2	31.5	30.3	30.4	(664)
χ^2 (df)				15.788(8)*					
자녀수									
1명	11.1	1.0	2.8	15.1	25.1	27.9	31.9	32.7	(398)
2명	15.0	2.6	3.3	16.6	25.1	32.3	26.5	29.1	(573)
3명 이상	7.5	0.9	6.6	17.9	32.1	34.9	27.4	36.8	(106)
χ^2 (df)				26.430(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3.0	2.0	3.5	16.8	25.3	32.6	28.5	31.2	(817)
홀벌이 가구	12.6	1.6	3.1	14.2	27.2	24.8	29.1	31.5	(254)
모두 근로 안함	0.0	0.0	0.0	16.7	33.3	66.7	16.7	16.7	(6)
χ^2 (df)				13.094(16)					
출생순위									
첫째	10.9	1.4	2.6	17.6	26.3	28.9	28.5	30.2	(494)
둘째	15.0	2.4	3.8	15.0	24.9	32.0	28.3	30.6	(506)
셋째 이상	10.4	1.3	6.5	14.3	28.6	36.4	31.2	41.6	(77)
χ^2 (df)				17.605(1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0.0	0.0	12.5	0.0	37.5	50.0	37.5	(8)
200~299만원	6.0	4.0	6.0	14.0	20.0	26.0	28.0	34.0	(50)
300~399만원	11.3	2.0	1.3	17.3	30.7	31.3	24.7	28.0	(150)
400~499만원	16.4	1.8	4.0	18.6	25.2	27.0	26.5	26.5	(226)
500~599만원	11.6	1.5	3.0	14.6	31.2	29.6	25.6	31.7	(199)
600~699만원	12.7	3.6	3.0	13.9	21.1	22.9	28.9	38.6	(166)
700~799만원	14.4	0.0	1.9	17.3	28.8	43.3	28.8	26.0	(104)
800만원 이상	12.6	1.1	5.7	16.1	21.8	38.5	36.8	34.5	(174)
χ^2 (df)				74.919(56)*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영유아 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된 인지 경로 이외에도 부모 8과 같이 동주민센터의 소개자료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동주민센터는 출산 시의 육아지원에 관하여 안내하는 데, 이때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 10은 코로나19로 인해 집단보육이 우려되었는데, 육아카페 등 주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집단감염 시기에는 집단감염의 우려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가구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민센터 홍보지 보고 알았어요. 그 때 출생을 해서 아이 자녀 관련된 업무를 보러 갔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때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그걸 신청하려 갔을 때 대기하는 중에 직원 분 앞에 홍보지가 있어서 그걸 직원 분께 여쭙봤더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이 나오고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 8)

최근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그룹 형으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때냐. 육아카페나 주변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 글을 보고 나서 서비스가 있구나. 그 정도 인식만 갖게 되었어요 (부모 10)

다음으로 이용기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연장보육/방과후과정을 이용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에 분석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홍보함’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인지했다는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홍보함’을 통해 인지한 비율이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인지하였다는 비율이 3~5%p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는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가 46.6%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홍보함’(2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이 영아보육 위주인 점을 감안하면 영아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V-2-10〉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중복응답):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외 육아지원 기관을 통해서	공공 기관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동네 홍보 자료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 에서 직접 홍보함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수)
전체	12.8	1.9	3.4	16.2	25.8	30.9	28.6	31.2	(1,077)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11.8	2.0	3.8	15.8	26.4	29.5	27.9	31.8	(755)
유치원	15.2	1.6	2.5	17.1	24.5	34.2	30.1	29.8	(322)
χ^2 (df)									7.738(8)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11.0	2.0	4.3	16.4	26.1	32.0	25.8	26.9	(391)
민간어린이집	12.7	2.4	3.8	16.5	27.5	28.5	30.6	34.7	(291)
가정어린이집	12.3	0.0	1.4	9.6	23.3	20.5	28.8	46.6	(73)
국공립유치원	12.2	3.3	1.6	13.8	24.4	38.2	30.9	35.8	(123)
사립유치원	17.1	0.5	3.0	19.1	24.6	31.7	29.6	26.1	(199)
χ^2 (df)									45.111(32)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2.3	2.5	3.0	19.5	29.1	32.3	30.3	29.6	(399)
연장보육 미이용	11.2	1.4	4.8	11.5	23.3	26.4	25.3	34.3	(356)
방과후과정 이용	17.1	2.3	2.3	18.4	26.7	35.0	28.6	27.6	(217)
방과후과정 미이용	11.4	0.0	2.9	14.3	20.0	32.4	33.3	34.3	(105)
χ^2 (df)									39.705(24)*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가) 제도 인지 및 이용 경험 여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년 3월 이용해 본적 있는 가구가 57.2%, '20년 2월까지 이용해 본적 있는 가구 9.2%로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없는 가구도 26.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도 7.1% 가량 조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경험 여부는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65.5%가 '20년 3월 이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500~799만원 구간 가구의 이용 경험 비율이 6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계(수)
	전혀 알지 못함	이용해 본적 없음	이용해 본적 있음1 (‘20년 2월 까지)	이용해 본적 있음2 (‘20년 3월 이후)	
전체	7.1	26.5	9.2	57.2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0.0	29.4	11.8	58.8	100.0 (17)
1세	5.9	25.0	3.9	65.1	100.0 (152)
2세	8.8	26.3	9.0	55.9	100.0 (456)
3세	5.2	25.3	9.0	60.5	100.0 (233)
4세	4.7	27.8	9.0	58.4	100.0 (255)
5세 이상	8.4	26.9	11.0	53.7	100.0 (510)
χ^2 (df)			18.225(15)		
자녀연령2					
영아	7.8	26.1	7.8	58.2	100.0 (625)
유아	6.7	26.8	10.0	56.5	100.0 (998)
χ^2 (df)			2.938(3)		
자녀수					
1명	8.2	29.2	8.8	53.8	100.0 (636)
2명	6.4	25.3	9.2	59.1	100.0 (839)
3명 이상	6.8	21.6	10.8	60.8	100.0 (148)
χ^2 (df)			7.89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9	20.3	9.3	65.5	100.0 (1,092)
홀벌이 가구	12.1	37.6	8.9	41.4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7.7	69.2	7.7	15.4	100.0 (26)
χ^2 (df)			125.685(6)***		
출생순위					
첫째	8.4	27.9	8.4	55.4	100.0 (775)
둘째	6.0	25.6	9.6	58.9	100.0 (739)
셋째 이상	6.4	22.9	11.9	58.7	100.0 (109)
χ^2 (df)			6.967(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9	47.1	5.9	41.2	100.0 (17)
200~299만원	9.3	39.2	13.4	38.1	100.0 (97)
300~399만원	10.1	33.7	7.9	48.3	100.0 (267)
400~499만원	7.6	28.7	8.5	55.2	100.0 (355)
500~599만원	7.1	22.1	8.2	62.6	100.0 (281)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계(수)
	전혀 알지 못함	이용해 본적 없음	이용해 본적 있음1 (*20년 2월 까지)	이용해 본적 있음2 (*20년 3월 이후)	
600~699만원	4.1	20.8	8.6	66.5	100.0 (221)
700~799만원	4.9	21.8	6.3	66.9	100.0 (142)
800만원 이상	6.6	21.8	13.6	58.0	100.0 (243)
χ^2 (df)	58.097(21)***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64.2%가 '20년 3월 이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의 연장보육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에 따라 분석 변인을 달리하였을 때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77.6%('20년 3월 이후+'20년 2월 까지)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계(수)
	전혀 알지 못함	이용해 본적 없음	이용해 본적 있음1 (*20년 2월 까지)	이용해 본적 있음2 (*20년 3월 이후)	
전체	7.1	26.5	9.2	57.2	100.0 (1,623)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6.9	25.8	8.4	59.0	100.0 (1,121)
유치원	7.8	28.1	11.0	53.2	100.0 (502)
χ^2 (df)	5.610(3)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6.6	20.1	9.2	64.2	100.0 (533)
민간어린이집	5.8	29.2	7.4	57.6	100.0 (448)
가정어린이집	11.4	36.4	8.6	43.6	100.0 (140)
국공립유치원	6.7	25.0	7.2	61.1	100.0 (180)
사립유치원	8.4	29.8	13.0	48.8	100.0 (322)
χ^2 (df)	43.219(12)***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4.9	17.5	7.2	70.4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8.6	32.8	9.4	49.3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5.6	22.5	8.3	63.6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11.0	36.5	15.0	37.5	100.0 (200)
χ^2 (df)	92.695(9)***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나)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미이용하는 사유를 조사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이용 사유로는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가 21.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 19.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7.4%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미이용 사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는 전체 응답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일(직장)을 그만두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구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13〉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과거 유경험자):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입학하게 되어서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기관에서 추가보육 가능해짐 (연장보육, 야간보육, 방과후 과정 등)	아이 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추가로 돌볼 사람이 불필요	직장을 그만두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기타	계(수)
전체	10.7	21.5	11.4	19.5	17.4	7.4	6.7	5.4	100.0(149)
자녀연령1									
0세	0.0	0.0	50.0	50.0	0.0	0.0	0.0	0.0	100.0(2)
1세	0.0	0.0	16.7	33.3	16.7	16.7	0.0	16.7	100.0(6)
2세	9.8	12.2	9.8	24.4	12.2	12.2	14.6	4.9	100.0(41)
3세	19.0	23.8	14.3	19.0	14.3	4.8	4.8	0.0	100.0(21)
4세	13.0	30.4	13.0	17.4	17.4	4.3	0.0	4.3	100.0(23)
5세 이상	8.9	26.8	8.9	14.3	23.2	5.4	5.4	7.1	100.0(56)
$\chi^2(df)$				28.144(35)					
자녀연령2									
영아	8.2	10.2	12.2	26.5	12.2	12.2	12.2	6.1	100.0(49)
유아	12.0	27.0	11.0	16.0	20.0	5.0	4.0	5.0	100.0(100)
$\chi^2(df)$				13.569(7)					
자녀수									
1명	16.1	16.1	14.3	19.6	12.5	3.6	10.7	7.1	100.0(56)
2명	6.5	27.3	10.4	18.2	16.9	11.7	3.9	5.2	100.0(77)
3명 이상	12.5	12.5	6.3	25.0	37.5	0.0	6.3	0.0	100.0(16)
$\chi^2(df)$				18.702(14)					

구분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 입학하게 되어서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기관에서 추가보육 가능해짐 (연장보육, 야간보육, 방과후 과정 등)	아이 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추가로 돌볼 사람이 불필요	직장을 그만두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8.8	26.5	9.8	20.6	15.7	9.8	1.0	7.8	100.0(102)
홀벌이 가구	15.6	11.1	15.6	17.8	17.8	2.2	20.0	0.0	100.0(45)
모두 근로 안함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2)
$\chi^2(df)$				38.287(14)***					
출생순위									
첫째	13.8	20.0	13.8	18.5	12.3	4.6	10.8	6.2	100.0(65)
둘째	7.0	25.4	11.3	18.3	18.3	11.3	2.8	5.6	100.0(71)
셋째 이상	15.4	7.7	0.0	30.8	38.5	0.0	7.7	0.0	100.0(13)
$\chi^2(df)$				17.610(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1)
200~299만원	0.0	23.1	15.4	15.4	23.1	0.0	15.4	7.7	100.0(13)
300~399만원	9.5	14.3	9.5	19.0	14.3	9.5	14.3	9.5	100.0(21)
400~499만원	10.0	10.0	13.3	23.3	20.0	13.3	6.7	3.3	100.0(30)
500~599만원	21.7	8.7	21.7	13.0	34.8	0.0	0.0	0.0	100.0(23)
600~699만원	10.5	47.4	5.3	5.3	10.5	10.5	0.0	10.5	100.0(19)
700~799만원	11.1	33.3	0.0	22.2	22.2	0.0	11.1	0.0	100.0(9)
800만원 이상	9.1	27.3	9.1	30.3	6.1	9.1	3.0	6.1	100.0(33)
$\chi^2(df)$				61.816(49)					

주: 아이돌봄서비스 과거 이용은 2020년 2월 까지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위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 ‘잡은 아이돌보미 교체’(부모 1, 부모 12),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의 번거로움’(부모 11),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보 부족’(부모 12) 등이 제기되었다.

(아이돌보미가)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아마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에서 쓰는 제도를 못 쓰고 각 가정에서 시터를 쓰는 게 아닐까 해요 (부모 1)

다른 (아이돌보미) 분이 오면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등원과 하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같이 되는 분을 찾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무 다양한 양육자를 만들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으니까 다양한 위험요소는 안 만들려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중략) (만약 이용하지 못한다면) 민간으로 찾을 것 같고 최대한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것 같아요 (부모 12)

(신청) 가입은 했는데 제가 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할 때 이용 방법이 쉽지가 않았어요 (중략) (신청하고자 했던 이유가) 토요일에도 한 달에 1-2번 정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이용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봐줄 수 있을 땐 봐주는데 그 때 남편도 안 되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써보고 싶어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는 금액도 잘 모르고 지원 여부도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지원 해당이 없다고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거든요 (중략) 저는 전액 자부담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중략)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됐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부모 11)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면서... 제 글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인력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부모 12)

이용기관별로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현재 미이용한다는 응답이 25.5%로 어린이집 이용가구에 비해 높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27%가 ‘아이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 분포와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14〉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과거 유경험자):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입학하게 되어서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기관에서 추가보육 가능해짐 (연장보육, 야간보육, 방과후 과정 등)	아이 돌보미 신뢰할 수 없어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근로시간 변경되어 추가로 돌볼 사람이 불필요	직장을 그만두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기타	계(수)
							직접	기타		
전체	10.7	21.5	11.4	19.5	17.4	7.4	6.7	5.4	100.0 (149)	
이용기관 유형 ¹										
어린이집	12.8	21.3	10.6	21.3	12.8	9.6	6.4	5.3	100.0 (94)	
유치원	7.3	21.8	12.7	16.4	25.5	3.6	7.3	5.5	100.0 (55)	
χ^2 (df)				6.444(7)						

구분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입학하게 되어서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기관에서 추가보육 가능해짐 (연장보육, 야간보육, 방과후 과정 등)	아이 돌봄미 신뢰할 수 없어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근로시간 변경되어 추가로 돌볼 사람이 불필요	직장을 그만두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기타	계(수)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16.3	22.4	8.2	20.4	14.3	10.2	4.1	4.1	100.0 (49)
민간어린이집	9.1	21.2	12.1	27.3	6.1	9.1	9.1	6.1	100.0 (33)
가정어린이집	8.3	16.7	16.7	8.3	25.0	8.3	8.3	8.3	100.0 (12)
국공립유치원	30.8	15.4	0.0	15.4	38.5	0.0	0.0	0.0	100.0 (13)
사립유치원	0.0	23.8	16.7	16.7	21.4	4.8	9.5	7.1	100.0 (42)
χ^2 (df)				29.122(28)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6.2	13.5	16.2	27.0	10.8	10.8	0.0	5.4	100.0 (37)
연장보육 미이용	10.5	26.3	7.0	17.5	14.0	8.8	10.5	5.3	100.0 (57)
방과후과정 이용	4.0	36.0	12.0	12.0	20.0	4.0	8.0	4.0	100.0 (25)
방과후과정 미이용	10.0	10.0	13.3	20.0	30.0	3.3	6.7	6.7	100.0 (30)
χ^2 (df)				21.723(21)					

주1: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주2: 아이돌봄서비스 과거 이용은 2020년 2월 까지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과거 이용경험을 포함하여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서비스 유형을 조사하였다. 전체 48.2%가 과거 이용경험을 포함하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사를 추가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21.3%,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3.7%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세별 자녀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나 홀벌이 가구에서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이 전체 분포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0세 가구의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를 추가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가 각각 41.7%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사를 추가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 표본이 12명으로 매우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IV-2-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계(수)
	영아 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가사추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잘 모름	
전체	13.7	48.2	21.3	4.6	3.6	8.5	100.0 (1,077)
자녀연령1							
0세	0.0	41.7	41.7	0.0	16.7	0.0	100.0 (12)
1세	21.0	39.0	25.7	1.9	6.7	5.7	100.0 (105)
2세	13.2	47.3	20.3	8.1	2.7	8.4	100.0 (296)
3세	13.0	52.5	21.0	1.9	0.6	11.1	100.0 (162)
4세	14.0	51.2	19.2	5.2	4.1	6.4	100.0 (172)
5세 이상	12.7	48.5	21.2	3.6	4.2	9.7	100.0 (330)
χ^2 (df)			44.433(25)*				
자녀연령2							
영아	14.8	45.0	22.3	6.3	4.1	7.5	100.0 (413)
유아	13.1	50.2	20.6	3.6	3.3	9.2	100.0 (664)
χ^2 (df)			7.458(5)				
자녀수							
1명	13.8	46.2	21.1	5.3	3.8	9.8	100.0 (398)
2명	12.7	49.7	23.0	4.2	3.0	7.3	100.0 (573)
3명 이상	18.9	47.2	12.3	4.7	6.6	10.4	100.0 (106)
χ^2 (df)			14.007(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4.3	49.2	22.2	4.3	3.4	6.6	100.0 (817)
홀벌이 가구	12.2	44.5	18.9	5.5	4.3	14.6	100.0 (254)
모두 근로 안함	0.0	66.7	0.0	16.7	0.0	16.7	100.0 (6)
χ^2 (df)			23.024(10)*				
출생순위							
첫째	13.8	45.3	22.3	5.3	3.4	9.9	100.0 (494)
둘째	12.8	50.8	22.1	4.2	3.2	6.9	100.0 (506)
셋째 이상	19.5	49.4	9.1	3.9	7.8	10.4	100.0 (77)
χ^2 (df)			17.256(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0	25.0	25.0	0.0	0.0	25.0	100.0 (8)
200~299만원	24.0	38.0	18.0	6.0	2.0	12.0	100.0 (50)
300~399만원	10.0	52.0	20.0	4.7	6.0	7.3	100.0 (150)
400~499만원	10.6	49.6	24.8	3.5	1.8	9.7	100.0 (226)
500~599만원	14.6	44.7	20.6	8.0	4.0	8.0	100.0 (199)
600~699만원	12.7	57.2	16.9	4.2	3.0	6.0	100.0 (166)
700~799만원	13.5	48.1	28.8	1.0	2.9	5.8	100.0 (104)
800만원 이상	17.8	42.5	19.0	4.6	5.2	10.9	100.0 (174)
χ^2 (df)			46.715(35)				

주: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이용은 2020년 3월 이후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기관 특성에 따라서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비율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비율이 8.2%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잘 모름’이라는 응답 비율도 12.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영아종일제’ 이용 비율도 16%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였을 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가 대부분 응답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1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계(수)
	영아 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가사추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잘 모름	
전체	13.7	48.2	21.3	4.6	3.6	8.5	100.0 (1,077)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13.9	48.9	20.5	4.8	3.3	8.6	100.0 (755)
유치원	13.4	46.6	23.0	4.3	4.3	8.4	100.0 (322)
$\chi^2(df)$	1.703(5)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15.9	45.8	21.2	4.3	4.1	8.7	100.0 (391)
민간어린이집	11.0	52.2	22.0	4.5	2.7	7.6	100.0 (291)
가정어린이집	15.1	52.1	11.0	8.2	1.4	12.3	100.0 (73)
국공립유치원	15.4	48.8	20.3	3.3	3.3	8.9	100.0 (123)
사립유치원	12.1	45.2	24.6	5.0	5.0	8.0	100.0 (199)
$\chi^2(df)$	17.842(20)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6.0	48.1	24.1	4.5	2.3	5.0	100.0 (399)
연장보육 미이용	11.5	49.7	16.6	5.1	4.5	12.6	100.0 (356)
방과후과정 이용	13.8	45.6	23.5	3.7	5.5	7.8	100.0 (217)
방과후과정 미이용	12.4	48.6	21.9	5.7	1.9	9.5	100.0 (105)
$\chi^2(df)$	28.854(15)*						

주: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이용은 2020년 3월 이후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주중에 시간제(일반형+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이용시간을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작 시각은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8시 31분~9시 19.6%, 7시 31분~8시 11.1% 순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의 법정 운영시간인 7시 30분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6.5%로 나타나며,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7.2%로 약간 더 높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서 7시 30분 부터 9시 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비율은 42.1% 여서 해당 시간대의 돌봄 공백이 광범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용기관별로는 유치원에서 오후 4시 이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36.5%로 어린이집 14.6%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오전 9시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연장보육 또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이른 오전시간대의 돌봄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표 IV-2-18 참조).

다음으로 종료 시각은 전반적으로 17시 31분~18시 19.8%, 18시 31분~7시 16.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맞벌이 가구에서 16시 이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84.2%에 달하였다(표 IV-2-19 참조).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종료시각이 상대적으로 이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연장보육 또는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17시 31분~18시와 18시31분~19시 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IV-2-20 참조).

〈표 IV-2-17〉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시작 시각: 1) 아동 및 가구 특성

구분	오전						오후						계(수)						
	7시 이전	7시 30분	7시 31분	8시 1분	8시 31분	9시 1분	12시 이전	16시 30분	16시 31분	17시 1분	17시 31분	18시 1분		18시 31분	19시 1분	19시 31분	20시 1분	20시 31분	21시 이후
전체	1.2	5.3	11.1	3.4	19.6	10.4	21.3	16.3	5.6	0.7	4.5	-	0.6	-	-	-	-	-	100.0 (682)
자녀연령1																			
0세	0.0	37.5	25.0	0.0	12.5	0.0	12.5	0.0	12.5	0.0	0.0	-	0.0	-	-	-	-	-	100.0 (8)
1세	3.2	6.3	14.3	4.8	28.6	11.1	9.5	7.9	1.6	0.0	11.1	-	1.6	-	-	-	-	-	100.0 (63)
2세	0.5	4.9	11.4	4.9	21.1	14.6	17.3	13.0	6.5	1.6	4.3	-	0.0	-	-	-	-	-	100.0 (185)
3세	0.9	7.5	13.2	2.8	17.0	8.5	17.9	20.8	4.7	0.9	4.7	-	0.9	-	-	-	-	-	100.0 (106)
4세	0.9	5.5	7.3	2.8	20.2	7.3	22.0	23.9	6.4	0.0	3.7	-	0.0	-	-	-	-	-	100.0 (109)
5세 이상	1.4	2.8	10.4	2.4	17.1	9.5	29.9	16.1	5.7	0.5	3.3	-	0.9	-	-	-	-	-	100.0 (211)
자녀연령2																			
영아	1.2	6.3	12.5	4.7	22.7	13.3	15.2	11.3	5.5	1.2	5.9	-	0.4	-	-	-	-	-	100.0 (256)
유아	1.2	4.7	10.3	2.6	17.8	8.7	24.9	19.2	5.6	0.5	3.8	-	0.7	-	-	-	-	-	100.0 (4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5	5.7	12.1	4.0	18.6	7.4	21.1	17.1	5.9	0.9	4.9	-	0.8	-	-	-	-	-	100.0 (527)
홀벌이 가구	0.0	4.0	7.9	1.3	23.8	20.5	21.2	13.9	4.6	0.0	2.6	-	0.0	-	-	-	-	-	100.0 (151)
모두 근로 인함	0.0	0.0	0.0	0.0	0.0	25.0	50.0	0.0	0.0	0.0	25.0	-	0.0	-	-	-	-	-	100.0 (4)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2-18〉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시작 시각: 2) 이용기관 특성

구분	오전										오후										계(수)			
	7시 이전	7시 7시 30분	7시 31분	8시 ~8시 30분	8시 1분~ 8시 ~9시 30분	8시 31분	9시 1분	12시 이전	16시 16시 30분	16시 31분	17시 17시 30분	17시 1분~ 17시 ~18시 30분	17시 31분	18시 18시 30분	18시 1분~ 18시 ~19시 30분	18시 31분	19시 19시 30분	19시 1분 ~19시 30분	19시 31분	20시 20시 30분		20시 1분~ 20시 ~21시 30분	20시 31분	21시 1분 이후
	전체	1.2	5.3	11.1	3.4	19.6	10.4	21.3	16.3	5.6	0.7	4.5	-	0.6	-	-	-	-	-	-		-	-	-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1.3	6.5	12.2	3.8	21.3	12.4	14.6	15.4	5.7	1.1	5.1	-	0.6	-	-	-	-	-	-	-	-	-	-	100.0 (474)
유치원	1.0	2.4	8.7	2.4	15.9	5.8	36.5	18.3	5.3	0.0	3.4	-	0.5	-	-	-	-	-	-	-	-	-	-	100.0 (208)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2.2	6.9	12.5	2.6	23.3	11.2	14.7	14.2	3.9	1.7	5.6	-	1.3	-	-	-	-	-	-	-	-	-	-	100.0 (232)
민간어린이집	0.0	6.1	12.1	3.0	20.7	13.6	15.2	17.2	7.1	0.5	4.5	-	0.0	-	-	-	-	-	-	-	-	-	-	100.0 (198)
가정어린이집	2.3	6.8	11.4	13.6	13.6	13.6	11.4	13.6	9.1	0.0	4.5	-	0.0	-	-	-	-	-	-	-	-	-	-	100.0 (44)
국공립유치원	2.6	5.1	2.6	3.8	17.9	5.1	37.2	14.1	6.4	0.0	5.1	-	0.0	-	-	-	-	-	-	-	-	-	-	100.0 (78)
사립유치원	0.0	0.8	12.3	1.5	14.6	6.2	36.2	20.8	4.6	0.0	2.3	-	0.8	-	-	-	-	-	-	-	-	-	-	100.0 (130)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2.0	9.0	15.6	3.5	18.0	9.4	14.5	13.7	6.6	0.8	5.9	-	1.2	-	-	-	-	-	-	-	-	-	-	100.0 (256)
연장보육 미이용	0.5	3.7	8.3	4.1	25.2	16.1	14.7	17.4	4.6	1.4	4.1	-	0.0	-	-	-	-	-	-	-	-	-	-	100.0 (218)
방과후과정 이용	1.4	2.1	9.3	2.9	16.4	5.7	35.7	15.0	6.4	0.0	4.3	-	0.7	-	-	-	-	-	-	-	-	-	-	100.0 (140)
방과후과정 미이용	0.0	2.9	7.4	1.5	14.7	5.9	38.2	25.0	2.9	0.0	1.5	-	0.0	-	-	-	-	-	-	-	-	-	-	100.0 (68)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2-19〉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종로 시가: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계수
	7시 이전	7시 30분 이전	7시 31분	8시 1분	8시 31분	9시 1분	12시 이전	16시 1분	16시 31분	17시 1분	17시 31분	18시 1분	18시 31분	19시 1분	19시 31분	20시 1분	20시 31분	21시 1분			
전체	0.3	0.1	0.3	-	1.9	3.2	14.5	12.0	14.4	2.9	19.8	4.0	16.7	0.9	6.9	0.7	1.2	0.1	100.0 (682)		
자녀연령1																					
0세	0.0	0.0	0.0	-	25.0	0.0	0.0	25.0	0.0	25.0	0.0	0.0	0.0	0.0	12.5	0.0	0.0	0.0	100.0 (8)		
1세	0.0	0.0	0.0	-	4.8	0.0	19.0	7.9	14.3	1.6	23.8	1.6	11.1	1.6	6.3	3.2	4.8	0.0	100.0 (63)		
2세	0.5	0.0	1.1	-	1.6	3.2	18.4	9.7	10.8	3.2	20.5	4.3	17.8	1.6	5.9	0.0	1.1	0.0	100.0 (185)		
3세	0.0	0.0	0.0	-	0.0	6.6	12.3	8.5	14.2	2.8	23.6	4.7	17.9	1.9	6.6	0.9	0.0	0.0	100.0 (106)		
4세	0.0	0.0	0.0	-	2.8	1.8	13.8	10.1	14.7	2.8	19.3	4.6	16.5	0.0	11.0	1.8	0.9	0.0	100.0 (109)		
5세 이상	0.5	0.5	0.0	-	0.9	3.3	11.8	17.5	17.5	3.3	16.1	3.8	17.5	0.0	5.7	0.0	0.9	0.5	100.0 (211)		
자녀연령2																					
영아	0.4	0.0	0.8	-	3.1	2.3	18.0	9.8	11.7	2.7	21.5	3.5	15.6	1.6	6.3	0.8	2.0	0.0	100.0 (256)		
유아	0.2	0.2	0.0	-	1.2	3.8	12.4	13.4	16.0	3.1	18.8	4.2	17.4	0.5	7.3	0.7	0.7	0.2	100.0 (4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0.4	0.2	0.2	-	2.3	3.0	9.7	10.4	14.2	3.6	20.7	4.9	19.4	0.9	8.0	0.8	1.1	0.2	100.0 (527)		
홀벌이 가구	0.0	0.0	0.7	-	0.7	4.0	31.1	17.2	15.2	0.7	16.6	0.7	7.3	0.7	3.3	0.7	1.3	0.0	100.0 (151)		
모두 근로 안함	0.0	0.0	0.0	-	0.0	0.0	25.0	25.0	0.0	0.0	25.0	0.0	25.0	0.0	0.0	0.0	0.0	0.0	100.0 (4)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2-20〉 주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종료 시각: 2) 이용기관 특성

구분	이용시간_종료 시각: 2) 이용기관 특성												계(수)						
	오전						오후												
	7시 이전	7시 30분~8시	7시 31분~8시	8시 1분~8시 30분	8시 31분~9시	9시 ~12시	12시 1분~16시 이전	16시 1분~16시 30분	16시 31분~17시	17시 1분~17시 30분	17시 31분~18시	18시 1분~18시 30분		18시 31분~19시	19시 1분~19시 30분	19시 31분~20시	20시 1분~20시 30분	20시 31분~21시	21시 1분 이후
전체	0.3	0.1	0.3	-	1.9	3.2	14.5	12.0	14.4	2.9	19.8	4.0	16.7	0.9	6.9	0.7	1.2	0.1	100.0(682)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0.2	0.2	0.4	-	2.3	3.0	16.0	9.9	12.7	2.5	20.9	4.0	15.6	1.3	8.2	1.1	1.5	0.2	100.0(474)
유치원	0.5	0.0	0.0	-	1.0	3.8	11.1	16.8	18.3	3.8	17.3	3.8	19.2	0.0	3.8	0.0	0.5	0.0	100.0(208)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0.4	0.4	0.4	-	1.3	3.0	15.1	10.8	13.8	2.6	19.0	3.9	16.8	1.7	7.8	1.3	1.7	0.0	100.0(232)
민간어린이집	0.0	0.0	0.5	-	1.5	2.5	16.2	9.6	13.1	1.5	23.7	3.5	16.2	1.0	8.1	0.5	1.5	0.5	100.0(198)
가정어린이집	0.0	0.0	0.0	-	11.4	4.5	20.5	6.8	4.5	6.8	18.2	6.8	6.8	0.0	11.4	2.3	0.0	0.0	100.0(44)
국공립유치원	1.3	0.0	0.0	-	0.0	3.8	11.5	15.4	20.5	5.1	16.7	5.1	16.7	0.0	3.8	0.0	0.0	0.0	100.0(78)
사립유치원	0.0	0.0	0.0	-	1.5	3.8	10.8	17.7	16.9	3.1	17.7	3.1	20.8	0.0	3.8	0.0	0.8	0.0	100.0(130)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0.4	0.4	0.4	-	3.1	3.1	11.3	4.7	13.7	2.7	21.5	5.5	18.8	1.6	10.2	1.6	1.2	0.0	100.0(256)
연장보육 미이용	0.0	0.0	0.5	-	1.4	2.8	21.6	16.1	11.5	2.3	20.2	2.3	11.9	0.9	6.0	0.5	1.8	0.5	100.0(218)
방과후과정 이용	0.7	0.0	0.0	-	0.7	5.0	10.7	19.3	17.1	5.0	15.0	2.9	18.6	0.0	4.3	0.0	0.7	0.0	100.0(140)
방과후과정 미이용	0.0	0.0	0.0	-	1.5	1.5	11.8	11.8	20.6	1.5	22.1	5.9	20.6	0.0	2.9	0.0	0.0	0.0	100.0(68)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한편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부모 8과 같이 연장보육을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가 운영되는 17시부터 19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사유로는 장기간보육에 대한 기피 이외에도 다자녀로 인해 야기되는 퇴근 이후의 과도한 양육부담이 언급되었다. 이로써 다자녀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연장보육을 지금 하고 있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중략) 출퇴근 시간 거리가 있어서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13개월부터 어린이집에 갔으니까 아이가 7시 40분경에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6시가 조금 넘고, 제가 아이가 세 명이다 보니까 저녁에 아이 식사도 챙겨주고 장도 봐야 하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부모 8)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6.7%의 응답자가 ‘보통’으로 체감하였고, 44.1% 만족, 5.4% 매우 만족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50%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만족하였고 5점 척도로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자녀는 평균 3.56점으로 유아자녀 3.4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IV-2-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5	3.3	46.7	44.1	5.4	100.0 (1,077)	3.51
자녀연령1							
0세	0.0	8.3	41.7	41.7	8.3	100.0 (12)	3.50
1세	0.0	2.9	48.6	41.0	7.6	100.0 (105)	3.53
2세	0.7	2.0	44.9	43.6	8.8	100.0 (296)	3.58
3세	0.6	4.9	45.1	42.0	7.4	100.0 (162)	3.51
4세	0.0	3.5	48.8	44.2	3.5	100.0 (172)	3.48

구분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세 이상 $\chi^2(df)/F$	0.6	3.6	47.6	46.7	1.5	100.0 (330)	3.45 1.256
26.341(20)							
자녀연령2							
영아	0.5	2.4	45.8	42.9	8.5	100.0 (413)	3.56
유아	0.5	3.9	47.3	44.9	3.5	100.0 (664)	3.47
$\chi^2(df)/t$	13.941(4)**						2.240*
자녀수							
1명	0.5	2.8	47.3	45.1	4.4	100.0 (825)	3.50
2명	0.4	5.3	44.7	41.1	8.5	100.0 (246)	3.52
3명 이상	0.0	0.0	50.0	33.3	16.7	100.0 (6)	3.67
$\chi^2(df)/F$	10.847(8)						2.0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0.5	3.7	45.8	44.8	5.3	100.0 (817)	3.51
홀벌이 가구	0.4	2.4	49.2	42.5	5.5	100.0 (254)	3.50
모두 근로 안함	0.0	0.0	66.7	16.7	16.7	100.0 (6)	3.50
$\chi^2(df)/F$	4.973(8)						0.002
출생순위							
첫째	0.4	3.2	46.0	45.1	5.3	100.0 (494)	3.52
둘째	0.6	3.0	48.8	42.9	4.7	100.0 (506)	3.48
셋째 이상	0.0	6.5	37.7	45.5	10.4	100.0 (77)	3.60
$\chi^2(df)/F$	9.290(8)						1.08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0.0	50.0	37.5	12.5	100.0 (8)	3.63
200~299만원	0.0	4.0	56.0	32.0	8.0	100.0 (50)	3.44
300~399만원	0.0	1.3	45.3	45.3	8.0	100.0 (150)	3.60
400~499만원	0.0	3.1	43.8	47.3	5.8	100.0 (226)	3.56
500~599만원	1.5	2.0	51.8	40.7	4.0	100.0 (199)	3.44
600~699만원	0.0	3.6	41.0	51.2	4.2	100.0 (166)	3.56
700~799만원	0.0	4.8	43.3	45.2	6.7	100.0 (104)	3.54
800만원 이상	1.1	5.7	50.6	39.1	3.4	100.0 (174)	3.38
$\chi^2(df)/F$	32.932(28)						2.094*

주: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이용은 2020년 3월 이후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평균 3.56점으로 유치원 이용 가구의 만족도 3.3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는 3.5점이 넘는 반면 유치원 이용가구는 국공립유치원 3.48점, 사립유치원 3.31점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5	3.3	46.7	44.1	5.4	100.0 (1,077)	3.51
이용기관 유형 1							
어린이집	0.3	2.4	45.4	44.8	7.2	100.0 (755)	3.56
유치원	0.9	5.6	49.7	42.5	1.2	100.0 (322)	3.38
$\chi^2(df)/t$	24.873(4)***						4.180***
이용기관 유형 2							
국공립어린이집 등	0.0	1.8	46.5	44.2	7.4	100.0 (391)	3.57
민간어린이집	0.3	3.4	43.3	46.4	6.5	100.0 (291)	3.55
가정어린이집	1.4	1.4	47.9	41.1	8.2	100.0 (73)	3.53
국공립유치원	1.6	2.4	44.7	48.8	2.4	100.0 (123)	3.48
사립유치원	0.5	7.5	52.8	38.7	0.5	100.0 (199)	3.31
$\chi^2(df)/F$	41.662(16)***						5.65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0.3	2.3	43.9	44.1	9.5	100.0 (399)	3.60
연장보육 미이용	0.3	2.5	47.2	45.5	4.5	100.0 (356)	3.51
방과후과정 이용	0.9	4.1	53.0	40.1	1.8	100.0 (217)	3.38
방과후과정 미이용	1.0	8.6	42.9	47.6	0.0	100.0 (105)	3.37
$\chi^2(df)/F$	41.342(12)***						6.975***

주1: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주2: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이용은 2020년 3월 이후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부모 8에 의하면, 주요 내용으로 아이와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엄격한 서비스 제공시간의 준수 이외에도 서비스 연계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아동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동에 대한 일과 등에 관한 사항이 부모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점도 언급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도 하거든요. (중략)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맞춰주시고,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편하게 생각해요 (중략) (출근시간) 10분, 15분 전에는 항상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항상 그 서비스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아이를 데리러 갈 준비를 하시고, 시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시고, 저희가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부탁을 드리면 본인 상황이 급하지 않으면 저희 아이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중략)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전달 받은 사항이나 두 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 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나 아이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부모 8)

아이돌봄서비스가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 이유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이 낮고,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의 교육이 부족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그 외에도 이용시간과 필요할 때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이 조사되었다. 소수의 응답이기 하나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신뢰성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IV-2-23〉 아이돌봄서비스 불만족내용

구분	(수)
서비스의 질이 낮음/제대로 된 케어 부재/교육/프로그램 미흡/아이에 대한 관심/정성이 적음	(12)
돌봄교사에 대한 교육 부족	(5)
신뢰성 부족	(5)
짧은 이용시간	(4)
필요시 이용이 어려운 점	(3)
아이가 싫어함	(2)
간식/식사를 챙겨주지 않음	(2)
아이의 생활을 확인할 수 없음	(1)
운영방식이 나와 맞지 않음	(1)
비싼 비용	(1)
접근성이 떨어짐	(1)
돌봄교사가 자주 바뀜	(1)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둠	(1)
전체	(34)

주: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이용은 2020년 3월 이후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지원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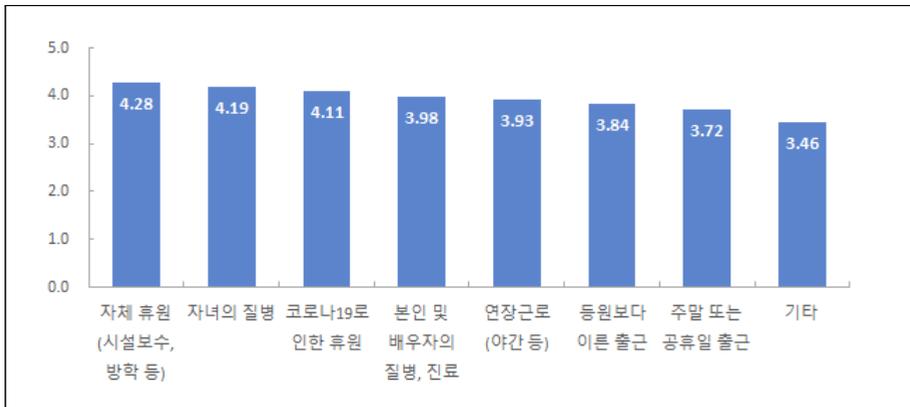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의 공백 상황 별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를 조사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지원요구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이용 중인 기관이 시설보수 등으로 자체적으로 휴원할 때’ 평균 4.2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아플 때’ 4.19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4.11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병원 진료’ 3.98점,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근 등)해야 할 때’ 3.93점, ‘기관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 3.84점 순이었다.

[그림 IV-3-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5점 척도)

단위: 점



주1: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기타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자녀 육아로 바쁠 때’, ‘배우자의 휴가’, ‘아이의 하원이 빠른 경우’ 등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1)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자녀가 아플 때	1.1	3.0	15.9	35.6	44.4	100.0 (761)	4.19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0.8	6.1	23.1	39.7	30.3	100.0 (637)	3.93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1.3	7.4	23.9	40.5	27.0	100.0 (393)	3.84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2.1	9.2	27.9	36.2	24.6	100.0 (390)	3.72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0.9	3.5	18.3	37.8	39.4	100.0 (677)	4.11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1.4	3.9	21.9	40.7	32.1	100.0 (585)	3.98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시설보수, 방학 등)할 때	-	1.2	12.2	43.9	42.7	100.0 (82)	4.28
기타	1.2	12.2	-	43.9	42.7	100.0 (13)	3.46

주1: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기타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자녀의 육아로 바쁠 때' 등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에서 자녀돌봄 공백에의 우려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해당 서비스의 내실화가 요구된다(표 IV-3-2 참조). 또한 맞벌이 가구 중에서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는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에서 주말의 돌봄 공백 해소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3-3 참조).

〈표 IV-3-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종일제보육 이용 여부					F	(수)
		연장 보육 이용	연장 보육 미이용	방과후 과정 이용	방과후 과정 미이용			
자녀가 아플 때	4.19	4.31	4.16	4.10	4.07	2.740*	(761)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3.93	4.04	3.85	3.83	3.90	2.176	(637)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3.84	3.91	3.80	3.77	3.85	0.536	(393)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3.72	3.89	3.71	3.51	3.53	3.153*	(390)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4.11	4.26	3.97	4.17	3.99	4.924**	(677)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3.98	4.03	4.05	3.91	3.78	2.278	(585)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할 때	4.28	4.40	4.05	4.29	4.33	1.060	(82)	

주: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IV-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주말근로 여부					F	(수)
		주말 근로 안함	비정기적 주말 근로	정기적 주말 근로	매주 주말			
자녀가 아플 때	4.19	4.17	4.10	4.26	4.52	4.510**	(761)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3.93	3.80	3.97	3.91	4.14	2.215	(637)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3.84	3.84	3.85	3.80	3.92	0.163	(393)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3.72	3.41	3.78	3.69	3.92	2.772*	(390)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4.11	4.17	4.11	4.06	4.10	0.448	(677)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3.98	3.96	3.98	4.04	4.06	0.297	(585)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할 때	4.28	4.29	4.34	4.18	4.23	0.219	(82)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주2: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반면, 맞벌이 가구에서 '기관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는 출근시각이 오전 7시 30분 이전 부터 10시에 걸쳐 평균 3.9점대로 높게 나타나므로 기관의 법정 운영시간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IV-3-4 참조).

또한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18시 이후에 퇴근하는 가구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해당 시간대의 틈새보육 지원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3-5 참조).

〈표 IV-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기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4) 부모의 출근시간

구분	전체	출근 시간						(수)	F
		~07:30	07:31 ~8:00	08:01 ~08:30	08:31~ 09:00	09:01 ~09:30	09:31 ~10:00		
자녀가 아플 때	4.19	3.95	4.23	4.23	4.23	4.39	4.13	4.08	1.386
직장에서 연장근로(이간 등)를 해야 할 때	3.93	3.95	3.89	4.00	3.95	3.87	3.91	3.86	0.174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3.84	3.97	3.93	4.08	3.70	3.93	3.91	3.84	1.246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3.72	3.64	3.80	4.03	3.72	3.81	3.64	3.31	1.510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4.11	4.03	4.10	4.17	4.15	3.93	4.12	4.09	0.411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3.98	3.99	4.15	3.95	3.96	3.96	3.90	3.97	0.732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할 때	4.28	4.00	4.46	4.56	4.17	4.33	4.38	4.17	0.643

주: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5) 부모의 퇴근시간

구분	전체	퇴근 시각										F		
		~16:00		16:01 ~16:30		17:01~ 17:30		18:01 ~18:30		19:01 ~19:30			20:01~	
		4.28	4.35	4.24	4.38	4.18	3.96	4.00	3.17	4.11	4.13		1.988*	
자녀가 아플 때	4.19	4.28	4.35	4.24	4.38	4.18	3.96	4.00	3.17	4.11	4.13	(761)	1.988*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3.93	3.92	4.00	3.90	3.82	3.91	4.10	3.92	4.40	4.00	4.36	(637)	0.600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3.84	4.07	3.71	3.83	3.96	3.73	3.75	4.03	3.50	4.00	3.63	(393)	0.913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3.72	3.63	3.75	3.62	3.81	3.73	4.30	3.79	4.25	3.44	3.71	(390)	0.744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4.11	4.09	4.21	4.21	4.31	4.05	4.09	4.03	4.13	3.88	4.46	(677)	1.073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3.98	4.01	4.11	4.16	4.04	3.94	3.96	3.78	3.33	4.10	4.20	(585)	1.505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할 때	4.28	4.23	3.00	4.65	4.57	4.08	4.00	4.43	4.33	4.00	5.00	(82)	1.973	

주: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나. 돌봄 공백 유형별 서비스 연계 수요

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수요

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일반형/종합형)를 이용 중인 총 748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오후 늦게 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서 자녀가 안쓰러워서'가 32.0%, '기관 하원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27.7%, '장시간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19.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응답율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늦은 오후에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염려와 장시간보육에의 기피 현상은 자녀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시기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우려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표 IV-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등원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기관 하원 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아이가 안쓰러움	장시간 아동을 맡기기에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장시간 기관이용이 아이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	기타	계(수)
전체	10.3	27.7	32.0	19.4	6.6	3.3	0.8	100.0 (748)
자녀연령1								
0세	10.0	0.0	60.0	30.0	0.0	0.0	0.0	100.0 (10)
1세	11.8	32.4	29.4	20.6	4.4	1.5	0.0	100.0 (68)
2세	11.5	25.0	33.0	20.5	5.0	4.5	0.5	100.0 (200)
3세	10.1	28.6	31.9	23.5	4.2	1.7	0.0	100.0 (119)
4세	6.6	25.6	34.7	19.0	9.1	4.1	0.8	100.0 (121)
5세 이상	10.9	30.4	29.1	15.7	8.7	3.5	1.7	100.0 (230)
$\chi^2(df)$	26.851(30)							
자녀연령2								
영아	11.5	25.9	33.1	20.9	4.7	3.6	0.4	100.0 (278)
유아	9.6	28.7	31.3	18.5	7.7	3.2	1.1	100.0 (470)
$\chi^2(df)$	5.358(6)							

구분	등원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기관 하원 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아이가 안쓰러움	장시간 아동을 맡기기에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장시간 기관이용이 아이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	기타	계(수)
자녀수								
1명	9.7	28.4	31.0	19.0	7.8	3.0	1.1	100.0 (268)
2명	10.1	26.6	33.8	19.2	6.0	3.6	0.7	100.0 (417)
3명 이상	14.3	31.7	23.8	22.2	4.8	3.2	0.0	100.0 (63)
$\chi^2(df)$			6.051(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0.3	28.1	33.1	19.0	6.0	2.6	0.9	100.0 (583)
홀벌이 가구	10.6	26.1	28.0	21.1	7.5	6.2	0.6	100.0 (161)
모두 근로 안함	0.0	25.0	25.0	0.0	50.0	0.0	0.0	100.0 (4)
$\chi^2(df)$			20.040(12)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다음으로 이용기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장시간보육에의 기피 보다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이 홀벌이 가구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아보육 위주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지점임을 시사한다.

또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오후 늦게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의 종일 제보육 내실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IV-3-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등원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기관 하원 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아이가 안쓰러움	장시간 아동을 맡기기에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장시간 기관이용이 아이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	기타	계(수)
전체	10.3	27.7	32.0	19.4	6.6	3.3	0.8	100.0 (748)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9.7	28.4	32.1	20.6	5.0	4.0	0.2	100.0 (524)
유치원	11.6	25.9	31.7	16.5	10.3	1.8	2.2	100.0 (224)
χ^2 (df)	19.478(6)**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9.9	27.1	33.2	24.0	2.7	3.1	0.0	100.0 (262)
민간어린이집	7.4	29.2	32.9	17.6	7.9	4.6	0.5	100.0 (216)
가정어린이집	19.6	32.6	21.7	15.2	4.3	6.5	0.0	100.0 (46)
국공립유치원	4.7	25.9	37.6	16.5	15.3	0.0	0.0	100.0 (85)
사립유치원	15.8	25.9	28.1	16.5	7.2	2.9	3.6	100.0 (139)
χ^2 (df)	60.468(2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9.4	28.1	34.7	22.2	3.8	1.4	0.3	100.0 (288)
연장보육 미이용	10.2	28.8	28.8	18.6	6.4	7.2	0.0	100.0 (236)
방과후과정 이용	11.3	23.3	34.7	19.3	8.7	0.7	2.0	100.0 (150)
방과후과정 미이용	12.2	31.1	25.7	10.8	13.5	4.1	2.7	100.0 (74)
χ^2 (df)	44.445(18)***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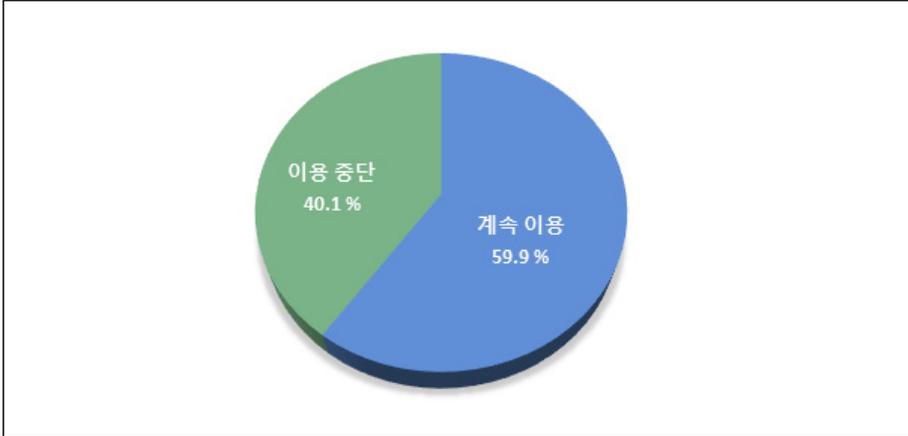
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등원 이전과 하원 이후의 틈새보육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필요한 만큼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서비스 병행이용을 중단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계속해서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59.9%로 이용 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율은 맞벌이 여부 등 주요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이들 가구의 일상적인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그림 IV-3-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단위: %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계(수)
	계속 이용	이용 중단	
전체	59.9	40.1	100.0 (284)
자녀연령			
영아	59.6	40.4	100.0 (104)
유아	60.0	40.0	100.0 (180)
$\chi^2(df)$	0.004(1)		
자녀수			
1명	53.9	46.1	100.0 (102)
2명	63.4	36.6	100.0 (153)
3명 이상	62.1	37.9	100.0 (29)
$\chi^2(df)$	2.35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0.3	39.7	100.0 (224)
홀벌이 가구	57.6	42.4	100.0 (59)
모두 근로 안함	100.0	0.0	100.0 (1)
$\chi^2(df)$	0.808(2)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이용기관 유형별로는 해당 수요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만으로 자녀의 돌봄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표 IV-3-9 참조).

계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맞벌이 가구 중에서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만으로 주말보육 수요가 충족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표 IV-3-10 참조).

〈표 IV-3-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여부
: 2)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계(수)
	계속 이용	이용 중단	
전체	59.9	40.1	100.0 (284)
이용기관 유형1			
어린이집	58.5	41.5	100.0 (200)
유치원	63.1	36.9	100.0 (84)
$\chi^2(df)$	0.520(1)		
이용기관 유형2			
국공립어린이집 등	64.9	35.1	100.0 (97)
민간어린이집	55.7	44.3	100.0 (79)
가정어린이집	41.7	58.3	100.0 (24)
국공립유치원	69.2	30.8	100.0 (26)
사립유치원	60.3	39.7	100.0 (58)
$\chi^2(df)$	5.877(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65.7	34.3	100.0 (108)
연장보육 미이용	50.0	50.0	100.0 (92)
방과후과정 이용	65.4	34.6	100.0 (52)
방과후과정 미이용	59.4	40.6	100.0 (32)
$\chi^2(df)$	5.941(3)		

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는 사례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 포함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1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여부
: 3)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의향		계(수)
	계속 이용	이용 중단	
전체	59.9	40.1	100.0 (284)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9.3	40.7	100.0 (246)
전일제+시간제	60.0	40.0	100.0 (35)
시간제+시간제	100.0	0.0	100.0 (2)
χ^2 (df)	1.364(2)		
주말근로 여부			
주말근로 안함	54.9	45.1	100.0 (82)
비정기적 주말근로	61.0	39.0	100.0 (118)
정기적 주말근로	62.9	37.1	100.0 (62)
매주 주말근로	61.9	38.1	100.0 (21)
χ^2 (df)	1.185(3)		

주: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미의향 사유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육 수요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긴급 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사유로서 지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에 눈치가 보이거나, 등하원서비스,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여전히 제기되었다.

〈표 IV-3-11〉 이용기관을 보육 수요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이용하려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수)
긴급 시 이용	(26)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등.하원, 간식 등)	(16)
필요 시 유용함	(15)
장시간 이용 가능/시간제한이 없음	(14)
다른 대안 부재	(1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수)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11)
편리성	(10)
믿음/신뢰	(8)
안정적인 돌봄 가능	(7)
아이가 장시간 혼자 있을 것 같아서/아이가 외로울 것 같아서	(7)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7)
아이가 원해서/아이가 덜 피곤해 한다	(6)
익숙함(방식, 친구)	(4)
늦은 시간 이용 시 보육교사의 눈치가 보임	(4)
다양한 방법 경험	(3)
전문적인 케어 가능	(3)
기관의 제한적인 이용시간	(3)
기관은 이동이 불편	(2)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2)
교육효과 증대	(1)
세심한 케어 가능	(1)
친절성	(1)
기관 이용 못할시 대비 차원	(1)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	(1)
전체	(162)

주: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이용은 2020년 3월 이후 이용자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부모 7은 위에서 언급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유로서 복합적인 수요를 나타낸다. 즉, 오후 5시 이후로는 기관에 남겨진 아동이 거의 없어서 기관에 눈치가 보이고, 장시간보육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오후) 5시 넘어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 시간에 보내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여요. (복직하게 되면) 연장보육 보다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아이가 아침에 가서 저녁 7시 반까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 것 같고, 저는 지금 아이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과 놀이하는 거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정서적 그런 것들을 아이 돌보미가 더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걸 믿고 여기 선생님을 이용하는 게 더 긍정적으로 선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 7)

다른 한편으로 자녀가 원하거나, 보다 편안한 분위기의 돌봄, 1:1 개별보육으로 세심한 돌봄 등의 이유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보육 수요에 충족하도록 개선되는 점과 상관없이 고유한 수요로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와 선호하는 돌봄 방식

가)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할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으로는 조부모 40.9%, 어머니 36.0%, 아버지 9.9% 순으로 나타난다.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는 6.7%로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민간 육아도우미(3.2%) 보다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자녀연령 및 자녀수,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아버지가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47.8%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아이돌보미의 해당 비율도 7.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 보다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아 조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IV-3-1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직접 돌봄	아버지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기타	그런 적 없음	계(수)
전체	36.0	9.9	40.9	6.7	3.2	0.6	2.8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29.4	11.8	41.2	11.8	5.9	0.0	0.0	100.0 (17)
1세	33.6	13.2	42.8	5.3	3.9	0.0	1.3	100.0 (152)
2세	41.7	9.6	35.3	8.1	3.1	0.2	2.0	100.0 (456)
3세	31.8	11.2	39.9	8.2	3.4	0.4	5.2	100.0 (233)
4세	32.5	9.0	45.1	6.7	2.0	1.2	3.5	100.0 (255)
5세 이상	35.7	8.8	43.5	4.9	3.5	1.0	2.5	100.0 (510)
$\chi^2(df)$								35.680(30)

구분	어머니 직접 돌봄	아버지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기타	그런 적 없음	계(수)
자녀연령2								
영아	39.4	10.6	37.3	7.5	3.4	0.2	1.8	100.0 (625)
유아	34.0	9.4	43.1	6.1	3.1	0.9	3.4	100.0 (998)
$\chi^2(df)$	15.193(6)*							
자녀수								
1명	34.4	7.4	44.0	6.4	2.8	1.1	3.8	100.0 (636)
2명	36.4	11.1	40.5	6.7	3.5	0.2	1.7	100.0 (839)
3명 이상	41.2	13.5	29.1	7.4	3.4	0.7	4.7	100.0 (148)
$\chi^2(df)$	28.467(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6.6	10.9	47.8	7.3	4.4	0.9	2.1	100.0 (1,092)
홀벌이 가구	56.4	8.1	26.1	5.3	0.8	0.0	3.2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38.5	0.0	34.6	3.8	0.0	0.0	23.1	100.0 (26)
$\chi^2(df)$	193.546(12)***							
출생순위								
첫째	34.7	8.4	44.0	6.5	2.3	0.9	3.2	100.0 (775)
둘째	37.1	10.8	38.8	6.8	4.2	0.3	2.0	100.0 (739)
셋째 이상	38.5	13.8	32.1	7.3	2.8	0.9	4.6	100.0 (109)
$\chi^2(df)$	19.850(1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7.1	11.8	29.4	0.0	0.0	0.0	11.8	100.0 (17)
200~299만원	43.3	13.4	30.9	6.2	1.0	0.0	5.2	100.0 (97)
300~399만원	42.3	12.4	33.7	5.2	1.5	0.7	4.1	100.0 (267)
400~499만원	40.6	8.7	40.0	5.6	2.3	0.3	2.5	100.0 (355)
500~599만원	34.5	10.0	40.9	7.8	4.3	1.1	1.4	100.0 (281)
600~699만원	29.0	9.5	45.2	11.3	2.7	0.5	1.8	100.0 (221)
700~799만원	29.6	9.2	49.3	3.5	5.6	1.4	1.4	100.0 (142)
800만원 이상	30.9	7.8	45.7	6.6	5.3	0.4	3.3	100.0 (243)
$\chi^2(df)$	71.076(42)**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60.0%(1+2순위 73.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의로기

관내 부설 보육시설 47.8%,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 42.4%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35.9%로 조사되었다.

〈표 IV-3-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전체)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함	60.0	73.4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7.9	47.8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에서 돌봄	14.2	42.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7.9	35.9
기타	-	0.5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아픈 경우에 선호하는 양육방식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도 선택지에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부모 10에서와 같이 부모가 직접 돌보려는 의지가 높은 가운데, 부모 13과 같이 집단보육에 비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 14의 경우는 아픈 자녀를 낯선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아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더 선호하였다.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고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가족 중에서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중략) 만약에 장기간 중증의 병을 갖고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아픈 경우라면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는 결국 엄마일 것 같아요. 아픈 상황에서는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일차적으로 제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 10)

저는 집에 돌보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는 게 더 낫고 괜찮은 것 같아요 (중략) 한 선생님이 아픈 아이를 전담하는 데 아픈 아이의 병이 다 다른데, 병이 옮으면 나아지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 13)

저는 낯선 선생님을 또 만나면 아이가 더 아플 것 같아서 아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보내거나 했어요. 소아과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략) 소아과에 지원을 해주실 거라면 친절한 양호 선생님 한 명을 섭외해서 그 과로 가서 그 선생님이 맞벌이 부모의 아픈 아이들을 맡아주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아프면 부모님한테 맡길 것 같아요 (부모 14)

이들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맞벌이 가구에서 부모 직접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비율이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의료기관 내 보육시설,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이 각각 19.0%와 15.0%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8.2%로 나타났다.

〈표 IV-3-1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1순위 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 휴가 제공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	아픈 아동 전문 보육시설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계(수)
전체	60.0	17.9	14.2	7.9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35.3	23.5	29.4	11.8	100.0 (17)
1세	53.9	20.4	16.4	9.2	100.0 (152)
2세	62.1	16.4	12.5	9.0	100.0 (456)
3세	60.5	20.6	9.9	9.0	100.0 (233)
4세	57.6	18.4	18.0	5.9	100.0 (255)
5세 이상	61.8	16.7	14.5	7.1	100.0 (510)
$\chi^2(df)$	19.748(15)				
자녀연령2					
영아	59.4	17.6	13.9	9.1	100.0 (625)
유아	60.4	18.0	14.3	7.2	100.0 (998)
$\chi^2(df)$	1.914(3)				
자녀수					
1명	58.8	19.3	13.4	8.5	100.0 (636)
2명	61.0	17.4	14.4	7.2	100.0 (839)
3명 이상	59.5	14.2	16.2	10.1	100.0 (148)
$\chi^2(df)$	4.86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7.7	19.0	15.0	8.2	100.0 (1,092)
홀벌이 가구	65.1	16.2	12.3	6.3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57.7	0.0	15.4	26.9	100.0 (26)
$\chi^2(df)$	24.874(6)***				
출생순위					
첫째	59.0	19.7	13.9	7.4	100.0 (775)
둘째	60.9	16.8	14.3	8.0	100.0 (739)
셋째 이상	61.5	11.9	14.7	11.9	100.0 (109)
$\chi^2(df)$	7.022(6)				

구분	부모 휴가 제공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	아픈 아동 전문 보육시설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계(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6.5	5.9	5.9	11.8	100.0 (17)
200~299만원	70.1	16.5	9.3	4.1	100.0 (97)
300~399만원	60.3	22.1	10.9	6.7	100.0 (267)
400~499만원	57.7	18.0	17.2	7.0	100.0 (355)
500~599만원	66.2	12.5	14.9	6.4	100.0 (281)
600~699만원	54.3	19.0	15.8	10.9	100.0 (221)
700~799만원	55.6	23.9	12.7	7.7	100.0 (142)
800만원 이상	58.4	16.0	14.4	11.1	100.0 (243)
$\chi^2(df)$	35.363(21)*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다른 한편 자녀가 아픈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 보다 보육시설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률을 기준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힘들 거 같아서’와 ‘자녀가 낯선 아이돌보미에게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각각 57.9%와 51.4%로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신청 관련 즉,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와 ‘기관이 긴급 상황에 더 전문적이고 신뢰가 되어서’가 약 20% 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감염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율을 제고함은 물론, 서비스 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반면에 자녀의 적응과 긴급 상황에의 대응 능력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육시설을 더 선호하는 부모들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서비스 공급 규모의 산출 시에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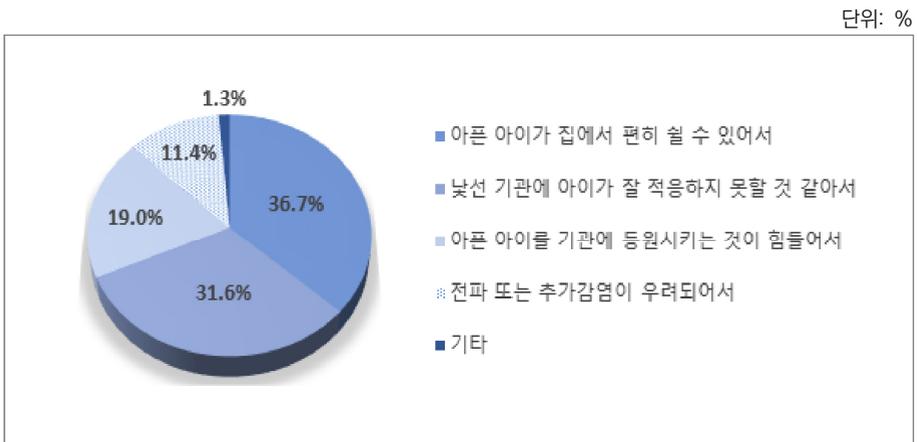
〈표 IV-3-1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기관(환아전문 보육시설 등)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자녀가 낯선 아이돌보미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36.4	51.4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25.2	57.9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15.0	29.9
아이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	9.3	14.0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5.6	24.3
기관의 긴급상황 대처 또는 대응이 더 전문적이고 신뢰가 가서	8.4	22.4
계(수)	100.0(107)	(10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그림 IV-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이유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반면에 자녀가 아픈 경우 보육시설 보다도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가구에서 해당 이유로는 아픈 자녀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와 낯선 기관에서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각각 36.7%와 31.6%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는 아픈 자녀를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19.0%), 타인의 접촉으로 추가감염 등이 우려되어서(11.4%) 등이 지목되었다.

3)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와 선호하는 돌봄 방식

가)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휴원하였을 때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조부모 38.7%, 어머니 37.7%, 아버지 9.4% 순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돌본 비율은 6.3%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 긴급돌봄(4.3%)과 민간 육아도우미(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앞서 자녀가 아픈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가 돌본 비율이 11.4%로 높고,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은 5.2%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나, 홀벌이 가구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3-1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코로나19에 따른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직접돌봄	아버지 직접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긴급돌봄	계(수)
전체	37.7	9.4	38.7	6.3	3.6	4.3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29.4	23.5	17.6	23.5	0.0	5.9	100.0 (17)
1세	31.6	12.5	41.4	6.6	3.9	3.9	100.0 (152)
2세	44.3	9.0	31.8	6.8	3.5	4.6	100.0 (456)
3세	32.6	9.9	36.9	9.9	5.6	5.2	100.0 (233)
4세	36.9	11.8	41.6	5.1	2.0	2.7	100.0 (255)
5세 이상	36.7	6.9	44.1	4.3	3.5	4.5	100.0 (510)
$\chi^2(df)$			55.524(25)***				
자녀연령2							
영아	40.8	10.2	33.8	7.2	3.5	4.5	100.0 (625)
유아	35.8	8.8	41.8	5.8	3.6	4.2	100.0 (998)
$\chi^2(df)$			11.043(5)				
자녀수							
1명	36.6	8.0	41.8	6.1	2.5	4.9	100.0 (636)
2명	37.8	10.1	38.3	6.3	3.7	3.8	100.0 (839)
3명 이상	41.9	10.8	27.7	7.4	7.4	4.7	100.0 (148)
$\chi^2(df)$			18.765(10)*				



구분	어머니 직접돌봄	아버지 직접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간접돌봄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4.5	11.4	47.6	7.0	4.4	5.2	100.0 (1,092)
홀벌이 가구	64.6	5.5	20.4	5.1	2.0	2.4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73.1	0.0	19.2	3.8	0.0	3.8	100.0 (26)
χ^2 (df)	254.809(10)***						
출생순위							
첫째	37.0	9.2	40.3	6.6	2.3	4.6	100.0 (775)
둘째	38.3	9.6	37.9	6.1	4.2	3.9	100.0 (739)
셋째 이상	38.5	9.2	33.0	6.4	8.3	4.6	100.0 (109)
χ^2 (df)	13.287(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7.1	17.6	23.5	0.0	5.9	5.9	100.0 (17)
200~299만원	53.6	10.3	29.9	4.1	1.0	1.0	100.0 (97)
300~399만원	44.6	11.6	31.5	5.2	1.9	5.2	100.0 (267)
400~499만원	42.8	9.3	34.6	6.2	2.8	4.2	100.0 (355)
500~599만원	36.7	7.8	38.8	8.2	2.8	5.7	100.0 (281)
600~699만원	28.1	11.3	39.4	11.3	5.0	5.0	100.0 (221)
700~799만원	28.9	6.3	50.7	4.2	4.9	4.9	100.0 (142)
800만원 이상	30.9	7.8	49.4	3.7	6.2	2.1	100.0 (243)
χ^2 (df)	86.479(35)***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나)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휴원하였을 때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이 희망하는 방식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6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영아자녀(0세)에서 58.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3-1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돌봄방식 여부		계(수)
	희망하는 방식임	희망하는 방식 아님	
전체	63.6	36.4	100.0 (1,623)
자녀연령			
0세	58.8	41.2	100.0 (17)
1세	63.2	36.8	100.0 (152)
2세	62.7	37.3	100.0 (456)
3세	62.2	37.8	100.0 (233)
4세	65.1	34.9	100.0 (255)
5세 이상	64.5	35.5	100.0 (510)
$\chi^2(df)$	0.95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2.0	38.0	100.0 (1,092)
홀벌이 가구	67.3	32.7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57.7	42.3	100.0 (26)
$\chi^2(df)$	4.634(2)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휴원하였을 때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이 희망하는 방식이 아닌 가구에게 희망하는 돌봄방식이 무엇 인지를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가 30.1%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보육은 24.7%로 부모의 직접돌봄(2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3-18 참조).

또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녀를 직접돌본 경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표 IV-3-19 참조). 이는 집단보육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시기에 부모의 직접돌봄 이외에도 긴급돌봄 지원 방식으로 기관과 아이돌보미 수요가 높은 것을 말해준다.

〈표 IV-3-18〉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보육	기타	계(수)
전체	22.2	15.1	30.1	7.4	24.7	0.5	100.0 (591)
자녀연령2							
영아	18.9	13.7	31.3	9.4	26.2	0.4	100.0 (233)
유아	24.3	15.9	29.3	6.1	23.7	0.6	100.0 (358)
χ^2 (df)	4.95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5.1	13.3	30.1	8.9	22.7	0.0	100.0 (415)
홀벌이 가구	16.4	20.0	29.7	4.2	28.5	1.2	100.0 (165)
모두 근로 안함	0.0	9.1	36.4	0.0	45.5	9.1	100.0 (11)
χ^2 (df)	38.062(10)***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표 IV-3-19〉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 2)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보육	기타	계(수)
전체	22.2	15.1	30.1	7.4	24.7	0.5	100.0 (591)
어머니 직접돌봄	0.0	27.1	32.2	5.5	34.2	1.0	100.0 (199)
아버지 직접돌봄	0.0	30.2	34.9	3.2	31.7	0.0	100.0 (63)
조부모 직접돌봄	39.6	0.0	34.8	6.2	19.4	0.0	100.0 (227)
아이돌보미	31.7	7.3	0.0	41.5	17.1	2.4	100.0 (41)
민간 육아도우미	22.2	22.2	29.6	0.0	25.9	0.0	100.0 (27)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돌봄	64.7	20.6	14.7	0.0	0.0	0.0	100.0 (34)
χ^2 (df)	300.022(25)***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팬데믹 시기에는 집단감염의 우려로 인해 기관의 긴급보육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우려되는 바로는 중복지원 금지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부모

18),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감염 우려로 인해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중복지원 관련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불편한 점(부모 13) 등이 언급되었다.

다른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부모 12가 언급한 바와 같이 팬데믹 지속기간에 따라 변화할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1주일 또는 한달 이내의 단기간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나, 그 이상 기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향이 높을 것으로 추측 된다.

(집단감염) (지속)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주일 이내 짧은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장기간 이면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가 보육에만 중점이 되어 있지, 아이의 교육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주는 발달에 맞는 것들은 전혀 해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하루하루가 발달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들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 보다는 긴급돌봄 기간에도 어린이집을 선호할 것 같아요. (부모 12)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싫고 아이돌보미를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떼서 센터에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더 어린 아이들인데 아무리 긴급보육을 한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가정보육이 2주, 3주 늘어나는 데 2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퇴소할 수는 없으니까 (중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간은) 한 2~3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부모 13)

(어린이집 혹은 아이돌보미 중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돌보미를 더 원하죠 (중략) (방역조치) 단계가 너무 높고 맡길 곳은 없고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가격리 내지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금전적 문제를 배제하고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지만 현실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린이집은) 집단단감염 걱정도 되고 다수가 밀집된 환경도 걱정이되지만 금전적 문제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18)

다)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휴원하였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59%(평균 4.10점, 5점 만점)로 앞서 다른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의 만족도(평균 3.51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V-3-2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긴급보육 시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	2.9	37.9	5.8	53.4	100.0 (103)	4.10
자녀연령2							
영아	-	0.0	37.8	4.4	57.8	100.0 (45)	4.20
유아	-	5.2	37.9	6.9	50.0	100.0 (58)	4.02
$\chi^2(df)/t$			2.876(3)				0.906
자녀수							
1명	-	5.1	46.2	2.6	46.2	100.0 (39)	3.90
2명	-	1.9	32.1	7.5	58.5	100.0 (53)	4.23
3명 이상	-	0.0	36.4	9.1	54.5	100.0 (11)	4.18
$\chi^2(df)/F$			4.179(6)				1.2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	3.9	35.5	3.9	56.6	100.0 (76)	4.13
홀벌이 가구	-	0.0	42.3	11.5	46.2	100.0 (26)	4.04
모두 근로 안함	-	0.0	100.0	0.0	0.0	100.0 (1)	3.00
$\chi^2(df)/F$			5.239(6)				0.66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4) 긴급보육(야간/주말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수요

야간 또는 주말에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해당 응답률은 맞벌이 가구에서 7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수요를 보여 셋째 자녀의 경우는 78.0%에 달하였다(표 IV-3-21 참조). 따라서 이들 가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월평균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요를 보여,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별로는 특히 주말근로 가구에서 해당 수요가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표 IV-3-22 참조).

〈표 IV-3-21〉 긴급돌봄(야간/주말)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1) 아동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야간 또는 주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전체	71.8	28.2	100.0 (1,623)
자녀연령			
영아	73.6	26.4	100.0 (625)
유아	70.7	29.3	100.0 (998)
χ^2 (df)	1.55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5.3	24.7	100.0 (1,092)
홀벌이 가구	65.1	34.9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57.7	42.3	100.0 (26)
χ^2 (df)	20.119(2)***		
출생순위			
첫째	68.3	31.7	100.0 (775)
둘째	74.7	25.3	100.0 (739)
셋째 이상	78.0	22.0	100.0 (109)
χ^2 (df)	9.9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7.1	52.9	100.0 (17)
200~299만원	67.0	33.0	100.0 (97)
300~399만원	67.8	32.2	100.0 (267)
400~499만원	71.8	28.2	100.0 (355)
500~599만원	74.0	26.0	100.0 (281)
600~699만원	72.9	27.1	100.0 (221)
700~799만원	74.6	25.4	100.0 (142)
800만원 이상	74.9	25.1	100.0 (243)
χ^2 (df)	10.893(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IV-3-22〉 긴급돌봄(야간/주말)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2)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야간 또는 주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전체	71.8	28.2	100.0 (1,623)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71.7	28.3	100.0 (1,370)
전일제+시간제	75.2	24.8	100.0 (206)
시간제+시간제	66.7	33.3	100.0 (21)
χ^2 (df)	1.439(2)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63.1	36.9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76.9	23.1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74.6	25.4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75.5	24.5	100.0 (143)
χ^2 (df)	28.517(3)***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01$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부모 9와 같이 긴급하게 주말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와 미용 업무를 하는 부모 15의 경우는 직업특성상 어린이집 방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 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부모 16과 부모 17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장례, 출장 등으로 인한 긴급보육 수요가 확인된다.

제가 일요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어서 신청했던 적이 있어요 (중략) 저는 그 선생님이 일요일에도 오셨어요 (부모 9)

저는 작년에 출산을 해서 긴급보육을 해서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었고, (중략) 제가 프리랜서(미용사) 어린이집에서 여름방학을 해서 아이 둘을 일주일 동안 가정보육을 했는데 죽을 뻔 했어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예요 (중략) (그때 남편이) 가장 바쁜 시기였어요. 출근도 가장 빠르고 퇴근도 늦고 그랬어요. 연년생이라서 힘들고 둘이 너무 어려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알았다면... 그때 다들 방학이라 이용하고 싶어서 비슷했겠지만... 이걸 반드시 꼭 이용해보려고요 (중략) 또한 주말에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정말 필요해요 (부모 15)

저는 아이가 경기를 해서 그럴 때는 구급차를 불러요. 아버지는 출장 가서 없었고. 아이는 자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를 일으키는 데 두고 나갈 순 없으니까 옆집 아는 언니한테 자는 애 데려다가 거기에 맡기고 구급차 타고 가긴 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주말에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 16)

야간에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부모 17)

다른 한편 야간 또는 주말에 자녀돌봄의 공백이 긴급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구의 해당 이유로는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경우(139 사례)와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117 사례)가 주요 하였다.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의 감염 우려, 자녀의 정서적 문제 발생 우려(낮가림, 아동과의 상호작용 미흡), 서비스 이용방법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보 부족,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3-23〉 긴급돌봄(야간/주말)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의향 사유(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수)
가정보육(조부모, 친척 등) 선호	(139)
(아이돌보미) 믿음 부족/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감(학대 우려)	(117)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	(41)
아이의 낮가림	(20)
장시간 아이가 혼자 남을것 같음	(13)
정서적 안정감/교감 부재	(9)
이용방법/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보 부족	(8)
경제 문제/비싼 비용	(7)
복잡한 절차	(6)
적시성(시간이 맞지 않음)	(6)
안전성 우려	(6)
서비스/교육의 질 저하	(5)
돌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	(5)
까다로운 이용조건	(4)
아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생활습관 등)	(4)
전문성 부재	(3)
아이가 너무 어려서	(3)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	(3)

구분	(수)
낮은 가성비	(2)
정성 부족/성의 부족	(2)
주말/야간 돌봄서비스 부재	(1)
돌봄교사의 잦은 변경	(1)
대기자가 많을 것 같아서	(1)
갑자기 필요할때 이용 불가	(1)
주변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담	(1)
상황별 다름	(1)
전체	(378)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낯선 아이돌보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부모 10은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였으며, 부모 18이 제기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11은 아이돌보미의 신원 확인은 물론, 경력, 집까지의 이동거리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데, 많이 꺼려져요. 아무래도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의 전문인력이 아니라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면 좋은 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영아들은 낯가림이 되게 심한데, 낯선 사람이 매번 바뀐다고 하면 거부감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 선생님과 뭐했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되어야 낯선 사람이 와도 아이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략)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돌봄) 장소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더 클 것 같아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말 긴급할 때만 이용할 의향이 있어요 (부모 10)

우선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원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어린이를 돌보다가 학대를 해서 신고를 당했다거나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쪽으로는 재취업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니까 (중략)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중략) 경력이라든 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동시간이 만약에 30분, 1시간 이상 걸리는 데 그 시간에 아이를 보러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가까운 분을 위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부모 11)

저는 이용할 수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가 훨씬 더 부모 입장으로써는... 아이돌봄은 집 내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있으니까 아이한테 바로 챙겨줄 수 있고, (중략)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단 둘이 있는.....아이돌보미 선생님도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는 불안한 요소도 있어요.

저도 운이 좋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교육을 받았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쁘신 분은 아닌데 얼마나 아이와 놀이를 해주셨을까 의문이 들 때는 있었어요 (부 모 18)

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강제 휴원 평균 3.93점, 부모가 아픈 경우 3.87점,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점, 일상적으로 늦은 퇴근(19:30 이후) 3.84점,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표 IV-3-24 참조).

[그림 IV-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단위: 점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는 자녀수가 3명 이상 가구와 영아자녀를 둔 가구, 그리고 이용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여, 이들 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이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표 IV-3-25, 표 IV-3-26, 표 IV-3-27 참조), 또한 맞벌이 가구의 특성별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표 IV-3-28 참조). 출근시각별로는 오전 10시 까지 그 수요가 고르게 존재하며, 늦은 퇴근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는 실제로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그림 IV-3-5, 그림 IV-3-6 참조).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특성으로 자녀 특성 즉,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은 위의 [그림 IV-3-4]에 의하면, 그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요한다. 단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적용기준은 부모 7의 경우는 3자녀 이상, 부모 8의 경우는 2자녀 이상을 강조하며, 자녀연령에 대해서는 부모 9과 같이 0세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그 근거는 일관된 적용의 측면에서 육아휴직 또는 영아수당의 적용대상 연령,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기존 제도의 적용기준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자녀는 우선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양육하는 데 덜 힘든데 세 명을 동시에 양육하는 상황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어요. 셋을 보는 게 쉽지 않고...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 더 선택권을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아이가 어리고 다자녀라면 우선권을 좀 더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7)

자녀가 셋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두 명 있고 막내가 있으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 보육이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부모 8)

(아이가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한 명일 때는 맞춰서 놀아주고 제인해서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친구처럼 놀 수 있는데, 둘은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저는 한 명인데 둘이 각자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둘이 잘 놀 때도 있어요. 그 때 잠깐 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바로 또 싸워요. 둘은 천지차이에요 (부모 19)

어린이집이 0세부터 갈 수 있지만 0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사실 힘들 거든요. 저는 제가 9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고 매일 동일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가 그래도 돌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 선생님 말고 정말 집에서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둘이 됐을 때는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혼자하기엔 힘들고 맞벌이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나이 차가 적으면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둘째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 9)

〈표 IV-3-2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1)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필요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코로나19 등으로 기관이 강제 휴원하는 경우	1.3	3.5	24.4	42.2	28.7	100.0 (1,623)	3.93
아이가 아파서 등원할 수 없는 경우	2.4	7.8	28.9	35.9	25.1	100.0 (1,623)	3.73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2.0	5.2	26.8	37.9	28.1	100.0 (1,623)	3.85
이른 출근(기관이 문을 열기 전)	2.6	7.6	28.4	40.2	21.2	100.0 (1,623)	3.70
늦은 퇴근(연장보육 이후, 19:30~)	2.0	6.4	24.0	40.5	27.0	100.0 (1,623)	3.84
기관에서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 (신규입소 등 기관 적응기간 등)	2.2	5.6	32.8	39.2	20.2	100.0 (1,623)	3.70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의 장애 포함)	0.9	5.7	25.8	41.0	26.7	100.0 (1,623)	3.87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2.8	8.1	35.4	35.9	17.7	100.0 (1,623)	3.57
추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6	5.8	26.3	39.4	25.9	100.0 (1,623)	3.80
다자녀 가구	3.1	6.4	30.7	38.8	21.1	100.0 (1,623)	3.68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2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2) 자녀수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수				(수)
		1명	2명	3명 이상	F	
코로나19 등으로 기관이 강제 휴원하는 경우	3.93	3.92	3.93	3.99	0.297	(1,623)
아이가 아파서 등원할 수 없는 경우	3.73	3.67	3.78	3.78	2.528	(1,623)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	3.87	3.82	3.91	0.847	(1,623)
이른 출근(기관이 문을 열기 전)	3.70	3.69	3.70	3.72	0.034	(1,623)
늦은 퇴근(연장보육 이후, 19:30~)	3.84	3.86	3.85	3.73	1.144	(1,623)
기관에서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기관적용 등)	3.70	3.64	3.72	3.82	2.844	(1,623)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의 장애 포함)	3.87	3.85	3.89	3.88	0.349	(1,623)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3.57	3.53	3.60	3.66	1.457	(1,623)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	3.80	3.79	3.87	0.429	(1,623)
다자녀가구	3.68	3.66	3.66	3.89	3.498*	(1,623)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p < .05

〈표 IV-3-2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3) 자녀연령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연령1							자녀연령2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F	영아	유아	t	
코로나19 등으로 기관이 강제 휴원하는 경우	3.93	4.00	4.11	4.01	3.94	3.93	3.82	3.574**	4.03	3.87	3.464**	(1,623)
아이가 아파서 등원할 수 없는 경우	3.73	3.94	3.85	3.82	3.68	3.73	3.65	2.021	3.83	3.68	2.969**	(1,623)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	4.12	3.99	3.90	3.83	3.87	3.75	2.371*	3.93	3.80	2.692**	(1,623)
이른 출근(기관이 문을 열기 전)	3.70	3.88	3.96	3.74	3.65	3.70	3.59	3.900**	3.80	3.63	3.391**	(1,623)
늦은 퇴근(연장보육 이후, 19:30~)	3.84	3.82	4.00	3.91	3.81	3.82	3.76	2.035	3.93	3.79	2.835**	(1,623)
기관에서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기관적용 등)	3.70	3.65	3.86	3.73	3.68	3.69	3.63	1.561	3.76	3.66	2.155*	(1,623)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의 장애 포함)	3.87	3.82	4.01	3.97	3.80	3.81	3.81	2.852*	3.97	3.81	3.734***	(1,623)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3.57	3.35	3.72	3.67	3.53	3.54	3.49	2.839*	3.68	3.51	3.378**	(1,623)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	3.88	4.03	3.94	3.69	3.69	3.72	5.594***	3.96	3.70	5.242***	(1,623)
다자녀가구	3.68	3.71	3.97	3.79	3.60	3.61	3.58	5.544***	3.83	3.59	4.852***	(1,623)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2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4) 이용기관 특성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이용기관 유형		종일제보육 이용 여부				(수)		
		어린이집	유치원	연장보육 이용	연장보육 미이용	방과후과정 이용	방과후과정 미이용		F	
코로나19 등으로 기관이 강제 휴원하는 경우	3.93	3.96	3.87	1.898	4.06	3.88	3.90	3.84	5.313**	(1,623)
아이가 아파서 등원할 수 없는 경우	3.73	3.77	3.65	2.191*	3.87	3.69	3.71	3.57	5.496**	(1,623)
직장에서 갑자기 아근해야 하는 경우	3.85	3.88	3.79	1.699	3.98	3.79	3.86	3.68	6.100***	(1,623)
이른 출근(기관이 문을 열기 전)	3.70	3.71	3.66	1.039	3.82	3.62	3.72	3.57	5.299**	(1,623)
늦은 퇴근(연장보육 이후, 19:30~)	3.84	3.86	3.81	0.960	3.96	3.77	3.86	3.73	4.939**	(1,623)
기관에서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기관적용 등)	3.70	3.70	3.68	0.472	3.82	3.61	3.74	3.60	6.084***	(1,623)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의 장애 포함)	3.87	3.92	3.75	3.436**	3.94	3.91	3.78	3.72	4.321**	(1,623)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3.57	3.60	3.51	1.759	3.73	3.50	3.54	3.47	6.634***	(1,623)
추기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	3.85	3.69	3.137**	3.92	3.79	3.71	3.66	5.005**	(1,623)
다자녀가구	3.68	3.73	3.58	2.870**	3.77	3.70	3.61	3.53	3.489*	(1,623)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2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5)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근로형태			F	주말근로 여부			(수)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주말 근로 안함	비정기적 주말 근로	정기적 주말 근로		매주 주말	
코로나19 등으로 기관이 강제 휴원하는 경우	3.93	3.94	3.90	4.05	0.342	3.87	3.98	3.94	3.99	1.559	(1,623)
아이가 아파서 등원할 수 없는 경우	3.73	3.74	3.74	3.90	0.296	3.67	3.77	3.74	3.85	1.692	(1,623)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	3.85	3.82	4.14	1.098	3.82	3.87	3.85	3.85	0.246	(1,623)
이른 출근(기관이 문을 열기 전)	3.70	3.71	3.61	3.90	1.354	3.67	3.71	3.71	3.71	0.154	(1,623)
늦은 퇴근(연장보육 이후, 19:30~)	3.84	3.84	3.85	3.90	0.064	3.76	3.91	3.83	3.87	2.203	(1,623)
기관에서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기관적용 등)	3.70	3.71	3.63	3.86	0.992	3.69	3.68	3.73	3.74	0.362	(1,623)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의 장애 포함)	3.87	3.88	3.77	4.19	2.697	3.82	3.89	3.87	3.96	0.984	(1,623)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3.57	3.59	3.48	3.62	1.404	3.55	3.61	3.56	3.59	0.484	(1,623)
추기 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	3.83	3.59	4.00	5.865**	3.76	3.83	3.77	3.91	1.213	(1,623)
다자녀가구	3.68	3.72	3.47	3.76	5.796**	3.65	3.70	3.67	3.80	0.917	(1,623)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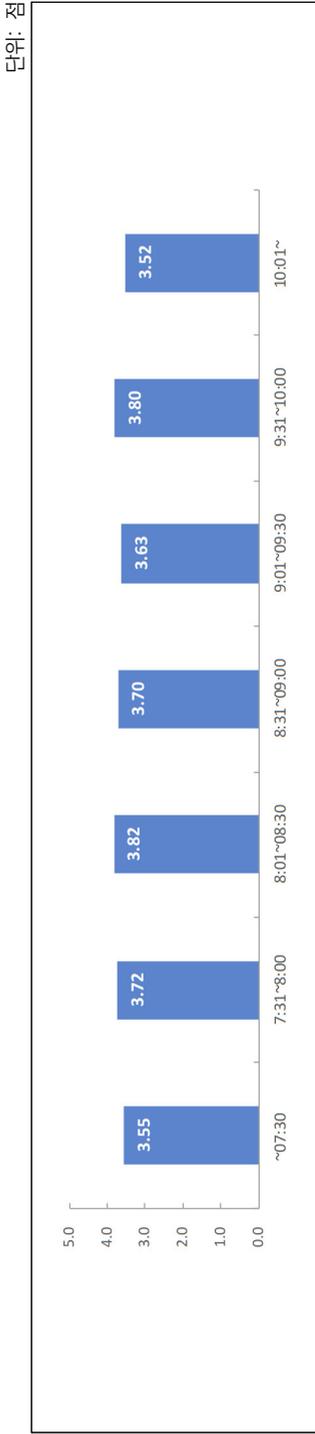
주2: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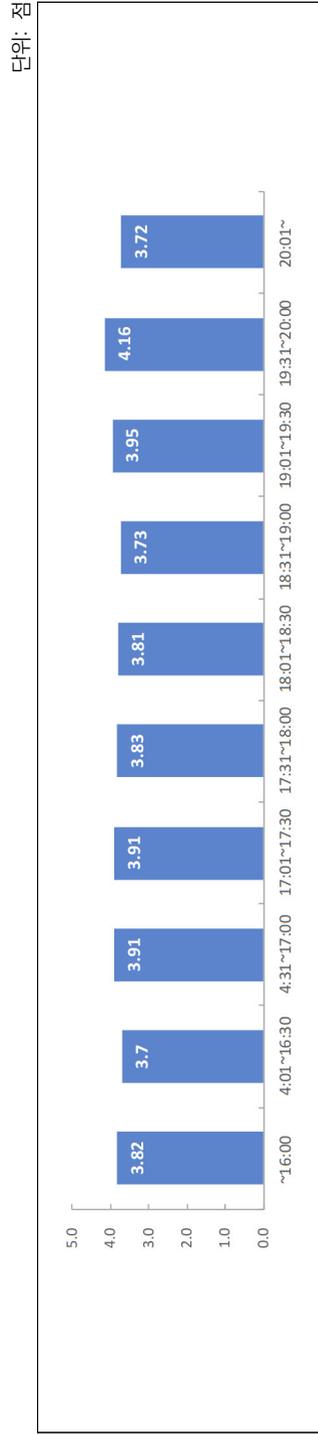
IV.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그림 IV-3-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기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부모의 출근시간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그림 IV-3-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기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부모의 퇴근시간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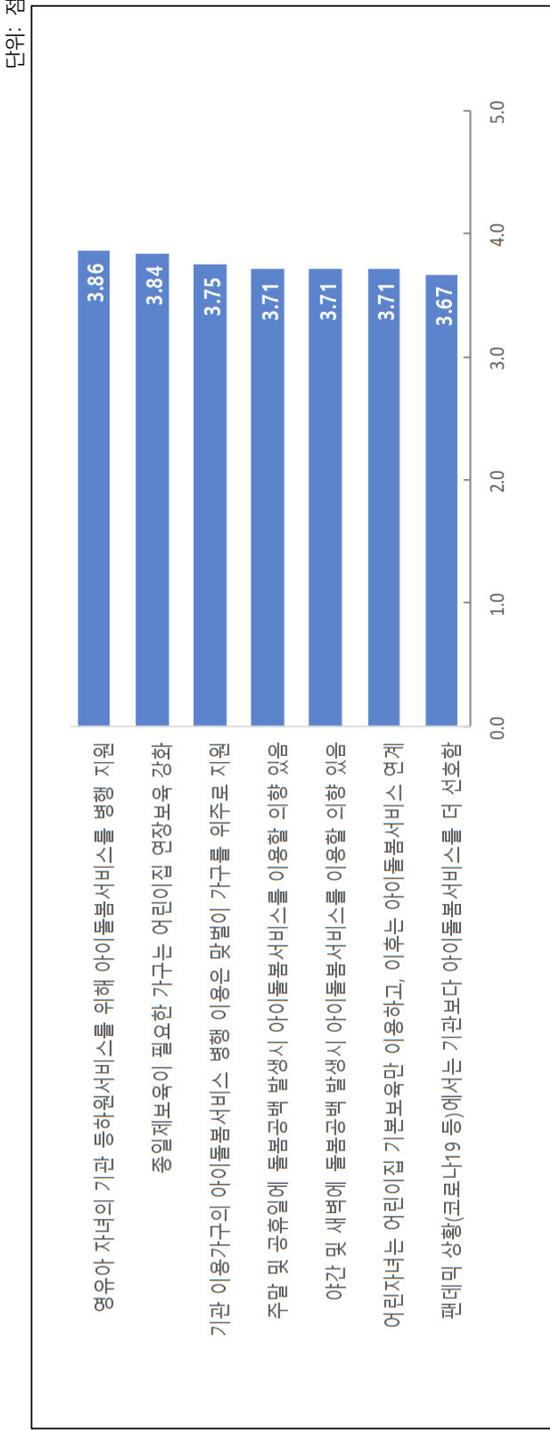
1) 서비스 연계지원 관련 동의 정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적용사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와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연장보육 위주로 지원한다’에 동의하는 비율(동의함+매우 동의함)이 각각 69.2%(평균 3.86점, 5점 만점)와 70.1%(3.84점)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29 참조).

주요 변인별로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0세아와 1세아에서 각각 4.18점과 4.07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고,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을 맞벌이 가구 위주로 지원한다’에 동의하는 비율도 해당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0세아:3.94점, 1세아:3.91점)(표 IV-3-30 참조). ‘영아자녀의 경우는 기본보육 이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표 IV-3-31 참조).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영유아 자녀의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동의 비율: 3.91점), 종일제보육의 수요에 대해 연장보육 위주로 지원하며,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을 맞벌이 가구 위주로 지원하는(공히 3.88점) 순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표 IV-3-32 참조). 그 다음으로는 야간 및 새벽과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동의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정도(5점 척도)]



주: 5점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29〉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동의 정도: 1) 전체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동의				계(수)	5점 평균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16:00~19:30)을 강화한다	0.7	3.8	25.4	51.3	100.0 (1,623)	3.84
어린이(0~1세, 또는 0~2세)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6.8	30.1	44.8	100.0 (1,623)	3.71
영유아 자녀(미취학)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4	4.1	26.2	47.5	100.0 (1,623)	3.8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은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한다	1.2	7.0	28.7	42.1	100.0 (1,623)	3.75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0.9	6.6	35.6	38.5	100.0 (1,623)	3.67
아간 및 새벽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1.4	7.2	28.5	44.2	100.0 (1,623)	3.71
주말 및 공휴일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1.3	7.0	29.3	44.7	100.0 (1,623)	3.71

주: 5점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표 IV-3-3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등의 정도: 2) 자녀연령1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연령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16:00~19:30)을 위주로 지원한다	3.84	3.82	3.95	3.86	3.83	3.84	3.79	1.050	(1,623)
어린이집(0~1세 또는 0~2세)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71	3.82	3.82	3.78	3.63	3.70	3.65	1.924	(1,623)
영유아 자녀(미취학)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86	4.18	4.07	3.92	3.82	3.80	3.79	4.171**	(1,62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은 맞춤형 기구로 위주로 지원한다	3.75	3.94	3.91	3.70	3.76	3.84	3.68	2.433*	(1,623)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3.67	3.65	3.79	3.61	3.67	3.70	3.67	1.104	(1,623)
아간 및 새벽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71	3.76	3.88	3.80	3.61	3.74	3.64	2.739*	(1,623)
주말 및 공휴일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71	3.71	3.77	3.80	3.68	3.64	3.65	1.992	(1,62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IV-3-3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등의 정도: 3) 자녀연령2

구분	전체	자녀연령2		(수)
		영아	유아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16:00~19:30)을 위주로 지원한다	3.84	3.88	3.81	1,736 (1,623)
어린이(0~1세, 또는 0~2세)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71	3.79	3.66	2,925** (1,623)
영유아 자녀(미취학)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86	3.96	3.80	3,952*** (1,62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은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한다	3.75	3.76	3.74	0,390 (1,623)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3.67	3.65	3.68	-0,604 (1,623)
아간 및 새벽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71	3.80	3.66	3,230** (1,623)
주말 및 공휴일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71	3.79	3.65	3,051** (1,62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IV-3-3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동의 정도: 4) 맞벌이 가구 여부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맞벌이 가구 여부			(수)
		맞벌이 가구	맞벌이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 안함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16:00~19:30)을 위주로 지원한다	3.84	3.88	3.74	4.00	6.139** (1,623)
어린이(0~1세, 또는 0~2세)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71	3.73	3.65	3.88	2.185 (1,623)
영유아 자녀(미취학)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86	3.91	3.76	3.92	5.482** (1,62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은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한다	3.75	3.88	3.48	3.54	35.657*** (1,623)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3.67	3.74	3.51	3.62	11.752*** (1,623)
아간 및 새벽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71	3.76	3.61	3.85	5.465** (1,623)
주말 및 공휴일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71	3.76	3.58	3.81	7.079** (1,62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 1점 ~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IV. 수요자 측면: 자녀돌봄의 공백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2) 서비스 연계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 방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이나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가 39.4%(1+2순위 응답률 53.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등 주민센터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아이사랑포털 등 육아관련 포털 사이트에 소개자료 탑재가 공히 32.2%,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에 안내책자 비치 31.1%,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 안내책자 비치 30.8%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IV-3-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보수집 방식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해 줌(오리엔테이션, 부모 간담회 등)	39.4	53.6
의료기관(소아과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2.3	30.8
주민센터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6.9	32.2
산후조리원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8.9	19.2
육아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0.1	31.1
육아 관련 포털(아이사랑포털 등) 사이트에 소개 자료를 탑재함	12.1	32.2
기타	0.2	1.0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와 요구 조사

영유아 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위의 〈표 IV-3-33〉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감염병 유행 시기에 질병감염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거나(부모 3), 보육료 신청 안내 공지 시에 알림(부모 11),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에 공지(부모 12) 등이 제기되었다.

저희 어린이집은 알림장에서 수두, 눈병 등 전염병이 유행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질병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를 해주셔서 엄마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 3)

보육료 신청할 때 카톡으로 알림이 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떻게 얼마는 납부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중략) 아무리 병원에서 정보를 줘도 그걸 바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필요 없으면 스팸처럼 인식하겠지만 필요할 때 이런 게 왔었는데 하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서비스 자체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 11)

제가 복직할 때 회사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육아휴직 후에 어떻게 급여를 신청하고 이런 것을 회사에서 문서로 줬어요. 그런데 복직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복직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복직 시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마지막 달이나 조기종료를 클릭하는 시점에서 그런 홍보 문구나 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복직 이후에도 타이밍이 한 번 있어요.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잔여 급여를 받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관련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그 시점에 안내도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일을 해봤더니 필요하더라, 이러한 체감이 드러날 거라서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부모 12)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및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관련 요구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은 폭넓게 존재하며,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 중에서도 보육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수요를 면밀하게 선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평균 59.2% 이고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65.7%에 달하였다. 또한 현재 기관 이용 시간이 '보육 수요 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이고, 주말의 해당 비율은 41.1%로 더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의 해당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서 이들 서비스가 돌봄 공백을 온전하게 해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보육이 필요할 시간대는 현행 연장보육 운영시간대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오전통합보육 시간인 오전 7시 30분 부터 9시 이전에 높은 수요를 보여, 틈새보육에 대한 기본 방향의 정립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종일제보육의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보육과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서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를 지목한 가구의 경우는 '연장보육 운영시간의 준수'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그 방향성으로 보아 타당함을 의미한다.

둘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은 그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의 전략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는 이외에 긴급보육 수요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특히 긴급보육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기관의 휴원 등으로 인한 구조적 상황과 급작스런 야간근무 등 개별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긴급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는 기관의 강제 또는 임시휴원, 자녀의 감염병 또는 사고 등 '자녀가 아픈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휴원, '부모가 아픈 경우(병원 입원)', '부모의 갑작스런 야간근무 또는 출장 등이 지목되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에 달하였다. 또한 집단감염 시에 희망하는 자녀돌봄의 방식으

로는 아이돌보미가 30.1%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은 돌봄 공백의 상황 및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연계 방안을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관 운영시간 이외 시간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하되, 영아자녀, 다자녀가구, 그리고 주말근로와 교대제 근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만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영아자녀의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이용률은 가정어린이집에서 10% 수준으로 가장 낮은 데, 이들 가구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힘든 가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주말근로 가구는 기관의 보육 수요 충족 수준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의향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야간근로가 일상화된 교대제 근로 가구의 경우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넷째,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서, 서비스 연계의 요건 및 기반의 조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다부처에서 추진되는 돌봄지원 사업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가구의 마련과 연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은 물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아동인계 시 가정과의 연계 관련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보완 등)도 요구된다. 나아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식 및 절차의 간소화, 추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지원 기준의 적정성 제고, 아동 및 가구별 비용지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원아의 돌봄 공백 시 안내 방식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부모에게도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 단계부터 제도 홍보 채널을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서 파악한 수요자의 희망하는 정보 제공 방식을 반영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기관의 연간 운영에 따라 가정통신문 안내를 일상화하고, 영유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의료기관,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내책자 배부, 임신·육아관련 사이트(보육포털 등)의 알림 공지 등을 고려할만한다.

공급자 측면: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 0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 0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 03 긴급보육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 04 소결

V. 공급자 측면: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제5장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원장)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연계의 경험, 필요도, 그리고 개선요구를 파악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은 그 특성에 주목하기 위해 구분하여 다루었다.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원아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및 대응조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경험 및 애로사항,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 및 개선요구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과 돌봄 공백에의 대응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과 원아의 돌봄 공백 상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운영시간이 변동되는 있는 시기 및 해당 사유는 주로 신학기 적응 기간과 교직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교육 또는 행사가 있는 경우였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학기말 방학 기간에 운영시간이 변경되며, 특히 1월과 8월 방학 중에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1〉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 변동 및 해당 사유

응답 내용		응답기관
기관 운영시간 변동 시기	기관의 운영시간 변동 사유	
3월 새학기	새학기에 신입원아가 입소하면서 다양한 부모님들의 등·하원 시간이 변동됨	어-1
신학기 적응기간(3월초~3월말)	신입생 적응기간으로 하원이 평상시보다 빠름	어-2
매년 3월, 11월 중 1일씩	지자체에서 전 교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오후 4시 이전 하원을 권고함.	어-6
여름, 겨울 학기말 방학 시	방학으로 인한 기관 휴업	유-6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자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2) 휴원 및 해당 사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휴원명령이나 임시휴원을 한 시기 및 해당 사유는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 발생(부모, 교직원, 이용원아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관 행사 이후 재량휴원, 연휴, 태풍으로 휴원 등 그 사유가 다양하였다.

〈표 V-1-2〉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및 해당 사유

응답 내용		응답기관
휴원명령/임시휴원 시기(년월)	해당 사유	
일시폐쇄(2020.11)	원아 부모의 코로나19 확진	어-1
대체공휴일(2021.8.16)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진행할 수 없는 시설 인데 부모의 수요조사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어 수요조사 실시 후 임시휴원함)	
휴원명령	코로나19로 2.5단계 및 4단계 격상으로 휴원명령	
휴원명령(2020.2.25~2020.10.18)	코로나19로 인한 시군구 휴원명령	어-2
휴원명령(2020.11.24~2021.3.31)	코로나19로 인한 시군구 휴원명령	
휴원명령(2021.7.12~현재 휴원중)	코로나19로 인한 시군구 휴원명령	
임시휴원(2021.4.29)	코로나19 부모 확진자 발생	어-4
임시휴원(2021.7.12)	코로나19 부모 확진자 발생	
임시휴원(2021.7.22)	코로나19 부모 확진자 발생	
일시폐쇄(2021.8)	코로나19확진자 발생으로	어-5

응답 내용		응답기관
휴원명령/임시휴원 시기(년월)	해당 사유	
임시휴원(2021.7.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교직원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기간 공지로 교직원들이 4일안에 촉박하게 접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접종 이후 부작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원활한 진료 및 응급실 이용을 위해 백신 휴가를 교직원에게 지급함. - 보육 공백 없이 긴급돌봄 유지를 위해 화요일에 1팀(투담임반 중 1명의 교사와 보조교사팀), 목요일에 1팀(담임교사 팀)으로 구성하여 긴급돌봄 체제를 갖추어 대비하였음. - 담임교사가 접종을 하는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모두 가정양육이 가능하다고 하여, 긴급돌봄 이용 원아가 없어 임시 휴원을 결정함. 	어-6
휴원명령(2021.8)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어-7
임시휴원(2020.6.12)	어린이의 코로나 확진자 접촉	유-1
휴원명령(2020.2)	유치원 반경 2km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유-4
임시휴원(2019.5.1)	근로자의 날	유-6
임시재량휴원(2019.6)	행사 실시 후 재량휴원을 실시함	유-7
임시재량휴원(2019.10)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경우 휴원함	
임시휴원(2018.8.23)	태풍으로 인한 휴원	유-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한편 기관의 휴원으로 학부모와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있으나 해결 방안은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실정이므로(부표 1 참조), 원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원아의 미등원 또는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상황과 대응 조치

가) 원아의 미등원 또는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상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이용아동이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일찍 아동을 하원시키도록 권유하는 경우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즉, 기관에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는 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는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이외에 원아가 아픈 경우와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기간, 보육교직원의 집체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표 V-1-3〉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미등원/이른 하원을 권유한 경우

응답내용		응답기관
원아가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원아의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	
코로나19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을 때 또는 영아가 감염병이 의심될 때 (수족구, 수두 등)	보육교직원 필수 안전교육을 일괄로 전 보육교직원이 들어야 할 때(불가피한 상황) 교육시작 바로 5분전 정도까지만 귀가하도록 권유해봄 (연장반 영아들에게는 권유조치하지 않음)	어-1
영아의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2주 이상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중 1명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받고 등원하도록 할 때 당장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함	아이가 별안간 열이 나고 아플 때 (체온이 37.5도가 넘었을 때)	
영아가 해외 또는 지방, 제주도등 여행을 다녀왔을 때 바로 등원하기 보다 선제검사를 받고 등원하도록 권유함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알레르기과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 바로 병원의 조치가 필요할때	
휴원 기간 중 등원율이 높아 교실 내 밀집도가 높음으로 가정보육 가능한 가정은 가정보육을 권고함	휴원 기간에 등원율이 높아 교실내 밀집도가 높음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시간 동안 긴급보육 이용 부탁	어-2
동거 가족 중 밀접 접촉자 혹은 능동감시자 발생시	호흡기 증상 및 37.5도 이상의 발열	
코로나 4단계 발표 시 가정보육이 가능한 경우 권유	없음(부모의 형편을 최대한 맞추려함)	어-3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가능한 등원하도록 함 (감염 위험을 감수 하기도 함)		
감염병 발생	감염병 발생	어-4
-	아동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	
-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여 밀접접촉자	코로나19 검사받으라고 권유	어-5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 및 밀접 접촉,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되었을 때 등원을 하지 않도록 함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대상 교육이나 행사에 보육교직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경우 행사나 교육시간에 맞춰 하원할 수 있도록 권유함(1년에 1~2회 정도), 일찍 하원이 안되는 경우를 파악하여 당직교사를 배치함	어-6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호흡기 질병이 있을 경우 완치까지 등원이 불가하며 소견서를 지참하여 등원하도록 함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37.5도의 열이 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 하원을 권유함	

응답내용		응답기관
원아가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원아의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의 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유로 긴급 돌봄을 실시해야 할 경우 항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등원하는 원아가 본인의 자녀만 등원하는 경우 알려달라고 부모님이 요청함. 등원하는 원아가 그 자녀 한명일 경우 알려드림. 이용 여부는 부모님이 결정함)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열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하원을 하도록 권유함	
전염성 질환일 경우(수족구, 눈병 등)	등원 후 원아가 아픈 경우 (갑자기 열이 나거나, 복통호소)	어-7
감염병일 경우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 할 때	어-8
재량방학일		유-1
1년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없이 운영함	없음	유-3
-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시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시	유-5
-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 코로나 확진으로 밀접 접촉일 경우	고열이나.유아의 건강 악화 경우	유-6
-	감염병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유-7
- 코로나 증상 의심 상황	코로나 증상 의심 상황	유-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나) 미등원 또는 이른 하원 시 돌봄 공백에의 대응 조치

원아가 등원하지 않거나 일찍 하원하는 것을 권유하여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대응한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특히 감염이 우려되는 아동의 경우는 귀가 조치가 불가한데, 지역내 아이돌보미의 공급이 부족하여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표 V-1-4〉 어린이집/유치원의 미등원/이른 하원에 따른 대응 조치

응답 내용	응답기관
- 인근 시간제보육시설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함	어-1
- 질병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불가하고 가정양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없음 -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음을 안내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기는 어렵다. 부모님이 휴가를 내어 아이를 양육하거나 조부모나 그외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대다수라서 어린이집의 이용이 불가할 시 개인의 부담이 크게 발생함	어-6
- 부모상담을 실시함	어-7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함	어-8
- 가정에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므로 보호자가 가정 돌봄 하도록 권유함	유-5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4) 원아의 돌봄 공백에의 대응 조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 여건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용원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시에 기관의 대응 조치를 살펴보면,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관 및 소재지의 특성에 따른 대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이 제기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으로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서비스가 다양화되지 못해서 기관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가정내양육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해당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공휴일과 긴급보육 수요가 발생할 시에 1명의 아동이라고 해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시에는 어린이집 원장실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담당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유치원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해당 아동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각 1주일)에는 부모가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라도 조리사 등이 근무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휴원을 안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V-1-5〉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 공백 대응 조치

응답 내용		응답기관
기관 또는 소재지 여건	기관의 소재지역에 따른 대응 조치	
돌봄의 공백 시 대체할 서비스가 있어 도입은 되어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의 부재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외에 돌봄 공백시 가정양육만 할 수 있는 소재 여건임 (농촌지역)	어린이집을 상시 운영한다.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긴급돌봄 시에는 항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1명의 이용자가 있더라도 운영함	어-6
열이 37.5도 이상일 경우,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등원을 하더라도 하원을 하도록 연락을 드리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이 멀리 있고 갑작스럽게 휴가를 낼 수 없어서 하원이 불가함	격리장소에서 하원 시까지 격리 돌봄을 실시함	
격리아동이 발생할 경우 격리 장소가 원장실에 마련되어 있음	원장이 격리장소에서 돌봄을 실시하거나 원장이 부재시에는 보조교사가 돌봄을 실시함	어-6
여름, 겨울 방학운영 1주일	부모는 등원을 희망하지만 조리사 근로기준에 준해서 1주일씩 방학 운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대응없이 사전 알림으로 진행	유-3
-	맞벌이 가정유아를 위한 아침 조가 등원가능	유-6
담당할 인력(교사)이 부족함	교사들이 시간을 나누어 돌봄을 하고 있음	유-7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자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및 애로사항

1) 서비스 인지 시기 및 경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으로 알게 된 시기는 어린이집에서는 2013~2020년으로 다양하였으나, 유치원에서 2019~2020년이 주를 이루어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해당 제도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해당 인지 경로는 공식 업무전달체계 즉,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시·군·구의 업무 연락) 또는 교육청의 업무 공문,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내 공지가 언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홍보 자료와 주변 학부모로부터 알게 된 경우 등이 언급되었다.

〈표 V-1-6〉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시기 및 경로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시기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2013년~	서비스 이용부모	어-1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직접 이용(2자녀 이용)	어-2
2018년	시군구 업무연락으로 홍보	
201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어-3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어-4
2020년	보육통합	어-5
2020년 3월	지자체 현수막, 관련 사이트	어-6
-	홍보물	어-7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문	어-8
2020년	주변 학부모로부터	유-1
2019년	이용하는 학부모님을 통해서	유-2
2020년	교육청 공문	유-4
2020년	유치원 업무 공문으로 안내됨	유-5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	유-6
2020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지인의 소개로	유-7
2017년	교육청 안내와 유치원 소개 책자	유-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2) 서비스 연계 경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안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응답한 모든 기관에서 경험이 있었으나, 반면에 유치원에서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더 많았다. 해당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다룬 제도 인지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어린이집에 한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한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1) 감염병에 걸린 아동, 2) 등원 이전과 하원 이후 자녀돌봄의 공백을 우려하는 가정, 4) 코로나19로 기관이용을 꺼려하는 가구, 5) 다른 자녀(동생 등) 돌봄(입원 등) 또는 추가출산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우려하는 가구, 6) 부모가 병원입원으로 인한 자녀의 돌봄 공백 상황, 7) 부모의 국외 출장, 새벽출근 등 긴급보육 수요

발생 가구, 8) 가족행사(장례 등)로 인한 자녀돌봄 공백 우려 시 였다. 또한 그 방식으로는 1) (교육청) 공문으로 하달 즉시 모든 학부모에게 일괄 안내함, 2) 가정통신문 보냄, 3) 신입 오리엔테이션(중간입소 아동 오리엔테이션 포함, 등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때 어린이집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및 안내 경험이 희박한 유치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달된 즉시 학부모에게 안내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은 모두 공립유치원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는 주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또는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부록표 2 참조).

〈표 V-1-7〉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사항

응답 내용	응답기관
- 복직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침에 너무 일찍 준비해 등원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문의가 있었을 경우	어-1
- 졸업생 영아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하는데 돌봄 공백이 필요해 문의했을 경우	
- 집안가족중 상을 당했는데(친할아버지) 어린 영아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돌봄 공백을 의뢰할 경우(돌봄 공백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1박 2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재우고 그 다음날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경험 있음)	
- 엄마가 대학원생인데 주말에도 논문을 쓰고 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이었을 때 돌봄 공백이 필요해 의뢰하였을 경우	
- 보육시간 이외 (저녁 늦게) 형제자매중 한명(형) 입원절차를 엄마 혼자 처리해야 했을 때 동생의 돌봄 공백이 필요했을 경우	
- 감염병이 돌 때 감염병 걸린 아이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병감염아동지원 안내함	어-2
- 오리엔테이션때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상담 시 돌보미 구인을 걱정하시는 가정들에게 안내함	어-3
- 신입오리엔테이션	
- 중간입소아동 오티 및 안내책자	어-4
- 돌봄 고백: 어린이집 이용 후 가정에서의 공백이 생길 경우안내	
- 신입생 원아 오리엔테이션 감염병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함	어-5
- 만5세 초등학교 입학전, 졸업 시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함	
- 신입오티때 부모님들에게 안내문으로 공지	어-6
-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며 어린이집 이용을 꺼려하시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가정양육을 해야 하는 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안내함	
- 부모님의 병원 입원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함	



응답 내용	응답기관
- 맞벌이 가정의 원아가 감염병으로 등원을 못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권유	어-7
-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에서 감염병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하고 관련 가정 통신문을 보냄	어-8
- 공문으로 받은 즉시 학부모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안내를 홍보하였음	유-5
- 코로나 발생에 따른 대책 지원으로 안내함.	유-6
- 감염병 시 학부모에게 안내함	유-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자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애로사항으로는 1) 아이돌보미 즉시연계의 어려움, 2)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 인식 부족, 3) 아이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4) 서비스 연계체계의 미흡, 5) 서비스 이용 편의성 낮음, 6) 서비스 내용 잘 모름 등이 제기되었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관련 사항과 이용절차 등을 제외하고, 서비스 연계 체계의 측면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필요시에 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인계 등에서 아이돌보미와 교사와의 역할 분화에 대해 상호간의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8〉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보미 즉시연계의 어려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서비스 매칭 어려움)	- 신청 시 바로 연계가 안 되고 대기기간이 길어 필요 시 혜택을 받지 못함	어-2
	- 신청가구가 원하는 만큼의 돌봄서비스 역부족 상태일 때가 많음	어-3
	- 신청자와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계되기 어려움	
	- 긴급 시 신속한 파견이 어려움	어-4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도 우리 지자체는 인력풀이 약해서 이용을 거의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	어-6
	- 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연계가 안된다고 함	유-8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봄미에 대한 부모 인식 부족	- 아동이 어려 낫선 어른께 일시적으로 아이를 바로 맡기기 부담스러워 하심	어-2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선뜻 권장하는 것이 두려움	어-5
	- 이용한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이돌봄미의 자질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함.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	유-2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돌봄 선생님이 오셨을 경우 등하원시 영아를 대하는 모습이 정성스럽거나 다정하지 못하고(묵묵뚱함) 아이돌봄미선생님이 데리러 오면 집에 안 간다고 싫어하는 데 귀가를 시켜야 할 때	어-1
	- 등원 시 아이가 아이돌봄미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선생님께 집에서 처리하고 와야 할 일을 보육교사에게 의뢰할 경우(머리 묶는 것, 옷을 입히는 것, 아침밥 먹고 아침약을 먹이는 것 등)	
서비스 연계체계 미흡	- 등하원 돌봄 교사와 시간 협조 관련 애로사항(원 등하원 배차시간 등을 아이돌봄미 선생님의 시간에 맞추길 요구 등)	어-4
서비스 이용 편의성 낮음	- 부모님들께서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이용하지 않음	어-8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잘 모름	유-7
	- 학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심	유-7
서비스 내용 잘 모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시 학부모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	유-4
	- 아이돌봄서비스의 구체적 이용 방법에 관련한 안내문의 부재	유-7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1) 원아의 돌봄 공백 우려 상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원아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1) 부모의 근로특성 즉, 부모의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나 자영업자 등 근로시간이 길어서 하원 이후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한 가구, 2) 부모가 아파서 입원 등을 하게 된 경우, 3) 가족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4) 원내 부모참여 수업이나 활동 참여 시, 5) 신입원아의 적응기간, 6) 감염병에 걸린 아동, 7) 원아가 아픈 경우(외상 포함), 8) 부모가 출산한 경우, 9) 가족돌봄(형제의 치료 등), 10)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기관에 등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제기되었다.

〈표 V-1-9〉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 공백 우려 상황

응답 내용	응답기관
- 부모의 야근이 잦은 경우의 가정의 영아이면서 주위에 아무도 대체보육을 해줄 수 있는 기타인력이 없는 경우(월 1~2회 어린이집에 의뢰하는 경우 있었음)	어-1
- 부모가 자영업을 하시고 영아가 귀가를 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가게로 하원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돌봄이 어려울 경우	
- 감염병이 의심되는데 부모님이 돌볼수 없는 상황의 경우	
-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아빠는 회사를 가야하기도하고 엄마를 돌보기도 해야 할 때)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경우	
- 가족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자녀가 장례식장에 함께 있지 못할 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어-2
- 감염병 걸리거나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동거가족의 코로나 자가격리자 발생했을 경우	
- 원내 부모참여수업이나 부모참여 활동시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적응기간(3~4주)동안 보호자가 함께 원내 상주하여 적응기간을 갖는 경우 짧은 적응시간을 갖고 하원이후 돌봄 연계가 필요할 경우	어-4
- 일과 중 원아가 아파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부모님께서 이동하기 어려우신 경우	
-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가정 내양육이 필요한 경우	
- 등하원 공백	
- 가족 병중 / 출산 / 형제 놀이 치료	어-5
- 한부모가정의 돌봄시간 가중 지원	
- 장애우 가정 돌봄시간 가중 지원	어-6
- 원아감염병(수족구,수두, 결막염, 구뇌염, 전염성설사등)으로 부모님 직장가야하므로	
- 감염병으로 등원이 불가한데 아이들 봐 줄 사람도 없고 휴가를 낼 수도 없는 경우	어-7
- 코로나 19 감염의 두려움이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밖에 선택지가 없는 가정에게 불안 감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감염병으로 장기간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어-8
-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가정 자녀가 아파서 등원이 힘든 경우	유-1
- 가정 내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기 힘든 경우	유-2
-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가정내양육이 필요한 경우	
-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질환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유-3
- 사고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한부모 가정으로 여성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유-4
- 부모가 학업이나 취업준비, 자기개발 등 으로 가정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기 힘든 경우	유-5
- 맞벌이 가구의 유치원 방학기관 중	
- 유치원의 휴원일	유-6
-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여 등원하기 힘든 경우	
- 주변 지인 포함(학교,학원 기타 등등) 확진자 동선 우려 및 염려	유-7
- 맞벌이 가구 유아가 다치거나 아파서 등원하기 힘든 경우	
- 감염병 의심	유-8
- 방학으로 기관 휴업의 경우	
- 감염병 의심 아동인 경우	유-7
- 감염병 의심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유-8
- 한부모 가정의 유아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파일.

2)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 및 아동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 및 아동으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자녀가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코로나19로 감염 우려로 등원이 힘든 경우, 3) 부모가 아픈 경우, 4) 한부모 가족 등 나홀로 육아 중인 가구, 5) 임시휴원, 6) 기관의 방학 기간, 7) 가정내 긴급보육 상황, 8) 맞벌이 가구(자영업자 포함)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9) 부모참여 수업이나 활동 등이 지목되었다.

〈표 V-1-10〉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인식

응답 내용	응답기관
- 영아가 설사를 하고 힘이 없어하고 힘든 상황 그런데 감염병은 아닐 때 또는 어린이집에서 눈이 충혈되어 결막염으로 감염이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아니라고 할경우 가정양육이 필요한데 가정돌봄이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곳은 어린이집 밖에 없을 경우	어-1
- 나홀로 육아를 하고 계시는 가족의 경우(주위에 할머니, 이모, 고모 등 아무도 없이 육아를 하고 있을 경우	
- 엄마 아빠만 육아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 돌봐줄 사람이 여의치 않을 때	
-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녀인 경우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이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원시간도 늦지만 하원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일터에 가서 본의 아니게 방치되고 있을 경우)	어-2
- 감염병 걸리거나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동거가족의 코로나 자가격리자 발생했을 경우	어-3
- 원내 부모참여 수업이나 부모참여 활동 시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적용 기간(3~4주)동안 보호자가 함께 원내 상주하여 적용기간을 갖는 경우 짧은 적응시간을 갖고 하원 이후 돌봄연계가 필요함	어-4
- 맞벌이가정의 보육 공백	
-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내양육이 어려운 경우	어-5
-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가정내양육이 필요한 경우	어-6
- 등. 하원 공백	
- 가족 병중	어-7
- 원아 감염병(수족구,수두, 결막염, 구뇌염, 전염성설사등)으로 부모님 직장가야 하므로	
- 어머니 출산으로 등하원 힘들 때	어-6
- 등원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가정 내 양육을 하여야 하지만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전혀 없는 가정일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감염병으로 장기간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어-7
- 한부모 가정일 경우 직장귀가 시간이 늦을 경우	

응답 내용	응답기관
- 감염병 의심 아동이 가정내 양육이 필요한 경우	어-8
-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가정 내 양육이 필요한 경우	유-1
- 가정내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감염병 및 기타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2
- 원내 사고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유치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직접적 연계의 필요성을 못 느낌	유-3
- 아이돌봄서비스는 각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봄	
-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정내 양육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유-4
- 방학 실시로 유치원 휴업 경우	유-6
- 감염병 의심 유아 발생시	
- 감염병으로 부모와 격리될 경우	
-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가정내 양육이 필요한 경우	유-7
- 임시휴원 등으로 맞벌이 가정내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 감염병 의심으로 인해 가정보육 시	유-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3) 기관연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보미가 기관으로 파견되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및 가구의 특성과 교육·보육활동을 지목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정서불안 등을 지닌 아동의 바깥놀이 또는 현장학습 시의 활동 보조와 영아의 보육활동 보조, 감염병 의심으로 격리조치를 한 원아의 보호, 아픈 원아의 병원 내방 시 보조, 부모참여 수업이나 활동 시 보조, 신입아동의 적응기간 보조 등이 언급되었다.

〈표 V-1-11〉 어린이집/유치원의 기관연계 서비스 필요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의 특성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교육·보육활동 상황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평상시 자유놀이 시간	어-02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적응기간	부모와 함께 상주하는 적응기간 동안	
부모참여 수업이나 부모참여 활동	부모가 함께 하는 수업이나 행사 시간동안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봄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의 특성	아이돌봄 지원이 필요한 교육·보육활동 상황	
맞벌이 가정	부모 출퇴근 전/후 등/하원 시 보육공백	어-03
장애부모 가정	현장학습 외부활동시 보조	
경계성 아동 지원	실외활동시	
활동에 상관없이 있는 장애아동	만0세 영아들은 한명이 울면 전체가 따라 옴	어-05
원아 감염병	신입적응 시 한 명의 교사가 3명을 안아줘야 하므로 장애가 있는데 엄마는 장애를 인정 인해서 교사가 한 명 붙어있는 경우	
-	밥을 먹일 때 2명까지는 양손으로 사용하지만 3명은 힘들	
장애경계선 아동	보육활동 시 장애 경계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담 보조	어-06
어린이집 등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이른 하원이 필요한 경우이나 부모님 외에 돌봐 줄 가족이 전무한 경우	격리실에서 아동을 전담하여 돌봐주는 활동	
장애아동과 발달이 늦은 아이	바깥놀이 시 보조	어-08
경계성 발달 지연 유아 돌봄		유-03
특수교육대상아동	일과중 보조(바깥놀이 포함)	유-05
정서불안 아동	일과중 보조(바깥놀이 포함)	
교사들의 퇴근이후	외부활동 시 보조	유-06
부모의 야근시	원내 소그룹활동 시 보조	
유아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병원 내방 시 보조	유-07
과잉 행동 아동	자유놀이, 바깥놀이, 급간식	
다문화가정 아동	자유놀이, 바깥놀이, 급간식	
장애 유아	놀이 활동 시 보조	유-0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자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라. 서비스 연계 시의 우려점과 필요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의 우려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시의 우려점으로 제기된 바는 아동인계 시 등에서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이 주요하였으며,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잦은 아이돌봄 교체에 대한 우려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기관의 퇴소 등을 우려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상호 간에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V-1-12〉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우려점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동의 안전	-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안정성	어-4
	- 안전문제 (어린이집에서는 다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경우)	어-5
	- 아이돌봄미에게 인계되는 아동의 안전문제	유-5
서비스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	- 낯선 어른에게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불안함. 유아보다 영아는 적응시간 필요	어-2
	- 아이돌봄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아야함	어-5
	- 인성, 성폭력 등 아동학대 관련 교육 철저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제 상황이 유치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유-4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사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안내 책자, 온라인 교육자료, 이용방법 및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한 관련 매뉴얼 등 소개 자료와 담당부서의 공식 업무 연락,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한 가구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부모 대상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도 제안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스템이 유치원, 어린이집, 주민센터, 구청, 교육청 포털 등의 링크(배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출산수당, 자녀수당 지급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입학 시에 가정통신 안내 등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V-1-13〉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응답 내용	응답기관
-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용방법에 대한 카드뉴스 또는 동영상안내 제작으로 어린이집으로 배포 후 매주 또는 매월 가정통신으로 안내할 때 안내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어-1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매년 업무연락으로 홍보 요청이 오며 리플릿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대기기간이 길어 불편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성이 있었지만 이후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어-2
- 실무적인 업무 협의	어-3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책자 등을 원에 보내주시면 필요한 학부모에게 안내할수 있음	어-7
-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한 기구 설치 - 신청 방법이 용이해야 함	어-8
-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연계방법 및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책자 교부 -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학부모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정보를 교류함	유-1
- 사전 신청을 받아 필요 인원 및 필요 시간 및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대응함(아동의 환경 및 발달 등 정보를 학부모로부터 직접 받음)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책자 교부 및 부모안내용 사업요약본 PPT	유-2
-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가 제공되어야 함	유-2
- 아이돌봄을 유치원에서 실행하는데는 여러 문제가 있음(예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 복무 관리 등)	
- 학부모님용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책자지원, 직접적인 학부모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서비스 제공	유-4
- 온라인 홍보 강화함 1) 유치원, 어린이집은 초기 단계에 가정통신을 통해 사업을 알려드리면서 홈페이지 배너(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가능함을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돌봄서비스 모바일로 부모가 직접 접속해서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3) 주민센터, 구청, 교육청 포털 등에도 링크(배너)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임	유-5
- 출산수당, 자녀수당 지급시 부모교육을 병행함, 이때 돌봄서비스도 홍보함 - 돌봄서비스를 모바일로 부모가 직접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함	
- 유치원, 어린이집은 입학시 가정통신 안내 등을 통해 사업을 알려드림(홍보)	유-6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책자 교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책자 교부, 이용방법에 대한 매뉴얼 필요함	유-7
-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가 제공되어야 함	
- 교육청 안내도 좋지만 아이돌봄지원사업 책자 필요	유-8
- 지속적인 연계 가능 여부 안내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마.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인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경우 원아의 돌봄 측면에서 기대효과로는 1) 감염병 원아의 가정내보육이 가능하고, 2) 경계성 아동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보조활동으로 원활한 보육활동이 가능하며, 3) 유치원의 경우 방학 기간 등에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고, 4) 기관의 운영시간과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일치할 경우 틈새보육이 지원되며, 5) 신학기 적응기간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는 점 등이 언급된다.

〈표 V-1-14〉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감염병 원아의 가정내보육 지원	- 가정내 돌봄이 불가함으로 원에서 별도 케어를 해야 하는 어려움 해소(발열 친구도 별도 공간에서 교사 1명이 따로 케어하는 등)	어-2
	- 감염병으로 인한 휴원 등으로 인한 보육의 공백 최소화	어-4
보조인력이 필요한 아동의 원활한 보육	- 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 보육에 도움을 받을수 있어 보육의 부담이 낮아지며 장애통합으로 보내기 부담스러운 경계성 친구들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함께 보육될 수 있음	어-2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안정적인 보육이 될 것임	어-3
신학기 안정적인 원아 적응	- 매년 신학기마다 적응기간(원내 부모님과 함께 적응훈련)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며 적응을 도울 수 있음	어-2
기관 휴원 시 원아 돌봄공백 해소	- 유치원 방학 및 재량방학 시 학부모의 돌봄 공백이 해결됨	유-1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	- 유치원 운영 시간 및 학부모의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유-1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과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 및 개선요구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

1)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경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는 미흡한 가운데, 기관유형별로는 유치원에서 서비스 연계를 경험한 경우가 희박하였다.

〈표 V-2-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경험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자녀돌봄의 공백 우려에 따른 서비스 안내	- 어린이집 다문화가정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아들1
	-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이용아동의 母가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서비스 가능 여부 문의하여 정기이용서비스 제공	아들2
	- 타 지역에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정기 이용서비스 제공	
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어린이집 행사 시 보조역할 지원으로 기관연계서비스 제공	아들5
	- 어린이집 교사 휴무 시 선생님 공백으로 요청하여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전염성 질환으로 등원이 어려움 아동에 대한 서비스 문의가 있어 이용자와 통화 후 연계한 이력 있음	아들8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해당 서비스의 연계를 경험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로는 1) 다문화가정,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가구 등 자녀돌봄의 공백에 대한 부모의 우려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신청방법을 안내한 경우, 2) 어린이집 행사 시 보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파견되어 기관연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원아의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등원이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를 부모에게 안내한 경우 등이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으로는 다음이 언급되었다. 즉, 1) 이용기관의 등원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하원 이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 다문화가정 등과 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함은 물론,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직접 문의하여 알려주거나, 3) 어린이집의 행사 또는 보육교사 부족으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다른 한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없는 경우 해당 이유로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그 연계 실적은 저조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가 미흡하며, 사업 영역의 침해로 인해 소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중복지원 금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표 V-2-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미연계 사유

응답 내용	응답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 아동의 가정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기관과의 연계는 없었음	아들3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외부인의 방문을 선호하지 않음	
-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라 생각함	
- 이용자 가정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타 정부지원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위한 협조하고 있음	아들6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직접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경우는 없으며, 직장어린이집 개소하기 전 아이돌보미 파견 관련하여 문의시 이용절차(기관연계서비스) 및 아이돌보미 역할(보조교사)에 대해 안내는 하였으나 실제 연계한 건은 없음	
- 감염병 등으로 돌봄 서비스 필요 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가정에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하고 있음. ※ 연초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리플릿, 전단지 등 지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배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필요한 가정에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아들7
-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서 직접 기관으로 문의하여 서비스 안내하고 연계	아들4
- 본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사업 영역의 침범 우려로 인한 기관간의 정보소통 부족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고려사항 및 애로사항

가)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고려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소재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 한 개소에서 지역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므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기관파견서비스의 경우 어린이집의 수요가 높으나, 이용가구의 비용부담 가중으로 제약이 있으며,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서비스 연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이용가구의 서비스 추가비용 부담, 3) 맞벌이 가구 위주로 서비스 우선 연계, 4)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상황이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주민세 등 지방세 부담 가중 등으로 제약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표 V-2-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고려사항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식 제고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 매년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인식이 높지 않으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음.	아들2
	- 최근 2~3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방학 중 이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안내지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음.(전국이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등 운영자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들8
서비스 연계 시의 책임소재 명료화	- 아이돌보미가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 방침 등을 따라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이용자가정에서는 주도적으로 아동을 돌봄 할 수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돌봄 활동은 각 기관에 맞는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미가 활동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함	아들3
	- 질병감염아동의 특별지원, 하원 이후의 아동돌봄을 맡는 책임성 분담	아들4
비용지원의 합리성 제고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에 부담도 클 것으로 생각됨	아들3
서비스 연계의 기본원칙 마련 및 기반 구축	- 양육자의 여부, CCTV 여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사유(돌봄 공백 발생, 자녀 양육 부담 등), 반려동물 여부, 이용자와 돌보미 가정의 근거리 등(적용기준 마련 필요)	아들7
	- 회원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완료 필요(어느 때든지 서비스 이용가능 하도록)	아들8

주: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이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이 지목되었다. 즉.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식 제고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2) 서비스 연계 시의 책임소재 명료화와 비용지원의 합리성 제고, 3)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는 아이돌보미와 보조교사의 역할 분화 및 적용기준 일원화, 4) 서비스 연계의 기본원칙의 마련과 사전준비 등이 언급되었다.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어려운 점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언급한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의 중복지원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이용가구의 비용부담, 하원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어 아이돌보미 공급이 수요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점 등이 제기된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당일에 긴급하게 요청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 대기 중인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공급이 어려운 점, 해당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한 제약, 당일 다른 가정의 추가돌봄이 어려움에 따라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표 V-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애로사항 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서비스 연계 불가함. - 하원시간(15시~20시)대 연계가 집중되어 대기가정 발생	아돌2 아돌7
중복지원 금지	- 유사 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 야간 보육, 방과후 보육 등) 운영으로 서비스 운영시간이 중복되어 어린이집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낌	아돌3
	-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간 중복	아돌4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지원을 09~16시로 받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지원가정의 경우 해당시간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시간을 9시30분 또는 10시, 하원은 15시반으로 하여 중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불편	아돌5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에 의거 평일 09~16시와 토요일 실제 운영시간에 보육료 지원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시 정부지원 되지 않음을 안내 시 어려움	아돌6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표 V-2-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애로사항 2: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봄미 근로시간 보장 어려움	- 질병으로 서비스 이용할 경우 활동 아이돌보미가 해당가정 외 다른 가정 돌봄 불가함	아들1
	-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제공의 경우 해당가정 외에 타 가정 서비스 제공불가한 서비스 지침에 따라 연계 어려움 발생함	아들2
	- 질병감염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음	아들3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	아들4
	- 질병감염아동을 돌봄 경우 돌보미가 당일에 다른 가정에서 돌봄 활동을 할 수가 없으나 보통 하루에 2~3가정 활동가는 돌보미를 연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 발생함	아들7
긴급돌봄 즉각 연계의 어려움	- 당일에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따라 센터 측에서도 바로 연계가 어렵고 이용자도 홈페이지 가입이나 이용요금 납부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편임	아들1
	- 실제로 연계과정 상 아이돌보미 배정 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용의사가 없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잦음	
	-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서비스 연계 불가함.	아들2
행정절차 번거로움 (증빙서류 등)	- 결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아들6

주: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의 필요도

1)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필요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인데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및 가구 특성으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이외(야간, 방학 기간 등) 시간대에 맞벌이 가구 등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2)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파서(상해 등 포함) 기관에 등원하기 힘든 경우, 4) 부모가 아픈 경우, 5) 다자녀 가구(쌍둥이 자녀 포함)의 양육이 부담되는 가구(다른 자녀의 돌봄으로 등하원이 힘든 경우 포함), 6) 장애아동의 통원 치료 등으로 다른 아동의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7) 감염성 질환으로 기관에 등원하기 힘든 아동, 8)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관의 개보수 등) 등이다. 이때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공통적으로 영아자녀(36개월)로서 1~2명으로 언급되므로 타 제도와의 정합성

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V-2-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필요도 인식

응답 내용	응답기관
- 다자녀 가구일 때 이용자가 영아돌봄으로 다른 아동들 등하원이 어려운 경우	아들1
- 전염성 질병으로 기관 이용이 불가한 경우	
- 한부모가구로 기관 연장보육 이외에 심야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장애아동이 있어 통원치료 받는 동안 다른 아동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들2
-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의 양육공백 발생(출장, 야근 등)으로 돌봄 요청	
- 맞벌이, 한부모 가정으로 하원 후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	
- 다자녀가정의 경우 양육 부담으로 하원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 희망	아들3
- 주 양육자의 질병 등 사정으로 인해 하원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 이용 희망	
-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 법정전염병, 질병, 상해 등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들4
- 기관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되지 않아 아동이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예: 교사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당일 운영 중지)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등·하원시간, 방학기간 등 돌봄이 필요한 시간	
- 부모의 질병, 진료, 출산, 임신 등의 이유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들5
- 아동의 취침시간에 부모의 부재(출장, 집안 행사, 입원 등)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하원부터 양육자의 인계까지의 공백시간(맞벌이 등으로 인한)	
- 어린이집/유치원의 사유로 인한 미등원시	아들6
-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등, 하원 시간의 공백	
- 쌍둥이 또는 다자녀의 하원 후 집에서의 양육 부담	
-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학 또는 리모델링 수리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운영 불가할 경우	아들7
-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의 경우 늦은 귀가로 보육시설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으므로 생길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하원 시 이용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엄마 혼자서 등원 또는 하원 시 서비스 이용	
-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후 가정에서 일대일 보육 원하는 경우	아들8
- 다자녀 가정(영아 2명 이상, 아동 3명 이상)에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양육하기 어려운 자녀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동의 등원시간 사이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들8
- 부 또는 모가 아파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	
- 맞벌이 이용가정의 출퇴근 시간 중 양육공백· 아동의 질환으로 등원 불가·방학 등	
- 36개월 미만 아이를 포함한 다자녀가정의 하원 후 돌봄	아들8
- 자녀 중 1명이 병원 입원시 남은 아동에 대한 등하원 서비스	
- 부모의 입원 등에 따른 등하원 서비스	
- 장애부모의 돌봄 기능 보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2) 기관연계 서비스 필요도

위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필요도 인식에서 나아가 기관연계 서비스 즉,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되어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을 아동의 특성이나 보육활동을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다음이 제기되었다. 우선 아동의 특성 측면에서 1) 신규 입소 등 신학기 적응 기간, 2) 장애아동 또는 경계성 아동, 문제행동 아동의 보육활동 시 보조 역할이 필요한 경우, 3) 외상을 입은 아동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보육활동 측면에서는 바깥놀이를 희망하지 않거나, 바깥놀이 또는 행사 및 체험활동 등이 제기되었다.

이들 사항은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는 보조교사 등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고 본다.

〈표 V-2-7〉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연계 서비스 필요도 인식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의 특성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일과 운영이나 보육활동 상황	
신학기 적응기간	신학기 적응기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환경적응 보조	아돌4
장애아동/문제행동 아동	선생님이 케어하지 못하는 1:1 밀착 케어가 필요한 아동일 경우	바깥놀이 또는 행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차나 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돌5
	장애아동	보육 외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 역할로 지원	아돌7
외상 입은 아동	외상을 입은 아동	신체활동 등 보조	아돌4
기타	-	부모의 요청으로 아동의 바깥놀이(미세먼지 심한 날) 참여가 어려운 경우	아돌3
	-	외부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시	아돌6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다.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우려점과 필요사항

1)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우려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우려사항으로는 다음이 지적되었다. 우선 아이돌보미의 잦은 변경 시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해당 아이돌보미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아동안전 문제가 책임 소재 관련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기관에서 아이돌보미의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등이 야기되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가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우려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 이해와 서비스 연계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V-2-9〉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우려사항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동인계 시 안전관리	- 기존 아이돌보미가 아닌 새로운 아이돌보미로 교체되어 아동의 하원을 돕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인계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음	아들3
	- 하원 시 인계 과정에서의 아동사고 등 안전 책임문제	아들4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이 다쳤을 경우 부모에게 바로 보고가 되지 않고, 아이돌보미에게 인계한 후에 퇴근 후 부모가 확인하여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돌볼 때 다쳤거나 아동학대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아들7
	- 본 센터는 기관에서 아동을 인계 받았을 경우 아동 몸 또는 컨디션 파악 후 평소와 다르다면 바로 이용자에게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	- 기관에서 아동과 돌보미 사이의 한 부분을 보고 결론 내려 부모가 돌보미의 인성 또는 활동 내용에 의문을 갖게끔 하는 경우가 있음	아들7
서비스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	- 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보다 아이돌보미의 낮은 신뢰도	아들3
	- 어린이집, 유치원에 맞는 맞춤형 교육 필요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강화	-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의 부재 시 사업수행의 혼란 발생 우려	아들4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필요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연계할 시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음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적극적인 홍보(TV 등 대국민 홍보 강화 포함) 2)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방식 구체화(지침에 가정통신문 안내 명시)와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마련(평가인증 등 기평가 시 지역사회 연계 항목 포함 등), 3)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4) 공통 적용기준 정교화(아동의 투약, 활동 중 사고 발생 등 유의사항, 아동인계 과정 등 보완), 5) 기관 간의 업무협약,

6)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내 통합적 이해교육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 교육,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등), 7) 기관파견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인센티브 제공(추가수당 지급 등), 8) 기관의 중복지원 금지 해당 시간대(어린이집 09~16시/유치원 09~13시)의 추가비용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비용지원 방식의 합리화 등이다.

〈표 V-2-10〉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필요사항

응답 내용	응답기관
- 지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아돌2
- 어린이집, 유치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기관에 맞는 교육 필요	아돌3
- 어린이집, 유치원 파견 아이돌보미에 대한 추가수당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장 대상 인식개선 오리엔테이션 및 업무협약 실시	아돌4
- 어린이집/유치원의 의무적 서비스 연계 강화 (예시: 평가인증 시 지역사회 교류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실시 등)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내 통합적 이해교육 실시 (담당자 직무교육 및 활동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중 과정 신설)	
-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활동과정에 대한 연결작업 (예시: 아동의 투약, 활동 중 사고 발생 등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밀한 인계과정 요구)	아돌5
- 전국적인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필요 (TV, 인터넷 광고 등)	
-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시간 확대	아돌6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매년 리플릿 및 전단지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요청시 지역내 어린이집/유치원은 가정통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 필요	
- 어린이집(09~16시)/유치원(9~13시)의 지원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고자 할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선택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료에 부담을 완화	
- 지역 내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등 기관방문 및 홍보물품, 홍보 전단지과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진행	아돌7
- 지역내 어린이집/유치원운영자에 대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인식제고 (홍보포함)	아돌8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라. 서비스 연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1) 서비스 연계 시 지원요구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1) 서비스 신청 및 접수 방법, 2) 서비스 이용비용 정산 및 지급방식, 3) 아동인계, 4) 안전사고 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견을 구하였다.

〈표 V-2-1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시 개선요구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접수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신청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교사가 서비스를 문의하기 보다 부모가 직접 서비스를 문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 정보가 확실하지 않음. 건별 확인이 어려움	아들1
	- 기관의 담당자 여러 명일 때 홈페이지 등록시 고정 담당자 1명으로 등록되어 불편(문자 등이 고정 담당자에게 전송)	아들3
	- 신청 시 서비스 내용, 또는 주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필요함 - 서비스내용에 대해 재 인지하고 신청할 필요 있음	아들5
	- 부처 차원에서 일시연계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코로나19 등으로 이용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직접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아들7
	- 회원가입 이후 절차 간소화 필요. 2020년 변경된 홈페이지 이용이 더 어렵다는 이용자의 의견이 다수 있었음.	아들8
서비스 이용비용 정산 및 지급 방식	- 기관파견서비스 신청기관에서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지급(보육교사 채용보다 아이돌봄서비스 기관파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	아들3
	- 예치금으로 결제되는 부분 생략 필요. 불필요한 문자 발송 :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예치금 결제 문자(결제실패)-이용요금 승인문자 받으심. 예치금 결제 실패 문자에 대한 민원다수 발생	아들8
아동 인계 관련 사항	- 원에서 아동을 인계받는 아이돌보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아들3
	- 이용자의 요구로 인해 인계보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서비스 연장시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이유로)가 있음. 이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돌보미 및 기관 보호 기능 필요	아들8
안전사고 관리	- 이용자 서비스 준수사항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에 대한 내용 포함 되길 건의	아들8
기타	- 아동돌봄 전달체계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운영되어야 함.	아들2
	- 고정 돌봄을 요청할 경우 동일 아이돌보미 배정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숙지하여 맞춤돌봄이 가능하지만 간헐적 신청일 경우 매번 다른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어 각 기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어 비효율적	아들3
	- 아이돌보미의 명확한 활동 범위 필요	
	- 어린이집 활동내역의 전산화 및 아이돌봄시스템과의 연동(아동활동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시스템간 연동을 통해 활동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의 누수없는 돌봄 실현)	아들4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우선 서비스 신청 및 접수의 경우는 이용 신청 시에 서비스 내용, 또는 주의사항에 대한 팝업창 안내, 회원가입 이후 절차 간소화, 기관의 담당자 여러 명일 때

홈페이지 등록 시 고정 담당자 1명으로 등록되어 불편(문자 등이 고정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기관의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차원에서 일시연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코로나19 등으로 이용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직접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서비스 이용비용 정산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기관파견서비스 신청기관의 입장에서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기관 운영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이용부모의 입장에서 예치금으로 결제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예치금 결제 실패 등 불필요한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아동인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아동을 인계받는 아이돌보미의 신분을 증명할 수 방법을 지침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요구로 인해 인계 보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서비스 연장 시에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이유로)가 있으므로 이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아이돌보미와 기관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된다.

안전사고 관리에 대해서는 “이용자 서비스 준수사항”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이외 기타 사항으로는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아동돌봄전달체계로서 상호협조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아이돌보미의 명확한 활동범위 명료화, 어린이집 활동내역의 전산화 및 아이돌봄시스템과의 연동 즉, 아동활동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시스템간 연계하여 활동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의 누수 없는 돌봄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2) 일시연계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가 일시연계 서비스(야간, 주말 등)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개선과제로서 제기한 바는 1) 서비스의 홍보 강화와 편의성 제고, 그리고 해당 아이돌보미 공급 규모의 확대 등이다. 서비스 홍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이용부모들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은 물론, 예치금 충전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 일시연계서비스의 이용 요건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강조되었다. 또한 이용가구의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가구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 경험이 있는 아이돌보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가입 등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청한 아이돌보미가 신청 즉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른 한편 아이돌보미의 측면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주말 등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비용지원은 중복지원 금지에 따라 이용가구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보미 공급이 원활하여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표 V-2-1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시연계 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개선과제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서비스 홍보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강화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인식 개선 - 일시연계서비스 홍보 강화(예치금 충전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한 부분 등)	아들2
서비스 편의성 제고	- 일시연계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에 실무자가 즉시 확인이 어려움. 진행 여부나 결과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일일이 문자 내역을 찾아봐야 함 -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전 표시되는 팝업창은 예치금 잔액이 있어야 신청된다는 설명이 없어 신청 과정에서 제약이 걸리거나 가상결제자가 아닌 카드결제 선택 시 즉시충전이 아닌 익일에 처리되어 이중결제처리가 되기도 함.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우선시 될 필요성이 있음	아들1
	- 일시연계서비스 문의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락 바란다고 안내되어 있어 관련 문의를 센터 실무자가 처리 할 때 1차적으로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지만, 수차례 아이돌보미 거절로 이용 취소 시는 센터를 통해 비정기 신청으로 전환하게 됨. 실무자가 직접 알아보고 연계 해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시연계서비스가 아닌 정기연계서비스로 이용하게 됨	
	- 시스템의 편의성 증진: 접속 절차 간소화, 카드 가입 절차 개편 등	아들4
	- 이용자는 이전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데 이전 돌보미 선택(돌보미명 성만 조회됨)의 어려움으로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을 기피 현상 발생함 - 이전 돌보미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추가 필요(정부의 일시연계 서비스의 목적과 이용자 활용 목적이 상이함) - 일시연계서비스에서 돌보미 배정 시 아이돌보미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아이돌보미 재선택 등의 신청 절차 및 예치금 충전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자 어려움 호소, 활용률 낮음	아들3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 신청절차의 전면 개편 필요. 사전 예치금 충전 방식도 번거롭고, 형제 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 당시의 요금 결제 금액과 실 결제 금액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음.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가 수락을 해야하는 시간이 짧음. 돌보미는 대부분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알림에 발빠르게 반응하지 못함.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대부분의 이용자가 돌보미의 나이만 보고 판단하여 젊은 돌보미만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 나이보다 돌보미의 다른 강점을 내세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함. 	아들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경우 월~토요일까지 보육료 지원으로 토요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부금지 기준에 의해 중복지원 불가 시간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 및 중복금지 기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시설 미운영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구가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아들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제공해야 하나, 센터를 통하지 않고 일시연계 하는 가정에서 위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휴게시간 없이 서비스 이용하여 센터의 의사와 다르게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 - 어플에서 일시연계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팝업창으로 띄우고, 4시간 연속으로는 신청 될 수 없게끔 시스템 개편 필요 - 앱 활용한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번거롭거나 직접 신청하기 대기하는 것을 귀찮아하여 센터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화해서 연계 요청 	아들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연계 신청 시 가상계좌를 통한 사전 입금, 돌보미 이름 등이 전체 공개되지 않아 조율된 돌보미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어려움(민원사항) -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의 사전 입금 방식과 돌보미 이름 전체 노출 등 개선 필요(아이돌보미0 이름 노출 순 가나다 순 이라든지 이용자 주소지와 가까운 순 이라든지 등) 	아들 8
주말이용 시 비용지원의 적절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경우 월~토요일까지 보육료 지원으로 토요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부금지 기준에 의해 중복지원 불가 시간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 및 중복금지 기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시설 미운영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구가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아들6
아이돌보미 인력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확보 	아들4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3. 긴급보육의 서비스 연계 및 개선요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 시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를 각각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데 힘든 점으로는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의 어려움, 2) 원아/교직원 감염 우려, 3) 불규칙한 이용으로 인한 원아 및 운영관리의 어려움, 4) 돌봄인력의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방역활동(소독, 가림막 설치, 거리두기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특히 영아를 보육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관리의 어려움이 보다 크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로감이 언급되었는데, 특히 집단감염의 발생 시에 그 책임이 기관으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강조되었다.

또한 원아/교직원 감염 우려는 다수 언급되었는데, 특히 학부모에게 방역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기관의 재정적 또는 인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이용 양상으로 급·간식 재료의 구입 또는 돌봄인력의 배치 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 지적되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은 유치원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준비 등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여서 인적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표 V-3-1〉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시 애로사항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의 어려움	- 말도 안 통하는 영아들에게 마스크를 수시로 씌워주기에 대한 어려움	어-1
	- 혼자서 밥을 먹기 어려워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영아들에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밥을 먹여줘야 하는 상황에 교사들의 이동 동선이 더 늘어나고 이동에 불편하다는 점에서의 어려움	
	- 매일 이어지는 방역활동(소독/가림막/거리두기) 등으로 업무의 가중화 및 8시간 이상 계속 쓰고 있는 마스크로 아동 교사 다 피로감 호소	어-4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 마스크 착용으로 양치 미실시로 건강교육 우려.	유-6
	- 급간식 시 유아 간 거리 확보 및 조절	
원아/교직원 감염 우려	- 등원율이 높아 교실 내 밀집도가 높아 감염 걱정됨	어-2
	- 호흡기 질환(기침, 콧물감기)에도 약과 함께 등원시키심	
	- 유아의 경우 잦은 감기로 긴급보육을 원에서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아동의 학원이나 별도 공간에서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나와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기 전(능동감시자) 긴급보육 거절할 수 없어 긴급보육의 위험성이 걱정됨	어-3
	- 가정으로부터 부모님들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코로나19가 감염될까봐 우려되는 점	
	-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혹여 감염전파 될까봐 외부활동이 어려움	
	- 부모님들도 협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교사들이 백신맞을 때 맞는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어 서로 미안해 함.	어-5
- 코로나19 방역지침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려고 노력하지만 열이 37.5도 이상일 경우 등원불가, 등원하였을 경우 바로 하원조치 이 조항은 명확하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하원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저항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더라도 기침, 호흡기, 발열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 불가라는 지침에서 '호흡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콧물이 많이 나는 아이들도 하원의 대상이라고 어린이집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학부모님은 콧물이 호흡기 증상이나,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며 하원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등원을 강행하는 등 저항이 심하다.	어-6	
- 확진 어린이가 등원했다면 추가 확진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태를 지켜봐야 함	유-1	
불규칙한 이용으로 인한 원아 및 운영관리의 어려움	- 예측하지 못하는 등원아동 인원으로 교사들 항시 배치	유-1
	- 긴급돌봄 기간은 방학이라고 생각해서 등원시간을 지키지 않음.	유-2
	- 등원시간 이후 등원지도를 위한 교사 배정으로 인한 학급 내 교사의 공백 발생	
	- 결석예정 유아가 갑자기 등원하였을 때 분반의 어려움과 식자재 부족	
	- 교육과정 운영의 공백	유-8
- 돌봄 인력 운영의 어려움		
돌봄인력의 부족	- 교사 검사 추진 등 돌봄인력이 부족함	유-1
	- 긴급돌봄을 맡을 오전 교사의 부족, 채용의 어려움 발생	유-7
	- 긴급돌봄 시기에는 원격교육이 운영되므로 담임교사들이 긴급돌봄을 맡을 수 없음	
	- 방과후는 오후를 맡는 교사로 오전돌봄을 맡을 교사가 부족함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1) 긴급돌봄 지원 관련 서비스 연계 변화 인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 지원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연계 시에 주된 변화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변화가 지목되었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장기휴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가구가 증가하거나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민행복카드 등 사전요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증진된 점, 그리고 기관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류발급 업무가 증가한 점 등이 언급되었다.

〈표 V-3-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관련 정책환경 변화 인식

응답 내용	응답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여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달라지고 있음	아들1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신청 가구의 증가	아들6
- 이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보육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본 사업에 회의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줌	아들7
- 아동의 질병감염, 방학,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미운영하는 경우 요청하는 서류 발급	아들8
- 일정기간 동안 국민행복카드 없이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던 적이 있음	
- 등·하원시간대 이용자가 코로나 상황으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이용한 사례가 있음.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긴급돌봄 지원 애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1)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의 감염 우려, 2) 서비스 수요 및 이용 증가와 서비스 매칭의 어려움, 3) 활동 아이돌보미 감소 및 수급 조절의 어려움, 4) 아이돌보미 법정 근로시간 초과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용가구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가정내 파견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고,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기존 가정을 선호하여 신규가정에 파견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연계하는 시간대가 비슷하여 활동가능한 돌보미가 부족하여 연계에

어려움 발생하나. 아이돌보미는 감염에의 우려도 인해 양성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되었다. 아이돌보미 관리의 측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휴원이나 폐쇄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표 V-3-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시 애로사항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의 감염 우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서 코로나 접촉자,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에 원활한 연계가 어려움	아돌1
	- 아이돌보미도 기존 가정을 제외하고 신규가정에 가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음. 외부 사람 대면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연계가 어려울 때가 있음	아돌5
	- 특정 장소에서의 집단감염 (예를 들어 교회, 신천지 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의 종교까지 확인하여 배정하지 않길 원해 연계의 어려움이 발생	아돌5
	-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부모 또는 아동이 확진자와 접촉 또는 동선이 겹치는 상황에서 해당 가정에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안전을 비롯한 그 돌보미가 활동하는 다른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됨.	아돌7
서비스 수요 및 이용 증가와 서비스 매칭의 어려움	- 기존 이용자의 추가이용 건이 증가하면서 활동 돌보미의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로 배정이 안되는 경우 발생 또는 2명의 돌보미가 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	아돌2
	- 추가이용 건이 발생하면서 장시간 이용 희망가정의 경우 미연계 건 발생함(기존 활동돌보미가 사전 배정되어 있을 경우 희망시간 이용 불가 가능성 있음.)	아돌2
	-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각 기관의 휴원 등으로 서비스 취소 이용자나 추가 시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현재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서비스 이용	아돌3
활동 아이돌보미 감소 및 수급 조절의 어려움	- 활동가능한 아이돌보미의 부족 (코로나 감염 우려, 정기연계 활동으로 인한 불가능 상황 등)	아돌7
	- 이용자들이 연계하는 시간대가 비슷하여 활동가능한 돌보미가 부족하여 연계에 어려움 발생	
	- 활동시간 월 60시간 이상 돌보미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음(휴원 해제 이후 활동시간 60시간 보장)	아돌8
아이돌보미 법정 근로시간 초과 우려	- 어린이집, 유치원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갑자기 폐쇄되면 이용가정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무, 휴게시간 등에 제약이 발생하여 이용자, 돌보미, 본 기관에서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 발생	아돌7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긴급돌봄 개선요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돌봄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1) 긴급돌봄 지원의 행정절차 효율화 및 운영관리 전산화, 2)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강화, 3)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긴급보육 신청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해당 정보를 수기 입력해야 하는 등 그 행정처리가 비효율적이고, 아이돌보미의 감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아이돌보미에 의한 감염우려를 예방하는 조치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돌보미는 우선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활동 아이돌보미 대상의 위험수당, 코로나 검사 등의 조치도 미흡하였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기존 가정을 보다 선호함에 따라 신규 이용 가정의 경우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표 V-3-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개선요구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긴급돌봄 지원의 행정절차 효율화 / 운영관리 전산화	- 보육시설 등하원 및 이용시간이 자율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많음. 기존 정부지원중복금지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9시~16시, 유치원 9시~13시 전 후 이용했다면 코로나 단계 상황에 따라 가정의 선택사항으로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육 전환하여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아들1
	- 추후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돌봄 신청아동이 보육시설을 중복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담당자가 부재할 때 서류제출이 지연되고 수기관리해야 할 서류가 증가됨.	
	- 특례적용을 수기처리 해야 하는 어려움 있으므로 시스템에서 적용되길 원함	아들3
	- 시스템 차원이 아닌 수기로 관련사항을 관리함으로 인한 업무 과중	아들4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기관이 코로나로 인해 휴관이 된다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왔음.	아들2
	- 하지만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에서 아이돌보미는 선택되지 않았고, 연령대 접종일정에 접종을 받고 있음. 불안정한 돌봄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활동 아이돌보미 대상의 위험수당, 코로나 검사 등 조치 부재	아들4
	- 돌봄서비스 제공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아돌봄시 마스크착용이 어려움. 현재 이용자와 협의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상호에 대한 불안함이 있음.	

구분	응답 내용	응답기관
	- 아이돌보미도 이용아동 및 부모를 직접 대면접촉하는 직업이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아쉬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위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아들5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코로나로 인한 긴급돌봄 요청이 있어도 기존에 활동하던 가정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신규 이용가정의 경우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 돌봄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일부가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 밖에 없음.	아들2
	- 각 기관의 교사 백신 접종일이 중복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장시간 이용 서비스에 대한 연계의 어려움이 있었음	아들3
	-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아이돌보미 수가 부족한 사항에서 신속한 연계가 불가하여 어려움이 있었음.	아들8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결과임.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아의 돌봄 공백 우려 상황 및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요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담당자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 및 지원요구를 종합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원아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나, 이들 중에서 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은 현행 규정의 준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면밀하게 선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관 운영 측면에서 원아의 돌봄 공백은 신입원아의 적응 기간, 교직원 집체교육 참여, 부모참여 수업 또는 활동 시, 유치원 방학 기간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유치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과 기관 행사 이후 등 임시재량휴원 시에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에서 임시재량휴원은 감염병의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토록 하고, 전원이 참여하는 교직원 교육은 지양하며, 부모참여 수업이나 활동은 원아의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치원 방학 기간에는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모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신입원아의 적응을 위한 이른 하원’은 아동 발달의 측면에서도 필요

한 조치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적정 지원 기간과 명시하고 해당 기간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둘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아의 돌봄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는 앞 장에서 다룬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와 유사하여 ‘일시 연계 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고려할만하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외상을 포함하여 ‘자녀가 아픈 경우’와 ‘부모가 아픈 경우’, ‘기관 미이용시간의 보육 수요(새벽 출근, 출장 등)’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다른 자녀의 돌봄(형제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행사(장례 등)’ 등이 새롭게 제기되는데, 이들 가구에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를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구 특성으로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연계도 부모 수요와 일치하였다. 단, ‘일시연계 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서 아이돌보미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이 간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가구 준수사항’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개별 가정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완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즉,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16시, 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13시 범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추가비용이 우려되므로 해당 시간대의 긴급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중복지원의 예외적용을 모색할만하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다룬 ‘출석으로 간주되는 보육료 지원의 특례 적용사항’에서 개선과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무 협력 및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소개책자, 서비스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포함된 업무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담당부서 연락체계의 마련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업무협력을 위한 기구는 시·도 및 시·군·구 모두에 설치하되, 특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반드시 포함하고,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2022년 이후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한 수준이

므로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도 요구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직접 신청한 경험은 거의 없고, 일부 기관에 한하여 원아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권유하거나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린이집에서는 특히 질병감염아동의 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일괄 공지되므로, 이를 유치원에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치원 원장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및 서비스 연계 경험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모집 시기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련 세부 적용사항과 부모 대상 서비스 안내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하달하되, 기존의 국공립유치원 이외에 사립유치원에도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VI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01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02 세부 방안

VI.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제6장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명료화 하고, 그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였으며, 자녀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체계를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제1절에서는 영유아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모든 영유아(만 0~5세)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이들 기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는 각 사업별로 지닌 고유한 목적 및 기대효과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법정 운영시간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 서비스 연계의 목표 및 기대효과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아이돌봄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 목적의 부합성

어린이집에서는 16시 까지 기본보육과 16시 부터 19시 30분 까지 연장보육이 제공되며,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이후 시간에 방과후과정이 제공된다.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우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지원하

기 위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명시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11. 5. 인출).¹⁵⁾

다음으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11. 5. 인출).¹⁶⁾ 단, 그 세부 운영기준 및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지역별로 그 운영기준이 다르나, 맞벌이 가정을 비롯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20).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서비스 연계의 측면에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이 그 목표로서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1c: 8). 즉,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리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11. 6. 인출). 보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21c: 8). 이상의 사업별 목적에 의하면,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들 기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을 말해준다.

2) 서비스 연계의 목표 및 기대효과

가) 서비스 연계의 목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

15) 상세주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LSW/l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

16) 상세주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유아교육법, <https://www.law.go.kr/LSW/l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에의 대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가구에게 욕구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기관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해당 수요는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와 '긴급보육'에의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안전한 돌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보조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단지 돌봄 공백의 해소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첩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돌봄 공백의 해소 측면에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 서비스 연계의 기대효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으로 충족될 수 없는 가구에게 누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의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하면, '기관연계 서비스'는 아동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보육활동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아픈 아동이 편안한 가정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일시연계 서비스'는 긴급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나. 서비스 연계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1) 기본 방향 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정교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대상은 0~5세아의 보편적 보육료 지원 하에서 정교화가 요구된다. 또한 이때 돌봄의 공백은 그 성격상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그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틈새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현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 내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돌봄서비스로서 충족되는 수요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은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충족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선결과제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돌봄서비스 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가구의 경우는 '상시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연계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긴급보육을 위해 '일시연계'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및 가구는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시에는 추가비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에 중복 지원을 허용할만한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경우는 기본보육시간 즉, 오전 9시 부터 16시 까지, 유치원 이용가구는 누리과정 운영시간인 오전 9시 부터 15시 까지 범위 내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보육료 지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는 특례적용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들 현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중복지원 및 특례적용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지원 허용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기본 방향 ②: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는 통합적 돌봄지원 체계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중앙부처간의 협력체계는 물론 시·도 및 시·군·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2022년 부터는 광역지원센터)와의 협의가구를 거쳐,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각 부처의 담당자와 현장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일괄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원스톱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주된 불편사항으로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을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아동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이용에 따른 비용 산정 등을 위해 각 사업별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도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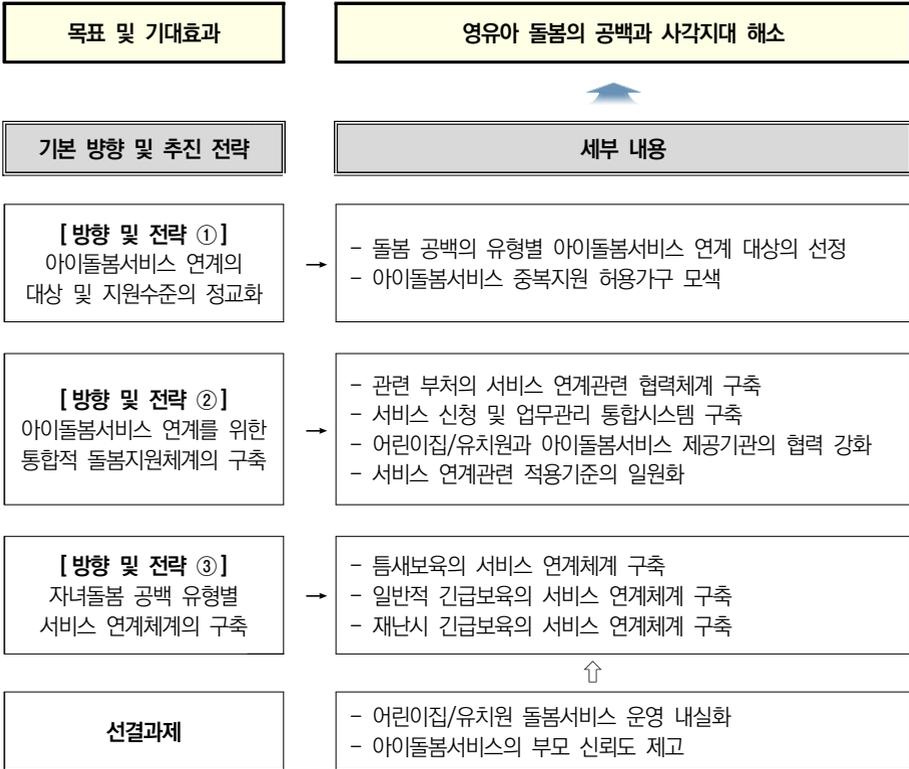
3) 기본 방향 ③: 돌봄 공백 유형별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크게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들 유형별로 차별화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틈새보육은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로서 상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보육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서 비롯되며, 세부적으로는 일상적인 긴급보육과 재난 시 긴급보육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돌봄 공백 유형별로 연계에 적합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일상적인 틈새보육 수요에 대해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긴급보육은 일시연계 방식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와 ‘기관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이하 [그림 VI-1-1]과 같다.

[그림 VI-1-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와 추진 전략



다. 선결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그 선결과제로서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와 2)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

1) 어린이집/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

틈새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현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기준으로 충족되지 않은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는 틈새보육에 대해서는 기관보육 만으로 보육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향성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충족되는 돌봄 수요는 원칙적으로

로 해당 기관에서 온전히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을 정교화하기에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선결과제로서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등 종일제보육 이외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을 면밀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운영기준에 맞게 제공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에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한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어린이집에서는 12시간 보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본보육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에 추가보육 수요가 높게 나타나므로 오전 통합보육(7:30~9:00)을 위해 해당 시간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장보육은 종료시각인 19시 30분 까지 반드시 운영토록 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여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장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우려도 제기되므로 연장반교사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앞서 연장반교사의 채용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전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지역별로 그 운영기준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실정이므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관된 운영기준의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6. 14. 인출), 12시간 운영을 의무화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강제성이 덜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20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c.do?section=&>

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2021. 11. 5. 인출),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종전과 같이 그 기준 및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돌봄 공백의 해소 측면에서 어린이집 운영기준과의 일원화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VI-2-1〉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기준 및 내용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p>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p> <p>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p> <p>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p> <p>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p> <p>[시행일: 2022. 7. 21.]</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인출일자: 2021. 11. 5)

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후 시간대와 주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야간보육과 주말보육의 접근성 제고가 요구된다. 부모권과 아동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시간보육 보다는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되나, 부모의 근로 특성으로 인한 돌봄 수요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주말보육은 상시로 운영하며, 야간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거점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린이집에서는 그 밖의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나, 유치원에서는 돌봄서비스 운영시간과 지원수준이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서울 지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운영 형태로서 온종일돌봄교실을 포함하여 1일 15시간(07:00~22:00)을 운영하여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75).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공립유치원을 위주로 운영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리적 접근성 보장의 측면에서 이들 한계점을 감안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종일제보육 이외 야간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 신뢰도 제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필요 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에 대한 신뢰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달리 1:1 개별보육 방식이므로 아이돌봄에 대한 부모의 신뢰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꺼려지는 이유로서 아이돌봄에 대한 신뢰를 지목한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이돌봄에 대한 신뢰도는 곧 이들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의미하며,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낯선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원활한 상호작용과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돌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아동을 인계받을 시에 보육·교육활동 및 일과를 통해 아동을 이해하고, 가정과의 연계 활동도 요구된다. 그 밖에도 부모에게 아동을 인계할 시에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상태 및 활동내용을 전달하는 등 부모와의 소통도 중요시된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미는 총 80시간의 양성과정을 거쳐 활동하고 있으며(「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C%9D%B4%EB%8F%8C%EB%B4%84%EC%A7%80%EC%9B%90%EB%B2%95#undefined>, 2021. 11. 5. 인출), ‘영아 돌봄의 이해’ 과목은 20시간, ‘유아 돌봄의 이해’ 과목은 14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은 총 4시간에 그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미 양성 및 보수과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5%84%EC%9D%B4%EB%8F%8>

C%EB%B4%84%EC%A7%80%EC%9B%90%EB%B2%95#liBgcolor0, 2021. 11. 5. 인출). 또한 보수교육은 총 8시간으로 아동심리의 이해, 부모상담, 연령별 놀이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늘리고, 아동안전 및 건강관리 과목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부터 아동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만하다. 또한 기본과정에 ‘질병감염아동 지원’을 위한 아픈 아동 돌보기에 관한 과목과 ‘기관연계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운영에 관한 이해 과목을 추가하고, 이를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원에서 해당 아이돌보미는 다른 가정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일 법정기준에 따라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2. 세부 방안

이 절에서는 앞서 제1절에서 도출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에 따라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즉,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상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제안하였다. 특히 돌봄 공백에의 대응은 ‘틈새보육’과 ‘긴급보육’으로 구분하고, 긴급보육은 ‘일상적인 상황’과 ‘재난 상황’의 돌봄 수요로 세분화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상

1) 서비스 연계 대상의 정교화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상

돌봄 공백의 유형 중에서 틈새보육의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선정될 필요가 있다. 긴급보육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데 반해, 틈새보육의 경우는 그 공

백이 이용기관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상적인 돌봄의 틈새는 ‘출근 시각 보다 늦은 등원’과 ‘퇴근 시각보다 이른 하원’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수요 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부족’한 주된 이유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퇴근시각과 맞지 않아서’(1+2순위: 54.7%)와 ‘기관의 운영시간이 출근시각과 맞지 않아서’(1+2순위: 33.6%)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때 돌봄 공백에의 우려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도 제기된다. 실제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시작 시간은 어린이집 연장보육시간에 속하는 16시 부터 18시 이전이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해당 비율은 연장보육 이용가구에서 2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 하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6시 부터 19시 30분 까지 운영되는 연장보육이 해당 시간대의 돌봄 수요를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법정 운영시간 내에 속하는 돌봄 공백은 해당 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대응하는 반면에 기관의 운영시간 제약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완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와의 중복지원 금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필요도를 면밀하게 따져서 현행 중복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한 돌봄 공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가 필요한 가구이나, 경제적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가정내보육이 불가피한 일부 긴급보육 상황은 현행 보육료 지원의 특례적용과 중복되므로, 이 경우는 기관 미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에서 출석으로 간주하고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는 앞서 제3장 1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아동의 질

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 부모의 출산, 3) 감염병 유행, 4) 자연재해, 재난 발생 등이 대표적이다(보건복지부, 2021a: 346-347).

특히 아동의 질병 및 부상과 부모의 입원과 부모의 출산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는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을 허용하되, 2개월에 걸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1개월로 줄이거나, 보육료 지원 수준을 50%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질병감염아동 등과 같이 자녀가 아파서 기관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내에서 자녀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다른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별도의 비용지원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야간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이나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서 틈새보육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증빙 확인을 통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해당 서비스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지원체계의 구축

1) 서비스 연계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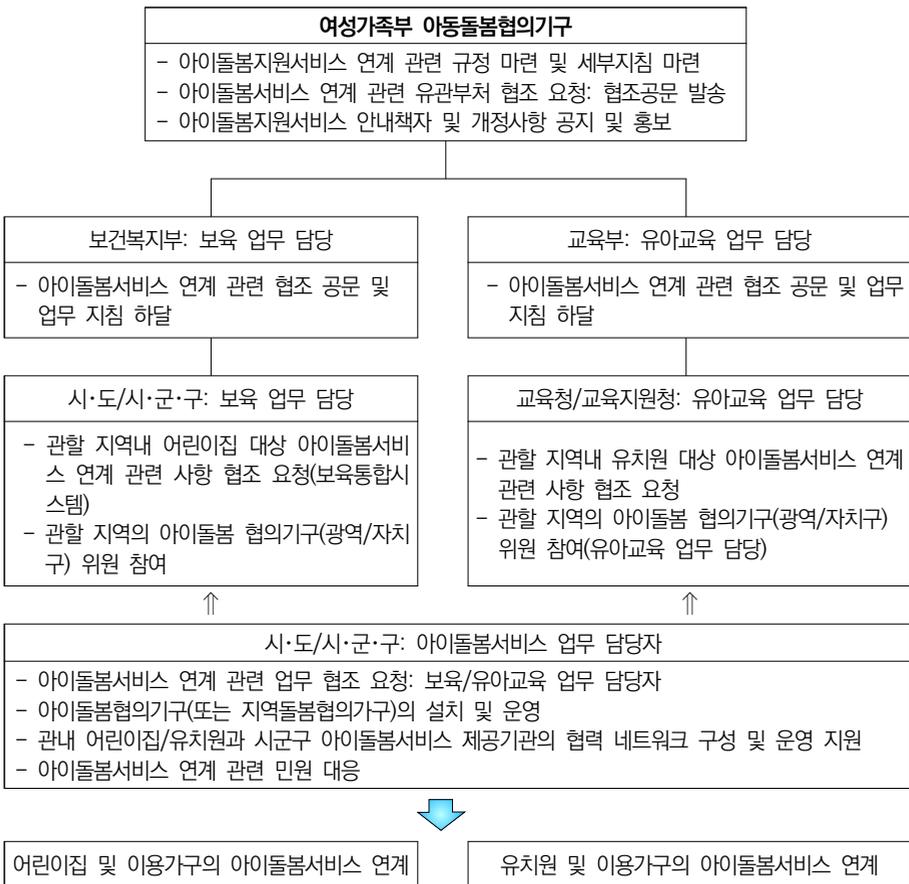
가) '아이돌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

영유아 돌봄은 초등방과후 돌봄과 마찬가지로 다부처에서 추진되며, 누리과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기준은 각기 다른 실정이다. 아동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가구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물론, 그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장에 일관된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및 자치구(시·군·구)별로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담당하는 타 중앙부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아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조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여 하위 행정전달체계를 통해 지역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이 일관되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그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관련 규정의 보완이나,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안내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 상황마다 즉각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담당부서로 협조공문을 전달하여 자치구 단위 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담당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아이돌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때 위원의 구성은 시·도 단위에서는 아이돌봄사업 담당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교육청, (지방: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지원청, (지방: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2022년 부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광역 2022년부터 운영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주요 업무로서 '아이돌보미 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이 포함되는 데(아이돌봄 지원법, 2021. 1. 1. 시행, 제10조의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C%9D%B4%EB%8F%8C%EB%B4%84%EC%A780%EC%9B%90%EB%B2%95#undefined>, 2021. 11. 6. 인출), 이때 아이돌보미 수요는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연계를 반영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앞서 제기한 아이돌봄 협의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내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내 개별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즉,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사항은 앞서 언급한 자치구 단위의 '아동돌봄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세부내용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유관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돌봄 협의기구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 공문을 통해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교육 및 설명회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부모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서비스 연계 관련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 업무로서 아이돌봄 협의기구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원스톱 돌봄서비스 신청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가) 이용자 신청 방식의 편의성 제고: 원스톱 신청시스템의 구축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은 지원유형별로 상이한 데, 정부지원을 받는 ‘가~다’형은 정부지원 결정을 거쳐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라’형은 정부지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이돌봄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별도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로 인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는 해당 시스템의 회원가입과 정회원 신청 절차를 거쳐 비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가구는 복지포 또는 e-유치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이돌봄시스템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정부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는 돌봄시설의 검색과 신청이 한번에 가능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 11. 11: 1),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동돌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이용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영유아 돌봄’ 검색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돌봄서비스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여 ‘아이돌봄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신청 및 이용자격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최종 승인 결과는 SMS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수준이 다르고, 일시연계 서비스를 제외하면 아이돌봄비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므로 그 일괄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이용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 아동의 이용정보 연계 및 통합적 출결관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업무관리시스템은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이용정보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요구된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아동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의 이용자 정보는 보육통합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유아학비는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별도로 구축되었으므로 아이돌보미 이용아동에 관한 사항을 이외 돌봄서비스 이용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은 앞서 다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아동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송수신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비용지원의 측면에서 유아학비는 분기별로 정산하는 방식이나,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기관별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들 처리방식의 일원화와 아동의 출결이 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보육통합시스템, e-유치원시스템, 아이돌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3개 부처가 참여하는 TF(가칭: 아동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TF) 등을 설치하여 추진 계획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구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데, 2021년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는 별도 카드를 구비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별 카드의 가맹점이 달라 실

제 사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가맹점을 일원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해도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물론, 영유아 부모에서도 저조한 수준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 및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물론,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영유아 부모의 정보 접근성 제고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기관의 연간 운영을 반영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를 일상화하고, 영유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의료기관,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내책자 배부, 임신·육아관련 사이트(보육포털 등)의 알림 공지 등도 추진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관내의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서비스 연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침에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즉,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 업무에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선

가) 아이돌봄서비스 전·후 아동인계의 안전관리 강화

원아의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동인계 관련하여 어린이집 적용기준을 아이돌보미가 이해하고, 아이돌보미의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을 보육교직원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전·후의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직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인계할 시는 아동의 보육활동과 일과 중 특이사항 등을 교사로 부터 전달받고, 이를 부모에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아이돌보미에게 아동을 인계할 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현행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등원 시에 부모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아동을 인계하고, 하원 시에는 보육교직원이 부모에게 인계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서울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등하원 인계절차 및 관리 기준으로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자 사전지정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5) 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지정한 대리자로서 사전에 지정되어 상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등·하원 시에 아동의 인계는 그 대상을 부모로 한정하므로 아이돌보미와 같이 부모가 아닌 자가 아동을 인계할 시에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명시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괄 적용하여 혼선 없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부모에 의해 직접 확인되고, 대리인계의 사유 및 적용 기간, 그리고 대리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을 인계받고 인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일원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사고 관리 사항이 상이하고,

보고 체계도 다르므로, 서비스 연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 등에 따라 일원화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관한 계획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아동인계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보고 및 처리과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서울 지역의 유치원 안전계획에 의하면, 유치원별로 유치원의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83). 해당 계획의 포함 내용에는 그 예시로서 안전체계의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사항이 제시되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인계에 따른 안전 사항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안전체계 구축 사항에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에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명시하고, 교육 및 관리 사항에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인계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사항을 보완할 만하다.

다. 돌봄 공백의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라도 해도 긴급보육 수요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데, 이들 돌봄 공백은 그 성격이 달라 서비스 연계 방식도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긴급보육은 크게 1) 부모가 아픈 경우와 부모의 연장근로 등으로 기관 운영시간 이후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질병감염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3) 코로나19 등과 같이 재난 상황으로 기관이 강제휴원 하여 긴급돌봄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틈새보육 지원

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연계 대상

(1) 야간/주말근로/교대제근로 가구

야간/주말근로/교대제근로 가구는 비정형적인 근로시간으로 인해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법정 기준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이용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를 위주로 시간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가구는 20시 이후에 추가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늦은 야간까지 장시간 보육을 기피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2) 영아자녀(0~35개월)/다자녀 가구

앞서 다룬 OECD 국가의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주로 영아자녀이며, 이들 자녀의 비공식 돌봄 비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가 어린 경우는 기관보육보다 가정내보육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관보육의 질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는 비공식 돌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때 적용대상 아동연령으로는 0~1세 또는 0~2세가 제기되었는데, 관련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하면 0~35개월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가정내양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타 제도 즉,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연령(부모 모두 사용할 경우 24개월)와 2022년부터 도입되는 영아수당의 지원연령(0~35개월)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3)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는 추가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가구로서 지목되었다. 이때 다자녀가구의 적용기준은 영아 자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유사한 규정 즉, 보육 욕구 수준의 판정이 반영된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위를 적용할만하다고 본다.

어린이집 1순위 입소 자격에 의하면(보건복지부, 2021a: 70),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로 규정되므로 이들 가구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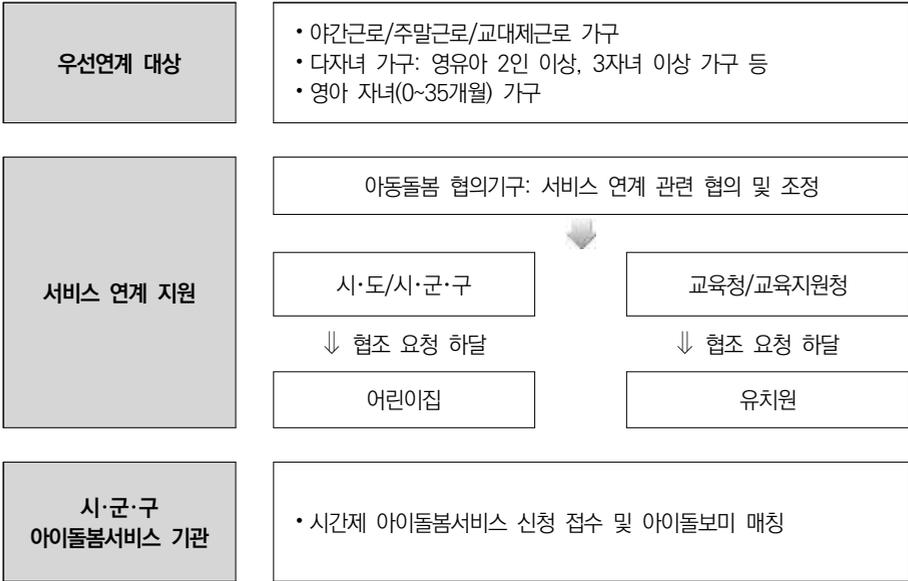
나) 틈새보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

틈새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 유치원을 관할

하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협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는 ‘아동돌봄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관련 추진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VI-2-2] 틈새보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2) 일반적 긴급보육 지원

가) 일시연계 서비스 개선과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통해 긴급한 수요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1) 부모가 아픈 경우, 2) 부모의 연장근로, 출장, 새벽 출근, 3) 신입원아의 적응기간, 4) 장례식 등 집안행사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이 제기되었다. 이들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

일시연계 서비스를 현재의 온라인 방식 이외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콜센터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현재 일시연계 방식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 근무시간 이외 시간

인 야간, 새벽, 주말에도 신청 할수 있도록 이용자 모바일앱에서 아이돌보미 모바일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초 이용가구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므로 의문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지원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이용 안내와 준수사항의 공지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매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공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아이돌보미는 기존 가정을 더 선호하여 신규가정에 파견되는 것을 기피하여 일시연계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 아이돌보미가 신규가정을 꺼리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주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긴급보육 상황이라고 해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준수사항이 숙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회원으로 처리한 후에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숙지될 수 있도록 노출 시간을 늘리고 그 채널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의 잠재적 수요를 감안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및 공지 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각종 사업 안내책자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아이돌보미 등록 정보 보완

긴급보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낯선 아이돌보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학부모의 아이돌보미 신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 등록 정보에 아이돌보미 경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서비스 가능지역을 포함하여 이용가능성을 부모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 이용경험이 있는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용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아이돌보미 전체 성명이 표기되지 않아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부모의 어려움이 제기되

므로, 과거 이용 경험 여부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여 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서비스 이용비용의 실시간 확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부담되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연계 시에 정부지원 여부는 중요한 데, 이는 서비스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정되므로, 긴급보육 시에는 불확실한 이용비용으로 인해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양식을 탑재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단, 해당 결과는 실제 정부지원 결정 여부 및 이용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대략적인 참고자료임을 반드시 공지해야 할 것이다.

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연계

감염병이 우려되는 원아를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긴급보육 상황으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감염병의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111). 앞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부모를 제외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111). 그러나 해당 규정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시되므로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하달하고,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해당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유치원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에서는 해당 정보를 교육청의 공문으로 하달 받은 적도 없다고 파악되므로 「보육사업안내」에서 명

시한 바와 같이 학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기관연계 서비스' 연계

(1) 서비스 연계 대상의 명료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장이 '기관연계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아동 및 가구는 바깥놀이 등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외상을 당한 아동이나 경계성 아동 등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장전문가 조사에서 해당 수요는 발달장애 아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아동을 보조하기 위한 아이돌봄비 파견은 장애아보육의 내실화와 충돌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장애아보육료 중복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을 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 판정받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아동에 한정되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을 원칙으로 하고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가 2명 이하인 기관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힘들고, 경계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 아동의 보육활동에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돌봄비가 보조인력으로 파견되어 장애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봄비가 일상적으로 기관에 파견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 등으로 현실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아보육의 질 제고는 원칙으로 그 지원수준의 개선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서비스 연계를 고려될만한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 아동(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판정한 경우), 과잉행동이나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자유놀이나 바깥놀이, 급간식 시간에 개별적인 보조활동이 필요한 아동, 감염병으로 격리조치 아동이나 환자(병원 내방 등 지원), 신입아동의 적응 기간에 부모의 부재로 이른 하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기관에 아이돌봄비를 파견할 시에는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입장에서 보육활동 시에 아이돌봄미의 개별적인 보조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교직원이 부모의 허락을 구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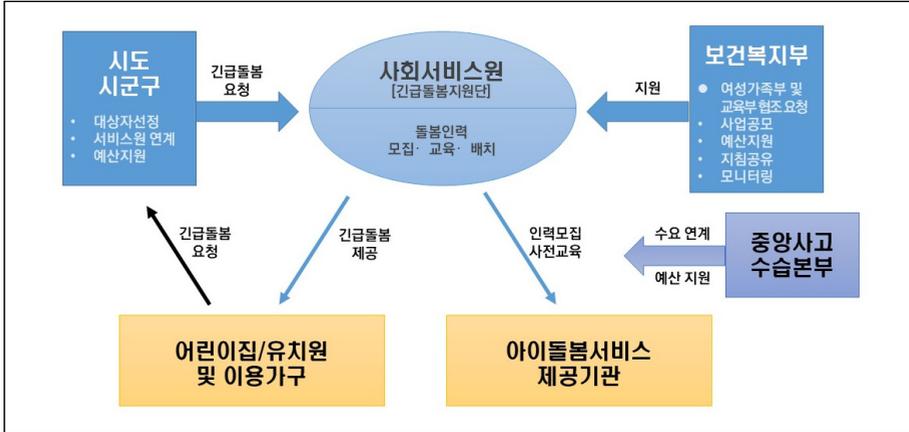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파견된 아이돌봄미는 담임교사와 그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료화하여 기관 파견 시에 상호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서는 기관으로 파견된 아이돌봄미의 역할은 단지 보조역할 로만 규정되고(여성가족부, 2021c: 60), 해당 내용으로는 아동의 돌봄을 보조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제시되므로 청소 등 금지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난 시 긴급보육의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기관의 긴급보육 보다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난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지원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긴급보육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하달하는 체계가 요구된다(그림 VI-2-3 참조).

[그림 VI-2-3] 재난시 긴급보육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21d). 보도자료: 공백없는 돌봄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p. 6. 일부 수정함.

단 해당 수요는 재난 상황의 지속 기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서 다룬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기관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돌봄을 선호되는 기간은 1개월이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행 보육료 특례적용 기준인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공급 측면에서 감염 우려로 인해 활동 아이돌보미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위험수당 신설을 검토할만하다. 또한 일시연계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난 시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시연계와는 달리 재난 시의 장시간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아이돌보미 초과근로 발생 등으로 아이돌보미 노동권 보장 관련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돌봄 공백의 유형별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이하 [그림 VI-2-4]와 같다.

[그림 VI-2-4] 자녀돌봄의 공백 유형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효율화 방안

돌봄 공백의 유형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식 및 유형	서비스 연계 효율화 방안
<p>틈새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주말근로/교대제근로 가구 - 0~35개월 자녀 - 다자녀 가구 (추가 출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지원 기준 마련 - 서비스 연계정보 접근성 제고
<p>긴급보육: 일반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감염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감염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재교육 강화 - 교통비 지급 기준 명료화
<p>긴급보육: 일반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아픈 경우 - 부모의 연장근로, 출장, 새벽 출근 - 입원아(적응기간) - 집안 행사 (장례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일시연계 - 기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안내 및 준수 사항의 공지 - 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 서비스 이용비용의 시간 확인 -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p>긴급보육: 재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강제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 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방역기준 강화 - 아이돌보미 노동권 침해 예방
↑			
<p>추진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 시·도 및 시·군·구 협조체계 구축: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하달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체계 구축: 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하달 -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2021). 2021.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 경기도교육청(2021). 2021 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매뉴얼.
- 관계부처합동(2019. 11. 11). 보도자료: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 24」에서 한 번에 해결.
- 관계부처합동(2020a).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 관계부처합동(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2020).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2020). 2020 유치원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 매뉴얼.
- 교육부(2021a).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21b). 2020 교육 분야 코로나 19 대응.
- 교육부(2021c). 2021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자료.
- 교육위원회(2020). [의안번호 2100339]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철승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20. 8. 25).
-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소. KWDI Brief 제60호.
- 김은설·박창현·황선영·윤지연(2019). 2019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홍원(2017). 해외 방과후 돌봄 운영사례 분석-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류연규·김송이·김민정(2019). 일상적 영유아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서울시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

정책, 64, 53-92.

부산광역시교육청(2021). 2021.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보건복지부(2020a). 보도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 19 안전돌봄 지원.

보건복지부(2020b).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b). 2021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c).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d). 보도자료: 공백없는 돌봄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2021e). 보도자료: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1 서울유아교육계획.

여성가족부(2019). 보도자료: 질병감염아동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동기 대비 두배 증가.

여성가족부(2020).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 19로 인한 이용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2021a). 여성가족부 2021년 업무계획.

여성가족부(2021b).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2021c).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21d).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여성가족부(2021e). 보도자료: 코로나 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2021f) 내부자료: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각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통계.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권미경·김근진·이윤진·이혜민(2019a). 아이돌보미 및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이윤진·김영옥·김진성·손인숙·송다영·안현미·최영(2019b). 초저출산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I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a).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b).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희현·장명림·황준성·유경훈·김성기·김위정·이덕난·김보미(2019a).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황준성·임봉조·김보미(2019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전라북도교육청(2021).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 조숙인·김나영·장미나·박은영(2020).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충청북도교육청(2020).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 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재-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황준성·이희현·유경훈·양희준·김성기·유기웅·오상아(2018).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참고 사이트】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인출일자: 2021. 6. 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IOFOH6T1FON1O7K1D4O5G9F1S5G7 (인출일자: 2021. 6. 7)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https://broso.or.kr/broso> (인출일자: 2021. 6.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C%9D%B4%EB%8F%8C%EB%B4%84%EC%A7%80%EC%9B%90%EB%B2%95#undefined> (인출일자: 2021. 1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C%9D%B4%EB%8F%8C%EB%B4%84%EC%A7%80%EC%9B%90%EB%B2%95#undefined> (인출일자: 2021. 11.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 고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과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5%84%EC%9D%B4%EB%8F%8C%EB%B4%84%EC%A7%80%EC%9B%90%EB%B2%95#liBgcolor0> (인출일자: 2021. 1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 (인출일자: 2021. 1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인출일자: 2021. 1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 B%B2%95#undefined (인출일자: 2021. 6. 14)
- 보육정보공개 API OPEN API 연령별 아동 현황,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InfoSl.jsp> (인출일자: 2021. 6. 15)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인출일자: 2021. 3. 2; 2021. 8. 3; 2021. 10. 18)
-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인출일자: 2021. 10. 18)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www.childcare.go.kr> (인출일자: 2021. 10. 18)
- 일본 내각부, https://www.cao.go.jp/bunken-suishin/kaigi/doc/teianbukai107shiryu2_2.pdf (인출일자: 2021. 12. 10)
- 일본 니시노미야 시 ‘방문형 환아, 병후 아동 보육 이용요금 지원 제도’, <https://www.nishi.or.jp/kosodate/kosodate/azuketaitoki/byoji-jo sei.html> (인출일자: 2021. 12. 9)
- 일본 도쿄도 주오구, <https://www.city.chuo.lg.jp/kosodate/hoiku/tiikigata/kyotakuhoumonhoiku.files/H30kyotakuhomon.pdf> (인출일자: 2021. 12. 10)
- 일본 복지의료종합정보사이트, [https://www.wam.go.jp/wamappl/bb16GS70.nsf/0/cfada6e8f92cc2824925783700322bed/\\$FILE/20110214_2_5shiryu2.pdf](https://www.wam.go.jp/wamappl/bb16GS70.nsf/0/cfada6e8f92cc2824925783700322bed/$FILE/20110214_2_5shiryu2.pdf) (인출일자: 2021. 12. 10)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202000-Roudoukijunkkyoku-Kantokuka/0000075920.pdf> (인출일자: 2021. 12. 10)
- 위키피아, <https://ja.wikipedia.org/wiki/%E7%97%85%E5%85%90%E4%BF%9D%E8%82%B2> (인출일자: 2021. 11. 25)
- 정부24, 윈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 (인출일자: 2021. 6. 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소개, <http://www.ssis.or.kr/lay1/S1T753C773/contents> (인출일자: 2021. 10. 18)
- OECD(2021a),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PF4-1->

Typology-childcare-early-education-services.pdf (인출일자: 2021. 6. 2)

OECD(2021b),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PF3-3-Informal-childcare-arrangements.pdf> (인출일자: 2021. 6. 2)

【참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Abstract

Effective linkage between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and Idolbom services

Haemi Yoo, Jin Ah Park, Jiwon Eom

Even 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free child care for children aged 0-5 and supports extended daycare and kindergarten after-school courses for working parents, there still exists a vacuum in child care system. In addition, the vacuum of child care system could be deepening when the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are closed due to disasters such as COVID-19. This study sought to link Idolbom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to resolve the vacuum in child care system for households using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502 households using kindergartens and 1,121 households using daycare centers, and conducted opinion surveys on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and Idolbom providers.

Above all, the demand for supplementing child care vacuum is divided into niche childcare and emergency childcare. Niche childcare is when there is a need for care outside of statutory operating hours. Urgent childcare can be divided into general situations, such as when a child is sick or when parents work at night, and disaster situations. When asking households using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on a 5-point scale for the degree of need for Idolbom service linkage, the result was 3.93 points for compulsory closure of institutions due to COVID-19, 3.87 points for parents who are sick, 3.85 points for suddenly having to work overtime at work, usual late for work (after 19:30) with 3.80 points, and those with additional children at 3.80 points. In addition, information necessary to smoothly link childcare services at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include 'Idolbom support project-related guidebooks',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Manuals for responding to parental questions such as how to use the service and hot-line toward the official department in charge' and 'Installation of furniture in consultation with child care service providers' were referred as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smoothly link child care services with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Based on this, as a prerequisite for linking Idolbom services with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extended daycare for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after-school programs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are support system. As detailed measures, 1) elaboration of service linkage support targets and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2) service link-related cooperation system and one-stop care service application system, 3) Idolbom service linkage plan for each type of care vacuum were presented. As detailed tasks for each type of vacuum, the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o part-time Idolbom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for general emergency child care,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for emergency child care in the event of a disaster.

Keyword: Vacancy in Childcare, Linkage of Child Care Service, Niche Childcare, Urgent Childcare, Idolbom Services



부록

부록 1. 현장전문가 조사표(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용 (어린이집 원장/유치원 원장)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21년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 원장님과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귀 기관(유치원/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조사관련 문의〉

유해미 연구위원 ☎ 02-398-7703, nowyoo@kicce.re.kr

엄지원 전문연구원 ☎ 02-398-7751, gracejiwon@kicce

육아정책연구소

[참고자료] 조사 목적 및 배경

※ 조사 목적 및 배경

본 조사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이 휴원하는 경우, 감염병 등 자녀가 아픈 경우 등)에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으로 (공공) 아이돌보미가 파견되는 아이돌봄서비스(1:1개별보육)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1) 귀 기관의 원아 중에서 돌봄 공백이 우려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와 2) 원아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니, 상세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은 이하 자료 참고

※ 참고자료1: 아이돌봄서비스 개요(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
<p>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p> <p>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p>	<p>취업 부모</p> <p>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p>	<p>아이돌보미</p> <p>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p>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2021. 8. 3. 인출)

※ 참고자료 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내용(2021)

서비스 유형	아동 연령	서비스 내용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아동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2021. 8. 3. 인출)

서면조사 답변지

※ **이하 각 질문 항목마다 하단의 <답변> 란에 응답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주시시오.**
작성 란이 부족하면 추가로 각 표의 하단에 작성 란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시오.
각 질문에 응답할 내용이 없다면 해당 <답변> 란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 기관 운영시간과 아동돌봄의 공백 관련 고려사항		
1.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과 돌봄 공백 시 대응		
1) 귀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하원하는 아동의 평균 시각은 몇시입니까? (※ 월~금요일 기준) ※ 해당 기관에 표기함 ⇒ <답변>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반 이용아동) 마지막 하원 아동의 평균 하원시각 () 시 () 분 (※ 작성예시: 18시 30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아동) 마지막 하원 아동의 평균 하원시각 () 시 () 분 (※ 작성예시: 18시 30분)	
2) 귀 기관의 실제 운영시간은 연중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 실제 운영시간은 첫 번째 아동이 등원하는 시각과 마지막 아동이 하원하는 시각을 의미함 ① 기관 운영시간은 연중 변화가 없다 ☞ 문 2번으로 이동 ② 기관 운영시간은 연중 변화가 있다 ☞ 문 2)-1로 이동		
2)-1. 귀 기관에서 위의 문 2)-②번의 운영시간이 변동되는 있는 시기와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학부모 수요에 따라 실제 운영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으로 응답함 ⇒ <답변>		
구분	기관 운영시간 변동 시기	기관 운영시간 변동 사유
1		
2		
3		

2. 아동돌봄 공백 시 고려사항 및 대응 관련 지역 특성/기관의 운영 여건		
<p>1) 아동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귀 기관이 소재한 지역 여건(예시: 농산어촌 지역 등)이나 기관의 운영 여건(예시: 인력, 원아수 등)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p> <p>① 기관의 소재지역이나 운영 여건에 따른 고려사항이 없다 ☞ 문 II-1번으로 이동 ② 기관의 소재지역에 따른 고려사항이 있다 ☞ 문 1)-1번으로 이동 ③ 기관의 운영여건에 따른 고려사항이 있다 ☞ 문 1)-2번으로 이동</p>		
<p>1)-1. 귀 기관에서 위의 문 1)-②번에서 응답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아동돌봄의 공백 시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별다른 조치 없음'으로 표기함</p> <p>⇒ <답변></p>		
구분	아동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 및 대응	
	기관의 소재지역 여건(농산어촌 등)	기관의 소재지역에 따른 대응 조치
1		
2		
3		
<p>1)-2. 귀 기관에서 위의 문 1)-③번에 응답한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른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아동돌봄의 공백 시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별다른 조치 없음'으로 표기함</p> <p>⇒ <답변></p>		
구분	아동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 및 대응	
	기관의 운영 여건(원아수 등)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른 대응 조치
1		
2		
3		

II.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상황과 대응 조치		
1. 휴원 등 돌봄 공백 상황과 관련 조치		
1) 귀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휴원명령이나 임시휴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① 휴원명령이나 임시휴원을 한 적이 없다 ☞ 문 2)번으로 이동 ② 휴원명령이나 임시휴원을 한 적이 있다 ☞ 문 1)-1번으로 이동		
1)-1. 귀 기관에서 위의 문 1)번-②번에 응답한 시기는 언제이며, 해당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매 상황마다 해당 시기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휴원명령/임시휴원 시기(년월) ※ 작성예시: 임시휴원(2020. 8)	해당 사유 ※ 작성예시: 기관의 개보수공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		
2		
3		
2) 귀 기관에서 이용아동이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일찍 아동을 하원시키도록 권유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 해당 란에 표기함 ⇒ <답변>		
구분	원아가 등원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원아의 이른 하원을 권유하는 경우
1		
2		
3		
2)-① 귀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등원하지 않거나 일찍 하원하여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답변>		

2. 휴원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 애로사항

1) 귀 기관의 휴원으로 이용 중인 원아의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 ① 학부모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 문 2)번으로 이동
 ② 학부모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문 1)-1)번으로 이동

1)-1. 귀 기관에서 위의 1)번-②번에 응답한 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며, 해당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면 '해결되지 않음'으로 표기함

⇒ <답변>

구분	기관의 휴원으로 원아의 부모와 갈등을 경험한 내용	해결 방안
1		
2		
3		

2) 귀 기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 제공 시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힘든 점을 매 사항 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 <답변>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의 어려움
1	
2	
3	

3) 귀 기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 시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 ① 돌봄 공백의 예방을 위해 조치한 내용이 없다 ☞ 문 III-1-1)번으로 이동
 ② 돌봄 공백의 예방을 위해 조치한 내용이 있다 ☞ 문 3)-1)번으로 이동

2)-1. (위의 문 2)번에서 안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답변>			
구분	아이돌봄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안내한 내용 ※ 작성예시: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에서 감염병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해 안내함.		
1			
2			
3			
3) 귀 기관에서는 학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없다 ⇨ 문 2)번으로 이동 ②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있다 ⇨ 문 3)-1번으로 이동			
3)-1. (위의 문 3)-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매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상황 및 방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연계 원아 및 상황 ※ 작성예시: 감염병으로 등원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원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연계 방식 ※ 작성예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학부모에게 알려줌</td> </tr> </table>	서비스 연계 원아 및 상황 ※ 작성예시: 감염병으로 등원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원아	서비스 연계 방식 ※ 작성예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학부모에게 알려줌
서비스 연계 원아 및 상황 ※ 작성예시: 감염병으로 등원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원아	서비스 연계 방식 ※ 작성예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학부모에게 알려줌		
1			
2			
3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1) 귀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가구와 연계할 시에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매 사안마다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애로사항 ※ 작성예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부모에게 설명하기 어려움
1	
2	
3	
2) 귀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십시오. ※ 작성예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책자 교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한 기구 설치 등 ⇒ <답변>	

IV.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지원요구	
1.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1) 귀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십니까? ⇒ <답변>	
구분	기관 운영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 ※ 예시: 감염병 의심 아동이어서 가정내양육이 필요한 경우
1	
2	
3	
2) 귀하가 보시기에 원아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두 작성해주시십시오(※ 위의 문 1-1)번과 중복되어도 무방하니 모두 작성함) ⇒ <답변>	

구분	기관을 이용 중인 원아의 돌봄 공백 상황 ※ 작성예시: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기 힘든 경우	
1		
2		
3		
4		
5		
<p>3) 귀 기관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원아를 보조하는 것(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 표기: _____)</p> <p>※ 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원아의 돌봄 보조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기관으로 파견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함</p> <p>①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원아가 없다 ☞ 문 2번으로 이동</p> <p>② 아이돌보미 지원의 필요한 원아가 있다 ☞ 문 3)-1번으로 이동</p> <p>3)-1. (위의 3)-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기관으로 파견되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해당 아동 및 가구의 특성과 교육·보육활동 상황을 구분하여 언급해주시시오.</p> <p>⇒ <답변></p>		
구분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의 특성 ※ 작성예시: 장애아동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일과 운영 또는 교육·보육활동 상황 ※ 작성예시: 바깥놀이 시 보조
1		
2		
3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요구	
1) 원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 ※ 작성예시: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가 제공되어야 함 ⇒ <답변>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필요사항
1	
2	
3	
2) 귀 기관에서 원아의 돌봄 공백이 우려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연계할 시에 우려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우려사항이 없다면 '우려사항 없음' 으로 표기함 ⇒ <답변>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우려사항 ※ 작성예시: 아이돌보미에게 인계되는 아동의 안전문제
1	
2	
3	
3) 귀 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경우 원아의 돌봄 이나 원 운영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별다른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대효과 없음' 으로 표기하고, 해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함. ⇒ <답변>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기대효과
1	
2	
3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용〉

서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아동돌봄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 번호: 어린이집/유치원 () 번 (※ 번호, 기입하지 않음)

Q1. 기관 유형	어린이집	() 어린이집 ※ 작성예시: 국공립/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유치원	() 유치원 ※ 작성예시: 국공립/사립	
Q2. 기관규모	원아 수	총 () 명 ※ 현원 기준	
	학급 수	총 () 개	
Q3. 어린이집 연장보육 /유치원 방과후돌봄 운영 여부 ※ 응답 시점 기준	구분	돌봄서비스 유형	학급수 ※ 미운영 시는 0개 표기
	어린이집	연장보육 (16시~19시 30분)	() 개
		연장보육 외 시간연장보육 (19:30 이후)	() 개
유치원	방과후 과정	() 개	
Q4. 지역 특성	※ 농산어촌 지역 여부 표기함(예시: 농산어촌 지역임)		
Q5. 소재지	() 시 / () 도 ※ 작성예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현장전문가 조사표(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실무자)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21년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연계 현황 및 이들 기관과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조사관련 문의〉

유해미 연구위원 ☎ 02-398-7703, nowyoo@kicce.re.kr

엄지원 전문연구원 ☎ 02-398-7751, gracejiwon@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 이하 각 질문 항목마다 하단의 <답변>란에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각 질문에 응답할 내용이 없다면 해당 <답변>란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 분석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본 조사의 목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와 개선요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니, 상세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유치원과의 연계 현황 및 개선요구 개선요구(센터용)

I.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과 애로사항		
1. 어린이집/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 경험		
1) 귀 기관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기관 란에 구체적인 연계 내용을 매 사안마다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3)번 질문으로 이동함. ※ ‘서비스 연계 경험’은 이용자와의 연계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기관(어린이집/유치원)과 직접 연계한 경우를 말함. ⇒ <답변>		
구분	세부 연계 내용 ※ 예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질병감염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1	
	2	
	3	
	4	
	5	
유치원	1	
	2	
	3	
	4	
	5	

2)-① 귀 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보편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을 언급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연계	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
예시	<작성 예시>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이 감염병으로 등원할 수 없어 어린이집 원장님이 해당 아동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함	<작성 예시> 유치원 이용 중인 아동 부모의 야근으로 인해 하원 이후에 돌볼 사람이 없어 유치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 파견 가능 여부를 문의 받음.
1		
2		
3		

2)-② 아동돌봄의 공백 해소의 측면에서 귀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 또는 기관의 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여건이나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

⇒ <답변>

3) 문 I-1)번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함
 귀 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해당 사유를 모두 언급해주시시오.

⇒ <답변>

2. 어린이집/유치원과의 서비스 연계의 방식과 애로사항

1) 아동돌봄의 공백 해소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귀 기관이나 또는 소재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두 언급해 주십시오.

⇒ <답변>

<p>2) 귀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u>귀 기관의 특성이 또는 소재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u>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모두 언급해주시시오.</p> <p>⇒ <답변></p>		
<p>3) 귀 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원장 또는 교사)과 직접소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부모에게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알려주시시오.</p> <p>⇒ <답변></p>		
<p>4) 귀 기관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각 서비스 유형별로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p> <p>⇒ <답변></p>		
서비스 유형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p>※ 각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연계 시 어려움을 <u>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각각 구분하여</u> 작성해주시시오, ※ 해당 어려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이 없다면 어린이집 란에만 만 작성하시고 유치원 란에는 '동일함'으로 표기해주시시오,</p>	
시간제 아이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연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II. 긴급돌봄 지원 방식과 개선요구	
1. 긴급돌봄 지원의 현황과 애로사항	
1)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연계 상황이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유롭게 모두 언급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코로나 19 긴급돌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연계 변화
1	
2	
3	
2. 긴급돌봄 지원의 애로사항	
1)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상 변화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하 각 항목별로 서비스 연계 시에 어려움이 점이 있다면 모두 언급해주시시오. ⇒ <답변>	
구분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 시의 어려움
1	
2	
3	
2) 귀 기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보육돌봄 제공 시에 힘든 점과 개선요구는 무엇입니까?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매 사안마다 언급해 주십시오. ⇒ <답변>	

구분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보육돌봄 제공시의 어려움 및 개선요구	
1		
2		
3		
<p>3) 귀 기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모두 언급해 주십시오.</p> <p>⇒ <답변></p>		
구분	어린이집의 서비스 연계 요청내용	유치원의 서비스 연계 요청내용
1		
2		
3		
<p>4) 귀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가 일시연계 서비스(야간, 주말 등)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매 사안마다 언급해 주십시오.</p> <p>⇒ <답변></p>		
구분	일시연계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 및 개선과제	
1		
2		
3		

Ⅲ. 어린이집/유치원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및 개선요구		
1. 어린이집/유치원과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1) 귀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인데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십니까? ※ 예시1: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나 자녀가 어려서 장시간보육을 원하지 않아서 하원 이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예시2: 감염병 의심 아동여서 가정내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답변>		
2) 귀하가 보시기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두 언급해주시시오. ※ 예시: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 <답변>		
구분	기관을 이용중인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1		
2		
3		
4		
5		
3) 귀하는 <u>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되어</u>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기관연계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해당 아동의 특성이나 보육활동 중 상황 모두를 각각 구분하여 언급해주시시오. ※ 예시: 장애아동, 바깥놀이 등		
⇒ <답변>		
구분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의 특성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일과 운영이나 보육활동 상황
1		
2		
3		

2. 어린이집/유치원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선요구	
<p>1) 귀 기관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p> <p>※ 예시: 지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보육료 지급 카드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급에도 사용가능해야 함</p> <p>⇒ <답변></p>	
구분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
1	
2	
3	
<p>2) 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서비스를 연계할 시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려점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시오</p> <p>※ 예시: 아이돌보미에게 인계되는 아동의 안전문제 등</p> <p>⇒ <답변></p>	
구분	어린이집/유치원과 서비스 연계 시의 우려사항 및 개선요구
1	
2	
3	
<p>3) 귀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린이집/유치원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개선과제를 자유롭게 언급해주시시오.</p> <p>※ 기타 란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작성함</p> <p>⇒ <답변></p>	
구분	서비스 연계 시의 어려움과 개선과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방법	
서비스 이용비용 정산 및 지급 방식	
아동 인계 관련 사항	
안전사고 관리	
기타	

4) 귀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린이집/유치원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해주세요.	
⇒ <답변>	
구분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 기대효과
1	
2	
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용〉

서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아동돌봄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담 번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번

Q1. 응답자 연령	만 () 세
Q2.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경력	총 () 년 () 개월
Q3. 지역 특성	※ 농산어촌 지역 여부 표기함(예시: 농산어촌 지역임)
Q4. 소재지	() 광역시 / () 시도 ※ 예시: 서울광역시, 경기도
Q5. 지역(소재지)	() 시도 또는 광역시 () 시군구

♫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설문조사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부모용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및 요구 조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경험, 애로사항, 필요한 요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응답자 확인 사항〉

SQ1.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다면 총 몇 명입니까?

- ① 예 : _____ 명 ✎ 문 SQ2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자녀 수 범위 : 1~10명

SQ2. 귀하는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SQ2-1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SQ2-1. 그렇다면,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는 총 몇 명인가요?

- _____ 명
 ▶범위 : 1~10명, SQ2-1의 응답값 ≤ SQ1의 자녀 응답값
 ▶확인창 : 5 ≤ SQ2-1의 응답값

SQ2-2. 현재 어린이집이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no	SQ2-2-1. 아동 출생순위	SQ2-2-2. 출생년도	SQ2-2-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기간	SQ2-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여부
1	<input type="checkbox"/> ① 첫째 <input type="checkbox"/> ② 둘째 <input type="checkbox"/> ③ 셋째 <input type="checkbox"/> ④ 넷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 2021년 <input type="checkbox"/> ② 2020년 <input type="checkbox"/> ③ 2019년 <input type="checkbox"/> ④ 2018년 <input type="checkbox"/> ⑤ 2017년 <input type="checkbox"/> ⑥ 2016년 <input type="checkbox"/> ⑦ 2015년	<input type="checkbox"/> ① 2개월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3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 현재 이용 중 <input type="checkbox"/> ② '20년 3월 이후 이용(현재 이용 안함) <input type="checkbox"/> ③ '20년 3월 이전 (2월까지) 이용함 (현재 이용 안함)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한 적 없음
▶2-1. 응답값 만큼 생성	▶①~③은 중복응답 불가, ④만 중복응답 가능	▶확인창 : 같은 출생년도 응답 시 (쌍둥이 이상은 같은 해에 태어날 수 있음)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로직에 의해 선택
 - 필수 조건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우선 순위 :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자
 2. 출생연도가 낮은 아동

- ▶선택된 아동의 출생년도 기준으로 영유아 할당 확인 : SQ2-2-2=①~④
 ▶할당 관련 : 아이돌봄서비스 유경험자 = SQ2-2-4. ①&②

앞으로 귀하의 자녀 중에서 아동출생순위(▶선택된 아동 : SQ2-2-1의 응답값), 출생년도(▶선택된 아동 : SQ2-2-2의 응답값)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SQ3.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에서 어디입니까?

- ① 어린이집 이용 중 ② 유치원 이용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할당 확인

▶확인창 : 출생년도 2015~2016 '어린이집 이용 중' 선택 시
: 출생년도 2019~2021 '유치원 이용 중' 선택 시

SQ3-1.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협동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SQ3=1이면 SQ3-1=①~⑦보기만 제시, SQ3=2이면, SQ3-1=⑧~⑨ 보기만 제시

다음은 귀하와 귀 가구에 대한 문항입니다.

SQ4.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시지요?

만 ()세

▶범위 : 18~60세, ▶확인창 : 50≤SQ4의 응답값

SQ5.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SQ6. 귀하께서 현재 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17개 시도에서 선택하고, 해당 시도에서 시군구 선택

▶군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할당 확인

SQ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 대학 졸(2년·3년제)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SQ8. 귀하께서 현재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전문직 ④ 서비스 및 판매직
 ⑤ 자영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
 ⑨ 기타(구체적으로:)

SQ9. 귀하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부부+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3세대 이상 가족 ④ 기타(구체적으로:)

SQ10. 귀 가구는 맞벌이입니까?

- ① [부모] 맞벌이 가구 ➡ SQ10-1번으로
- ② [부모] 홀벌이 가구 ➡ SQ10-1번으로
- ③ [한부모] 한벌이 가구 ➡ SQ10-1번으로
- ④ 근로 안함 ➡ 문 1번으로

▶ 맞벌이 가구 할당 확인 (맞벌이 가구=①, ③)
 ▶ 에러창 : SQ8=①~⑤이면, SQ10=④ 응답 불가
 : SQ8=⑥or⑧이면, SQ10=①, ③ 응답 불가
 ▶ 확인창 : SQ8=⑦ or ⑨인데, SQ10=①or③이면 확인 창

SQ10-1. 다음은 근로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 ▶ SQ10=①이면, 아버지, 어머니 생성
- ▶ SQ10=②이면, SQ10-1 문항 이전 확인 박스 추가
 (두 분 중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① 아동의 아버지 ② 아동의 어머니)
 응답에 따라 SQ10-1에 한 개만 생성
- ▶ SQ10=③이면, SQ5의 응답에 따라 한 개만 생성

문항	보기	아동의 아버지	아동의 어머니
SQ10-1-1. 근로형태 ※ 전일제 근로 :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 전일제근로 <input type="checkbox"/> ② 시간제근로		
SQ10-1-2. 주중 출퇴근시간 ※ 근로시간이 다양할 시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응답해 주세요. ※ 오후 8시 30분 퇴근이면 20 시 30분으로 작성해주세요.	출근 시각 () 시 () 분 퇴근 시각 () 시 () 분 ▶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은 매 시간, 분은 10분 단 위(시간≤24, 분≤60) ▶ 확인창 : SQ10-1-1=① 인데, 근무시간 8시간 미만 (퇴근시각-출근시각)이면 확인		
SQ10-1-3. 주말 근로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정기적이진 않지만 주말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매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 (한 달에 1회 당직 등) <input type="checkbox"/> ④ 매주 하고 있음 (상시 토요일근무 등)		

앞으로 귀하의 자녀 중에서 **아동출생순위**(▶선택된 아동 : SQ2-2-1의 응답값), **출생년도**(▶선택된 아동 : SQ2-2-2의 응답값)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후 설문 문항에서 나오는 '기관'은 (SQ3의 응답값)을 의미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틈새보육 현황

1. 귀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입니까?
 2021년 이후 평균적인 이용 시각으로, 주중과 주말을 각각 응답해주시시오.
 ※ (예시) 오전 8시 30분에 등원하여 오후 5시 30분에 하원하는 경우:
 (8) 시 (30) 분 ~ (17)시 (30) 분
 ※ 등원은 기관에 도착한 시각, 하원은 기관을 떠나는 시각을 표기합니다.
 ※ 기관에 입학하였으나 현재는 긴급보육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올해 평균 이용 시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 여부	등원 시각	하원 시각
1-1. 주중(월~금)	/	() 시 () 분	() 시 () 분
1-2. 주말 (토요일 등)	① 주말 이용 ② 주말 이용 안함 (☞ 문 1-3번으로)	() 시 () 분	() 시 () 분

☞ 문 1-2 이용 여부가 ①인 경우 문 1-3번 응답 후 문 1-4번으로

☞ 문 1-2 이용 여부가 ②인 경우 문 1-3번 응답, 문 1-4번 skip

▶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구현

시간은 매 시간, 분은 10분 단위로

▶ 시간≤24, 분≤60, 등원 시간 < 하원 시간, 등원 시간≠하원 시간

▶ 확인창 : 등원시각 14시 이후이거나 하원시각 20시 이후일 때

- 1-3. 귀하의 자녀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주중(월~금)에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
 ☞ 문 1-4-1번으로 (문 1-2번 ①인 경우 문 1-4번으로)
 ②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
 ③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게 이용하고 있다
 보기 ②, ③ ☞ SQ3=1 응답자는 문 2번으로, ☞ SQ3=2 응답자는 문 4번으로
 (문 1-2번 ①인 경우 문 1-4번으로)

- 1-4. (문 1-2에서 ①응답한 경우) 귀하의 자녀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주말(토요일)에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 ☞ 문 1-4-1번으로
 ②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

5-2.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한 주에 동일한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길게 이용하는 시간 기준으로 응답하십시오.

※ (예시) (15) 시 (30) 분 ~ (18)시 (30) 분

5-1.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	5-2. 주중 이용시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input type="checkbox"/> ① 조부모/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② 민간 베이비시터(파출부, 가사도우미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아이돌보미(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웃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 6번으로

- ▶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구현
시간은 매 시간, 분은 10분 단위로 (시간≤24, 분≤60)
- ▶ 확인창 : 시작 시간 > 종료 시간일 때
- ▶ 확인창 : 종료 시각 22시 이후일 때
- ▶ 예러창 : 시작 시간=종료 시간일 때

6. 귀하는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6-1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7번으로**

6-1.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연 3회 이하
- ② 두 달에 1회 이하
- ③ 한 달에 1회 정도
- ④ 한 달에 2~3회 이상
- ⑤ 1주일에 1회 이상

☞ 문 7번으로

7. 귀하께서 이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는 언제 입니까?

해당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자녀가 아플 때
- ②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근 등)를 해야 할 때
- ③ 기관이 문 열기 이전에 출근해야 할 때
- ④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 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 ⑥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 ⑦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시설보수, 방학 등)할 때
(구체적으로:)
- ⑧ 기타(구체적으로:)

8. 앞에서 응답한 항목별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1점부터 5점까지 선택해주시요.

※ 점수가 높을수록 우려되는 정도가 큼

구분	①	②	③	④	⑤
	우려 정도 낮음	←---		---→	우려 정도 높음
1. 자녀가 아플 때					
2.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3.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4.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5.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6.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7.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시설보수, 방학 등)할 때(구체적으로:)					
8. 기타(구체적으로:)					

▶ 문7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우려 정도 항목 뜨도록 구성

▶ 문7의 7, 8번에 응답 기재한 경우, 8번의 7, 8번에 해당 내용 괄호 안에 뜨도록 구성

9. 자녀가 아프서 기관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또는 타 기관)은 누구입니까?

※ 코로나19 상황 때문이 아닌 평상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매번 돌봐준 사람(또는 타 기관)이 다른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어머니가 직접 돌봄(맞벌이 가구 휴가 포함)
- ② 아버지가 직접 돌봄(맞벌이 가구 휴가 포함)
- ③ 혈연(조부모, 친인척 등)에게 맡김
- ④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함
- ⑤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봄
- ⑥ 기타(구체적으로:)
- ⑦ 그런 적이 없음

- 10-4. 코로나19로 기관이 강제 휴원 했을 때, 긴급보육으로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불만족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 귀하는 야간 또는 주말에 긴급하게 자녀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2번으로**
 ② 아니오 **☞ 문 11-1번으로**

- 11-1. 긴급보육이 필요한데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모두 작성해주시시오.

☞ 문 12번으로

Ⅲ.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경험 및 애로사항

12. 귀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함 **☞ 문 13번으로**
 ② 제도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음 **☞ 문 13번으로**
 ③ 제도를 알고, '20년 2월까지 이용해본 적 있음
☞ 문 12-1, 12-2, 12-3~7, 13번으로
 ④ 제도를 알고, '20년 3월 이후 이용한 적 있음(현재 이용 중 포함)
☞ 문 12-1, 12-3~7, 13번으로

- ▶ SQ2-2-4의 1, 2 응답자는 문12 보기 4만,
 SQ2-2-4의 3 응답자는 문12 보기 3만,
 SQ2-2-4의 4 응답자는 보기 1, 2만 또도록 구성

- 12-1. 귀하가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를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응답)

- 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해서(구체적으로: _____)
 ※ (예시) 입소 또는 입학 시의 부모 오리엔테이션, 알림장, 알림톡
 ② 어린이집/유치원 외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구체적으로: _____)
 ※ (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공공기관을 통해서(구체적으로: _____)
 ※ (예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육아정보 자료

- ④ 병원을 통해서
- ⑤ 동네 홍보자료(현수막 등)를 통해서
- 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홍보함
- ⑦ 지인을 통해서
- ⑧ 인터넷 검색, 맘카페,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12-2. (문 12번에서 ③번에 응답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과거에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 또는 입학하게 되어서
- ② 추가로(하원 이후 등)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조부모, 민간 육아도우미 등)
- ③ 이용 중인 기관에서 추가보육이 가능해져서(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린이집 야간보육,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 ④ 아이돌보미를 신뢰할 수 없어서
- 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근로시간이 변경되어(근로시간 단축 등) 추가로 돌볼 사람이 불필요해서
- ⑦ 일(직장)을 그만두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2-3. 귀하가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 ①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문 12-5번으로
- ② 시간제(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 문 12-4번으로
- ③ 시간제(종합형: 가사 추가) 돌봄서비스 ☞ 문 12-4번으로
- ④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문 12-5번으로
- ⑤ 기관연계서비스(기관에 보조인력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 문 12-5번으로
- ⑥ 잘 모름 ☞ 문 12-5번으로

12-4.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귀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평일과 주말을 기준으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말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중만 표기합니다.

※ (예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하는 경우: (08) 시 (00) 분 ~ (17) 시 (30) 분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주중	()시 ()분	()시 ()분
주말	()시 ()분	()시 ()분

- ▶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구현
시간은 매 시간, 분은 10분 단위로 (시간≤24, 분≤60)
- ▶ 확인창 : 시작 시간 > 종료 시간일 때
- ▶ 확인창 : 시작 시각 20시 이후이거나 종료 시각 22시 이후일 때
- ▶ 예러창 : 시작 시간=종료 시간일 때

12-5. 귀하는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 ③ 보통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①, ② : 문 12-6번으로
 ☞ ③, ④, ⑤ : 문 12-3번 = ②, ③번은 문 12-7번으로,
 문 12-3번 ≠ ②, ③번은 문 13번으로

12-6.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불만족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문 12-3번 = ②, ③번은 문 12-7번으로,
 문 12-3번 ≠ ②, ③번은 문 13번으로

12-7. (문 12-3번에서 ②, ③번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기관과 병행하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등원 서비스(출근 시각 이후 기관에서 문 여는 시각 이전 까지 등원, 등교)를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해서 ☞ 문 12-7-1번으로
- ② 기관 하원 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 문 12-7-1번으로
- ③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아이가 안쓰러워서 ☞ 문 13번으로
- ④ 장시간 아동을 맡기기에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 문 13번으로
- ⑤ 아이가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 문 13번으로
- ⑥ 장시간 기관 이용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 문 13번으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 13번으로

12-7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원하는 시간만큼(출·퇴근시각 등)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시겠습니까?

- ① 그래도 아이돌봄서비스 계속 이용 ☞ 문 12-7-2번으로
- 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 문 13번으로

12-7 기관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하여 추가로 이용하려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문 13번으로

IV.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과 개선요구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내용〉

구분(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연간 840시간, 시간당 10,040원, 돌봄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시는 시간당 13,0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통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기관에 파견되어 자녀를 돌봄

13. 귀하는 기관을 이용 중이더라도 다음 항목별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추가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항목별로 필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선택해주시시오.
※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도가 높음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필요도 낮음	←---		→---	필요도 높음
1. 코로나19 등으로 기관이 강제 휴원하는 경우					
2. 아이가 아파서 등원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4. 이른 출근(기관이 문을 열기 전)					
5. 늦은 퇴근(연장보육 이후, 19:30~)					
6. 기관에서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 (신규입소 등 기관 적응기간 등)					
7. 부모가 아픈 경우(부모의 장애 포함)					
8.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9. 추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다자녀 가구					

- ③ 아픈 아이를 기관에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
- ④ 타인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 또는 추가감염이 우려되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문 15번으로

15. 귀하는 기관을 이용 중인 가구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점에서 5점까지 선택해주시시오.
※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세부 항목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7:30~19:30)을 위주로 지원한다					
2. 어린자녀(0~1세, 또는 0~2세)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영유아 자녀(미취학)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은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한다					
5.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6. 야간 및 새벽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7. 주말 및 공휴일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16. 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신청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해 줌(오리엔테이션, 부모 간담회 등)
- ② 의료기관(소아과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 ③ 주민센터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 ④ 산후조리원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 ⑤ 육아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 ⑥ 육아관련 포털(아이사랑포털 등) 사이트에 소개 자료를 탑재함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다음은 귀 가구에 대한 문항입니다.

DQ1.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DQ2. 귀 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 ② 차상위계층에 해당
- ③ 해당하지 않음
- ④ 모름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영유아부모용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내용: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및 지원요구
- 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소개 / 약 90분 소요

1. 아동 및 가구 특성 / 양육 실태 전반
<p>1) 자녀 및 가구특성은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특성: 자녀 연령(막내 자녀 연령 및 출생순위), 총 자녀수 - 가구특성: 맞벌이 가구 여부(근로특성: 시간제/교대제/야간근로 등 포함/평균 근로시간), 모(母)의 경력단절 경험 및 사유, 재취업 의향 여부 및 해당 요건
<p>2) 영유아 자녀의 양육 실태는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양육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 어린이집/유치원 병행이용 가구: 최초 이용 시기, 서비스 이용시간과 보육 수요 충족 여부(연장보육 이용 여부 및 만족도/유치원 방과후 돌봄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미충족 시 해당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구: 기관 미이용 사유, 희망 이용시기(자녀연령) 및 기관유형,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 이외 육아지원서비스(시간제보육/아이돌봄서비스/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 이용시간 및 빈도) - 자녀돌봄 시 지원인력 여부: 긴급보육 시 대응 방안(조부모, 이웃 등 도움 정도)
<p>3) 자녀연령/가구특성(및 근로특성)에 따른 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특성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자녀연령별, 자녀수 등 - 가족형태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한부모가족 등 - 근로특성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맞벌이 여부 및 근로특성 등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와 자녀돌봄의 공백
<p>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구의 돌봄 공백 및 해당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구의 돌봄 공백 및 해당 사유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기관 병행이용 여부 및 해당 사유: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p>※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야간, 주말 등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경우 PC, 모바일 앱을 통해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함. 서비스 시작 3일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함(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이용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인한 기관의 휴원으로 최초 이용하게 된 경우, 도움정도 인식과 개선요구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표 1 참조

제도별 지원내용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아이돌보미 방문
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 방문
3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4	기관연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통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기관에 파견되어 자녀를 돌봄
7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부모에게 육아종합서비스(상담,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참여 놀이공간 제공 등) 제공
5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 일시돌봄(월~금 9:00~18:00 지원) ※ 시간 당 이용료 1,000원
8	공동육아나눔터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에게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자녀돌봄 공간, 양육경험 및 정보 교류,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은 어떠합니까?
- 이용 빈도/ 주중/주말 이용시간

4)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어떠합니까?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소개 여부 및 도움 정도 인식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이용 신청 및 절차, 비용 지급 방식 등 개선요구
- 서비스 질 관련 개선요구

6) 자녀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은 언제 입니까?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구의 돌봄 공백 및 해당 사유, 감염병 등으로 등원하기 못할 경우 대응 방법 및 지원요구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구의 돌봄 공백 및 해당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대응, 지원요구

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

- 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구체적인 필요 상황 제시
-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2인 이상의 양육자 변경에 대한 우려 여부
- 2) 코로나 19 등 재난 시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용할 의향이 있는 해당 사유:** 기관 이용 중단 또는 병행이용 필요도 인식
- 의향이 없는 경우 해당 사유
- 2)-1: 긴급보육시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지원요구는 무엇입니까?

3) 이하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에 따라 1~5점을 표기해주시시오

세부 항목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7:30~19:30)을 위주로 지원한다					
2. 어린자녀(0~1세, 또는 0~2세아)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만 이용하고 이후 시간에 보육이 필요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영유아 자녀(미취학)의 기관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맞벌이 가구 위주로 연계한다					
5. 코로나 19 등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6. 야간이나 주말 등에 자녀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4)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 언급해 주십시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하원서비스 병행이용 시
- 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주말 등 일상적인 긴급보육 발생 시
- 코로나 19 등 재난 시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시

※ 아동인계 시 안전 문제, 이용비용 처리 방식 등

4.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지원요구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여 이용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 또는 상황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 추가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등
-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자녀가 질병으로 등원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중복지원 여부: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오후 4시 이후, 유치원 이용가구는 오후 3시 이후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기관미이용)을 지급받는 가구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구분	연령 (만)	기관 이용 여부		재학	
			①미이용	②어린이집	①초등	② 중등
			③유치원	④기타	③고등	④대학
D7. 자녀 특성	첫째 자녀	() 세				
	둘째 자녀	() 세				
	셋째 자녀	() 세				
	넷째 자녀	() 세				
	총 자녀수	() 명				
D8.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D9. 월평균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149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150~1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200~249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250~2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⑤ 300~349만원		<input type="checkbox"/> ⑥ 350~3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⑦ 400~4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⑧ 500~5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⑨ 6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⑩ 700만원 이상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부표

〈부표 V-1〉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등에 따른 돌봄 공백 관련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결방안

응답 내용		응답기관
기관의 휴원으로 원아의 부모와 갈등을 경험한 내용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아가 일과 중 발열 37.5도 이상으로 감염병관리 지침에 따라 가정에 연락드려 귀가를 요청드렸으나 원아는 원래 기초체온이 높으며 부모님께서 강하게 불편함을 표시하며 불쾌해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에 따라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당일 사무실 별도 공간에서 보육함. 이후 기초체온이 높다라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요청 함. 	어-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장기 휴원으로 영아반의 다수 중단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원아 재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휴원 시 갑작스런 휴원으로 아동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맞벌이 부모의 출근 문제 - 대체 휴일 수요 조사후 15명 오기로 했으나 당일 취소 5명 등원 이용 아동 적어 등원 아동 소외감 느낀다고 조부모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휴원 및 종사자 검사 과정 실시간 공유 휴원시간 최소화 - 부모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이해구함 	어-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원보다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이른 하원을 하여야 할 경우 불편함을 내색하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른 하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며 원활하게 해결함. - 일시적으로 이른 하원이 불가할 경우 격리 장소에서 인원을 배치하여 격리 보육함. -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아동일 경우 더 이상 이른 하원을 요구하지 않음. 고스란히 교사와 원장이 책임지고 보육하며 이로 인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음. - 철저히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역, 위생, 청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며 보육을 함. 	어-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이 발견되어 모에게 연락하여 병원진료를 권하였으나, 데리러 갈 수 없으니 119를 부르거나 유치원에서 병원을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실에서 나와 별도로 보호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진료후에도 가정돌봄이 연결하여 필요하므로 보호자가 병원을 가실 필요가 있음을 다시 차분히 설명드림. 보호자를 알아보시고 결국, 모께서 오셔서 데려가심 	유-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로 유아가 힘들어하나 부모 비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 유아와 직접 병원다녀옴. 	유-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구여서 애로사항을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시키거나 교사가 나와 돌봄 	유-07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자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과임.

〈부표 V-2〉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상황 및 세부내용

응답 내용		응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원아 및 상황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내용	
- 엄마의 업무 특성상 새벽출근이나 외국 출장이 잦아서 돌봄이 필요했던 쌍둥이 영아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어-01
- 만2세반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경우 엄마의 출근시간과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필요했던 영아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함	
- 감염병으로 일주일 이상을 가정돌봄을 해야만 했던 영아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 안내함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함	
- 코로나19 어린이집 긴급보육중에 가정 돌봄을 하고 싶는데 부모가 보육하기에는 어렵고 코로나19 우려로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부모의 영아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용과 전화번호 안내함	
- 감염병 걸린 아이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병감염아동지원 안내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어-02
- 오리엔테이션때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상담 시 아이돌보미 구인하는 가정들에게 안내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둘째아이 출산으로 첫째아이 돌봄필요 시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어-03
- 맞벌이 가정에 안내	- 돌봄 사이트 안내	
- 출퇴근 전 돌봄서비스 안내	- 돌봄 신청 안내	
- 감염병으로 등원 어려움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학부모에게 알려줌	어-04
- 동생 생김(출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학부모에게 알려줌	
-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이 발생하여 안내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공지사항에 게시함.	어-06
- 코로나19로 등원이 어려운 원아	- 학부모에게 알림	유-08

자료: 이 연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_어린이집/유치원용” 조사결과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90485-96-8